

北韓 金正日體制의 法制整備
現況과 展望

朴 井 源

(국민대 교수, 초청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발 간 사

2002년의 남북관계는 부산아시안게임의 남북공동입장 및 공동응원, 경의선과 동해선의 연결공사, 이산가족의 상봉 등으로 상징되듯이 발전적 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핵개발프로그램은 남북간의 위기와 갈등을 예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남북관계는 발전과 정체라는 부침을 거듭하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눈을 돌려 북한의 대내적 입장에서 나타나는 정책변화와 발전방향은 현재 김정일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북한법제의 정비내용을 통하여 분석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법제의 정비는 대내외적 변화에 대응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북한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김정일체제하의 북한에서 추진되고 있는 북한법제의 내용을 보면, 바로 김정일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전개의 원칙과 방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체제는 체제수호라는 기본목표아래 경제발전이라는 현안을 안고 있으며, 특히 경제회생과 발전을 체제수호를 위한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김정일체제의 법제는 시기적으로 1980년대부터 현재에 걸쳐 정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일체제는 1998년 헌법개정에 의해 그 공식 출범이 대내외에 공표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은 이미 김일성시대에서부터 이른바 수령의 승계론에 의하여 김일성주석과 공동지배체제를 형성하였습니다. 따라서 1980년대말부터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대응은 김정일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습니다.

당연히 이 시기부터 북한의 주요한 정책은 김정일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으며, 그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는 김정일의 정책원리와 방향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국가들의 대변혁에 따른 세계사적 변화에 대응한 북한의 대응자세는 사회주의국가의 변화를 부정하고 북한식의 생존방식을 통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곧 북한은 북한체제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북한경제의 회생이 시급하였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해나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모색하는 것이었고, 대체적인 김정일체제하의 법제 정비내용은 경제개방과 개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1992년 헌법개정에 의한 경제개방의 헌법적 근거 제시, 1990년의 민법제정, 1992년부터 본격화된 외국인투자관련법제, 대외경제관련법제,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제 등은 북한의 경제환경의 변화에 의한 대응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개방과 개혁조치는 바로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을 위한 일련의 법제정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1998년 개정헌법상 경제조항의 변화는 북한경제의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1999년 북한민법이 개정되었으며, 그간의 경제개방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이들 대외경제개방법제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02년에 김정일은 경제개혁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설정에 이어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의 설정을 체계화하는 기본법으로서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개성공업지구법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들 법령은 김정일이 경제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자세를 보여주는 증좌인 것입니다. 이들 법령은 북한의 대외적으로 외자유치를 확대하는 조치인 동시에 남한에 대한 대북투자를 제도화하는 조치로 남북경협이 활성화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편 북한의 김정일체제는 1998년 헌법개정으로 김정일시대에 상응한 권력체제로 개편하였다. 북한은 권력체제의 개편에 따른 법제정비를 시행하고 있다. 북한형법의 경우 1987년 형법이 1995년과 1999년 개정되었는데, 최근 개정형법이 국내에 알려졌는데, 역시 북한의 상황변화에 대한 개정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김정일체제의 법제정비내용은 전체적으로 이념적 또는 내용면에서 기존의 사회주의원칙을 내세우면서도 현실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는 실용주의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북한도 화해와 협력이라는 국제질서의 변화를 수용하고 있으며, 더욱이 경제면에서 자본주의적 원리와 요소를 도입하는 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제면에서 사회주의 이념의 체제수호원리를 제외하면, 경제면에서 대내외적인 상황은 자본주의

의 초기단계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김정일체제의 법제정비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연구는 북한에서 김정일체제의 출범을 전후한 북한법제의 전반적인 틀과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북한의 정책방향을 살피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법제를 통한 변화방향의 고찰은 앞으로 남북관계의 법제도화를 모색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북한은 법제정비를 하면서도 그 전문조차 공개하지 않는 폐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연구서(부록 포함)를 통하여 북한을 이해하고, 북한법 및 통일법제 연구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통일의 법제도적 대비에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어려운 연구환경 하에서도 연구에 최선을 다해준 朴井源 박사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2002년 12월

韓國法制研究院
院長 徐承完

目 次

제 1 장 研究의 目的과 範圍	11
제 1 절 研究의 必要성과 背景	11
제 2 절 研究의 範圍와 方法	14
제 2 장 金正日體制下의 北韓法制 形成過程	17
제 1 절 金正日體制 前後 北韓法制的 形成	17
I. 金正日體制를 中心으로 한 法制形成區分の 前提	17
II. 北韓의 法制定史에 비추어 본 金正日體制的 法制樣相	18
1. 金正日體制 以前의 北韓法制定史: 北韓의 視角을 中心으로 ...	18
2. 金正日體制 下의 法制變化의 樣相	20
III. 北韓憲法을 통해 본 金正日體制的 立法動向	22
1. 北韓憲法史와 金正日體制的 憲法	22
2. 金正日體制 以前의 憲法과 立法動向	23
3. 金正日體制的 憲法(1992年 및 1998年 憲法)과 立法動向 ...	31
제 2 절 金正日體制 法制的 理論的 土臺와 展開	34
I. 主體思想에 立脚한 ‘主體의 法理論’ 展開	34
II. 社會主義法制 事業의 強化(‘社會主義遵法性’과 ‘社會主義法務生活’의 強化)	39
1. ‘社會主義遵法性’의 強化	39
2. ‘社會主義法務生活’의 強化와 社會主義法務生活指導委員會의 設置	40
III. 金正日體制下 北韓法制的 發展樣相	42
1. 法理論的 및 機能的 側面	43
2. 理念的 및 內容的 側面	44
제 3 장 金正日體制 下의 主要法制 整備 現況	47
제 1 절 憲法 關聯法制	47
I. 地方主權機關構成法	47

II. 各級 人民會議 代議員選舉法	50
III. 辯護士法	50
IV. 國籍法	51
제 2 절 刑事關聯法制	51
I. 刑 法	51
II. 刑事訴訟法	53
제 3 절 民事·商事關聯法制	54
I. 民 法	54
1. 北韓民法과 經濟生活	54
2. 北韓의 1999년 改正民法의 意義와 內容	57
II. 家族法	72
III. 民事訴訟法	73
IV. 仲裁法	74
V. 社會主義 商業法	75
VI. 保險法	75
제 4 절 行政關聯法制	75
I. 都市經營法	75
II. 土地賃貸法	76
III. 社會主義財產管理法	77
IV. 教育法	77
제 5 절 經濟關聯法制	79
I. 人民經濟計劃法	79
II. 公證法	80
III. 財政法	80
IV. 價格法	81
V. 貿易法	82
VI. 加工貿易法	84
VII. 農業法	88
VIII. 閘門法	89
제 6 절 知的財産權關聯法制	90

I. 發明法	90
II. 著作權法	92
제 4 장 外國人投資 및 對外經濟 關聯法制	95
제 1 절 外國人投資關聯法制	95
제 2 절 對外經濟法制	99
I. 對外經濟契約法	99
II. 對外民事關係法	100
III. 對外經濟仲裁法	102
IV. 外貨管理法	106
V. 羅津-先鋒經濟貿易地帶法	109
제 3 절 北韓의 特殊經濟地帶 法制	113
I. 新義州特別行政區 基本法	114
1. 立法背景	114
2. 主要內容	115
3. 新義州特區에 대한 對應方向	118
II. 金剛山觀光地區法	120
1. 立法背景과 意味	120
2. 金剛山觀光地區法の 主要 內容	122
3. 金剛山觀光地區法の 對應方向	126
III. 開城工業地區法	128
1. 立法背景과 意味	128
2. 『開城工業地區法』의 主要 內容	129
3. 開城工業地區에 대한 對應方向	132
IV. 北韓의 特殊經濟地帶 關聯法制的 動向과 課題	133
제 5 장 金正日體制下 北韓法制的 評價와 展望	137
제 1 절 金正日體制的 國政運營과 法制變化 樣相	137
I. 北韓의 對內外環境變化에 따른 金正日體制 法制變化	137
II. 北韓의 對外開放 擴大와 法制整備	142
III. 南北經協의 擴大를 위한 北韓法制的 展開	143

제 2 절 北韓法制改善과 中國의 法制改革의 示唆點	146
제 6 장 結 語	151
북한법제 관련 문헌목록	155

제 1 장 研究의 目的과 範圍

제 1 절 研究의 必要性和 背景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김일성주석의 사망(1994. 7)을 계기로 하여 정치체제의 변화도 모색하게 되었다. 북한의 정치체제의 변화모색은 이른바 ‘수령의 유일지배체제’의 지속으로 김일성에 이은 김정일체제로의 전환인 것이다. 물론 북한은 일찍부터 김정일체제로의 권력승계작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러한 권력승계에 의해 김일성의 1인지배체제 하에서도 북한은 사실상 김일성과 김정일의 2인지배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에 입각한 ‘혁명적 수령관’과 ‘수령의 계승론’에 의해 김정일체제로의 권력승계가 확고한 자리를 차지한 가운데 공식적인 김정일체제의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다. 북한에서의 김정일체제로의 권력승계의 과정은 북한헌법의 개정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1992년 헌법개정은 김정일체제를 고려한 법적 포석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김일성의 사망 이후 이른바 유훈통치기가 지난 다음 1998년 단행된 헌법개정은 바로 김정일체제의 공식적 출범을 대내외에 공표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현재 북한에서 김정일은 사실상 당·정·군을 장악하고 있는 절대권력자로서 군림하고 있다.

북한에서 김정일체제는 1990년에 들어서서 공식화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는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의해 큰 변화의 길에 접어드는 때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말 북한은 구소련 및 동구사회주의국가들의 변혁에 대하여 거부입장을 나타내면서 북한식의 사회주의체제의 고수를 강조하였다. 그러다가 1990년에 들어서서 북한이 봉착하게 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경제부문에서의 부분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물론 그러한 정책전환은 북한의 정치체제를 수호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배경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의 추진은 1992년 헌법개정을 통한 경제부문을 중심으로 한 대외개방의 법적 뒷받침을 기점으로 외국인투자법제 및 대외경제개방법제의 정비를

통해 보다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북한에서 보이는 이러한 정책변화는 북한법제에 반영되고 있다. 한편 새로운 북한법제의 정비를 통해 북한의 향후 정책전개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재 김정일체제하의 북한에서의 정책전개 및 그 양상은 북한법제의 변화내용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북한에서 김정일체제의 공식 출범은 북한정권에서 새로운 국정운영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전환기적 과제를 가다듬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김정일체제에서 정비되고 있는 북한법제는 바로 김정일체제 하에서 추진되는 정책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최근 북한에서 나오고 있는 법제들은 북한 변화의 모습을 담고 있는 동시에 김정일체제의 국정운영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1990년대에 들어선 김정일체제와 함께 북한의 법제는 북한의 대내외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빠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북한에서의 새로운 권력체제의 등장에 의한 국가기관체계의 개편과 함께 북한의 정책전개의 방향에 의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북한에서 김정일체제의 등장을 공식화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비되거나 현재 정비되고 있는 북한법제의 분석을 통하여 북한 김정일체제의 향방을 찾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북한은 인민정권 수립을 계기로 그 나름의 법제도를 형성하여 왔다. 그리고 김정일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김일성시대하에서의 법제에 대한 개선작업을 하면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 시점에서 김정일체제 하의 북한법제의 내용을 살피고 그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향을 전망해보는 것은 북한의 모습을 파악하는 데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북한법을 통한 북한에 대한 이해와 함께 나아가 통일법제의 준비에 도움을 줄 것이다.

최근 북한은 법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개선에 대해서도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¹⁾ 북한은 사회주의법제사업에 관하여 “사회주

1) 이와 관련한 북한의 사회주의 법제정에 대한 논의로는 진유현, “사회주의법제사업의 본질과 기본내용”,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법학-』, 제43권 제3호(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부, 1997. 3), pp.49~52; 진유현, “사회주의법제정의 합법직성”; 김원출, “법률조종학적 체계에서 국가법률체계의 본질과 내용”,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역사·법학』, 제43권 4호(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997), pp.48~52, pp.76~79 등을 들 수 있다.

의국가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제도적으로 고착시키고 공고화하며 보호하기 위한 사람들의 행위규범, 활동준칙을 제정하는 활동”²⁾이라는 데에 그 본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새로운 법규범을 만들고 그것을 변화하는 현실과 조건에 맞게 수정·보충, 개정 또는 폐정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한다.³⁾ 여기서 북한에서도 법이 사회관계의 변화발전에 상응하여 변화 발전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제개선사업이 진행된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실제로 50년이 넘는 북한법제의 변화과정을 보면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변화에 따라 북한법제도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그들의 법제정사를 “주체의 법사상과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법의 제정실시에서 이룩된 전통에 기초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제정실시해온 주체의 법제정력사”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북한의 법제정의 역사적 과정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보장하는 법을 제정하는 과정과 주체의 법제정과정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즉, 북한의 법제정사는 그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근로대중을 중심으로 놓고 풀어온 역사라는 점과 그 본질적 특징은 법을 근로대중을 위하여 만들며 근로대중을 위하여 실시한다는 점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⁵⁾ 물론 이는 북한에서 근본이념으로 강조되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것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북한의 설명을 통해 북한의 법제사에 대한 인식이 이른바 ‘주체의 법제정역사’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법제는 1948년 북한정권의 수립 이후 김정일체제인 오늘이 이르기까지 전개되고 있다. 이에 북한의 법제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북한법을 총체적으로 고찰하는 것과 함께 김정일체제 하의 북한법제의 내용을 분석하는 일은 북한법제의 이해를 통한 북한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에 관한

2) 진유현, “사회주의법제사업의 본질과 기본내용”, 위의 논문, p.50.

3) 예컨대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외국인투자법 등 대외경제관계법규는 국가간의 경제적 교류와 협조를 법적으로 새롭게 규제하는 법제사업이라고 하고, 1974년 채택된 형법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1987년과 1992년에 변경된 것을 법규범을 개정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의 논문, pp.50~52.

4) 홍극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사』(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p.4.

5) 위의 책, 같은 면.

국내의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야 그 성과를 찾을 수 있으며,⁶⁾ 일본에서도 그 연구서가 출간된 바가 있다.⁷⁾ 이러한 연구성과를 통하여 김정일 체제의 법제정비동향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제 2 절 研究의 範圍와 方法

북한은 인민정권수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국정방향과 이념적 지향에 따라 정책을 전개해왔으며, 이에 따라 법령도 바뀌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시점의 북한법령 및 법제의 변화와 동향에 중점을 두어 다루기로 한다. 다시 말해 북한의 현재체제로서 김정일체제 하의 북한법제의 동향을 살피고 그 변화추이를 분석한다. 알다시피 북한의 김정일체제는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사적 변화와 이로 인한 북한의 국내적 상황의 격랑속에서 출범하였다. 그런만큼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북한의 정책전개의 방향과 내용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변화된 현실에 상응한 정책의 전개를 위한 법제적 근거의 마련과 법적 토대의 형성은 과거 북한의 국정운영고 비교할 때, 크게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북한의 김정일체제 하에서의 국정운영의 체제는 비교적 법적 체계화를 통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북한에서 김일성의 견고한 권력체제는 김일성의 사망으로 새로운 변화의 틀을 요구하게 되었다. 비록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력승계체제가 주체사상을 통하여 일찍부터 준비되어 왔다고 하지만,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지는 권력이양에 의해 권력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국정의 운영의 방법에 있어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틀과 내용은 김정일체제의 등장을 전후로 한 북한

6) 崔達坤, “北韓法の體系와 特色의 究明을 위하여”, 『北韓法體系와 特色』(세종연구소, 1994), pp.3~23; 崔鍾庫, “北韓法の 歴史的 展開 -北韓法制史-”, 『北韓法體系와 特色』(세종연구소, 1994), pp.27~73; 崔鍾庫, “北韓法の 歴史와 思想”, 『人權과 正義』, 1995년 11월호(대한변호사협회, 1995), pp.8~19; 崔達坤·申榮鎬, 『北韓法入門』(세창출판사, 1998), pp.34~64 등이 있다.

7) 金圭昇, 『南·北朝鮮の法制定史』(東京: 社會評論社, 1990), pp.341~454; 大内憲昭, 『朝鮮社會主義法の研究 -チュウチエの國家と法の理論-』(東京: 八千代出版, 1994), pp.1~90; 張君三, 『金日成と北朝鮮法令』(東京: 啓文社, 1994), pp.1~64 등을 들 수 있다.

법제의 변화내용에서 추론할 수 있다. 북한의 1992년과 1998년의 헌법개정은 북한의 대내외적 정책의 변화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이념과 체제의 정비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기실 북한헌법의 1990년대의 개정은 결국 김정일 체제로의 전환에 의한 헌법적 구조의 개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헌법개정을 기준으로 김정일은 많은 분야에서 개혁과 함께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와 방향은 해당관련법제에 반영되고 있다. 이에 변화되고 있는 북한법령에 대한 연구를 통해 김정일체제의 정책전개의 방향과 원칙을 분석해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그간의 북한법제의 변천에 관한 고찰을 토대로 하여 김정일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한 북한의 법제정비의 내용을 논급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북한에서의 법제형성 및 발전에 관한 주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어 1990년대에 들어서서 이루어진 북한의 법제정비 내용을 분석한다. 이 가운데 북한의 헌법사와 해당 시기별 주요입법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북한법제의 변천을 살펴보는 것도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다음 북한의 주체사상에 바탕한 ‘주체의 법이론’과 ‘사회주의준법성’ 및 ‘사회주의 법무생활’에 관해 논급함으로써 북한법제의 특색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북한법제의 변화의 흐름을 법이론적 및 기능적 측면과 이념적 및 내용적 측면으로 나누어 약술하고, 북한의 주요 부문법제의 발전과 입법동향에 관하여 분석한다. 끝으로 향후 김정일체제 하의 법제발전방향과 전망에 대하여 언급한다.

본 연구는 김정일체제의 등장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법령을 고찰대상으로 하되, 개별법의 분석보다 전체적인 틀 속에서 김정일체제 하의 법령정비의 방향과 특징을 구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시점에서의 북한법제의 이념적 지향성과 기능면에서의 변화내용을 분석하고, 헌법, 형사법, 민사법, 외국인투자법 및 대외경제법제, 경제특구법제 등으로 나누어 영역별 내용과 특징을 고찰한다. 이 연구는 관련 문헌의 수집을 통한 문헌적 연구이며, 법령분석과 비교법적 방법으로 논구한다.

연구의 목적과 성격상 각 개별법령의 심층분석이기 보다 김정일체제의 출범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의 법령 및 법제의 큰 변화의 방향을 가늠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관계의 전개 및 통일대비의 준비를 위한 기초적 자료로서의 차후 연구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제 1 장 研究의 目的과 範圍

한편 본 연구서와 별도의 부록을 발간한다. 부록에는 먼저 김정일체제의 북한헌법, 즉 1998년 개정헌법의 全文을 첨부하고, 1999년에 개정된 북한 형법과 북한민법, 외국인투자법,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의 전문과 신구조문의 비교표를 수록한다. 이와 함께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개성공업지구법의 전문을 게재한다.

이어 본 연구와 관련한 참고문헌으로 김정일시대의 북한법제에 관한 국내 연구와 북한원전을 수록하여 북한법에 대한 기초적 연구의 토대를 제공한다. 김정일체제의 헌법과 주요법령, 그리고 참고문헌은 북한법을 연구하거나 접근하는 데에 있어 기초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제2장 金正日體制下的 北韓法制 形成過程

북한의 김정일체제의 법제동향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 기존의 북한법제의 사적 형성과정과 이론적 발전단계에 관하여 알아보는 것은 현행 북한법제의 발전적 토대를 찾고, 그 미래지향점을 예측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제1절 金正日體制 前後 北韓法制的 形成

I. 金正日體制를 中心으로 한 法制形成區分の 前提

북한은 나름대로 그들의 법제정사에 관하여 몇 가지 시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는 북한에서 법제정의 시기 및 시대구분을 알기 위하여 북한의 설명에 기초하여 북한의 법제정사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이에 관한 북한의 법제정사에 관한 설명은 1980년대 중반까지의 북한법제에 한정되어 있고, 이후의 법제정사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관련 북한의 자료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북한법제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에서 김정일체제의 공고화와 확립을 위한 과정에서 북한의 법제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지만, 이에 관하여 북한에서 종전의 법제정사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것은 아직 없다. 시기적으로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북한법제의 변화내용은 김정일체제의 법제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법제의 전개과정에서 김정일체제의 기준을 어느 시기로 하는가에 대한 설정이 요청된다. 이는 북한체제의 특성에 의거하여 판단하여 볼 수 있다. 북한의 정치체제의 특성은 이른바 김일성의 '수령의 유일 지배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김일성에 이은 김정일의 권력체제를 위한 사전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그래서 1980년대에 들어서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공동지배체제를 형성하였다고 분석되었다. 김일성이 생존해 있으면서 사실상 김정일제로의 권력승계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시기적으로 1980년 후반부터는 김정일이 군사부문의 실질적 권력을 장악하게 함으로써 권력기반을 확고히 하였다. 물론 김정일체제

의 공식출범은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한 김일성중심의 권력체제의 개편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김정일은 그 이전에 북한에서의 최고지도자로서의 권력기반을 형성하고 또 정책이념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당시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정책의 시행은 김정일에 의해 주도되었고, 이와 관련한 법제정비도 김정일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김정일체제 하의 법령에 관한 내용의 고찰의 시기는 1992년과 1998년의 헌법개정의 시기를 중심으로 180년대말과 1990년대초에 이루어진 북한법제의 정비내용을 포함하여 설정하기로 한다.

II. 北韓의 法制定史에 비추어 본 金正日體制的 法制樣相

1. 金正日體制 以前の 北韓法制定史: 北韓의 視角을 中心으로

북한은 인민정권 수립 이전부터 1980년대까지 7가지의 시기로 구분하여 법제정사의 내용을 북한의 실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첫째,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이다. 북한에서 항일투쟁사는 강조되어 왔으며, 이른바 이 시기에서 북한법제의 기초를 규정하고 있다.^{8) 9)} 북한은 일제의 식민지악법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1932년말부터 1933년 초에 두만강연안지역에 해방지구형태의 근거지를 마련하고 여기에 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하였다고 한다. 이때 제정실시된 법을 북한은 북한법의 기원이라 한다.¹⁰⁾ 그 가운데 인민혁명정부의 당면과업을 구체화한 이른바 ‘정부정강’¹¹⁾

8) 이에 의하면, 북한의 법제정의 역사적 뿌리는 김일성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독창적인 법사상과 이론을 창시하고 이를 해방지구형태의 근거지들에서 구현된 것이라고 한다.¹⁾ 또한 김일성의 법제정 사상은 “일제의 악법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법을 제정하는데 대한 인민민주주의적 법제정사상”이라고 강조하고, 항일운동의 반제반봉건사상이 구체적으로 “유력근거지들에서 인민혁명정부를 세우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권건설경험과 함께 법제정의 귀중한 경험”을 참조하였다고 한다. 홍극표, 앞의 책, pp.5~12.

9) 위의 책, pp.6~7.

10) 위의 책, pp.8~9.

11) 이 정강의 요약은 리재도·장인형, 『조선국가와 법의 역사』(평양: 김일성종합대학, 1985), pp.122~123.

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개별법제들이 결정·지시·명령·선언·포고 등의 형식으로 마련되어 북한법제정의 역사적인 전통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한다.¹²⁾

둘째,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시기’이다. 이 시기는 북한에서 사회주의정권 수립과정에서 실시된 혁명적 조치들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한 1946년까지로 구분된다. 이 시기는 북한정권창설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주요 입법이 이루어진 만큼 북한법제사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이었다.

셋째,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 첫 시기’이다. 이 시기의 입법은 인민민주주의 독재정권을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으로의 강화발전, 인민경제의 관리운영사업의 개선강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의 보장 등을 위한 법령의 제정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넷째,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이다. 이 시기에 북한은 6·25전쟁을 ‘조국해방전쟁’이라고 칭하고 전시체제입법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이 시기의 법제를 국가사업을 전시체제를 개편하는 입법, 남반부지역의 민주개혁을 위한 입법, 전선의 수요와 전시생산을 위한 입법, 후방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입법, 후방에서 준동하는 계급적 ‘원썩’들을 진압하는 입법 등으로 나누어 설명한다.¹³⁾

다섯째, ‘전후 인민경제복구발전과 사회주의 기초건설시기’이다. 이 시기에 북한은 전후 경제 및 사회질서를 복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령을 채택하였는데, 국가기관의 사업개편과 역할제고를 위한 입법,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협동경리의 공고화를 위한 입법,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축성사업을 위한 입법, 교육사업의 개선을 위한 입법, 인민생활의 안정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 등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¹⁴⁾

여섯째,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시기’이다. 북한은 이 시기의 법제정의 방향에 대해 인민정권기관의 강화 및 그 기능과 역할의 제고를 위한 법규,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사업의 개선완성을 위한 법규, 근로자들에 대한 교

12) 홍극표, 앞의 책, pp.9~10.

13) 위의 책, pp.102~138.

14) 위의 책, pp.139~186.

육교양사업강화를 위한 법규, 사회주의 공업화의 완성과 전면적 기술개선을 위한 법규, 인민생활의 획기적 증진을 위한 법규들을 제정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¹⁵⁾ 이러한 법제정사업을 통해 북한은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정착시키는 법제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이다.¹⁶⁾

일곱째,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시기’이다. 북한은 이 시기에 법분야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의 채택을 통한 국가경제기관의 강화와 그 기능과 역할증대를 위한 법규, 사상혁명·기술혁명·문화혁명을 강화하기 위한 법규들을 제정실시하여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한 부문법전들을 제정실시하여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공고히 발전시키는 기본과업실현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¹⁷⁾

이렇게 북한은 1980년대 중반까지의 법제사를 7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후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함께 북한법제에도 변화가 있었으나, 이에 관해 설명한 북한의 자료는 아직 없는 것 같다.

2. 金正日體制 下的 法制變化의 樣相

위의 설명은 1980년대 까지의 북한법제에 대한 북한 나름의 기준에 의한 개략적인 설명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김정일체제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법제의 정비내용에 관해서는 북한의 평가를 살펴보기 어렵다. 그러나 북한에서 김정일체제의 공고화 및 출범 과정에서 행해지는 법제변화는 앞서의 북한의 단계적 법제정사와 별도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15) 위의 책, p.187.

16) 이에 대해 북한은 인민정권기관을 강화하고 기능을 높이는 입법,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입법, 근로자들의 교육교양사업을 위한 입법, 사회주의공업화의 완성과 전면적 기술개선을 위한 입법,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입법 등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위의 책, pp.187~223.

17) 북한은 이 시기의 법제정의 내용을 사회주의헌법의 채택, 국가·경제기관을 강화하고 기능을 높이기 위한 입법, 사상·기술·문화혁명의 심화·발전을 위한 입법, 인민생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사회주의법체계의 가일층 발전을 위한 입법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위의 책, pp.224~287.

첫째, 북한의 1980년말과 1990년대초 국제정세의 변화와 북한의 대내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변화에 대한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정책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기 하기 위한 법적 대응자세를 찾아볼 수 있다.

둘째, 비록 북한이 대외개방과 경제개혁을 위한 정책방향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회주의국가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김정일체제 하에서도 김일성체제하에서 추진하여 왔던 법제의 기본원리 면에서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김정일에 의하여 강조되는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에 따른 대내외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변화 내용은 법제면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의 표방은 기존의 북한의 정치체제의 수호와 함께 그 체제 강화를 위한 방편으로 행해지는 변화모색에 대한 법적 논거 및 근거의 마련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셋째, 김정일체제에서의 법제변화양상은 기존 법제에 대한 개정작업과 새로운 법제의 마련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래의 북한법의 변화과정에 비해 김정일체제하의 북한법제는 현실변화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기존법제의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강한 이념적 색채를 규정하고 있었던 법제의 정비를 통해 엿볼 수 있다. 다음 새로운 법제의 마련은 대외개방의 정책변화와 함께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정비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외국인투자법제와 대외경제개방관련법제의 제정과 현실변화에 대응한 법제개선을 들 수 있다.

넷째, 김정일체제 하의 법제개선내용은 대서방국가와의 관계개선과 대북한 투자유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이는 폐쇄적인 기존체제에서 일부나마 개방을 위한 자세전환의 지를 법제를 통해 내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외국 뿐만 아니라 남한에 대해서도 대북투자를 위한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에 준하도록 하는 현실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도 포함된다. 김정일체제하의 법제개선은 현실적인 북한의 정책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만큼 상황변화에 상응한 법적 조치로서 변화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Ⅲ. 北韓憲法을 통해 본 金正日體制的 立法動向

1. 北韓憲法史와 金正日體制的 憲法

앞서 언급하였듯이 북한은 북한법제의 시원을 일제시기의 항일혁명투쟁시기의 법에 두고¹⁸⁾ 1980년대 중반까지 그 발전과정을 7개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준에 의한 법제사적 고찰이 이루어지고 있다.¹⁹⁾ 그러나 북한정권이 수립되기 이전의 북한의 법제사는 그 前史에 해당하는 것이며,²⁰⁾ 이러한 북한의 입장은 역사적 사실성 보다 북한이 법제의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정신적 상징성을 부각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각색의 색채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²¹⁾ 여기서는 북한헌법의 변천을 중심으로 주요입법의 동향과 관련하여 북한의 법제변천을 고찰하되, 특히 1992년과 1998년 헌법의 개정배경과 내용이 김정일체제의 공고화를 위한 법적 포석과 김정일체제의 공식 출범을 위한 헌법적 토대 형성이라는 점에서 1990년대의 북한헌법의 변화를 김정일체제의 헌법으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무릇 북한에서 헌법에 대해 기본법적 성격이 강조되고 각 헌법은 당시 시대사적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각 부문법의 기준으로서 법적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는 면에서 북한헌법을 통한 북한법제의 변천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여기서 북한헌법의 발전과 관련하여 시기별로 ‘헌법적 역할’을 담당한 입법²²⁾을 비롯한 주요입법들을 살펴보는 것은 북한법제의 변천을 이해하

18) 북한에서 법건설문제는 민족적 독립을 공고히 하며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하고, 김일성동지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주체사상에 기초한 독창적인 법건설사상’을 창시하고 김정일동지가 ‘주체의 법건설사상과 이론’을 발전시켰다고 강조한다. 서창섭, 『법건설경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pp.3~4.

19) 리재도·장인형, 앞의 책, pp.102~162; 서창섭, 위의 책, pp.5~116. 한편 일본의 한 연구서도 대체로 북한의 분류에 따른 북한법제정사를 설명하고 있다. 金圭昇, 앞의 책, pp.341~454.

20) 金圭昇, 위의 책, pp.25~44; 崔達坤·申榮鎬, 앞의 책, p.34.

21) 崔鍾庫, 『북한법』, 앞의 책, pp.21~22.

22) 헌법적 역할을 담당한 입법이라 하는 것은 헌법의 주요부속법률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그것은 이른바 ‘헌법의 원천’이라고 하는데, 북한의 사회주의사회 및 국가제도를 규제하는 사회관계, 국민의 헌법적 지위를 규제하는 사회관계 및 국가주권 실현과정에서 형성되는 사회관계를 규제하는 법규범들의 표현형식을 말한다. 윤중섭

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북한의 헌법사를 보면, 크게 다섯 개의 헌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1948. 4. 28)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을 채택하고, 이 초안을 『북조선인민회의』 제5차회의(1948. 7. 9)에서 북한지역에 실시하기로 한 ‘임시헌법’이다.

둘째로 『최고인민회의』 제1기 1차회의(1948. 9. 8)에서 제정·공포한 북한의 첫 정식헌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하에서는 ‘1948년헌법’ 또는 ‘인민민주주의헌법’이라고 함)이다. 이 헌법은 ‘임시헌법’을 기초로 한 것이다.

셋째는 1948년헌법이 24년간 시행되다가 폐지되고,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회의(1972. 12. 27)에서 채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하에서는 ‘사회주의헌법’ 내지 ‘1972년헌법’이라 함)이다.

넷째는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1992. 4. 9)에서 사회주의헌법을 시행해온지 20년만에 대폭 개정한 헌법(이하에서는 ‘1992년헌법’ 또는 ‘우리식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함)이다.

다섯째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1998. 9. 5)에서 사회주의헌법을 2차로 개정한 헌법이다(이하에서는 ‘1998년 개정헌법’ 내지 ‘김일성헌법’이라고 함).

이 가운데 1992년 및 1998년 헌법은 김정일체제의 확립과 공식출범을 계기로 개정된 것으로 김정일체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헌법이다. 따라서 김정일체제의 헌법으로 1990년대에 이루어진 헌법개정을 중심으로 그 입법내용을 김정일체제하의 법제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북한법제, 즉 김정일체제하의 입법동향은 이 시기와 1990년대 북한헌법에 근거한 법령들의 분석에 의한 것이다.

2. 金正日體制 以前の 憲法과 立法動向

(1) 臨時憲法の 制定과 主要立法

1945년 8·15 광복 후 미·영·소 3국외상회의(모스크바)의 “조선문제에 관한 결정서”(1945. 12. 27)에 의해 개최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외, 『조선헌법』(평양: 고등교육도서출판사, 1963), p.6.

(1946. 3. 20~5. 8)에서 성과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은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²³⁾를 조직하고 『북조선로동당』을 결성하고, 이를 토대로 『북조선인민회의』²⁴⁾를 창설하는 등 북한에서의 단독정권수립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다.²⁵⁾ 이어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마저 결렬(1947. 8. 12)되고, 유엔총회가 유엔감시하의 남북한총선거실시와 선거를 감시할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설치를 결의(1947. 11. 14)하자 북한에서는 소위 ‘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서두르게 되었다.²⁶⁾ 이윽고 북한은 ‘북로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1947. 11. 16)에서 통일전선전략에 의거 통일임시정부수립을 위한 법적 기초로서 임시헌법의 제정을 결의하고 『조선림시헌법제정위원회』와 『법전작성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²⁷⁾ 그리고 『북조선인민회의』는 제3차 회의(1947. 11. 18)를 개최하여 헌법초안 작성을 토의하고, ‘조선임시헌법 제정준비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이른바 통일적 ‘조선민주국가’헌법을 제정한다는 명목하에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에 속한 정당 및 사회단체의 대표들로 『조선림시헌법제정위원회』를 조직하고 동위원회는 헌법초안을 확정(1947. 12. 20)하였다.²⁸⁾

북조선인민회의 제4차회의(1948. 2. 6)는 이 임시헌법제정위원회의 보고를 심의하고 그 헌법초안을 이른바 ‘전체인민토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1948. 4. 28)는 2개월 반(1948. 2. 11~4. 25)에 걸친 전체인민토의의 결과로 이루어진 헌법수정초안을 심

23) 이 위원회는 사회주의화에 있어서 기본문제인 ‘政權’의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북한정권의 모체가 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張明奉, “南北韓의 政治 및 憲法體制의 變化 -北韓을 中心으로”, 『統一論叢』, 제5권 2호(國土統一院, 1985), pp.34~35.

24) 북한에서 최초선거인 『북조선 도·시·군인민위원회』의 선거(1946. 11. 3)를 토대로 『북조선 도·시·군인민위원회대회』가 개최(1947. 2. 17)되어 北朝鮮最高立法機關으로 『北朝鮮人民會議』를 창설하기로 하고 그 제1차회의(1947. 2. 21)에서 北朝鮮最高執行機關으로 『北朝鮮人民委員會』를 조직하고 金日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25) 이에 관해서는 張明奉, “南北韓의 政治 및 憲法體制의 變化—北韓을 中心으로—”, 앞의 논문, pp.25~44.

26) 『북한개요』(국토통일원, 1984), p.40.

27)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하〉(中央日報社, 1993), p.300.

28) 리재도·장인형, 앞의 책, p.140; 朴東雲 著, 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 編, 『北韓統治機構論』(高麗大 出版部, 1964), p.25; 『北韓總鑑, 1945~1968』(共產圈問題研究所, 1968), p.108.

의하여 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으로 정식 채택하였다.²⁹⁾ 그리고 북조선인민회의 제5차회의(1948. 7. 9)에서는 전조선통일까지 이 임시헌법을 북한지역에 실시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이 임시헌법은 발효하게 되었다.³⁰⁾

이 당시 북한의 권력기구 가운데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제반 민주개혁’을 수행하기 위하여 많은 법령과 결정들을 공포·시행하였다. 또한 『북조선인민회의』와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정부수립준비를 하였는데, 그 법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임시헌법을 준비하게 되었다.³¹⁾ 따라서 임시헌법은 북한지역에서 이룩된 ‘제반 민주개혁’의 성과를 법적으로 고착화시키고 북한사회를 국가조직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해 북조선인민회의의 의장이었던 김두봉은 북조선에서 실시한 제민주개혁의 법적 확고화, 남북조선인민대중에게 쟁취하여야 할 헌법의 과시, 국가조직의 촉진 및 자주독립의 수립 등을 역설하였다.³²⁾ 그리고 ‘초안보고’를 보면,³³⁾ 임시헌법이 ‘제반 민주개혁’의 고착화와 대내외의 선전, 국가조직의 구성과 독립국가로서 인정받기 위한 필요성에서 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임시헌법과 관련한 주요입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군정기의 정권기관수립 법제 및 일제법령의 정비이다. 소군정기에 이루어진 입법동향은 사회주의국가의 건설과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구조를 구축에 중점을 두는 것이었다. ‘북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 ‘20개조 정강’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에서 제정한 법령들은 북한의 사회주의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북한의 정권수립과정의 최초의 입법은 북조선사법국 포고 제2호(1945. 11. 16)에 의한 ‘북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이었다. 이후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창설과 함께 ‘도·시·군·면·리 인민위원회에 관한 규정’(1946. 9. 5), ‘면·군·시 및 도인민위원회위원의 선거에 관한 규정’(1946. 9. 14) 등이 제정되었다.

29) 『北韓總鑑』, 앞의 책, p.109.

30) 『북한개요 '91』(統一院, 1991), p.74.

31) 『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앞의 책, p.299.

32) 최용달, “朝鮮人民은 이러한 憲法을 要求한다”, 『근로자』(평양: 로동신문사, 1948. 1), pp.23~24.

33) 大內憲昭, 앞의 책, p.52.

한편 식민지배법제의 폐지는 북한의 인민정권의 과제였으며, 북한은 식민지악법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였다고 주장한다.³⁴⁾ 그러나 일제법령이 재판의 준거로서 기능하지는 못하였으나, 그렇지 아니한 법령은 해방 이후에도 잠정적으로 그대로 적용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³⁵⁾ 아울러 ‘개인소유권을 보호하며 산업 및 상업활동에 있어서의 개인의 창발성을 발휘시키기 위한 대책에 관한 결정서 (1946. 10. 4)’를 채택하여 소유권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둘째, 재산혁명·사회개혁 및 가족혁명 법제이다. 먼저 財産革命을 위한 법령으로는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1946. 3. 5)’, ‘토지개혁실시에 대한 임시조치법’(1946. 3. 7),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에 대한 결정서’(1946. 3. 8) 등을 들 수 있다.³⁶⁾ 또한 중요산업의 국유화조치의 단행과 관련하여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행등의 국유화에 관한 법령’(1946. 8. 10.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58호)을 제정함으로써 일본법인 및 일본인, 민족반역자와 예속자본가 소유의 재산을 무상으로 몰수하여 국유화하였다. 그리고 사회 및 문화생활의 민주화를 위하여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에 대한 결정서’(1946. 6. 24), ‘북조선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1946. 6. 24.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29호)’등을 제정하여 8시간노동제, 평등임금노동제, 사회보험제 등을 규정하였다. 아울러 봉건적 가족제도의 철폐에 따른 여성해방 및 남녀평등의 실현이란 과제의 제기에 따라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1946. 7. 30.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45호)을 제정하여 남녀평등의 실현 및 가족법제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2) 1948年憲法(‘人民民主主義憲法’)의 制定과 主要立法

북조선인민회의 제5차회의는 전조선의 통일까지 임시헌법의 북한지역 실시와 『최고인민회의』의 선거실시를 결의하는 한편 최고인민회의 선거에 있

34) 사법국 포고 제2호에 의해 일제시기에 북한에서 시행되던 모든 법령의 효력이 영구히 상실된 것을 입법적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35) 崔達坤·申榮鎬, 앞의 책, pp.38~39.

36) 이에 의해 북한은 농민들의 봉건적 착취에서의 해방 내지 봉건적 토지소유관계와 착취관계의 청산, 새로운 토지소유 및 이용관계확립을 위한 경제개혁으로서 토지개혁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일본인과 지주의 토지소유와 소작제철폐, 耕者有田의 원칙 확립을 목적으로 하여 무상몰수·무상분배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었다.

어서 대의원선거에 관한 규정, 대의원선거일, 중앙선거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문제를 『북조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위임하였다.³⁷⁾ 이러한 상황은 “유엔의 간판을 도용하면서 그의 주구 이승만역도를 사촉하여 ‘단독선거’를 조작하고 ‘단독정부’를 수립할 것을 로골적으로 획책”하고 있는 “악화된 정세에 대처하여 조선인민은 단연 우리 조국을 통일적자주독립국가로 건설하며 광범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통일적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야”³⁸⁾ 한다는 북한의 설명에서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은 북조선인민회의에서의 헌법초안 채택과 전인민적 토의, 남북조선인민의 2개월 반에 걸친 인민토의를 통한 인민민주주의적 국가제도와 사회제도에 대한 환영³⁹⁾을 강조하였다. 이어 북한은 조선로동당의 구국대책은 바로 조선인민의 의사와 숙망을 표현하며, 그들을 대표하는 전조선 최고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를 조직하고 남북조선의 민주주의적 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의 대표로 전조선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하였다.⁴⁰⁾

이에 따라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한 데(1948. 8. 25) 이어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김두봉을 위원장으로 『헌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미 북한지역에 실시하고 있던 ‘인민공화국헌법’을 기초로 헌법안을 작성하여 최고인민회의에 회부하였고, 최고인민회의는 이의없이 이를 채택·공포하였다(1948. 9. 8).⁴¹⁾ 이리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내각을 비롯한 정권기관이 구성되었다. 마침내 동년 9월 9일 『북조선인민위원회』로부터 정권을 이양받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게 되었다.

북한의 ‘1948년헌법’의 제정과 관련한 주요 입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부문법을 제정하였다. 1948년헌법의 제정과정에서 1947년

37) 위의 책, pp.40~41; 『北韓總鑑』, 앞의 책, p.108.

3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경제법학연구소 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사회제도』(평양: 과학원출판사, 1963), pp.30~31. 이하의 引用에서는 <조선국가사회제도>로만 略記한다.

3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김일성종합대학 국가법강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성 비준>(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56), p.13. 이하의 引用에서는 <인민공화국 헌법>으로만 略記한다.

40) 위의 책.

41) 姜求真, 『北韓法の 研究』(博英社, 1975), p.26.

11월 19일 이른바 『조선법전초안작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판소구성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기초로 1950년 3월 1일에 ‘재판소구성법’을, 같은 해 3월 3일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채택하였다. 또한 권력구조와 관련하여 ‘정부의 구성에 관하여’(1948. 9.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권리와 임무에 관한 규정’(1948. 9. 9) 과 ‘정권기관 및 기타 국가기관 일군등에 대한 교양사업 강화에 관하여’(1950. 3. 4)등을 제정하여 국가조직을 정비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1948년 헌법제정초기의 입법은 6·25전쟁으로 말미암아 미미한 상태에 머무르고 말았다.

둘째, 전시법제 및 전후복구법제를 들 수 있다. 6·25전쟁과 관련하여 전쟁지원입법과 북한점령하의 남한지역통치법령들이 제정되었고, 전후 1972년헌법 제정까지 전후경제복구와 사회주의건설에 따른 법령들이 제정되었다. 예를 들면, 전시에는 ‘군사위원회조직에 관하여’(1950. 6. 26), ‘전시상태에 관하여’(1950. 6. 27) 등의 정령을 통해 전시에 임하였다. 전후에는 전후복구를 위한 입법이 이루어졌으며, ‘지방주권기관 구성법(1954. 1. 30)’, ‘내각구성법(1955. 3. 31)’ 등을 통해 국가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는 동시에 경제복구를 위한 인민경제계획의 수립과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기초건설에 착수하였다. 예컨대 ‘농업협동경리의 강화·발전대책에 관하여’(1954. 3. 11. 내각결정 제40호)를 마련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확립과 함께 ‘민법 및 민사소송법 초안을 준비할 데 대하여’(1958. 2. 1 내각결정 제16호)를 제정하고 ‘민법 제2초안’을 마련하여 민사분쟁재판의 준거로 적용하였다. 특히 북한에서 1958년 8월 농업협동화가 완성되고 개인상공법의 사회주의적 개조도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따라 이후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시기의 입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밖에 ‘국적법(1963. 10. 9)’, ‘신소·청원 및 검열에 관한 규정’(1970. 2. 3) 등이 제정되었다.

(3) 1972年憲法(‘社會主義憲法’)의 採擇과 主要立法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1972. 12. 27)에서 대의원 전원 일치의 찬성으로 새로운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1948년의 ‘인민민주주의헌법’을 실로 24년만에 ‘사회주의헌법’으로 대체한 것이었다. 앞서 북한은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1970. 11)를 개최하여 지난 60년대

에 수행한 모든 과업들을 총결하고 새로운 사회주의건설 과업을 제시함과 아울러 로동당의 권력구조를 재편성하였다.⁴²⁾ 따라서 북한에 확립된 사회주의제도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앞으로 사회주의제도를 보다 강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5차 전원회의(1972. 10. 23)를 열어 사회주의헌법초안을 토의하게 되었다. 이어 최고인민회의 제5기 대의원선거(1972. 12. 12)를 실시하였고,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회의(1972. 12. 25)에서 의안으로 사회주의헌법 채택건과 중앙국가기관 선거건을 다루었다.

여기서 김일성은, 지난 24년간 북한인민은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거두어 “우리나라에서는 말 그대로 천지개벽이 이룩되었으며 우리 인민의 정치·경제·문화생활에서의 획기적인 전변이 일어났다”⁴³⁾고 하였다. 또한 그는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은 새로운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며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분야의 제원칙들을 법적으로 규제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⁴⁴⁾면서 새 헌법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이렇게 채택된 사회주의헌법은 1948년헌법과 비교할 때, 그 질서 및 체계에 있어 완전히 다르다. 명칭도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라고 한 이 헌법은 제1조에서 북한은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라고 규정하여 북한이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 단계’로부터 ‘사회주의 단계’로의 이행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요컨대 이 헌법에는 이른바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이 법적으로 고착되어 있으며, 정치·경제·문화분야의 제원칙들과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국가기관들의 구성과 임무 및 활동원칙들이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⁴⁵⁾

42) 이에 관해서는 金南植, “朝鮮勞動黨 第5次大會”, 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 共產圈研究室 編, 『北韓政治體系研究』(高麗大 出版部, 1972), pp.161~167.

43)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회의에서 한 연설, 1972년 12월 25일),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4), pp.326~327.

44) 위의 연설, p.327.

45) 이에 관한 해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해설』(평양: 인민과학사,

1972년헌법을 중심으로 한 주요입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체사상의 강화에 대한 입법이다. 1972년 헌법 하의 입법은 1972년헌법 제정초기 사회주의국가관리체계를 세우고 사회주의생활양식의 확립의 일환으로 주체사상에 입각한 법규범의 제정으로 시작되었다. 1972년헌법하의 부문법제 마련은 ‘중앙인민위원회 법제위원회를 조직함에 대하여’(1974. 8. 3. 중앙인민위원회 결정)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정비 입법으로서 중앙인민위원회·지방주권기관·지방인민위원회·행정위원회 등의 조직·활동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고, 사회주의체제강화를 위해 사회주의법무생활 및 사회주의적 관리에 관한 규정들이 제정되었다. 이를 보면, 1974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형법’과 ‘형사소송법’, ‘지방주권기관구성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1976년 1월 10일에는 ‘재판소구성법’과 ‘민사소송법’이 개정되고, 1976년 4월 29일에 ‘어린이보양교육법’, 1977년 4월 29일에 ‘토지법’, 1978년 4월 18일에 ‘노동법’을 새로이 정비하였다.

둘째, 1972년 헌법하의 1980년대 및 1990년대 초기의 입법이다. 이 시기의 입법은 이미 김정일이 권력기반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김정일의 주도하에 법제정비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해당한다. 특히 이 시기에는 북한이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변화라는 세계사적 변혁에 대응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입법이 행하여졌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입법으로 1984년에 ‘합영법’과 1985년에 ‘합영법시행세칙’ 등이 제정되었다. 이 시기의 입법례로는 ‘인민보건법’(1980. 4. 3), ‘조선로동당 규약’(1980. 10. 13),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 데 대하여’(1982. 12. 15), ‘합영법’(1984. 9. 8), ‘환경보호법’(1986. 4. 9) 등을 들 수 있으며, ‘형법’을 새로이 개정하였다(1987. 2. 5). 더욱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으며 그에 상응하도록 법제정비를 하였다. 그 예를 보면, ‘민법’을 새로 제정(1990. 9. 5)한데 이어 ‘가족법’도 제정(1990. 10. 24)하였다. 이렇듯 민사법제에 관한 정비는 북한의 경제생활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1973); 福島正夫,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の社會主義憲法』(東京: 日本評論社, 1974); 大內憲昭, 앞의 책, pp.69~86.

로 주목되는 부분이다.

3. 金正日體制的 憲法(1992年 및 1998年 憲法)과 立法動向

(1) 1992年 憲法(‘우리식 社會主義憲法’)과 主要立法

사회주의헌법의 채택 20년 후인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1992. 4. 9)에서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을 처음 개정하였다. 북한은 1992년헌법에 관해 “사회주의헌법 채택이후 20년간 김일성주석과 로동당이 새롭게 제시한 사상과 리론” 및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였다.⁴⁶⁾ 또한 사회주의헌법채택 20주년(1992. 12. 27)을 맞아 개최된 기념집회에서도 이에 대해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원칙을 체계화하였으며 헌법구성체제도 창조적으로 개척한 주체헌법”이라고 강조하였다.⁴⁷⁾

1992년 헌법개정은 한마디로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북한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한 데에서 엿볼 수 있다. 그간 북한에서 김정일은 김일성주석이 창시한 주체사상의 재해석·재구성을 통해 이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이른바 북한식 사회주의의 이상형을 제시하고, 김정일지도로선을 구축함과 동시에 후계권력체제의 기반을 공고히 해왔다.⁴⁸⁾ 특히 김정일은 여타 사회주의체제의 몰락에 따른 대응논리로써 ‘우리식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체제고수를 위해 이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다른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에 대응하여 주체사상을 강조한 것으로서 김정일지도로선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일은 구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에서의 사회주의의 몰락과 관련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1991. 5. 5)라는 담화⁴⁹⁾와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1992. 1. 3)

46) 1992년 4월 9일 北韓 중앙방송 報道; 『週間北韓動向』, 제67호(統一院 情報分析室, 1992. 4. 5~11), p.9.

47) 『週間北韓動向』, 제105호(統一院 情報分析室, 1992. 12. 26~31), pp.4~5.

48) 高性俊 外, 『轉換期の 北韓社會主義』(大旺社, 1992), pp.46~50.

49)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이라는 담화⁵⁰⁾를 발표하였는데, 이 두 담화에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이론적인 정식화와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고⁵¹⁾ 김정일지도노선이 구체화되어 있다. 여기서 여타 사회주의국가의 붕괴에 대한 역사적 교훈으로 표방된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의 이론과 사상은 헌법개정의 주요배경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1992년 개정헌법을 ‘우리식 사회주의헌법’이라고 하고 그 우월성을 강조하였다.⁵²⁾

북한은 이 헌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으로 ①당의 지도를 국가 활동의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고 규정(제1조)한 점, ②국가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를 지지하는 계급과 계층을 확대한 점(주권의 소재를 노동자, 농민, 근로 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으로 확대 제4조), ③인민민주주의 독재를 새로이 규정(제12조)한 점, ④사회주의 경제에 관한 지도 관리 원칙을 규정(제32조)한 점, ⑤국방문제를 독립적인 장(제4장)으로 규정한 점을 들고 있다.⁵³⁾

1992년 헌법과 관련한 주요입법을 보면,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서 북한의 시대적 상황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⁵⁴⁾ 그것은 정치적으로는 북한사회주의체제의 강화로 나타났고, 경제적으로는 부분적인 대외개방정책에 의한 경제난의 타개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국가조직 정비와 관련하여 ‘지방주권기관구성법’을 개정하였으며(1993. 12. 10), 형사법제에서 1987년 ‘형법’이 개정(1995. 3. 15)된 데에 이어 1992년에 개

책임일군과 한 담화, 1991년 5월 5일)(평양: 중앙방송, 1991. 5. 27), 『근로자』, 1991년 6호(평양: 근로자사, 1991), pp.3~25.

50)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과 한 담화, 1992년 1월 3일)(평양: 중앙방송, 1992. 2. 4), 『조선중앙년감 1983』(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3), pp.33~48.

51) 두 담화에 관한 분석은 申一澈, “北韓의 ‘社會主義 挫折’論-소련·東유럽 社會主義解體에 대한 北韓의 視角”, 徐鎮英 編, 『社會主義 改革과 北韓』(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 1992), pp.149~191.

52) 북한은 1995년 12월 27일 헌법절에 즈음에 사회주의헌법을 ‘주체의 사회주의헌장’으로 규정하고, 이를 ‘우리식 사회주의헌법’이라고 하였다. 『주간 북한동향』, 제261호(통일원 정보분석실, 1995. 12. 24~1996. 1. 3), p.37.

53) 리명일, “새로 수정·보충된 사회주의헌법은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완성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무기”,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법학-』, 제40권 제4호(김일성종합대학, 1994. 11), pp.28~33.

54) 북한의 1992년헌법과 법제정비에 관해서는 張明奉, “北韓의 法制整備를 통해 본 北韓의 變化展望”, 『公法研究』, 제24집 제4호(韓國公法學會, 1996. 6. 20), pp.205~237.

정된 ‘형사소송법’도 개정(1996. 1. 19)된 것으로 알려졌다.⁵⁵⁾ 또한 1995년 경제에 관한 입법으로는 ‘사회주의상업법’ 및 ‘도시경영법’을 제정하였다(1992. 4. 9).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대외경제계약법’(1995. 2. 22), ‘대외민사관계법’(1995. 9. 6)을 제정하고, ‘중재법’(1995. 3), ‘보험법’(1995. 4. 6), ‘재정법’(1995. 8. 30), ‘사회주의재산관리법’(1996. 3. 21), ‘무역법’(1998. 3) 등을 제정하고, ‘국적법’을 개정하였다(1995. 3. 23).

그리고 대외경제개방에 따른 법제도의 정비가 그 후속조치로 전개되었는데, 이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2) 1998年 改正憲法(‘金日成 憲法’)과 立法方向

북한은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헌법수정·보충에 대한 의안을 결정하고, 양형섭(전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헌법 수정·보충에 대한 보고를 한 후 헌법초안을 낭독한데 이어 수정·보충된 헌법을 대의원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채택하였다.⁵⁶⁾ 이번 헌법개정은 북한이 1948년의 헌법(‘인민민주주의헌법’)을 폐지하고, 1972년에 새로운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한 이후 1992년에 1차개정을 한데 이어 2차개정을 한 것이다.

이번 헌법개정의 배경은 정치적으로는 김일성 사후 김정일 권력승계 절차의 공식적인 마무리란 점에서 찾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경제회생을 위해 그간의 경제활동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실용주의적 경제정책을 펼 필요성에서 찾을 수 있다.⁵⁷⁾ 이에 비추어 1998년 헌법개정의 배경을 살펴본다.

첫째, 북한에서 ‘김정일시대’의 개막에 따라 김정일 중심의 권력구도에 입각한 김정일식 통치체제의 틀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둘째, 김정일체제의 헌법적 체제의 확립이다. 북한은 여전히 ‘위대한 수령’(김일성)의 영도체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를 헌

55) 진유현, “사회주의법제사업의 본질과 기본내용”, 앞의 논문, P.51.

56) 이번 헌법개정의 내용은 과거와 달리 채택 즉시 방송 및 신문 등을 통해 대내외에 공표되었다. 개정헌법의 전문은 『로동신문』(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8년 9월 6일, pp.7~8; 『민주조선』(북한정권기관지), 1998년 9월 6일, pp.7~8.

57) 이 1998년 헌법개정에 대한 분석은 張明奉, “최근의 북한사회주의헌법 개정(98. 9. 5)의 분석: 배경·내용·평가 및 정책전망”, 『統一研究論叢』, 제7권 2호(민족통일연구원, 1998), pp.3~15.

법개정에 반영하였다. 이번 헌법개정에서 ‘김일성 유훈’이 북한의 지도적 지침으로 재확인되고 ‘김일성 유훈’ 실천이 국가의 목표로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김정일의 통치기반의 형성과 강화를 위한 법적 토대의 구축도 ‘김일성 유훈통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국가기능의 조정·분산에 따라 국가기구들의 권한과 역할 조정이 필요하였다. 전체적으로 김정일의 후계권력체제 확립에 따른 실질적 권력행사와 형식상 국가원수(국가수반)의 역할분담이란 면에서 ‘1972년 헌법’ 이전의 북한의 권력구조에로 복귀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⁵⁸⁾

넷째, 경제부문에서 개정헌법은 북한의 경제회생을 위한 조치로서 ‘실리’와 ‘효율’에 입각한 현실적인 경제정책을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 경제조항 개정의 배경을 보면, ①북한이 처한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대응의 필요성, ②북한사회에서의 경제활동의 변화를 현실화 내지 공인화할 필요성(즉, ‘2차 경제’의 공식화), ③외국의 자본과 기술 도입을 위한 대외경제개방을 확대할 필요성, ④체제생존전략상 실용주의적 경제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현실 인식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헌법에서는 소유구조를 조정하고 재산성 원칙(독립재산제 실시, 원가·가격·수익성 같은 시장경제 개념 도입 등)을 중시하는 등 경제부문에서의 변화시도(시장경제원리의 부분적 도입 조짐)를 보여주고 있다. 또 ‘자유경제무역지대’와 같은 경제특구의 설치를 위한 헌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러한 헌법개정에 따라 앞으로 국가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제와 경제에 관한 법제의 변화 내지 발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제 2 절 金正日體制 法制的 理論的 土臺와 展開

I. 主體思想에 立脚한 ‘主體의 法理論’ 展開

북한은 법에 관하여 “사회경제제도의 반영이며 정치의 한 표현형식”으로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고) 지배계급에 유리한 사회경제관계를 유지공

58) 다만, 현재 국방위원회를 두고 국방위원장에게 군통수권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는 1972년 헌법 이전의 권력구조와 다르다.

고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정공포하고 강제력(국가권력)에 의하여 그 준수가 담보되는 행동준칙의 총체”라고 정의한다.⁵⁹⁾ 또한 법은 “우선 지배계급의 의사를 법화”한 것으로서 “모든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공통적인 행동준칙”이라는데 그 본질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법은 정치의 표현형식이며 실현수단이라고 하여 법은 정치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한다.⁶⁰⁾ 북한도 기본적으로 법의 존재와 법의 일정한 사회통합의 기능을 인정하고 있으며, 북한의 법도 계급성에 기초하고 법에 대한 정치의 우위를 인정하는 사회주의법의 일반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면에서 북한법도 본질에 있어 사회주의법의 한 유형에 속한다. 그런데 오늘날 북한법에 대해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법이론과 다른 독창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북한에서 주체사상이 강조됨에 따라 주체사상은 북한법의 주요한 이념적·이론적 토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북한은 나아가 주체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보다 고차원의 사상이라고 하여 최고의 정치이념으로 승격시켰다. 이것은 주체사상의 독자성 내지 독창성의 논리로 강조되었고 북한법제에도 반영되었다.

‘주체의 법리론’은 주체사상에 따라 소위 ‘주체시대’⁶¹⁾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김일성에 의해 창시되고 김정일에 의해 체계화·집대성되었다고 한다.⁶²⁾ 북한은 이 이론을 통해 법의 본질은 국가와 함께 계급사회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계급적 지배수단으로 계급사회의 역사적 산물이며, 국가주권을 쥔 계급이 자기에게 유리한 사회질서를 세우기 위해 만든

5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법학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 p.276;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461.

60) 김억락 외, 『국가와 법의 이론』(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1), pp.41~43, pp.50~51.

61) 북한은 이 시대를 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되어 자기운명을 주동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시대이며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 전세계적 범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류역사발전의 새 시대라고 한다. 심형일, 『주체의 법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pp. 9~11.

62) 이 이론의 체계화의 시도를 엿볼 수 있는 金正日의 문헌으로는 “주체사상에 대하여”(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돌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1982. 3. 31)와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사회주의헌법 공포 10주년 기념연설, 1982. 12)라는 題目의 論文을 들 수 있다. 이들 논문의 全文은 『조선중앙년감 1983』, 앞의 책, pp.124~159, pp.174~183.

특수한 사회적 규범이라고 강조한다.⁶³⁾ 그러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 법이론에서 사람을 사회적 관계의 총체로 보고 법의 일반적인 규제대상을 사회관계라고 한데에서 발전시켜 ‘주체의 법리론’에서는 모든 사회적 현상의 주체인 사람의 본질적 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법의 규제대상을 새롭게 정식화하고, 법에 반영된 계급적 의사와 이익의 근본내용을 사람의 자주성을 기준으로 새롭게 해명하였다고 한다.⁶⁴⁾

이 이론은 사상적·이론적·방법론적 기초를 주체사상에 두고 있다. 북한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의 독자적 적용이라는 주장에 따라 법제건설분야에서의 독자성도 추구되었다.⁶⁵⁾ 북한은 노동계급의 혁명적 이론으로 발전된 마르크스-레닌주의 법이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켰다고 한다.⁶⁶⁾ 따라서 ‘주체의 법리론’의 독창성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법이론과의 차별화를 통해 강조되었다.

이에 북한은 1970년대에 주체사상을 제기한 이래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주체사상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그 독창성을 강조해왔다. 북한에서 주체사상은 수령의 요구가 실현되는 이상사회, 수령중심의 세계관, 혁명적 수령관, 수령의 영도 등에 그 목표가 귀결되는 ‘수령의 유일지배체제’를 위한 지배이데올로기로서 북한의 전반을 지배하는 지도사상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에서 김일성에 대한 수령론이 제기되면서 수령론은 주체사상의 이데올로기적 특징의 핵심을 이루며 북한권력구조의 이념적 배경이 되고 있다. ‘수령론’은 주체사상을 당과 국가의 유일사상체계로 공식화하기 시작한 1967년부터 체계화되었으며,⁶⁷⁾ 1974년 2월 김정일이 이른바 ‘당의 유일사

63) 김억락 외, 앞의 책, pp.1~42.

64) 심형일, 앞의 책, pp.74~78; 大內憲昭, 앞의 책, p.158.

65) 姜求真, 앞의 책, pp.20~21; 大內憲昭, 위의 책, pp.6~8.

66) 심형일, 앞의 책, p.50.

67) 北韓에서 공식적인 首領의 유일적 領導體系를 확립한 것은, 1967년 5월 17일 노동신문 사설에서 “당의 유일 사상이란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혁명사상”이라 발표된 후, 당 제4기 6차 전원회의(1967. 6)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할데 대하여’라는 議題를 토의할 때부터 라고 할 수 있다. 李常民, “北韓의 政治構造와 權力世襲”, 『北韓研究』, 제2권 3호(大陸研究所, 1991 가을), pp.12~13.

상체계 확립 10대 원칙⁶⁸⁾을 발표하면서 정식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⁶⁹⁾

주체사상은 북한에서 사회주의제도 수립 이후 노동계급이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시대를 이끌어 갈 세계관으로서 노동계급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었던 시대를 반영한 사상인 마르크스-레닌주의 보다 더 우월한 사상이라고 주장된다. 특히 북한은 1980년대에 들어서서 주체사상에 대해 이른바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추가함으로써 수령의 지위와 역할의 절대성을 더욱 강조하였는데, 이는 김정일에 의해 주체사상의 재해석과 체계화의 과정을 통해 새로이 제기된 것이다.⁷⁰⁾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통해 사람이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창조적으로 개척해 나아가는 사회적 존재임을 밝히되, 여기서 사람의 자주성·창조성·의식성은 인간개조와 계급적 사상의식을 전제로 제기하였다. 즉,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로서 그 역할을 다하려면 반드시 수령의 올바른 영도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인 것이다. 그 조건은 인민대중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주체확립의 핵심이 된다는 이른바 ‘혁명적 수령관’⁷¹⁾이다.⁷²⁾ 그리고 김정일은 혁명적 수령관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전개하였다. 즉, 인민대중은 당의 영도하에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룰 때 역사의 자주적인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의 핵심내용은 혁명의 주체는 수

68) 이 원칙은 김정일, “전당과 온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 <중앙당 및 국가, 경제기관, 근로단체, 인민무력, 사회안전, 과학, 교육,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74년 4월 14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1974~1977)』(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p.91~124.

69) 李常民, 앞의 논문, p.13.

70) 상세한 것은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한 담화, 1986년 7월 16일), 『근로자』, 1987년 7월호(평양: 근로자사, 1987);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 사상·체제·지도자』(역사와 비평사, 1995), pp.55~59.

71) 북한은 노동계급의 혁명적 세계관의 필요적 구성부분으로서 이를 세우는 것은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필수적 요구이며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완성을 위한 근본문제라고 한다. 또한 혁명적 수령관의 기본내용은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어떻게 보는가와 수령을 모시는 자세와 입장이라고 하고, 수령이 개인이 아니라 인민대중 전체의 이익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수령에 대해 충성심과 충실성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정치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5), pp.807~808.

72) 『'95 북한개요』(통일원, 1995), pp.49~50.

령·당·대중의 통일체이며, 수령·당·대중은 하나의 생명을 가진 유기체로서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적 생명체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생물학적 생명보다 사회적 생명이 우선한다는 집단주의적 생명관에 입각한 것이다.⁷³⁾ 주체사상에서의 수령론은 북한에서 수령의 유일지배체제를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연계되어 ‘혈연론’으로 발전됨으로써 김정일후계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지도지침이 되었다.⁷⁴⁾

이러한 주체사상의 전개와 함께 주체의 법이론은 주체사상을 그 사상적 기초로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령의 유일지배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법적 논거에 바탕을 두고 제기된 것이다. 북한은 주체의 법이론을 통해 인민대중이 사회주의법의 주인이며 법건설의 담당자의 지위를 갖고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수령의 영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즉, 수령은 인민대중의 최고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으로서 근로대중의 법건설투쟁에서도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사회주의법건설에서 수령이 행한 결정적 역할은 수령의 후계자의 역할로 이어져 실현된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이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사회주의법건설에서 수령과 그 후계자의 역할에 관한 원리는 수령과 당을 철저히 옹호보위하기 위한 사상이론적 무기로서 강조된다.⁷⁵⁾ 더욱이 주체의 법이론은 법의 임무를 수령에 대한 정치법률적 보위, 당정책의 관철과 옹호를 위한 무기로서 혁명의 전취물인 사회주의제도의 수호에 있다고 한다.⁷⁶⁾ 이렇듯 법건설에서 수령과 그 후계자의 역할을 독창적으로 해명한 것이 주체의 법이론에서 이룩한 공적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논거를 통해 주체의 법이론은 바로 혁명적 수령관과 이에 바탕한 수령의 유일지배체제 및 김정일체제의 확립을 위한 법적 논거의 기초로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3) 高性俊 外, 『轉換期の 北韓社會主義』(大旺社, 1992), pp.46~48.

74) 『'95 북한개요』, 앞의 책, pp.50~51.

75) 위의 책, pp.195~203.

76) 심형일, 앞의 책, pp.256~261, pp.274~276.

II. 社會主義法制 事業의 強化(‘社會主義遵法性’과 ‘社會主義法務生活’의 強化)

1. ‘社會主義遵法性’의 強化

북한에서 사회주의 준법성은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이 법규범과 규정을 무조건 정확히 준수·집행할 것에 대한 국가적 요구”라고 하며, “전사회적 범위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가의 원칙적인 요구인 것으로 하여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에 규제되며 헌법적인 원칙으로 제시된다”고 한다.⁷⁷⁾ 이어 그 내용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존엄있게 대할데 대한 요구”, “모든 공민들이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며 국가기관들의 모든 활동이 법규를 정확하게 무조건적으로 집행하는 기초우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요구”, “범위반에 대하여 단호한 법적 투쟁을 벌릴데 대한 요구” 등 세가지 측면에서 설명한다.⁷⁸⁾ 그리고 사회주의준법성은 입법과 법집행이라는 법건설사업의 두 영역에서 후자의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법규범의 집행력을 담보하는 기초적인 원칙이라고 하며, 그 특징은 법의 준수집행에서 예외 및 특권의 불허, 국가법규에 대한 사소한 위반도 허용하지 않는 엄격성, 전국적 범위에서 유일적 적용집행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⁷⁹⁾

이러한 사회주의준법성은 북한의 1972년 헌법에서 “공화국의 법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반영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준수된다”(제17조)는 규정과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 사회주의적 행동준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제67조)는 규정으로 반영되었다. 북한은 사회주의준법성의 강화를 통해 헌법과 법령에 기초한 법적 문서의 제정·공포, 법령의 준수와 실천을 강조하고, 근로자들의 준법의식고양을 위한 당과 국가의 노력, 재판기관·검찰기관·중재기관의 강화, 검열·감독·통제를 강화

77) 심형일, 앞의 책, p.302.

78) 위의 책, pp.302~305.

79) 위의 책, pp.305~318.

하는 조치의 강구, 입법활동의 개선 및 법규정비 등을 강조한다. 그러나 사회주의준법성이 당정책집행에서의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으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며 그것을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⁸⁰⁾에서 보듯이 사회주의준법성은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생활규범 및 사회주의적 행동원칙을 철저히 함으로써 결국 당의 영도를 강화하는 원칙과 수단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사회주의준법성과 함께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2. ‘社會主義法務生活’의 強化와 社會主義法務生活指導委員會의 設置

북한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이란 “사회주의사회에 사는 모든 사회성원들이 법규범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그 요구대로 활동하는 사회생활”⁸¹⁾이라고 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에 관한 이론은 김일성과 김정일에 의해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적 요구에 맞게 창시되고 정식화되었다고 한다. 김일성은 최고인민회의 제6기 1차회의(1977. 12. 15)에서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⁸²⁾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조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다. 여기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개념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인민정권기관의 지도간부의 관료주의에 반대하는 방법으로 제기되어 국가·경제기관의 지도적 간부가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설치를 명백히 하였다.

그 후 1982년 12월 15일 김정일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라는 논문⁸³⁾을 통해 사회주의법무생활에 관한 이론과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임무와 기능을 체계화하였다.⁸⁴⁾ 김정일의 논문에 따르면, 사

80) 위의 책, p.306.

81) 김영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법무생활에 관한 이론』(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0), p.7.

82) 김일성,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 (최고인민회의 제6기 1차회의에서 행한 연설, 1977. 12. 15), 『조선중앙년감 1978』(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8), pp.72~82.

83) 김정일,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 (사회주의헌법 공포 10주년 기념연설, 1982. 12), 앞의 논문, pp.174~183.

84) 金日成·金正日, 金日成主席著作翻譯委員會 譯, 『社會主義法務生活について』(東京:

회주의법무생활을 통해 집단주의원칙을 구현하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혁명발전과 사회주의·공산주의건설의 합법칙적 요구에 그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이에 의해 북한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이른바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교양개조하려고 한다.⁸⁵⁾ 그리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강화를 위한 기본요구로는 온 사회의 혁명적 준법기풍 수립이 강조되며, 여기에는 사람들의 높은 준법의식과 자각적인 준법활동이 포괄된다고 한다.⁸⁶⁾

북한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의 담당자, 주인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로서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아니라 국가영역내에 있는 모든 주민들과 모든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이라고 하며, 사회주의법무생활은 독자적인 생활분야가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 포괄되어 진행되는 생활이라고 하고, 그 특징은 한마디로 근로인민대중의 자각적인 규율생활이며 국가적인 조직생활이라고 설명한다.⁸⁷⁾ 북한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강화를 위해 혁명적 준법기풍을 세우기 위한 인민정권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제고와 관련하여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의 법무생활을 조직 지도하는 집체적 지도기관으로서 “사회성원들이 법무생활을 잘 하게 하며 국가검열통제기관들이 법적 통제기능을 높이도록 옹계 교양하기 위해 창설된 위원회형태의 협의제기관”이다.⁸⁸⁾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1992년 헌법은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

チュウチェ思想國際研究所, 1985), pp.8~113, pp.115~145; 金圭昇,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の法と司法制度』(東京: 日本評論社, 1985), p.230; 『北韓法制概要』(法制處, 1992), p.51.

85) 김영철, 앞의 책, pp.6~11; 심형일, 앞의 책, pp.339~347; 리영애, “사회주의법무생활과 혁명적 준법기풍”, 『법학론문집』, 제7호(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0), pp.3~45.

86) 심형일, 위의 책, p.358; 리영애, 위의 논문, pp.8~10.

87) 리명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법무생활에 대한 리론은 주체의 법리론을 더욱 완성시킨 독창적인 리론”,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43권 제1호(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7), pp.38~39.

88) 『정치사전』(1985), 앞의 사전, p.435; 이 위원회는 각급 당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사회안전부장, 인민위원회법무담당 부위원장 등 당해 지역의 지도간부급 5~6명으로 구성되는 특수기관으로서 중앙인민위원회를 비롯하여 각급 인민위원회에 조직되어 있었다. 서창섭, 앞의 책, p.141.

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는 조항(제18조 3항)을 추가 신설하여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⁸⁹⁾ 그러나 북한에서 스스로 천명하고 있듯이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도 수령의 교시와 당의 방침이다.⁹⁰⁾ 따라서 동위원회는 매 시기 제시되는 수령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따라 준법교양과 법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감독통제기관들에 과업을 주고 그 집행정형을 보고받으며 제기된 문제를 처리해나간다.⁹¹⁾

이러한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개념은 오늘날 북한에서 주민들의 행동통일과 조직성 강화를 위해 주민들을 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⁹²⁾ 당초 사회주의법무생활은 권력행사의 남용을 감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지도적 간부의 법준수에 중점을 두는 것이었으나 현재에는 “국가의 법질서에 따르는 근로인민대중의 자각적인 규률생활이며 법규범과 규정에 기초하여 사람들을 통일적으로 움직이고 공동생활을 실현해 나가는 국가적인 조직생활”⁹³⁾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행하여야 할 규범적 차원에서 이해되고 있다.

Ⅲ. 金正日體制下 北韓法制的 發展樣相

북한은 인민정권의 수립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법제에 있어서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를 모색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시대적 변화에 따른 북한법의 변화의 흐름을 법이론적·기능적인 면과 이념적·내용적인 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김정일체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다. 또한 현시점에서 김정일체제에서도 기존의 북한정책이 기본체계와 원리면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의 분석이 가능하다.

89) 이에 관해서는 張明奉, “北韓憲法改正의 內容과 特徵”, 『北韓研究』, 제4권 1호(大陸研究所, 1993 봄), pp.110~111.

90) 『정치사전』(1985), 앞의 사전, p.435.

91) 위의 사전, pp.435~436.

92) 金圭昇, 앞의 책, p.230.

93) 김정일,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 『조선중앙년감, 1983』, 앞의 책, p.174.

1. 法理論的 및 機能的 側面

북한에서 사회발전단계에 따른 법이론을 보면, 인민민주주의법이론에서 사회주의법이론으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인민민주주의법은 북한정권의 창건과 관련하여 인민민주주의적 법률 제도를 수립하고, 사회주의의 기초건설을 위해 강화·발전되었다고 한다.⁹⁴⁾ 이는 구소련의 법이론 및 법경험을 토대로 근본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 법이론에 바탕한다. 북한은 1948년 인민민주주의헌법을 제정하면서 이른바 스탈린헌법의 민주적인 특성을 계승하였다고 스스로 밝혔다.⁹⁵⁾ 법은 계급투쟁의 무기이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무기라는 인식에 기초한 인민민주주의법은 필연적으로 그 기능면에서 북한법의 억압적 성격이 강조되었다.

다음 사회주의법은 북한사회주의의 독자성을 모색하면서 법건설부문에서 강조된 것으로 주체사상의 전개와 연관성이 있다. 사회주의법의 본질은 “력사상 처음으로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법화한데”⁹⁶⁾ 있다고 한다. 그래서 사회주의법이 “인민들 자신이 만든 국가관리의 기본무기로서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⁹⁷⁾이라고 밝히면서도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한 법의 중요한 임무로서 이른바 ‘수령의 정치법률적 보위’, ‘당의 로선과 정책의 관철’, ‘사회주의전취물의 수호’ 등을 강조하였다.⁹⁸⁾ 이것은 바로 북한에서 수령의 유일지배체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북한에서 법은 당정책을 표현한 것이며 그 실현수단으로서 당의 정책을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주의 법에는 수령의 혁명사상과 당정책이 구현되어 있으므로 북한에서 법의 집행은 바로 수령의 사상과 당의 정책을 실현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⁹⁹⁾ 북한은 사회주의법의 역할과 기능으로서 규제적 기능, 계급적 ‘원쑤’들과 적대분자들의 반항의 진압, 경제문화건설에서 조직동원자적 역할, 사람들의 사상의

94) 이에 관해서는 리재도·장인형, 앞의 책, pp.130~154.

95) 북한헌법공포 제4주년 기념식에서 법무상 이용의 연설. 姜求真, 앞의 책, pp.20~21.

96) 김억락 외, 앞의 책, p.155.

97) 위의 책, p.160.

98) 위의 책, pp.161~162.

99) 『법학사전』, 앞의 사전, p.278.

식을 개조하는 교양적 역할 등을 강조하였다.¹⁰⁰⁾

북한의 현행 헌법이 1998년 헌법에는 여전히 북한이 사회주의국가임을 선언하고 있는데, 1972년 헌법 이래 바뀌지 않은 부분이다. 이는 법이론적인 면에서 김정일체제하에서도 여전히 사회주의법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理念的 및 內容的 側面

북한법은 법제정 초기 구소련법제의 영향에 따라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그 이념적 기초로 삼았다. 그 후 주체사상이 강조됨에 따라 주체사상은 북한법의 주요한 이념적 토대가 되었다. 이를 중심으로 북한법의 이념적 및 내용적인 변화를 주요법제와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북한은 정권수립 초기 공산주의법이론을 답습하는 단계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북한법의 이념적 기초로 삼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48년 헌법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당시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로 표현되는 스탈린식 정치방식을 도입하였으며 헌법질서의 구성원리에 있어서도 이른바 1936년 스탈린헌법에서의 헌법질서의 이론은 물론 그 실제까지도 모방하였다. 아울러 북한의 조선노동당 규약은 4차 당대회(1961. 9)까지 마르크스-레닌주의만이 당의 지도이념이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성립된 북한법들(예컨대 1950년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등)은 모두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그 이념적 바탕으로 하여 마련되었다.

둘째, 북한은 1960년대 들어서 주체사상을 강조하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함께 주체사상을 그들의 지배이데올로기로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법도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게 되었다. 조선노동당 규약의 전문은 5차 당대회(1970. 11)에서 “조선로동당은 맑스-레닌주의와 우리나라 현실에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개정되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함께 주체사상을 당의 지도이념으로 규정하였다.¹⁰¹⁾ 그러나 1972년 사회주의헌

100) 김억락 외, 앞의 책, pp.164~168.

101) 이에 관해서는 金南植, “北韓勞動黨의 綱領, 政策變化過程”, 『北韓研究』, 제2권 3호 (大陸研究所, 1991 가을), pp.52~55 참조.

법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제4조)고 하여 본래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지배이데올로기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헌법의 채택 이후 새로 개정된 1974년 형법, 1976년 형사소송법은 주체사상을 그 이념으로 내세웠으며, 1976년 민사소송법도 주체사상을 명시하였다(제3조). 이 당시에는 단적으로 주석의 정치사상적으로 보위, 온사회의 주체사상으로 일색화 등을 형법의 임무로 명시한 것에서 드러나듯이 북한법들이 법의 본질적인 기능을 도외시하고 김일성 개인의 권력수호의 무기로서 기능하였던 것이다. 법의 기능이 그 본질을 벗어난 만큼 이 당시의 법들(주로 형사법)은 그 내용이 대외에 공표되지 않았다.

셋째, 북한은 나아가 주체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보다 고차원의 사상이라고 하여 최고의 정치이념으로 승격시켰다. 이것은 주체사상의 독자성 내지 독창성의 논리로 강조되었고 바로 북한법제에 반영되었다. 노동당규약 전문은 6차 당대회(1980. 10. 13)에서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라고 개정되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배제하고 주체사상을 당의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그간 주체사상의 체계화를 통해 주체사상에 있어 마르크스-레닌주의와의 유사성 계승의 측면보다 그와의 차이와 우수성이란 측면에서 강조해왔다.¹⁰²⁾ 그래서 1992년 헌법은, 북한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제3조)고 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헌법상 주체사상의 이론적 근거였던 마르크스-레닌주의이념을 삭제하고 주체사상의 독창적 혁명이념성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또한 북한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제8조)라고 하였다. 이것은 사람중심의 인간관에 바탕한다는 주체사상의 철학원리에 따른 것으로 바로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김정일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¹⁰³⁾

102) 양재인 외, 『북한의 정치이념: 주체사상』(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0), pp.30~31.

103) 이상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의 해설』(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p.43; 김정일, “주체사상의 이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넷째, 1980년대말 구소련 및 동구사회주의국가의 변혁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였던 북한은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자세 전환을 보였고, 이것이 북한법제에도 나타나게 되었다. 1992년 헌법의 대외개방의 법적 근거 마련과 1992년 형사소송법 및 1994년 민사소송법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의 탈각은 북한의 변화를 제도적인 면에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북한법의 변화과정 및 내용은 서로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발전면모를 일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북한의 정책전개를 예상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다섯째, 최근의 북한은 경제관련법제에서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개혁의 초기단계의 과정을 답습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북한의 1998년 개정헌법의 경제관련조항의 변화내용은 이미 구소련헌법(1977년·1988년 헌법)과 중국헌법(1982년·1988년·1993년 헌법), 베트남헌법(1992년) 등의 국가소유제의 축소와 협동적소유 및 개인소유의 확대, 경제특구제의 실시, 외국인투자의 법적 근거 마련 등 경제 변화내용과 유사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의 경제변화의 법제화는 이들 사회주의국가의 경제개혁에서 시사받았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법제의 변화과정에서 현재의 김정일체제 아래 법제동향은 이념적인 면이나 내용 면에서 크게 변화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최근의 경제개방과 개혁을 위한 법령(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개성공업지구법 등)은 북한법제의 이론과 내용 면에서의 변화를 실감하게 한다.

대하여”, 『근로자』, 1984년 4호(평양: 근로자사, 1984), pp.2~6; 위의 책, pp.30~31.

제 3 장 金正日體制 下의 主要法制 整備 現況

북한은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변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른바 ‘사회주의 법률 제도 완비’(1992년 헌법 제18조)를 위하여 법제 정비작업을 추진해 왔다. 예컨대 1992년의 헌법개정을 비롯하여 1990년대에 들어 전개된 주요 부문법제의 발전과 입법동향은 바로 북한에서 김정일체제의 확립과 출범 이후의 북한법제정비내용을 담고 있으며, 1998년 헌법개정과 함께 주요 법령에 대한 정비는 김정일체제의 확립에 따른 국정운영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에 1990년을 기준으로 그 전후로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의 법제정비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의 영역별로 김정일체제하의 주요 북한법제의 발전과 동향에 관하여 개관한다. 여기에는 기존법제의 개정과 함께 새로운 법제정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의 고찰은 개별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아니라 전반적인 북한 김정일체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령정비의 모습을 조망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내용만을 기술한다.

제 1 절 憲法 關聯法制

I. 地方主權機關構成法

북한에서 처음 제정된 『지방주권기관구성법』(1954. 10. 30)은 1972년 헌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1974. 12. 19), 최고인민회의 제9기 6차회의(1993, 12, 10)에서 1992년 헌법(제133조~제146조)에 따라 다시 개정되었다. 이 법은 전3장, 35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 주권 기관의 강화와 그 기능·역할의 고양에 의한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 문화생활의 보장에 있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¹⁰⁴⁾

북한은 “주권은 노동자, 농민, 근로 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

104) 이에 관해서는 朴井源, 『北韓의 地方主權機關構成法』(한국법제연구원, 1997), pp.1~55.

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998년 헌법 제4조).¹⁰⁵⁾ 이에 따라 모든 근로인민에 국한시킴으로써 자본가·자산가 등 경제적 소유계층을 배제시키고, 본질적으로는 주권이 특정계급에 있다는 관념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지만, 1972년 헌법에서 보다 그 범위를 넓힌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북한은 행정구역개편과 헌법상 주권 소재규정의 개정 따라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는 도(직할시)·시(구역)·군을 단위로 조직되며(지방주권기관구성법 제2조), 노동자·농민·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대표로 구성된다(지방주권기관구성법 제3조)고 하였다. 그리고 『지방주권기관구성법』에서의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된다”(1998년 헌법 제132조)라고 규정하고, 대의원 자격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선거권을 가진 공화국공민으로서 인민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일하는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이 될 수 있다”(지방주권기관구성법 제9조)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주권기관은 주민의 주권을 위임한 기관으로서 대표자·대표기관을 통하여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선거를 통해서 지방기관이 구성되며 또한 지방기관을 ‘지방주권기관’이라 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의 주민에게는 주권이 있으며 이러한 주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기관을 ‘지방주권기관’이라 할 수 있다. 모든 근로인민은 주권을 소유하고 있고 근로인민대중

105) 주권의 소재와 관련하여 북한의 1992년 헌법은 제4조에서 국가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를 지지하는 계급과 계층을 확대한다는 면에서 1972년 헌법상 북한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에 있다”는 규정(제7조)을 북한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라고 개정하고 1998년 헌법(제4조)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먼저 ‘병사’를 삭제한 것은, 북한에서 병사는 노동계급의 당을 구성하는 계급의 선진분자로서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로부터 제외되어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3대원동력인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같이 열거되지 않는 북한의 설명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다음으로 ‘모든 근로인민’을 추가한 것은 근로인민이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별개의 계급적 특성을 가진 것이라고 보다는 북한의 사회주의건설의 중심으로서 포괄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현실을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張明奉, “北韓의 改正憲法(1992)에 關한 考察”, 앞의 논문, p.80; 김일성,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 경험”, 『근로자』, 1986년 6호(평양: 근로자사, 1986), p.5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사전연구실, 『조선말사전(상)』(평양: 과학출판사, 1962), p.467; 위의 논문, p.16.

등의 의사에 따라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한 인민의 대표로 구성된다. 이는 앞에서 북한은 인민주권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방주권기관은 주민의 주권을 대표해서 행사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조선노동당의 핵심인물이 지방주권기관의 집행부서의 장이나 간부를 겸직하고 있으며, 당중앙위원회정치국 조직구성원을 군이나 각 행정기관의 예하조직에 파견상주토록하고 있어 행정에 대한 당의 통제가 계층화되어 있다. 이러한 당의 통제를 위해서 북한은 당에서 추천한 1인 단일후보 추천형식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하여 북한에서 1992년 선거법에서 복수후보제¹⁰⁶⁾에 의한 자유경선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로 실시되기는 어려움 점이 있다. 그리하여 북한은 당에서 추천한 1인 단일후보 추천형식을 전적으로 취하고 있다. 또한 중앙과 지방주권기관과의 관계에서는 중앙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주권이 분할될 여지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지방주권기관은 기능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하는 입장에서는 수직적 분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정상 지방주권기관은 주민에게 있는 주권의 대표성이 있을 여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내에서 존재하며, 주체사상이 기초된 변질된 ‘인민주권주의’이고, ‘1인 독재체제’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당적 영도’에 의해 이러한 법적 개념들은 형식적이고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며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지방자치는 사전에 배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북한은 지방주권기관으로서 자율성과 독자성 있는 역할과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의 지방주권기관은 “모든 국가기관들의 민주주의중앙집권제(democratic centralism, demokratischer Zentralismus)원칙에 의하여 조직되며 운영된다”(1998년 헌법 제5조)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통치구조의 일반원칙으로서 지방주권기관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106) 1992년 선거법 제42조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한 선거구에 등록되는 대의원후보자는 제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선거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張明奉, “北韓의 새로운 選舉法에 관한 研究”, 『法學論叢』, 제11집(國民大學校 法學研究所, 1999), pp.100~102.

II. 各級 人民會議 代議員選舉法¹⁰⁷⁾

북한은 1992년 10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1967년의 ‘최고인민회의 및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관한 규정을 대폭 개정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을 채택하였다. 이 새로운 선거법은 과거 단독 후보제에서 벗어나 경선 후보제를 보장하는 규정을 보완하였다. 대의원 후보자는 ‘선거인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고(제36조, 제39조), 대의원 후보자 수에 제한이 없다는 규정(제42조)을 두어 복수 후보자에 의한 경쟁 선거를 명시하였다. 투표방법도 무기명 투표로서 복수 후보자인 경우 찬성하는 한 명의 후보자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이름 중앙에 횡선을 그으며, 단수 후보자인 경우 찬성이면 표시를 하지 않고 반대이면 이름에 횡선을 긋도록 하고(제64조),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재선거를 실시토록 하였다(제74조, 제77조).¹⁰⁸⁾

III. 辯護士法

1993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변호사법을 채택함으로써 변호사 제도를 체계화하였다. 변호사의 임무에 관해 변호 활동과 법률상 방조를 통한 인권보장과 국가의 법률제도의 옹호라고 명시함으로써(제2조) 정치적·이념적 요소를 완화하고 인권 보장을 강조하였다. 변호사의 자격(제20조~제24조)과 업무(제10조, 제11조) 등을 명확히 하였다.¹⁰⁹⁾ 북한 내에서 외국 법인과 외국인의 변호사의 법률 원조 가능(제4조), 외국 변호사의 북한 변호사자격 인정(제23조), 외국 변호사회와의 교류·협력(제31조) 등의 규정은 북한의 대외 개방 정책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107) 이 규정들에 관해서는 『北韓法令集』, 제1권(大陸研究所, 1990), pp.41~49, pp.51~91.

108) 이에 관한 詳論은 張明奉, “北韓의 歷代 選舉法과 새로운 選舉法 考察”, 『統一研究論叢』, 제6권 2호(民族統一研究院, 1997), pp.161~192.

109) 이에 관해서는 『北韓의 새로운 변호사제도』(법원행정처, 1995), pp.1~92; 金庠均, “北韓의 司法制度”, 『人權과 正義』, 1995년 11월호 (大韓辯護士協會, 1995), pp.26~27.

IV. 國籍法

북한이 국적에 관하여 1992년 헌법개정에 의해 비로소 그 근거조항을 두었다. 북한의 1992년 헌법은 제62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정한다”고 하여 국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국적법정주의를 명문화하였다. 그러나 국적법은 이보다 30년 앞선 1963년에 제정되었다. 북한의 1963년 국적법은 전문 10개조로 되어 있었으나, 1995년 3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개정된 국적법은 전문 16개조로 구성되었다. 이번 국적법 개정의 주된 내용으로 구 국적법상에는 없었던 무국적자에 대한 국적법상 법률관계를 명확히 한 점, 민법 등 다른 법령상의 변경내용을 반영한 점, 국적관련 사무처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점, 그리고 시행상 불명확했던 사항을 보완하고 법률체제를 정비한 점 등을 들 수 있다.¹¹⁰⁾

제 2 절 刑事關聯法制

I. 刑 法

북한 형법은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1950. 3. 3)에서 처음 채택되고 1974년 개정되었다가(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1974. 12. 19), 1987년 다시 개정되었다(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1987. 2. 5). 북한은 1987년 형법을 1995년 3월 15일에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¹¹¹⁾ 한동안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었다. 1987년 형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형법의 임무는 범죄와의 투쟁을 통해 국가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보위하여 인민들의 자주적·창조적 생활 보장에 있다(제1조)고 함으로써 구형법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완화하였다. 또한 ‘반혁명범죄’(1974년 형법 제51조~제66조)를 ‘반국가범죄’(제44조~제55조)로 변경함으로써 이데올로기성의 순화와 더불어 국가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범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

110) 이에 관해서는 손희두, 『북한의 국적법』(한국법제연구원, 1997) 참조.

111) 진유현, “사회주의법제사업의 본질과 기본내용”, 앞의 논문, p.51.

리고 비민주적인 요소로 지목되어온 형벌 법규의 유추적용 제도에 관하여 그 제한 규정을 마련하였다(제102조).¹¹²⁾

한편 북한의 1987년 형법은 1995년과 1999년 개정 사실이 최근 밝혀졌으며, 그 전문도 입수되었다. 북한의 개정형법은 북한이 2000년 7월 제67차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인권규약 B규약) 실천에 대한 2차 정기보고서¹¹³⁾를 제출하면서 형법을 1995년에 개정하였다고 밝혔으나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우리의 「연합뉴스」는 북한의 개정형법의 영문본을 입수하였다고 보도하였다.¹¹⁴⁾ 이를 2002년 11월 27일 「북한법연구회」의 학술회의에서 개정형법의 내용과 특징에 대한 연구발표를 통하여 전문과 함께 발표되었다.¹¹⁵⁾

이 발표문에서 북한의 개정형법은 1987년의 형법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조문을 수정·보충한 것으로 평가하고, 전반적으로 규정내용이 보다 정치해지고 법정형이 정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¹¹⁶⁾ 그리고 전체적으로 총칙편에서 성인범에 대하여 교양처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제11조), 범죄의 준비와 미수의 경우 기수에 비하여 경한 처벌을 하도록 명시하였으며(제15조), 사형선고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1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제23조), 형을 감경할 때에는 형의 종류까지 바꿀 수 있도록 개정(제34조)한 점은 주목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112) 이에 관한 詳論은 金日秀, “舊蘇聯 刑法이 北韓刑法의 變化에 미친 影響”, 『北韓法律行政論叢』, 第9輯 (高麗大 法學研究所, 1992), pp.266~281; 『북한형법의 실상』(북한연구소, 1990), pp.17~106; 『北韓法の 體系的 考察(Ⅱ)-刑事關係法-』, 法務資料 第169輯 (法務部, 1993), pp.123~131.

113) 최의철,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의 2차 정기보고서: 내용분석 및 평가”, 『통일정세분석』, 2001-03(통일연구원, 2001), pp.1~2.

114) 이에 의하면, 북한형법이 1987년 2월 5일 채택되고, 1995년 3월 15일과 1999년 8월 11일 개정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총 8장 13절 16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15) 李佰圭, “북한의 1999년 개정형법”, 2002년 11월 27일 북한법연구회 발표논문. 이 백규판사는 이 발표문에서 영문본을 번역하고 분석하였다. 이 영문본에서 1995년과 1999년의 개정내용을 구별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116) 사형에 대한 규정으로는 반국가범죄 중 국가주권전복죄(제44조), 테로죄(제45조), 조국반역죄(제47조), 일반범죄 중 고의적 중살인죄(제141조)의 다섯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각론적인 부분에서는 반국가범죄로서 테로죄(제45조), 조국반역죄(제47조), 파괴암해죄(제50조)의 법정형을 정비하거나 단계를 나누어 법접형을 규정함으로써 처벌정도를 완화한 반면, 일반범죄는 상업질서위반죄(제82조), 산림란도벌죄(제87조), 공해현상방지법규위반죄(제89조), 폭행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한 점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이제까지 북한형법상 처벌이 기혹하다고 비판받아온 반국가범죄의 처벌은 다소 완화하고, 전체 인민의 생활질서를 침해하는 중요 범죄의 처벌은 강화한 것으로서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보이고 있다고 긍정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형법상 허위풍설날조유포죄를 삭제하고, 그 대신 인장위조사용죄(제105조)를 신설한 점이 주목되고 있다.¹¹⁷⁾

이 같이 북한형법의 내용이 파악되는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II. 刑事訴訟法

최초의 형사소송법(1950. 3. 3)은 1954년 부분 개정되었고, 1976년 다시 개정되었다가(1976. 1. 10), 1992년에 전면 개정되었다(1992. 1. 1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¹¹⁸⁾ 이 형사소송법도 형법에 이어 1996년 1월 19일에 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¹¹⁹⁾ 1992년 형사소송법을 보면, 먼저 범죄와의 투쟁을 통한 국가 주권·사회주의 제도 보위, 인민의 자주적·창조적 생활 보장(제1조)과 함께 인권보장(제4조)을 규정하여 구법과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또한 증거재판주의(제35조), 강압 수사에 의한 진술의 증거능력 제한(제93조), 자백의 보충성 요구 및 증거능력 제한(제94조) 등의 규정은 인권 보장 및 재판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에서 발전된 것이다. 그리고 법적 절차에 의한 체포·구류, 체포시 48시간 내에 그 가족·소속 단체에의 고지 등을 명시하여(제11조, 제66조) 인권 보장을 위한 면모도 나타내고 있다.

117) 위의 발표문, pp.20~21.

118) 北韓 刑事訴訟法の 沿革에 관해서는 『北韓法の 體系的 考察(II)-刑事關係法-』, 위의 책, pp.565~570.

119) 진유현, “사회주의법제사업의 본질과 기본내용”, 앞의 논문, p.51.

제 3 절 民事·商事關聯法制

I. 民法

1. 北韓民法과 經濟生活

북한은 1950년과 1958년에 민법 초안을 마련하고 1986년 ‘민사규정’(중앙인민위원회 정령, 1986. 1. 30)을 통해 가사사건을 위주로 민사관계를 규율해 오다가¹²⁰⁾ 1990년 독립된 민법을 제정하였다(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1990. 9. 5).¹²¹⁾ 이어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9기 2차회의(1991. 4. 11)에서 이를 승인함으로써 해방 후 처음 성문화된 민법을 갖추게 되었다. 그 후 1993년 9월 23일 1차 개정이 있었고, 최근 1999년 3월 24일 2차 개정이 있었다. 북한의 1990년 민법은 총 4편 13장 27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9년 민법에서도 조문 내용의 일부만 변경되었다. 이로써 북한이 경제질서의 내용을 법적으로 확정하고, 경제 질서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기존 질서를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개정부분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1998년 개정헌법에서 생산수단의 소유주체를 ‘국가와 협동단체’에서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로 변경하여 ‘사회단체’를 추가하였는데, 1999년 개정민법에서 1993년 민법 제48조, 제51조, 제53~제57조의 소유주체인 ‘협동단체’를 ‘사회·협동단체’로 수정하여 헌법과 민법상의 소유주체의 괴리를 해결하였다.

다음에 1990년 북한민법의 내용을 경제관계면에서 간략하게 평가해본다.

첫째, 1990년 북한민법은 북한의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민사법이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본질상 북한의 경제관계의 변화는 민법체계의 변화모색이라는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었다. 북한은 외부적

120) 崔達坤, “北韓民法의 制定과 그 變化 -比較分析的 研究를 중심으로-”, 『北韓法律行政論叢』, 第9輯(高麗大 法學研究所, 1992), pp.95~96.

121) 이에 관해서는 申榮鎬, “北韓民法 40年과 그 動向”, 『北韓法律行政論叢』, 第8輯(高麗大 法學研究所, 1990), pp.129~157; 『북한의 민법개요』(북한연구소, 1992), pp.23~29; 崔達坤, “北韓民法의 回顧와 展望”, 『北韓法律行政論叢』, 第10輯(高麗大 法學研究所, 1995), pp.92~95.

으로 국제사회의 개방의 요구에 대응하여야 하였으며, 내부적으로 주민의 경제난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여야 할 난국에 봉착하게 됨으로써 이를 타개하는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하였다. 그것은 경제적 난국을 극복하고 체제유지를 위한 대안마련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그 일환으로 민법체계의 재편을 시도한 것으로 국제질서변화와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소산물이 라고 볼 수 있다.¹²²⁾

둘째, 외국기업과의 교역확대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분쟁과 관련하여 그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민법이 규율대상을 확대하는 조치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민법은 제11조에서 ‘독립적인 경비예산이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그리고 ‘법적으로 등록된 합영회사’를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도 민사에 관한 법률관계에서 직접 당사자가 된다고 한다(제18조). 따라서 민사관계의 당사자로서 ‘법적으로 등록된 합영회사’를 포함하여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제11조). 이는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외국인 및 외국기업과의 민사관계의 법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북한이 최근 입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법 및 대외개방관련법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셋째, 북한민법은 사회주의적 소유에 관하여 국가소유권, 사회협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 등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소유권은 최상위의 소유권이며 그 대상은 제한되지 않고 있다(제45조). 한편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의 대상에 기존의 개인소유의 범위에 가정용품·문화용품·그 밖의 생활용품과 승용차같은 기재를 포함시킴으로써 개인소유권의 대상을 과거에 비해 확대하였다(제58조, 제59조). 이점에서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상속권의 보장에 따라 개인소유의 인정범위는 확대될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²³⁾ 그러나 북한은 개인소유권의 본질에 관하여 개인의 권리로 보기보다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법칙 내지 국가사회가 베푸는 추가적 혜택이라는 관념에 입각하여 파악

122) 崔達坤, “北韓民法의 體系와 特色”, 『北韓法 體系와 特色』(세종연구소, 1994), p.332.

123) 『北韓法の 體系的 考察(Ⅰ) -民事關係法』(법무부, 1992), pp.48~50.

하고 있다.

넷째, 북한민법은 북한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그 자체로 보아 북한의 변화를 실증하는 하나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면면을 보면, 북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체제유지와 경제개방이라는 이중적 상황에서 안정적이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면에서 비록 북한이 새로운 민법체계를 갖추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충실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북한민법은 기존의 사회주의법체제의 측면에서 보면, 일면 구소련 민법이론의 틀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보인다는 점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독창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면에서 사회주의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민법체계의 본질이 사회주의체제에 입각함으로써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민사법체계는 여전히 사회주의법의 범위 내에서 규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북한민법이 종래의 민사관계법 규정과 달리 계획적 계약¹²⁴⁾의 범위를 축소하고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 즉 일반계약의 범위를 확대한 점은 북한경제활동의 변화를 반영하고 변화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민사법 영역의 확대라는 현실을 대폭 수용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이것이 사회주의경제원칙에 기초한 북한체제의 한계에 따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일면 북한이 변화의 길을 모색하는 가운데 법제분야에서의 변화의 모습을 비치고 있다는 면에서 북한민사법제 변화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일곱째, 북한민법은 시효제도에 관하여 총칙 편에서 규정하지 않고 별도의 편에서 규정하고 있다(제4편 2장). 북한에서 시효제도는 개인간 권리관계의 확정 이외에 주로 기관, 기업소, 단체들 사이의 결제관계를 적시에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채산제와 계획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에 주된 기

124) 이른바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計劃的 契約)은 계획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으로서 경제계약이라고 한다. 이 계약은 계획과제의 내용과 부합하여야 하며 계획경제가 변경되면 언제든지 그 효력이 변경 또는 소멸하게 된다. 이는 비록 계약이라는 표현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계약의 체결, 상대방 선택, 내용 및 방식의 자유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사회주의 특유의 개념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崔達坤, “北韓 民法의 體系와 特色”, 앞의 논문, pp.310~312.

능을 두고 있다. 이점에 관하여 북한에서는 민사시효제도는 “시간의 경과와 그의 법적 효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재산상 청구권을 제때에 행사하지 않은 청구권자의 재산상 권리를 법적으로 실현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민법상 중요한 제도의 하나”라고 설명한다.¹²⁵⁾ 이어 시효제도의 목적에 관하여 두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먼저 한 측면은 “기관, 기업소, 단체들과 공민들이 재산상 청구권을 제때에 실현함으로써 류동자금의 회전률을 높여 생산을 정상화하고 근로자들의 경제생활의 편의를 보장하자는데 있다”고 하고, 또 다른 측면은 “사회주의적 법인들 호상간 그리고 서로 다른 소유자들 사이의 민사관계에서 고찰할 수 있다”고 한다.¹²⁶⁾ 이로부터 민법상 시효제도를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배경을 찾을 수 있다.¹²⁷⁾

2. 北韓의 1999년 改正民法의 意義와 內容

북한의 1993년과 1999년 두 차례 부분적인 민법개정은 북한에서의 경제 체제 및 운용의 현실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직접적으로는 1998년 북한헌법의 경제조항의 개정 에 따라 민법조항도 이에 상응한 내용으로 바꾸었다. 여기에서는 북한의 1993년 및 1999년 개정민법의 내용을 개관한다.

(1) 改正民法의 構成과 意味

북한 민법전은 4편 271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편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1편 일반제도는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민법의 기본,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 그리고 민사법률행위의 3개의 장을 대별해서 규정하였다.

둘째, 제2편 소유권제도에서는 일반규정, 국가소유권, 사회협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으로 대별해서 규정하였다.

셋째, 제3편 채권채무제도에서는 일반규정,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 계획

125) 리학철, “공화국민사시효제도의 목적”,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법학』, 제43권 제1호(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7. 1), p.53.

126) 위의 논문, 같은 면.

127) 崔達坤, “北韓民法의 制定과 그 特色”, 앞의 논문, p.3.

에 기초하지 않은 계약으로 대별해서 규정하였다.

넷째, 제4편 민사책임과 민사시효제도에서는 민사책임과 민사시효로 대별해서 규정하였다.

북한 민법의 기본원칙으로는 ①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 소유의 원칙, ②사회주의공공재산보호의 원칙, ③중앙집권제 원칙, ④사회주의공공재산 우선의 원칙, ⑤노동자의 단결 및 협조를 보장하는 원칙, ⑥법적 규율 보장의 원칙 등이라 할 수 있다.¹²⁸⁾

그리고 개정 민법의 의미는, 1999년 민법 개정이 1998년 헌법의 개정에 따라 1999년 민법을 개정하였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북한이 대외경제 개방정책의 영향으로 헌법상 경제조항의 대폭 개정에 따라 민법도 북한의 사회주의법제사업의 일환으로 그 수정을 가하게 된 것이다. 또한 민법전의 낡은 표현들을 삭제하고, 조문의 내용이 중복되는 규정 등을 정리하였다. 예컨대 1990년 민법 제40조의 “차지하고 있는” 대목을 개정민법 동조에서 “점유¹²⁹⁾하고 있는” 것으로 개정하고 있고, 1990년 민법 제45조의 국가소유권의 대상에 대한 규정을 개정민법 동조에서 정리하였다. 다만, 북한 민법은 점유보호청구권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법이나 계약 또는 그 밖의 행정문건 등에 의하여 합법적인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물권의 불법침해자에 대하여 점유권에 기한 여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¹³⁰⁾

이 점에 있어 1998년 개정헌법의 규정을 보면, 생산수단의 소유 주체를 ‘국가와 협동단체’에서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로 규정하여(헌법 제20조), ‘사회단체’를 추가함으로써 북한에서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사회단체의 영역이 확대된 것과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개정민법도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그 소유형태에 사회단체소유권을 신설(민법 제37조)하였다. 또한 개정헌법이 국가소유의 대상을 축소하였고(제21조, 예: 종전의 ‘교통

128) 최달곤, 『北韓民法의 研究』, 앞의 책, p.32.

129) 점유의 개념에 대하여는 리현숙, “부르조아민법에 규제된 점유권제도의 반동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4』, 제46권 제4호(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0), p.59 참조.

130) 최달곤, 『北韓民法의 研究』, 앞의 책, p.66.

운수' 부문을 '철도·항공운수'로 한정함), 반면에 사회·협동단체 소유의 대상을 확대하였다(제22조, 예: 종전의 '농기구', '고기배'에서 '농기계', '배'로 규정). 종래 트랙터 등 '농기계'는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고 협동단체는 '농기구'만을 소유할 수 있었으나, 사회·협동단체도 이제는 농기계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협동단체는 종래 고기배(어선)만 소유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화물선, 여객선 등 다른 종류의 배(선박)도 소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개정민법도 제54조에 사회협동단체는 토지와 농기계, 건물 등과 중소기업, 기업, 그 밖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대상들을 소유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다.

(2) 改正民法의 主要 內容

1) 法律關係의 當事者

첫째, 권리능력자를 뜻하는 민사관계의 당사자로서 북한민법은 독립적인 경비예산이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을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제1항). 그런데 개정민법은 동조 제2항에 우리나라에 창설된 합영·합자회사나 그 밖에 법이 인정한 다른 나라의 법인도 민사법률 관계의 당사자로 된다고 규정하여 민사권리능력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둘째, 개정민법은 제12조 제1항에 조직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국가기관에 등록하여야 창설된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이에 의해 법인의 종류에는 ①국가적 법인으로서 예산제국가기관이나 독립채산제 국영기업소가 이에 속한다. ②협동단체법인으로서 협동농장, 생산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이에 속한다. ③사회단체법인으로서 각종 학회나 동맹 등이 이에 속한다.¹³¹⁾ 각 법인의 능력은 자기 본신의 임무에 맞는 범위 안에서만 권리능력을 인정받는다(제13조 제1항).

셋째, 공민의 행위능력에 관하여는 제20조와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조문을 정리하였다. 제21조는 민사행위 무능력자, 신체기능 장애자는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한다고 개정되었고, 1990년 민법 제21조 제2항의 내용을 개정하지 않고 제20조 제4항으로 옮겨서 규정하고

131) 崔達坤·申榮鎬, 『北韓法入門』, 앞의 책, p.177.

있다.

넷째, 所在不明과 死亡認證制度에 관하여 1990년 민법 제22조 제1항은 마지막 소식이 있는 때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공민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공증기관이 소재불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소재불명자로 인정된 후 1년, 소식이 없거나 마지막 소식이 있는 때로부터 3년, 생명에 위협을 준 사고가 있는 때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공민에 대하여서는 앞항과 같은 절차에 따라 사망자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개정민법은 동조 제1항을 ……‘3년’이 지나도록……소재불명자로 ‘인증’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다. 동조 제2항은 소재불명자로 인증된후 ‘2년’, ……때로부터 ‘5년’, ……때로부터 ‘1년’이 …… 사망자와 같이 인증할 수 있다고 각각 개정하였다.

또한 사망인정취소의 효과에 대한 제23조를 개정하여 제1항에서는 소재 불명자 또는 사망자로 인증되었던 공민이 나타났거나 거처를 알려온 경우에 공증기관은 본인이나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인증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이 경우 변경된 재산관계는 취소시킬 수 있으나 새로 성립된 결혼관계는 취소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남한 민법의 실종선고취소의 효과와 비교하여, 그 차이점은 ①남한 민법은 실종선고가 취소되는 경우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의 재산반환의 범위에 대하여 선의인 경우와 악의인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¹³²⁾하지만, 북한 민법은 선의와 악의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또한 남한 민법은 중혼인 경우를 혼인의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¹³³⁾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 민법은 사망인정취소의 효과로 전혼이 부활하지 않음으로써 중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새로 성립된 결혼관계는 취소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 민법이 가족관계를 민법의 규제대상으로 하지 않는 점에 따른 차이점이라고 생각된다. 즉, 북한 가족법은 가정재산관계를 그 규율대상에 포함시키고, 가정재산관계의 한 분야인 상속관계를 가족법의 규율대상으로 보고 있다. 북한법의 주요한 특색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132) 남한 민법 제29조 제2항 참조.

133) 남한 민법 제818조 참조.

민법을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이분하는 남한 민법의 체계와 같게 되었다.

2) 法律行爲

가. 意思表示의 方式

의사표시는 제24조 제1항에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말로나 서면같은 것으로 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다. 이것은 1990년 민법이 동조 동항에서 ‘서면으로’라는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민사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의사표시를 ‘말로나 서면’이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나. 代理

북한법상 대리제도는 비교적 넓게 활용되고 있다.¹³⁴⁾ 대리라 함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법적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제33조 제1항). 개정민법은 동조 제3항에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의 결과는 대리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성실히 하여야 한다(제35조 제1항). 1990년 민법은 제35조 제2항에서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의 결과와 대리행위를 불성실하게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는 대리인 자신이 책임진다고 규정하던 것을 개정민법에서 대리권의 범위에서 대리행위를 불성실하게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는 대리인이 책임진다고 개정하였다. 또한 개정민법은 제36조 제3항에 말로 한 대리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 알려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3) 時效制度

개정민법은 제261조 제3호에서 대외 민사거래에 관련한 청구에 대하여는 조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2년으로 민사시효기간을 규정하였다. 개정민법은 제262조의 채권은 청구권으로 개정하여 민사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 대상의 범위를 넓혔다. 1990년 민법은 제265조 제2항에서 기관, 기업소,

134) 崔達坤·申榮鎬, 『北韓法入門』, 앞의 책, p.181.

단체 사이의 청구권 중 3개월의 단기시효의 적용을 받는 청구권에는 시효의 정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민법은 이 조항을 삭제하였다.

한편 북한의 대외경제계약법(1995. 2. 22 최고 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은 민법상의 시효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동법 제35조 제2항)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지역의 투자자에게 지극히 불리한 독소조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¹³⁵⁾ 그러나 개정민법은 1990년 민법 제261조 제3호의 규정을 개정하고, 제265조 제2항의 규정을 삭제하는 등 부분적으로 개정함으로써 미약하게나마 투자자를 고려한 듯하다.

4) 所有權

가. 所有權의 主體

북한 개정민법은 제37조에서 사회주의경제의 소유양식의 본질상 소유권을 국가소유권, 사회협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의 셋으로 나눈다. 1990년 민법에는 규정되지 않았던 사회단체소유권을 새로이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개정민법은 1990년 민법의 협동단체를 모두 사회협동단체로 정리하였다.

1990년 민법은 제38조 제2항에서 소유권의 발생은 법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때, 계약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맺고 그 대상을 넘겨받은 때부터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민법은 소유권은 법에……, 계약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계약을 맺고…… 발생한다고 규정하였다.

북한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권 이외의 물권의 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좀 더 엄격하게 말한다면 점유권과 소유권만을 인정하며,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물권의 성립을 인정한다. ‘나진선봉지대건물 양도 및 저장규정’(1995. 8. 30.)에 의하면, 건물의 저장권설정을 국지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저장권자로 될 수 있는 자는 금융기관에 한정된다.

135) 최종고, 앞의 책, p.161 참조.

나. 國家所有權

북한법상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나(헌법 제21조 제2항, 민법 제45조 제1항), 일정한 재산은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다. 1992년헌법 제21조 제3항에 의하면,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공장과 기업소, 항만, 교통운수와 체신기관은 국가소유권의 전속적 대상이었다. 1998년헌법 제21조 제3항은 이를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항공운수·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으로 개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전의 민법 제45조 제2항은 이를 좀더 세분하여 규정한 바 있다. 이 내용은 각주 23)의 『민사법사전』¹³⁶⁾에서도 확인된다. 다만 『민사법사전』에서는 교통운수기관을 철도운수기관으로 표현하고 있다.

헌법개정에 의하여 달라진 사항은, 국가소유권의 전속적 대상 중 교통운수기관을 철도·항공운수기관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점이다. 이를 문면대로 이해할 경우에는, 운수기관 중 육상이나 해상운송기관 등은 국가소유권의 전속적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사회협동단체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민법은 위 규정의 내용 중 제2호와 제3호의 내용을 하나로 합쳐서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열한 종래의 규정의 내용을 보다 포괄적으로 정리하였다고 할 수 있다.¹³⁷⁾

다. 社會·協同團體所有權

1992년 헌법 제22조 제1항은 협동단체소유를 협동경리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로 정의하였으나, 1998년 헌법은 이를 사회협동단체소유로 개칭하고 해당 단체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로 정의한다. 이처럼 1998년 헌법은 집단적 소유의 주체로서 사회단체를 추가하고, 협동단체소유권의 요건인 협동경리, 즉 일정한 집단의 성원들이 생산수단에 대한 공동소유와 공동노동에 기초하여 관리·운영하는 공동경리를 삭제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53조 제1항에서의 정의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사회협동

136) 『민사법사전』(평양: 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p.134.

137) 신영호, “현행북한민법의 구조와 그 주요 내용 -소유와 계약제도를 중심으로-”, 『2001 국제한인변호사회 총회 북한법세미나 발표 논문집(2001년 10월 12일~13일)』, p.5.

경리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라 한다.¹³⁸⁾

1990년 민법 제54조는 사회협동단체소유권의 대상으로 토지와 부림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등과 중소공장, 기업소와 문화보건시설, 그밖에 경영활동에 필요한 대상들을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개정민법은 동조에 사회협동단체는 토지와 농기계, 건물 등과 중소공장, 기업, 그 밖에 경영활동에 필요한 대상들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였다.

이는 1998년 북한헌법의 개정에 따른 법 체계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1998년 개정헌법은 사회·협동단체 소유의 대상을 확대하였다(제22조, 예: 종전의 ‘농기구’, ‘고기배’에서 ‘농기계’, ‘배’로 규정). 종래 트랙터 등 ‘농기계’는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고 협동단체는 ‘농기구’만을 소유할 수 있었으나, 사회·협동단체도 이제는 농기계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협동단체는 종래 고기배(어선)만 소유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화물선, 여객선 등 다른 종류의 배(선박)도 소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종래 협동단체 소유로 되어 있던 ‘부림짐승’(가축)과 ‘건물’을 삭제(제22조)함에 따라 가축, 주택에 대한 개인소유도 가능하게 되었으며, 주택 외의 일반건물에 대한 개인소유의 허용도 시사하고 있다.¹³⁹⁾ 부림짐승, 즉 가축을 협동단체소유권의 객체에서 제외한 것은 그 필요성이 소멸한 데서 연유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표면상으로는 전면적인 농업기계화가 달성되었다고 자랑해 온 그간의 주장의 모순을 제거하려는 데서 비롯된 다

138) 위의 논문, pp.5~6.

139) 북한의 도시경영법은 제10조 1항에서 “국가소유의 건물은 살림집과 공공건물, 생산건물로 나누어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법은 건물을 그 용도에 따라 살림집, 공공건물, 생산건물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자유경제무역지대 건물 양도 및 저장규정 제2조 2항 역시 건물을 살림집, 공공건물, 생산건물과 그 부속건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민법은 살림집(주택)이 개인소유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59조). 도시경영법 제17조 1항은 “도시경영기관과 재정·은행기관은 개인 살림집을 소유자가 국가소유로 전환시켜 줄 것을 요구할 때에는 그것을 넘겨받고 보상하여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살림집은 국가소유, 협동단체소유 및 개인소유로 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2조 5항은 “협동단체소유와 개인소유의 건물을 위탁보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보수비를 건물소유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여 일반건물도 개인소유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개정헌법이 건물을 사회·협동단체 소유권의 객체에서 제외한 것은 주택이 아닌 일반건물도 개인 소유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분히 상징적 의미의 개정에 속한다고 본다.¹⁴⁰⁾

라. 個人所有權

사회주의 일반론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소비재의 개인소유를 인정한다(헌법 제24조 제1항, 민법 제58조 제1항). 개인소유권은 소비재의 소유에 국한되기 때문에 자본주의법에 있어서의 사적 소유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개인소유권은 개인이 갖는 천부적 권리가기보다,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이라고 정의되고 있다(헌법 제24조 제2항, 민법 제58조 제2항).¹⁴¹⁾

민법전 제4장은 개인소유권의 대상을 규정하는데, 그 대상은 노동에 의한 수입과 사회주의 분배,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공민이 샀거나 증여받은 재산, 그 밖의 법적 근거에 의하여 생겨난 재산으로서(제58조 제2항), 살림집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정용품·문화용품·그 밖의 생활용품과 승용차와 같은 기계도 개인소유로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59조). 민법이 규정하는 '법적 근거에 의하여 생겨난 재산'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겠으나, 개정민법에서 주목되는 사항은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이외에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에 대하여도 개인소유권을 인정하겠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법사전』은 법적 근거에 의하여 생겨난 재산의 구체적인 예로서 사냥한 산짐승, 잡은 물고기, 채취한 산채를 들고 있을 뿐 경리활동을 통한 수입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¹⁴²⁾

북한에는 농민시장과 같은 일정한 영역에서의 합법적인 사영경제와 암시장과 같은 불법적인 사영경제의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사영경제의 영역을 상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으로까지 확대하고 그 적법성을 뒷받침하면서 이를 사회주의경제의 보완(중국 헌법 제11조)으로서 여기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으나, 개인의 합법적 경리활동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얻어

140) 신영호, “현행북한민법의 구조와 그 주요 내용 -소유와 계약제도를 중심으로-”, 앞의 논문, p.6.

141) 위의 논문, p.7.

142) 위의 논문, p.7.

지는 수입을 개인소유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그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¹⁴³⁾

한편 북한법상의 가정재산이라는 제도는 여타 사회주의법에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독자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다. 가정재산은 가정성원 전체의 공동재산이다. 그런데 1990년 민법 제61조는 가정의 재산은 가정재산과 특별재산으로 구별하여 규정하였다. 이것을 개정민법은 가정성원으로 된 공민은 가정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가진다고 규정하여 가정의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일원화하였다. 이것은 가정재산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정재산은 혼인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분할될 따름이다(가족법 제39조). 가정재산은 개인재산이나 상속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¹⁴⁴⁾

현재 북한의 부동산제도 하에서는 사회협동단체가 주로 부동산을 이용하는 주체가 되며, 공민은 원칙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터밭 경리나, 국가에서 지어주는 살림집에 대한 사용권만을 가질 따름이다. 북한법의 이러한 부동산의 소유와 이용에 관한 원칙은 앞으로 경제개방정책이 활발하여 짐에 따라, 개인소유권의 대상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 예상된다.¹⁴⁵⁾

5) 債權債務關係

가. 一般規定

채권채무편도 1999년에 상당한 부분이 개정되었다. 주목할만한 내용은, 종래 제3장에 규정되어 있었던 계약의 성립과 계약조건에 관한 일련의 규정(1990년 민법 제136조, 제138조 내지 제147조)을 제1장 일반제도, 즉 채권총론 부분으로 옮긴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종래의 민법 이론체계로 복귀한 것으로서 개정전 민법의 규정체계의 불합리를 시정한 것이기도 하다. 이

143) 위의 논문, pp.7~8.

144) 위의 논문, p.8.

145) 최근 북한의 개정 헌법(1998. 9. 5.) 제24조는 개인소유의 대상으로서 ‘그밖에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을 인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관·기업소·단체간의 계약도 구술로 체결할 수 있게 한 제93조, 이행지체시 채권자가 채권대상물을 잡아 둘 수 있다고 규정하는 제95조 제3항의 신설 등도 눈에 띄는 변화이다.¹⁴⁶⁾

제64조에서는 채권과 채무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민법은 채권과 채무가 권리와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여 규정하였다.

제93조 제2항에서는 말로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그 사실 증명되어야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제95조 제3항에서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대상을 잡아둘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나. 計劃에 基礎하는 契約(計劃的 契約)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¹⁴⁷⁾은 계획과제(또는 인민경제계획문건)에 따라 체결되며 경제계약이라고도 한다. 즉, 계획적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하며 경제관리에서 독립채산제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하여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체결되는 계약이다(제101조 제1항). 계획적 계약의 체결은 의무적이다(제101조 제2항). 그리고 이 체결의무는 그 법적 성질상 단순한 민법상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행정법적 의무이기도 하다. 즉 계획적 계약의 체결의무는 대국가적 의무이다. 따라서 비록 양 당사자 사이에 계약조건에 관한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중재기관의 중재를 거쳐 반드시 체결되어야 한다(제103조 제2항).¹⁴⁸⁾

개정민법 제106 제1항은 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로는 국가의 자재공급세부계획에 따라 자재를 주고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된다고 규정하여 1990년 민법 제95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던 기계, 설비, 원료를 주고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를 삭제하였다.

개정민법 제115조 제1항은 상품공급계약의 당사자로는 국가의 상품배정

146) 앞의 논문, p.8.

147) 북한 민법전은 계획과제와의 연관에 따라 전형계약을 계획적 계약과 일반계약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견해(최달곤, 신영호 교수 등)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북한 민법전의 제목에 입각하여 그대로 서술하기로 한다.

148) 신영호, “현행북한민법의 구조와 그 주요 내용 -소유와 계약제도를 중심으로-”, 앞의 논문, pp.8~9.

계획에 따라 상품을 주고받는 기업소와 도매상업기업소, 소매상업기업소가 된다고 규정하여 1990년 민법 제10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장을 삭제하였다. 동조 제2항에서도 공장을 삭제하였다.

다. 計劃에 基礎하지 않은 契約(非計劃的 契約)

계획에 기초하지 않은 계약이라 함은 계약당사자가 일방에게만 해당되는 계획과제에 기초하여 체결하거나 또는 당사자 쌍방 모두가 계획과제와는 무관하게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이를 보통계약이라고도 한다.¹⁴⁹⁾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과 계획에 기초하지 않은 계약은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①전자의 당사자는 동일한 인민경제계획과제를 하달받은 당사자만 가능한데 비하여, 후자는 서로 상이한 계획과제를 하달 받은 당사자 사이, 계획과제를 하달 받은 일방당사자와 그렇지 않은 당사자, 계획과제를 전혀 하달 받지 않은 양 당사자가 체결하게 된다. ②계약체결의 과정은, 전자는 강제되며 계약교섭 중의 이견은 중재절차에 의해 조정되지만, 후자는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다. ③계약의 내용은, 전자는 계약기간, 계약목적, 채무이행의 순서, 그 방법, 계약내용의 변경 등이 계획과제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비해 후자는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른다. ④계약책임에 관해서도 차이점을 나타내는데, 전자는 손해보상책임 및 각종 제재금이 있는데 반해, 후자는 손해보상책임만이 규정되어 있다.¹⁵⁰⁾

1990년 민법은 제150조 제1항에서 공장과 기업소가 생산한 상품을 팔고 사기 계약의 목적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민법은 동조 동항에서 공장을 삭제하였다.

개정민법은 제167조에서 공민들 호상간의 보관계약에서는 보관료를 주고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개정민법은 제179조에서 공민들 호상간

149) 그러나 일반계약이라 하더라도 계획과제와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일반계약의 일종인 매매계약의 경우에도 국가의 상품유통계획과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따라서 총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엄연히 질서정연하게 계획화되고 조직화된 상품유통과정의 한 과정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민법 I(심의용)』(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3), p.213.; 신영호, 위의 논문, p.9 재인용.

150) 고영남, “북한민법에서 채무이행의 원칙에 대한 정치경제적 검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 『민주법학』, 통권20호(관악사, 2001), p.38 참조.

의 빌리기계약에서는 사용료를 주고받을 수 없다는 규정도 삭제하였다. 그리고 개정민법은 제214조에서 위임계약은 무상으로 맺는다는 규정도 삭제하였다.

이러한 개정민법의 의미는 보관계약 및 빌리기 계약, 위임계약은 무상으로 체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민사법률 행위의 당사자 사이에 보다 많은 계약을 체결할 여지가 있다. 또한 나아가 개정민법은 자본주의의 논리가 적용되었다고도 일응 볼 수 있다.

6) 民事責任

계약위반의 책임에 관하여 살펴보면,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의 위반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 이외에 각종 형태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계획에 기초하지 않은 계약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에 국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이행의 보장에 있어서도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과 계획에 기초하지 않은 계약은 다르다. 계약체결시에 계약체결을 증명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수수되는 것이 계약금인데,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의 당사자간에는 계약금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없다. 사회주의단체 상호간의 대부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¹⁵¹⁾

개정민법은 제240조 제2항에 그러나 같은 종류의 기관, 기업소, 단체라 하더라도 그 소유에 속하는 다른 기관의 기업소, 단체의 허물에 대하여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개정민법은 제248조 제2항에 사람의 존엄과 명예를 심히 훼손시켜 그의 신체와 인격에 지울 수 없는 손상을 남긴 자는 시효에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3) 北韓의 民法改正에 대한 評價

1999년 북한의 개정민법은 제10조에서 민사활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맺은 조약에서 달리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1990년 민법의 소극적 자세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민사활동과

151) 신영호, “현행북한민법의 구조와 그 주요 내용 -소유와 계약제도를 중심으로-”, 앞의 논문, p.9.

관련한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내의 민사분쟁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99년의 북한민법의 개정내용을 보면, 1998년 북한헌법상 경제조항의 개정내용에 상응한 내용으로 개편함으로써 1998년 헌법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북한헌법은 생산수단의 소유주체를 ‘국가와 협동단체’에서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로 규정하여(제20조), ‘사회단체’를 추가함으로써 북한에서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사회단체의 영역을 확대하였다. 이는 개정민법에도 반영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 주택의 개인소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데, 북한 민법은 제50조에서 “국가는 살림집을 지어 그 리용권을 노동자, 농민 사무원에게 넘겨주며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에서 주택공급은 중앙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며, 일반주민에게는 소유권이 아닌 이용권만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주택에 대한 개인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권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계층과 지역에 따라 규격화되어 있는 각 등급의 독립가옥이나 공동주택(아파트) 등을 임대형식으로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개정헌법은 제22조에서 집단적 소유의 범위에 건물을 제외함으로써 주택에 대한 개인소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생각건대 북한이 1998년 헌법개정과 1999년 민법개정을 통하여 경제조항을 대폭 수정한 것은 북한경제의 현실변화를 반영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실용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아갈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⁵²⁾ 이는 최근 북한이 경제관련법제의 정비내용을 볼 때, 그 내용과 형식면에서 대내외적 경제환경변화를 수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변화를 예상하게 하는 대목이다.¹⁵³⁾ 이를 중국의 법제개선의 측면에 비추어 보면, 중국은 형식적으로는 사회주의경제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보완으로서의 개인 내지 사영경제의 도입과 같은 경제체제의 개혁을 이루어 왔다.

152) 張明奉, “北韓의 憲法改正과 經濟部門의 變化”, 앞의 논문, p.33.

153) 張明奉, “북한 법제의 변천과 최근 입법동향”, 『2000년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II』 (법제처, 2000), 참조.

중국의 1988년 헌법개정을 통하여 사영경제의 도입을 명시한 것은¹⁵⁴⁾ 경제 개혁·개방을 시도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서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민법 통칙도 이에 따른 개정을 행하여 사인소유권을 승인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즉, 중국에서의 소유권은 종래의 세 종류에 사인소유권을 포함하여 국가 소유권·집단소유권·개인소유권·사인소유권 등의 네 종류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현실상황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른바 ‘개인소유권’이란 공민개인(개인상공업자도 포함)이 법에 의하여 자기재산에 대해 갖는 점유·사용·수익¹⁵⁵⁾·처분의 권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에 비해 ‘사인소유권’이란 사영기업자가 법에 의하여 자기재산에 대해 갖는 점유·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가리킨다. 사인소유권은 중국 헌법이 사영경제를 승인함으로써 새로이 형성된 소유권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사인소유권이 개인소유권과 다른 점은 고용관계와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¹⁵⁶⁾

이렇듯 중국에서의 경제현실변화와 법제변화의 추이를 감안하면, 북한의 1998년 개정헌법과 1999년 개정민법이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민법 제58조 제2항)로 된다고 규정한 점에서 북한에서도 경제부문의 개혁적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북한이 이른바 ‘북한식 사회주의시장경제’로서 중국의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원리의 도입과 유사한 경제개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⁵⁷⁾ 이러한 점

154) 1988년 4월 12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채택된 헌법개정안에 기초하여 헌법 제11조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사영경제가 존재하고 발전하는 것을 허가한다. 사영경제는 사회주의적 공유제경제의 보완물이다. 국가는 사영경제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사영경제에 대하여 지도·감독·관리를 행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155) 중국민법은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유권개념을 채용하고 있다. 소유권의 제권리 중에 수익권을 든 것은 소유권에 포함되는 소유자의 직접적 수익의 문제를 두드러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156) 자세한 내용은 정완(법무부 전문위원), “중국의 민사법제”, 『인간과 법 포럼』(1992년 2월호, 통권 425호), 참조.

157) 이 이외에도 대외무역의 국가독점정책의 수정(제36조), 특수경제지대의 활성화와 그 확대의지(제37조), 경제관리에 있어서의 원가, 가격, 수익성과 같은 경제적 공간의 이용 강조(제33조 제2항) 등 구헌법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경제정책이 천명되어 있다; 신영호, “'98년 헌법개정에 따른 북한소유제도의 변화가능성”, 『북한법 연구』, 제2호(근사출판, 1999), pp.69~70.

에 비추어 북한은 현재 ‘북한식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도입과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거나 사유재산제의 인정이라는 점진적 진전을 통하여 생산수단이 장래에 사유재산의 차원으로 전화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생산수단과 비생산수단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전락하게 되며, 북한도 헌법과 민법의 규정에 개인경제의 도입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경제원리를 고수하고 있으며, 북한식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민법의 제정과 소유제와 관련한 민법의 개정을 분명히 북한경제의 현실의 변화와 전반적인 경제생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경제개방과 개혁이라는 방향에서 그 변화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II. 家族法

북한에서 가족법은 1946년 ‘북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과 1986년 ‘민사규정’ 등에 이어 1990년에 비로소 단일 법전으로 체계화되었으며(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1990. 10. 24),¹⁵⁸⁾ 1993년 9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개정되었다. 1993년 개정에서는 종래의 법과 비교하여 근본적인 변경을 가져오지는 아니하였다. 법조문의 표현에 있어서 보다 비법률적인 표현을 법률적인 표현으로 바꾸고, 규정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¹⁵⁹⁾ 이것은 북한이 가족제도의 와해를 시도했던 당초의 태도에서 벗어나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가족법은 “사회주의적결혼관계와 가족, 친척들 사이의 인격적 및 재산적관계”, 구체적으로는 혼인관계, 친자관계, 후견관계, 그 밖의 가족관계 및 상속관계를 규율한다.¹⁶⁰⁾

158) 가족법 제정 이전의 가족법의 성립과 변천에 관해서는 崔達坤, “北韓家族法 40年과 그 動向”, 『北韓法律行政論叢』, 第8輯, 앞의 책, pp.95~99.

159) 申榮鎬, “北韓 家族法の 體系와 特色”, 세종연구소(편), 『北韓法 體系와 特色』(세종연구소, 1994), p.435.

160) 위의 논문, p.336.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과거 북한은 인민정권 수립 시부터 상속권 제도를 자본주의적 착취 제도의 일종으로 보아 매국매족적이며 반인민적이라 하여 폐지했었는데, 이번에 이를 인정하였다(제7조). 가족법의 원칙 규정으로 남녀평등(제17조, 제18조), 어머니와 어린이에 대한 특별한 국가적 보호(제6조), 일부일처제(제8조), 혼인 보호(제2조 2항)와 가정 강화(제3조 2항), 행위능력 없는 공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제4조 2항), 개인 재산의 상속권 보호(제5조)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금혼 범위 규정(제10조), 부부별성주의(제17조), 친족 및 가족 부양의 의무 부여(제19조, 제35조~제37조) 등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반영한 예라 할 수 있다.¹⁶¹⁾

개정된 가족법의 내용은 첫째, 자녀양육에 관한 부모의 의무를 규정하는 제23조 제1항과, 둘째, 친권의 내용을 규정하는 제28조 제1항의 부모의 양육권과 미성년자녀의 대리인 규정, 셋째, 가족간의 부양의무를 규정하는 제37조의 조문 정리, 넷째, 후견에 관한 제40조와 제41조 제1항을 개정하였는데, 후견대상을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로 하여 그 요건을 명시하고 미성년자의 후견인에서 부모를 제외하였다. 다섯째, 제47조 제2항과 제52조 제1항을 개정하여 상속의 승인과 포기제도를 명문화하였다. 여섯째, “벌칙”을 “제재”로 변경하였다.¹⁶²⁾

북한 가족법의 특징으로는 재산적 관계를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소유관계, 부양관계 및 상속관계를 가정재산관계라 한다. 상속관계가 가족법의 규제대상으로 됨에 따라, 북한가족법전은 상속을 제5장에서 규율하고 있다. 사회주의민법과 가족법의 일반적인 법이론에서 크게 벗어나는 북한가족법의 체계상의 가장 큰 특색이라 할 수 있다.

III. 民事訴訟法

북한은 1976년에 제정(1976. 1. 10)된 민사소송법을 18년만에 개정하였다(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1994. 5. 25).¹⁶³⁾ 이 법의 변화 면모를

161) 리송녀, “공화국가족법은 가정을 공고화하고 혁명화하는 무기”, 『법학논문집』(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0), p.139; 申榮鎬, “北韓家族法の 制定과 그 特色”, 앞의 논문, p.123.

162) 申榮鎬, “北韓 家族法の 體系와 特色”, 앞의 논문, pp.435~436.

163) 이 때까지의 民事訴訟法の 沿革에 관해서는 『北韓法の 體系的 考察(I)-民事關係法

보면, 먼저 민사소송법의 목적과 사명에 관해 정치적·계급적·이데올로기적인 색채를 완화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국민의 민사상 권리와 이익 보호’(제1조), ‘소송 당사자의 적극성을 옹계 결합하는 원칙에서 민사소송 활동 진행’(제2조), ‘소송 당사자에게 소송상 권리와 소송 행위의 조건 평등’(제3조), ‘민사소송 활동의 과학성·객관성·신중성 보장’(제5조) 등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민사소송 절차에서의 소송 당사자의 권익 및 소송상 권리 보장을 강조하였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역할과 권리 보장(제2조, 제3조)과 당사자의 증거조사 요구권 및 참가권을 신설하여(제24조) 민사소송 절차상 당사자주의를 강화하였다.¹⁶⁴⁾

IV. 仲裁法

북한은 1995년 3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에 의해 중재법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중재에 관한 통일적인 법전이다.¹⁶⁵⁾ 중재법에 의하면, 제1장 중재법의 기본(제1조~제6조)에서는 국가중재의 목적과 사명, 중재사건취급처리에서 지켜야할 원칙적 문제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 일반규정(제7조~제16조)에서는 중재사건의 해결과 중재당사자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 등을 제3장 중재관할 (제17조-제25조)에서는 도 중재기관과 중앙중재기관이 취급 처리하는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장은 중재제기(제26조-제35조) 제5장은 중재준비(제36조-제50조) 제6장은 중재심리(제51조-제66조) 제7장은 재결 및 결정(제67조 -제82조) 제8장은 재결 및 결정의 집행(제83조-제86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¹⁶⁶⁾ 이 법은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계약을 맺고 이행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분쟁사건해결에 적용하는 법으로서 중재사건을 정확히 심리

-, 앞의 책, pp.455~458.

164) 1994년 民事訴訟法에 관한 分析은 『주간 북한동향』, 제209호(통일원 정보분석실, 1994. 12. 25~31), pp.32~40; 『북한의 개정 민사소송법』, 통일사법정책자료 95-1(법원행정처, 1995), pp.9~84.

165) 중재법은 모두 8개장 8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전에는 김정금·리황의 [중재법]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5)이 대표적인 자료였다. 중재에는 국가중재, 무역중재, 국제중재등이 있으나 북한의 중재법은 북한내의 인민경제계획수행과정의 분쟁해결에 그 목적이 있다.

166) 『민사법사전』, 앞의 사전, p.498

해결하고 계획수행 및 계약이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원만히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¹⁶⁷⁾

V. 社會主義 商業法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 회의(1992. 4. 9)에서 사회주의 상업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상품의 생산과 소비의 균형과 외국과의 상업교류와 협력의 증진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외 경제개방에 대비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사회주의 상업의 본질은 “인민들에 대한 공급 사업이며, 그들의 물질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제1조)이며, 그 역할은 생산과 소비의 연결, 도시와 농촌·공업과 농업·서로 다른 지역과 지방간의 경제적 연계강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의 실현, 화폐유통의 공고화와 국가 재정 예산 수입의 보장 등이라고 하였다(제2조).

VI. 保險法

대내 경제와 인민 복지 관련 입법으로 보험법(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1995. 4. 6)을 채택하였다. 보험법의 목적은 보험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국가의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제1조). 이 법은 자유민주국가의 보험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험계약의 자유 원칙에 입각함으로써(제2조) 북한의 개방 정책과 관련한 입법임을 엿볼 수 있다.

제 4 절 行政關聯法制

I. 都市經營法

이 법은 사회주의 상업법과 함께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 회의(1992. 4. 9)에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총체적인 도시계획 및 정비 사업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편리한 생활 조건과 문화적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다. 이 법은 도시 경영 사업에 대한 전국가적·전사회적 관리 체계를 세

167) [민사법사전] p.498.

우는데 대한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생활 조건과 문화적인 생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그 근본 목적으로 하고 농촌에도 적용된다고 하였다.

II. 土地賃貸法

북한에서 1984년 『합영법』은 토지에 관하여 “합영회사는 토지를 사용할 때 토지사용료를 물어야 한다”(제21조 제4문)고 규정하였으며, 1992년 『외국인투자법』은 투자장려부문에 대해 유리한 토지사용조건을 보장한다고 하고(제8조)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에 필요한 토지를 최고 50년까지 임대하고 임대토지에 대한 해당기관의 승인후 양도·상속할 수 있다(제15조)고 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매우 진전된 조치를 마련하였다. 그 밖에 합영법시행세칙은 토지사용권을 출자목적물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필요한 토지의 임차, 임차기간의 연장(제20조), 장려부문투자에 대한 입지상우대 및 임대료 감면(제38조)을 규정하여 외국인투자법과 거의 비슷한 규정을 두었다.

북한은 1993년 10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0호로 『토지임대법』을 제정하고, 1994년 9월 7일 정무원결정으로 『토지임대법시행규정』을 제정하였다. 북한의 『토지임대법』은 총 6장 42개조문으로 외국인투자와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기 때문에¹⁶⁸⁾ 1977년의 토지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원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이를 사용·수익할 권리와 담보에 제공하거나 처분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토지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들 권리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토지로부터 생기는 모든 경제적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토지임대법』에서 비록 이용권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사인에게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북한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도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168) 이에 관해서는 『北韓法制概要』(法制處, 1992), p.436 이하 참조.

Ⅲ. 社會主義財產管理法

북한은 1996년 3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70호로 사회주의재산관리법을 채택하였다.¹⁶⁹⁾ 이 법의 목적은 재산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사회주의적 소유를 공고 발전시키며 경제건설 촉진과 인민생활 향상에 있다. 사회주의재산은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으로, 재산의 특성에 따라 자연자원, 고정재산, 유동재산으로, 경우에 따라 부동산, 동산 같은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6호 모범기대창조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전개하고 ‘설비점검의 날’ ‘재산보호구역’ 설정 ‘사회주의재산보호월간’ 제정 등 각종 선전, 선동을 강조하고 있다.¹⁷⁰⁾

Ⅳ. 教育法

최근 북한은 사회주의교육지도체계 및 통제의 강화를 위해 1999년 8월 11일에 6장 52조로 구성된 『교육법』을 제정하였는데,¹⁷¹⁾ 이는 기존의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와 『어린이 교육 보양법』 등 교육관련규정들을 체계화하여 단일 법제화 한 것이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 교육방법 및 교육기관에 대한 당적 지도 강화 등 북한 교육 부문의 지침역할을 해왔다.¹⁷²⁾ 북한에서 사회주의 교육은 사람들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혁명인재로 키움으로써 혁명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혁명사업이라고 한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교육의 기본원리가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데 있다”고 규정한다. 특히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한 교육은 ‘정치사상교양’을 가장 중시하면서 “수령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

169) 이 법은 7개장 (기본원칙, 사회주의재산의 분류, 등록·평가·실사, 보호, 이용, 처리, 사회주의재산관리에 대한 지도 통제) 65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70) 『민사법사전』, 앞의 사전, pp.494~495.

171) 『중앙통신』, 1999년 8월 11일자.

172) 明淳龜, “북한의 법학교육과 법률가 양성”, 『북한법연구』, 제3호(북한법연구회, 2000), p.186 참조.

혁명가로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이념적 기초는 법률로 정하여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이론 체계화하여 교육지침으로 삼고 있다.¹⁷³⁾

북한 헌법 제43조에서는 사회주의 교육의 이념에 대해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고 규정했다. 사회주의 교육의 내용과 교수교양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한 것은 1977년 9월 공포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이다.¹⁷⁴⁾ 이 테제는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김일성이 노동당 제5기 제19차 전원회의(1977. 9. 5)에서 종래의 교육정책과 행정분야에서의 제반관리 및 운영지침을 집대성해 발표한 문헌으로서 인간 개조사업과 사회주의 교육사업에서 이룩한 업적과 경험을 체계화한 것이다. 즉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가 사람들을 공산주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에 기초하여 깊은 과학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식화하였다.¹⁷⁵⁾

이번 『교육법』의 골자를 보면, 제1장은 ‘교육법의 기본’에서 교육의 사명과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 원리·교육의 기본 형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상의식과 과학기술지식, 체력을 가진 인재교육”을 교육의 기본 원리로 하고 있는 것이다. 제2장은 ‘전반적 무상교육제도(11년)’, 제3장은 ‘교육기관과 교육일군’, 제4장은 ‘교육내용과 방법’, 제5장은 ‘교육조건 보장’, 제6장은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를 강화할 데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이와 같이 교육법을 새로 채택한 것은 향후 체제의 근간이 될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다 체계화·조직화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교육사업에서의 성과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사회주의 교육을

173) 김경웅·박갑수, “북한의 교육과 문화예술”, 통일부 사이트(http://www.unikorea.go.kr/kor/gallery/stand/understand4_view.php?db=Tab_1&boardno=17&content=B26/B262.htm&code=625&flag=0).

174) 동 테제는 제1장 사회주의 교육의 원리, 제2장 사회주의 교육의 내용, 제3장 사회주의 교육의 방법, 제4장 사회주의 교육제도, 제5장 교육기관의 임무와 역할·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 등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개요 2000』(통일부, 1999), p.487.

175) 김경웅·박갑수, 앞의 사이트.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조치로 보인다.¹⁷⁶⁾ 북한의 교육은 표면적으로는 집단주의적, 정치 교화적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인간의 개성을 뒷전으로 미뤄 둔 채 모든 사람을 획일화하여 완전 개조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지 근원적인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북한 체제가 의도한 대로 인간형이 ‘교양’ 되었다고 해도,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아랑곳없이 그 특성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대목이라고 하겠다.¹⁷⁷⁾

제 5 절 經濟關聯法制

I. 人民經濟計劃法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2차 회의(1999. 4. 7~9)에서 ‘인민경제 계획법’을 제정하였다.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법안보고에서 이 법의 제정의미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빛내여 나가는데 있다”고 밝히고, 북한에서 계획경제의 역사적 시작으로부터 반세기 이상이 지난 현실발전의 요구에 따라 이 법은 처음 제정되었으며, 이는 인민경제계획화 정책의 정당성과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생활력을 과시하는 이른바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¹⁷⁸⁾

북한은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사회주의계획경제원칙을 거듭 확인하고 이에 의한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¹⁷⁹⁾

여기서 북한은 사회주의계획경제원칙을 거듭 확인하고 이에 의한 경제적 획일화를 통한 경제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결과적으로 북한주민에 대한 통제를 통해 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인민

176) 『주간 북한동향 1999. 8. 7~8. 13』(통일부 정보분석국, 1999) 참조; 북한의 교육제도와 학제에 관한 분석은 明淳龜, 앞의 책, pp.186~189 참조.

177) 김경웅·박갑수, 앞의 사이트.

178) 『인민경제계획법』의 채택에 관한 楊亨燮(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한 보고. 1999년 4월 8일, ‘중앙방송’(평양) 보도.

179) 이 법에 관한 상세한 것은 朴井源, “北韓의 『人民經濟計劃法』에 관한 研究”, 『법제연구』, 통권 제17호(한국법제연구원, 1999), pp.183~184.

경제계획법』의 채택에 배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인민경제계획에 관하여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를 통해 통제해왔으나 김정일정권의 공식 출범이후 최초의 입법으로 『인민경제계획법』을 제정한 것은 북한이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사회주의정치체제의 수호를 위해 인민경제의 통제와 운영의 시급성에 대한 자세를 보여준다. 경제난으로 이완된 북한경제의 계획화를 법제화하여 생산수단을 통제함으로써 경제계획의 통일성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체제의 강화와도 연관되어 있는 만큼 김정일정권의 현안으로 인민경제의 계획화체계의 확립은 현안이 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북한의 『인민경제계획법』은 경제적으로 인민경제의 발전이라는 명목과 아울러 정치적으로 김정일체제의 강화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인민경제계획법』에 의해 남북경제교류·협력이 전면적으로 거부될 것이라는 판단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무릇 북한의 경제회복이 체제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연관성을 고려할 때, 북한은 경제난극복과 경제회생을 북한주민에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 남북경제교류와 협력기반의 확대는 현실적 대안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남북경제교류·협력은 확대해 나갈 것이다.¹⁸⁰⁾

II. 公證法

북한은 1995년 2월 2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공증법을 채택하였다.¹⁸¹⁾ 공증법은 법률적 의의를 가지는 사실과 문서를 정확히 확인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의 민사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민사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법도 ‘공화국 영역에 있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제8조) 고 규정함으로써 대외경제개방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180) 위의 논문, p.203.

181) 공증법은 5개장 35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제1장 공증법의기본 (제1조~제8조), 제2장 공증대상 (제9조~제12조), 제3장 공증관할 (제13조~제17조), 제4장 공증절차와 방법(제18조~제31조), 제5장 공증에 대한 의견제기 (제32조~제35조)이다.

Ⅲ. 財政法

북한은 1995년 8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61호로 재정법을 채택하였다.¹⁸²⁾ 재정법은 국가 및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화폐자금을 조성하고 분배 이용하는 것과 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규제한 법이다.¹⁸³⁾ 이 법은 그 동안 시행되어 오던 국가재정과 관련된 제반규정들을 경제상황의 변화에 상응하여 단일법전화하고 사회주의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일층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Ⅳ. 價格法

북한은 국가적 차원에서 가격의 제정과 적용을 위한 법규범으로서 1997년에 『가격법』을 제정하였다. 북한은 ‘가격’에 대하여 “상품생산의 경제범주로서 상품의 생산과 분배, 축적과 소비, 수요와 공급 등 경제관리의 모든 분야에서 리용되는 경제계산의 기본수단이며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의 경제생활을 규제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한다. 그리고 『가격법』은 “해당시기 정책적 요구와 현실적 조건에 맞게 나라의 경제발전을 자극하고 인민생활을 고르롭게 높일 수 있도록 가격을 정할 데 대한 가격제정의 원칙과 그 절차와 방법을 규제”¹⁸⁴⁾한다고 설명한다. 북한의 『가격법』 제정은 장기화된 경제침체로 인한 비정상적 유통거래로 말미암아 국정가격과 암거래가격으로 이원화되는 등 가격질서가 문란해진 데 따른 법적 대응이라 할 수 있다.¹⁸⁵⁾

182) 재정법은 모두 5개장(재정법의 기본, 국가예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 재정총화, 재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5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83) 『민사법사전』, 앞의 사전, p.498

184) 『민주조선』, 1997년 3월 1일, p.2.

185) 가격법의 제정은 이른바 ‘주체의 가격제도’를 확립하여 사회주의가격체계를 정상화하고 가격질서의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북한에서 상품의 가격은 계획적으로 제정되므로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변동하는 자본주의 경제하에서의 가격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북한은 가격법을 통해 가격사업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면서도 상품의 수요와 공급관계, 제품의 질에 따른 가격책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1996년 9월 1일 정무원 결정(제46호)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가격규정』을 승인하여 채택하였다.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제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제1조). 이 규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와 개인·외국인투자기업의 상품 및 봉사거래와 관련한 가격제정과 그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V. 貿易法

최근 북한은 대외무역의 체계와 질서를 규정한 『무역법』을 1998년 3월 25일에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¹⁸⁶⁾ 아직 법조문 자체는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¹⁸⁷⁾ 이에 의하면, 『무역법』은 총 5장 58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무역에 있어 제도와 질서를 수립하며 대외시장을 확대하고 무역수지의 균형을 보장하여 인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노동당과 국가가 견지하고 있는 일관된 정책이라고 한다. 북한은 이러한 정책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무역법의 사명이 규정되었다고 하고,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의 본성적 요구를 바탕으로 무역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게 법적인 보장을 한 것이 『무역법』이라고 한다.¹⁸⁸⁾

북한의 설명에 의하면, 『무역법』은 다음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제1장에서 무역법의 기본으로서 이 법의 사명, 무역의 기본원칙과 요구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여기서 무역을 하는데 있어 지켜야할 원칙으로 무역의 다각화·다양화, 신용준수를 들고 있다. 또한 무역거래원칙을 구현하는데 있어서의 요구사항으로 무역의 통일적 균형을 위한 지도와 보장강화, 무역일꾼의 육성, 세계각국과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발전 등을 들고 있다.

둘째, 제2장에서 무역회사의 설립과 관리운영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무역법은 무역회사를 수출입활동의 담당자로 그 지위를 규정하였는데,

186) ‘조선중앙통신’, 3월 25일자 발표.

187) 이와 관련한 내용은 일본의 조총련계 싱크탱크인 ‘조선문제연구소’가 발간하는 『月刊朝鮮資料』 5월號의 해설(‘貿易法について’) 참조 바람.

188) 이에 관해서는 손희두, 『북한의 무역제도에 관한 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01) 참조.

이는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실행하는 무역거래를 자기 소유재산으로 채산을 맞춰 경영활동상의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렇듯 무역회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무역회사의 역할을 높이고 대외무역을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무역회사는 대외경제기관 또는 해당기관이 승인에 의해 설립되고, 무역회사가 계약을 정확히 체결·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기관이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제3장에서 무역계획작성의 원칙과 그 시행에 제기되는 문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무역계획은 인민경제계획의 중요항목으로서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에 의해 무역활동을 국가의 통일적 계획 하에 전개할 수 있도록 하여 무역발전과 인민경제발전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넷째, 제4장에서 수출입허가기관과 수출입허가질서, 허가를 받는 물자의 반출입질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수출입허가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중앙무역지도기관)이 해당문서와 계약서를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는 수출입물자에 대한 국가의 지도통제의 강화를 보장하는 제도적 조치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제5장에서 무역사업의 지도통제에 제기되는 요구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여기서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중앙무역지도기관)이 해당기관·기업소·단체로 하여금 수출품의 비중을 높이고 무역을 확대 발전시키는 일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북한 당국이 무역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규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 법에 따라 외국기업과의 합영합작 등에 의한 서구형 무역회사의 설립도 잇따를 전망이다. 무역법은 무역법의 사명과 원칙, 무역회사의 설립과 무역거래범위, 계약의 체결 심의 이행절차에서 책임과 해산에 이르기까지 무역회사의 관리운영 절차, 무역계획 작성에 필요한 원칙과 집행상의 문제, 수출입 허가기관과 허가를 받은 물자의 반출입질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통신’은 무역법 채택 의의와 관련해 “무역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요구에 맞게 대외무역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하는 획기적 조치”라고 주장했다.¹⁸⁹⁾ 북한은 지난 1993년부터

189) 『한겨레신문』, 1998년 3월 25일자.

심각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무역제일주의’를 경제의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왔다.

VI. 加工貿易法

북한은 1996년 2월 정무원 결정(제8호)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을 제정하였다.¹⁹⁰⁾ 이는 북한의 종래의 무역형태가 사회주의권국가와의 물물교환 내지 구상무역을 위주로 하였으나 현시점에서 이러한 무역형태가 와해된 현실에서 국제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무역거래형태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북한은 대외무역에서의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국내원료를 적게 쓰거나 전혀 쓰지 않으면서 외화를 벌 수 있는 가공무역을 통한 대외시장의 진출을 도모하게 되었다. 그래서 북한은 『무역법』과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입각하여 가공무역을 장려하고 세관은 위탁가공물자의 반출입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등 가공무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규범으로서 이 규정을 마련하였다.

최근 북한은 가공무역의 확대와 관련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0기 4차회의(2001. 4. 5)에서 채택된 『가공무역법』은 주목되는 법제정비의 하나이다.¹⁹¹⁾ 이 법은 1996년에 제정한 『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을 격상시킨 가공무역에 관한 일반법이자, 1998년 채택한 『무역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지닌다.¹⁹²⁾ 특히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만 한정하여 허용해 온 가공무역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북한은 외화수입을 늘리고 대외경제교류를 확대·심화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법제정비를 이룬 셈이며, 추후 남포·신의주·개성 등의 대외경제특구로의 발전 가능성이 예상된다.¹⁹³⁾

190) 이에 대한 全文은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통일원, 2000), pp.260~265 참조.

191) 2000년 1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78호로 제정되었다.

192) 가공무역법의 제정에 의해 가공무역규정이 폐지된 것은 아니다. 가공무역규정은 가공무역에 관한 특별법 내지 세부규정으로 존속하면서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내의 가공무역에 대하여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193) 『중앙일보』, 2001년 4월 24일, p.2, p.8.

가공무역법의 제정의 의미와 그 배경에는 알다시피 1990년대 들어서서 대외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대외경제개방법제의 정비를 통하여 법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를 중심으로 한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계로 인하여 북한의 외자유치를 통한 북한경제의 활로모색에는 별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외경제법제 및 외국인투자법제의 정비는 북한의 경제개방에 대한 의지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최근에(1999년부터) 북한은 1992년 제정된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한 관련법제를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이번 가공무역법의 제정도 대외무역의 발전을 통한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북한의 정책의지에 바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의해 강조된 이른바 ‘신사고’에 입각한 대외경제협력의 강화를 위한 환경개선과 관련한 조치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움직임은 올해 1월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상하이시 방문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의 대외경제부문의 발전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홍성남 내각총리의 2001년 과업에 관한 보고에서 대외무역의 발전, 즉 상품수출의 확대에 의해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내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번 북한의 가공무역법은 또 하나의 대외경제법제정비로서 북한의 대외무역의 강화를 위한 법적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의 경제개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¹⁹⁴⁾

북한의 가공무역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다음에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외국과의 경제교류의 확대를 통한 외화수입의 증대를 위한 법제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가공무역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외화수입을 늘리고 대외경제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둘째, 가공무역의 유형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공무역은 다른 나라에서 원료·반제품·부분품을 수입하여 가공·조립 후에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가공무역법은 위탁가공무역과 보세가공무역 등 여러 가지 형식의 가공무역을 인정하고 있다(제3조).

194) 이백규, “북한의 외국인투자법과 가공무역법”, 『북한 대외경제교류법령의 주요논점』 (법원행정처, 2001), pp.60~75.

셋째, 가공무역의 범위와 주체를 확대하고 있다.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같은 특수경제지대에서만 보세가공무역을 하고, 가공무역의 경우 북한내 모든 지역에서 가능하도록 하였다(제4조). 또한 가공무역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의 무역회사가 하되, 상급기관과 합의하여 필요에 따라 공장, 기업소도 가공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5조).

넷째, 외국기업의 대북투자를 위하여 진일보한 배려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컨대 기술원조를 위한 외국기술자의 초빙 및 기술전수를 위한 북한기술자의 파견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제33조) 외국기업의 품질검사원을 북한 내에 체류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제34조). 이는 그간 북한진출 외국기업 및 남한기업의 현안으로 대두한 문제로서 외국기술자의 파견에 대한 법적 보장을 한 셈이다. 이는 종래 상부의 허가 등의 통제하에 이루어진 사안으로 해당기업의 자율성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실리위주의 대외경제개방정책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성향상을 위한 제도적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먼저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가 가공무역사업에 지장을 준 경우에 영업중지 또는 가공무역승인취소, 해당물자의 몰수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제40조). 한편 가공무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공무역으로 국가에 이익을 가져온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에 대한 상금을 부여하는 우대제도를 도입하였다(제38조). 이는 자본주의의 시장경제방식의 통제수단과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센티브제를 제도화한 것으로 시장경제적 방식을 도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가공무역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만 국한하여 적용되었던 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1996. 2)을 승격시켜 법률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⁹⁵⁾ 이 법에 의해 나진-선봉지역에만 적용되던 가공무역이 북한 전역에서 가능하도록 법적 보장책이 마련되었다. 이는 실제로 위탁가공무역이 나진-선봉지역보다 입지조건이 유리한 평양·남포·신의주 등의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발전해온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북한은 특수경제지대의 확대를 통한 대외경제개방을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공무역

195) 가공무역법의 제정에 의해 가공무역규정이 폐지된 것은 아니다. 가공무역규정은 가공무역에 관한 특별법 내지 세부규정으로 존속하면서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내의 가공무역에 대하여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의 통일적 지도를 내각의 책임 하에 두고 있는 규정(제37조)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북한전역에서의 가공무역의 확대를 예상하게 한다.

북한에서 가공무역의 확대조치를 보여주는 가공무역법의 제정은 남북경협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가공무역법에 의한 가공무역에 대한 법적 보장책의 마련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위탁가공형태로 진출하거나 또는 진출하려는 남한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더욱이 개성, 신의주, 남포, 금강산 등의 특수경제지대의 설정을 통한 남한의 대북투자의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공무역법에 의한 대북투자보장제도의 개선은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공무역법은 대외경제개방을 위한 법적 보장이라는 측면과 함께 북한은 세계각국 및 국제기구와의 가공무역사업의 국제교류를 강화한다고 하면서도(제7조)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공동의 이익에 저해를 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가공무역승인을 금지하고(제12조), 전반적인 가공무역에 대한 당국의 지도통제를 강화함으로써(제36조~제40조) 체제안전보장을 위하여 제약을 가하고 있다. 경제개방과 개혁의 조치가 북한체제의 수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비록 가공무역법에 의해 경제개방의 확대, 자율성에 입각한 시장경제원리의 도입 등의 개선조치가 강조되고 있지만, 이 법에 의한 가공무역의 확대를 통한 북한경제의 발전은 이러한 법제도의 마련 뿐만 아니라 이의 규정대로의 시행을 통한 실천에 달려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북한 가공무역의 주요 상대국이 남한·일본임을 감안할 때 남북교역 및 대일 교역 활성화를 겨냥한 법률적 조치로 평가된다.¹⁹⁶⁾ 특히 최근 북한의 실리추구 경향,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노력 적극화 등 일련의 정책 변화와 관련, 이 법은 가공무역을 통해 침체된 수출(연간 6억~8억달러)의 증대를 모색하고 남포·원산·개성 등의 지역에 ‘특수경제지대’를 확대 조성하는 데 대비키 위한 적극적인 대외개방 조치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자율성 강조, 서방식 규제방식 도입 등 시장경제 요소를 종래보다 강도 높게 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¹⁹⁷⁾

196) 위탁가공무역은 남한·일본이 95% 이상을 차지하며, 그 비중은 전체 수출액의 18% 수준이다. 통일부 사이트(<http://www.unikorea.go.kr/>).

197) 위의 사이트.

VII. 農業法

북한은 1999년 2월 5일 제6장 78조로 구성된 농업법을 제정하면서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업생산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여 동법 제정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¹⁹⁸⁾ 이 법은 농업법의 기본으로 법의 사명과 농업이 인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 농업발전에서 이룩한 성과와 농업경리형태, 농업생산과 관리의 주인, 농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주요 원칙들이 규정되어 있다. 법의 사명으로서 농업생산과 농업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농업자원보호와 농업생산물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주의 농촌경리제도를 공고히 하는 것을 사명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⁹⁹⁾

농업이 인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농업발전의 성과로서 농업은 인민경제 2대부문의 하나이고(헌법 제34조), 과거 정확한 정책실현으로 농업생산수준향상 및 사회주의 농업경리제도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농업의 경리형태와 농업생산과 관리의 주인에 대한 규제로 농업의 경리형태는 국영경리와 협동경리로 이루어진 사회주의적 경리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국영경리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며 협동경리를 국영경리로 전환시킬데 대해 규정하고 농업생산과 관리의 주인은 농업근로자로 하고 있다. 기타 농업발전을 위한 주요 원칙으로는 농업을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고 주체농법을 철저히 구현하고, 농업의 물질적 토대를 강화하고 농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농업에 대한 국가의 지도를 옹고 하고 국제적 교류와 협조 구축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인민경제발전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위치의 중요성으로부터 지난 기간 북한에서는 정확한 농업정책을 실시하여 농업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농업생산 수준을 높였으며, 사회주의적인 농업경리제도를 굳건히 다져 놓았다고 설명한다.²⁰⁰⁾ 따라서 북한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업생산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것에 농업법 제정의 의미를

198) 『민주평통』, 1999년 4월 7일, p.2.

199) 『민주조선』, 1999년 1월 29일.

200) 『민주조선』, 1999년 1월 29일, ‘농업법에 대하여(1)’.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²⁰¹⁾

VIII. 閘門法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4차 회의(2001. 4. 5)에서 가공무역법과 함께 『갭문법』을 채택하였다.²⁰²⁾ 이 법의 구성은 총 5장 제51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상교통운수의 발전이 주된 목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 조항들이 갭문건설 및 관리, 선박 안전운항 등 수상교통운수 발전을 위한 관련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고, 수자원 종합이용관련 조항으로는 장마철 물관리, 환경보호 등 일부에 불과하다고 한다.²⁰³⁾

북한에서 ‘갭문’이란 수위(水位)가 다른 수면사이를 선박이 안전하게 통선하게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갭문의 역할은 교통운수와 관련 화물의 새로운 수송로 개발, 화물 수송비 절감, 수송거리 단축, 내륙 수상교통운수의 확충을 위한 것이며, 또한 안정적 용수 확보, 홍수예방, 전력 생산 등의 역할을 한다.

북한의 갭문법은 수상교통운수 발전을 통해 대내외의 극심한 수송난을 완화시키는 것 이외에도 향후 남한 및 외국선박의 갭문 이용과 관련, 갭문통과요금 등 외화획득을 겨냥한 실리지향적 경제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갭문법의 주요내용은 제1장 기본에서 갭문법 제정의 목적, 갭문법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 갭문건설에서는 갭문 설계, 갭문 시공기관, 갭문 구조물, 신호체계, 해양 관측·측정설비, 준공검사 등 갭문건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제3장 갭문관리에서는 갭문보호, 갭문보수정비, 갭문수위조절, 갭문 물관리, 갭문오염방지, 환경보호 등 갭문관리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으며, 제4장 갭문운영소에는 갭문운영기관의 임무, 갭문통과방법, 갭문 통과요금 산정 등 갭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

201) 『민주평통』, 1999년 4월 7일, p.2.

202) 이 법에 관한 소개는 http://www.unikorea.go.kr/kor/data/north/north_law_ 참조.

203) 북한은 『서해갭문』을 비롯하여 하단, 동암, 미림, 봉화, 성천, 순천, 철산 등 8개를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서해갭문』은 5천톤~2만톤급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 연장 800m의 갭문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사이트.

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감문지도 및 통제기관의 임무, 감문구조물에 대한 손해보상, 감문오염시 벌칙 등 감문 지도통제에 관한 사항을 됴으로써 국가의 교통운수 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 담보로 하고 있다.

감문법은 감문을 이용하는 다른 나라의 운수수단과 개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감문을 이용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감문통과요금을 물어야 한다. 감문통과 질서를 어겼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배와 인원을 억류할 수 있다고 한다.

북한의 감문법은 감문건설 및 관리에 관해 단순히 내부적으로만 규율하는 대내 경제법규라기 보다는 남한 및 외국선박의 물동량 증가에도 대비한 대외지향적 법률의 하나로서 대외개방정책에 대한 법적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²⁰⁴⁾

제 6 절 知的財産權關聯法制

I. 發明法

북한은 정무원 결정 제45호(1986년 6월 28일)로 승인된 『발명 및 창고안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발명권과 특허권이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북한은 공업소유권에 대해서 “공업, 농업, 상업, 건설운수, 보건을 비롯한 여러 경제부문과 과학기술분야에서 이룩된 지적 창조물들에 대한 창조자의 인격적 및 재산적 권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특허권, 상표권 같은 것을 통털어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한다.²⁰⁵⁾ 이 공업소유권은 우선 독점성을 가지며, 새로운 발명은 공개되기만 하면 그 누구나 그것을 자유롭게 이용하려고 하며 이러한 현상을 발명자 혼자서는 제지할 수 없기 때문에 발명자에게 국가적 보호와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²⁰⁶⁾

204) 위의 사이트.

205) 북한헌법은 제74조에서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의 법적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발명권에 대한 보호는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해 새로이 규정한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최정희, “공업소유권과 공업소유권보호제도에 대한 일반적 리해”, 『김일성 대학학보: 력사·법학』, 제46권 제2호(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0), p.61.

206) 1998년 6월에 『발명법』이 제정되었으나 아직 법전문은 공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관해서는 朴井源, 『북한의 공업소유권보호제도에 관한 연구』(한국법제연구원,

발명권과 특허권의 차이점을 권리의 효력기간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발명권의 효력기간은 무기한인데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기간은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업소유권은 특허권과 상표권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특징을 가진다.²⁰⁷⁾ 북한이 공업소유권을 중시하는 이유는 국제시장에서 기술무역이 대외무역의 한 형태로 등장하여 각국의 경제 및 과학기술적 협조와 교류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최근 경제관련 법규로서 1998년 6월 『발명법』이 채택되었다. 발명법 채택은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²⁰⁸⁾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갈 수 없으며 국가와 조국의 부강번영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발명법의 제정으로 발명등록의 신청과 발명의 심의등록,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 등 발명사업을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진행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법적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고 한다. 모두 5장 43조로 구성되어 있는 이 법은 북한의 낙후된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의 일환으로 풀이되며, 특히 특허권·발명권을 인정함으로써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선진 과학기술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²⁰⁹⁾

『발명법』의 골자를 보면, 발명법의 기본으로 이 법의 사명과 발명의 개념, 발명사업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이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은 먼저 발명등록의 신청과 발명의 심의등록,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과학기술과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사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발명 등록절차, 발명 심의·등록과정에서 객관성·과학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발명권이나 특허권 소유자의 권리보호,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의 지속적인 증대를 위한 대책,

2001) 참조.

207) 최정희, 앞의 책, p.63.

208) 북한이 신규 제정한 ‘발명법’ 법규 해설 보도. 『민주조선』, 1998년 6월 11일자 참조.

209) 『주간 북한동향』(통일부 정보분석국, 1999.8.7~8.13), pp.24~25 참조.

발명사업 분야에서 외국 및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력 증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특허권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의 기술도입과 관련한 특별 규정으로 1996년 8월 11일 정무원 결정에 의한 『외국기술도입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의하면, 기술도입의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즉,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설비와 제품의 생산기술, 특허권을 취득하지 않고 공개도 하지 않은 기술비결, 과학기술봉사 등이다. 이는 북한은 공화국의 경제발전과 현실적 요구에 맞게 외국의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외자유치 관련 규정을 제정한 임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이 규정은 다른 나라의 기술을 특허권의 양도, 특허권과 기술비결의 이용허가, 과학기술협조, 투자의 방법으로 공화국령역 안에 받아들이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하며,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과 기술도입계약을 맺어야 한다(제5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다른 나라의 기술 도입과 관련하여 의견이 상이할 때는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제20조 제1항)하며,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문제는 공화국의 중재 또는 민사소송 절차로 해결하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제20조 제2항)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였다.

II. 著作權法

북한은 2001년 4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4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을 채택하였다.²¹⁰⁾ 이것은 과학기술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북한의 정책목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

210) 북한 당국이 저작권법을 제정한 사실이 외부에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 4월 5일 개최한 제10기 최고인민회의 4차회의 직후였다. 당시 이 회의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참석해 중대한 대외개방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남한의 의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는 이 회의에서 올해 예산과 가공무역법·갑문법·저작권법 등 경제관련법률 3건을 승인하는데 그쳤다. 다만 세 법안 모두 대외개방정책과 관련한 것이어서 대외개방확대에 대비한 조처하는 관측을 불러왔다. “북한 지적 재산권 ‘사적 소유’ 인정”, 『주간동아』, 제294호, 2001년 7월 26일, 동아닷컴 사이트(http://www.donga.com/docs/magazine/weekly_donga/new.../wd294cc040.htm).

로 보인다. 북한은 아직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인 ‘세계저작권협약’과 ‘베른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저작권법의 제정은 이러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법적 기반구축으로 보인다. 또한 남북한간 다각적인 교류의 활성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이 저작권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남한에서의 북한의 저작물에 대한 적극적 권리 주장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저작권법은 전체적으로 볼 때, 베른협약 등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저작권 보호제도를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모두 6장 48개 조항으로 구성된 북한의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을 다음에 살펴본다.²¹¹⁾

이번 저작권법에서 특기할 것은, “개인의 이름으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것을 창작한 자가 가진다”(제16조 제1항)고 하여 개인에게 저작권의 사적소유를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를 외국 법인이나 개인에게 양도할 경우 해당기관의 승인(제21조), 기관·기업소·단체에 소속된 공민의 직무상 저작물에 대한 기관·기업소·단체의 우선적 이용권(제28조), 저작물의 이용시 저작료 지불에 있어 가격 제정기관에 의한 요금결정(제31조) 등의 규정에서 미루어 볼 때, 개인에게 완전한 저작권의 사적소유를 인정했다기보다는 북한의 사회주의적 특수성이 반영된 제한적 허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무튼 제한적이거나 개인에게 저작권의 사적소유를 인정한 것은 북한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작자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의 종류, 보호기간(개인의 경우 저작자의 생존중과 사후 50년)은 베른협약이 규정하는 국제적 수준과 동일하다.

한편 제47조에서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있는 개인 뿐 아니라 단체 등의 대표자에게도 행정벌 또는 형벌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저작권법은 우리 저작권법과 달리 법에 구체적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책임 추궁은 북한 형법 관련조항(제98조)에 따라 행해질 것으로 보인다.

211) 이에 관해서는 李垠廷, “북한의 지적재산권”, 『北韓法研究』, 제5호(北韓法研究會, 2002), pp.160~169.

알다시피 남북한의 경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더불어 남북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왔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저작권을 중심으로 한 분쟁사례²¹²⁾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북한 당국은 남한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북한 당국이 직접 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12) 예컨대 ‘신필름사건’(서울고법 1999. 10. 12. 결정, 99라130), 북한의 조선음악가 동맹 중앙위원회 성명을 통한 저작권 주장, 북한발행 ‘동의보감’에 대한 국내 출판권자인 여강출판사의 고소사건 등을 들 수 있다. 동아닷컴, 앞의 사이트.

제 4 장 外國人投資 및 對外經濟 關聯法制

제 1 절 外國人投資關聯法制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 하의 민족자립경제원칙에 입각한 북한경제는 사회주의권의 몰락의 여파로 침체국면에 빠지고 말았으며, 경제난타개는 정권안정과도 직결될 만큼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북한은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을 추진하고,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 결정(제74호)으로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고 나진·선봉·청진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여 대외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난타개를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정책의 법적 뒷받침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법제를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이 법제들은 전술하였듯이 1992년 헌법의 외국인의 합법적 권익보장과 외국과의 합영·합작의 장려를 위한 규정(제16조, 제37조)에 근거하여 북한은 외국인투자를 위한 기본법으로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한 『외국인기업법』·『합작법』을 제정(1992. 10. 5)한 데 이어 합영법 시행세칙을 개정(1992. 10. 16)하는 등의 입법조치를 취하였다. 1993년에 들어와서는 외국인투자관련법의 정비를 가속화하였다.²¹³⁾ 즉,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외화관리법·자유경제무역지대법 등의 제정(1993. 1. 31), 지하자원법(1993. 4. 8) 및 토지임대법의 제정(1993. 10. 27), 외국인투자은행법(1993. 11. 24),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출입규정(1993. 11. 29), 외국인투자기업 노동규정(1993. 12. 30) 등을 제정하였다.

또한 1994년에는 합영법 전문 개정(1994. 1. 20), 자유무역지대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 규정·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등의 제정(1994. 2. 21),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1994. 4. 28) 및 자유무역항규정의 제정(1994. 5. 25) 등을 통해 여러 대외경제개방 및 외자유치법률을

213) 북한의 外國人投資關係法에 관한 분석은 權五乘, “北韓의 外國人投資關係法”, 『北韓研究』, 제4권 4호(大陸研究所, 1993 겨울), pp.99~120; 李啓滿, “최근의 북한 外國人投資關聯法”, 『北韓研究』, 제5권 3호(大陸研究所, 1994 가을), pp.175~199.

마련하였다.²¹⁴⁾ 아울러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의 후속조치로써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체류 및 거주규정(1994. 6. 27)을 마련하고, 이어 외화관리법 시행규정(1994. 9. 7)과 토지임대법 시행규정(1994. 12. 28)을 제정하였다.²¹⁵⁾ 이런 가운데 1993년 12월에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확대하고, 최고인민회의 제9기 6차회의에서는 ‘나진·선봉시’의 개편조치를 취하였다.²¹⁶⁾ 그리고 1995년에는 ‘외국인투자은행법 시행규정’과 ‘대외경제계약법’(1995. 2. 22)과 ‘자유경제무역지대 세관규정’(1995. 6. 28), ‘합영법 시행규정’과 ‘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집임자대리업무규정’(1995. 7. 13), ‘자유경제무역지대 건물양도에 관한 저장규정’(1995. 8. 30) 등을 갖추었다.²¹⁷⁾

이러한 법제정비는 그 후속법규의 마련 및 기존법규의 개정작업을 통해 지속되고 있다. 특히 1998년 헌법개정에 의해 개정된 경제조항²¹⁸⁾에 의해 더욱 강화되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법제정비는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남북한의 경제교류 및 협력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남북경협을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에서 발전되어 나아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 북한은 일부 외국인투자관련 법규를 개정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1999. 2. 26)으로 외국인투자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외국인기업법, 합작법, 합영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화관리법, 외국투자은행법, 토지임대법 등 9개의 법률이 개정되고, 이후 같은 해 5월까지 내각 결정으로 외국인투자기업노동규정 등 5개의 규정이 개정되었다.²¹⁹⁾ 이

214) 이러한 북한의 對外開放關聯法律들의 全文은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규집」, 앞의 책, pp.3~420.

215) 이들 규정에 대한 분석과 全文은 「주간 북한동향」, 제198호(통일원 정보분석실, 1994. 10. 9~15), pp.43~109.

216) 이에 관해서는 崔壽永,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 활성화 방안”, 『統一研究論叢』, 제3권 1호(民族統一研究院, 1994), pp.63~88; 「월간 북한동향」, 통권 제158호, 1994년 8월호(통일원, 1994. 9), p.25.

217)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제의 현황에 관해서는 申雄湜·安成祚,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한국무역협회, 1998), pp.55~58.

218) 북한의 1998년 헌법개정으로 변화된 경제조항에 관해서는 張明奉, “北韓 社會主義 憲法 改正(’98. 9. 5)의 背景·內容·評價”, 『公法研究의 回顧』, 韓國公法學會 第79回 學術發表會 發表論文(韓國公法學會, 1998. 12. 19), pp.24~44.

219) 이번 외국인투자관련 법규 개정 이유는 우선 1998년 헌법 개정에 따른 정부 조직

번 외국인투자관련 법규 개정 배경은 우선 1998년 헌법 개정에 따른 정부조직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과 함께 중앙정부의 지도·관리를 강화하면서 실용적인 측면에서 개선조치를 채택하기 위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음에 주요 개정규정에 비추어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본다.²²⁰⁾

첫째, ‘외국인투자’로부터 ‘해외조선동포의 투자’를 분리하였다. 종래의 외국인투자법규에서는 ‘해외조선동포투자’를 ‘외국인투자’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규정을 보면,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라는 대목을 ‘해외조선동포’라고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다(외국인투자법 제5조).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관련 법규에서 공화국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의 투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있다.²²¹⁾ 그러나 남한기업 및 기업인의 대북한투자는 외국인투자관련 법규에서 언급되지도 않고 새로이 마련되는 해외조선동포투자관련 법규에서도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북한은 남한기업과 기업인의 대북한투자에 대해 사실상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하여 처리할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²²²⁾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은 남북경협보장을 위한 합의를 채택한 것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다. 한편 개정 외화관리법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북한 영역 안에서 외화를 이용하는 조선동포²²³⁾에게도 이 법의 적용을 규정함으로써 남한주민에 대한 외화관리법의 적용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변화를 반영하는 것과 함께 중앙정부의 지도·관리를 강화하면서 실용적인 측면에서 개선조치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1999년 9월 27일; 이찬우, “북한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개정”, <http://www.kotra.or.kr/nk/>. p.1.

220) 북한의 개정 외국인투자법제의 조문비교는 한국투자무역진흥공사(KOTRA) 북한실 website (<http://www.kotra.co.kr/nk/nation/law/2002html>) 참조.

221) 여기에는 투자지역의 제한이 아닌, 투자에 대한 변경된 우대조치를 채택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예컨대 개정 합영법과 합작법에서는 “해외조선동포와의 합영(합작) 기업에 대해서 세금 감면, 유리한 토지 이용 조건 제공 등의 우대를 부여한다”(개정 합영법 제7조, 개정 합작법 제6조)고 되어 있다. 위의 문, 같은 면.

222) 이에 대하여 북한에서 남한주민은 북한에서 ‘남조선동포’로 불리며 ‘해외조선동포’와는 구별되고 있으며, ‘남한동포’와 ‘해외조선동포’에 대한 당과 당국의 대응조직이 다르다는 점을 들고 있다. 위의 문, 같은 면.

223) 개정 외화관리법은 제10조에서 “공화국 영역 내에서 외화를 이용하는 조선동포에게도 본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조문상 “공화국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이라는 대목을 삭제한 것이다.

둘째, 외국인투자 대상 지역을 기본적으로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로 한정하여 규정하였다. 즉, 개정전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로만 설치가 제한되었던 것은 외국인기업이었으나, 합영 및 합작기업도 기본적으로 나진·선봉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나진·선봉지역 이외에도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었던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으로 개정되었다.²²⁴⁾ 외국인투자를 나진·선봉지대로만 국한한 것은 중국의 광범위한 경제개방정책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의 지도관리 강화이다. 개정 외국투자관련 법규에서는 『중앙대외경제기관』이라는 명칭을 『중앙무역지도기관』으로 수정하였다.²²⁵⁾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서는 인프라 건설부문은 총투자액 2,000만달러, 그 이외 부문에서는 1,000만달러까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승인권이 나진·선봉지대 당국에 주어져 있었으나,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은 ‘중앙무역지도기관’이 설립 신청을 수리해 심의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진·선봉시인민위원회』는 현지에서의 신청을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제기할 권한만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8조).

넷째, 외국인투자에 있어 실용적인 면이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합영·합작·외국인기업 이외에 외국기업도 북한 내에서 소득이 있으면 ‘외국투자기업’으로 되며, 외국인단독투자기업의 업종 추가·변경도 명시되어 있다.²²⁶⁾ 또한 노동력 채용시 북한 담당기관과 계약을 해야만 하는 강제 규정이 임의 규정으로 바뀌었으며(개정 외국인투자법 제16조), 초과근무, 임금기준도 유연하게 변경 가능토록 하였다(개정 외국인투자기업노동규정 제24조, 제26조).

224) 북한은 1998년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나진·선봉지대를 방문하였을 때 ‘자유’라는 표현을 삭제하라는 지시와 1998년 헌법개정에서 ‘특수경제지대’의 개념을 신설한 바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의 명칭을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개칭하였다고 한다. 『조선일보』, 1999년 9월 27일.

225) 이찬우, 앞의 문, 2면. 특히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은 나진-선봉지대의 지도주체를 중앙대외경제기관에서 내각으로 변경하였으며(제3조), 지대관리운영기관의 경우도 ‘중앙대외경제기관과 지대당국’에서 ‘중앙무역지도기관, 해당 중앙기관과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로 개정되었다(제8조).

226) 개정된 외국인투자법 제14조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과 그 지사, 대리점 등은 북한 법인이 되지만, 외국기업과 그 지사, 대리점 등은 북한 법인이 되지 않는다.

제 2 절 對外經濟法制

I. 對外經濟契約法

대외경제계약법의 제정(1995. 2. 22)은 북한의 대외정책의 변화를 보여주는 입법의 하나로서 외국인투자법제와 관련하여 주목된다.²²⁷⁾ 이 법에 의해 북한에서 대외무역·투자 및 서비스관련 제반 상업계약의 체결형식 및 절차와 계약이행의 내용과 효과 등에 관한 법제의 기본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이 법 시행 이전에는 북한의 대외경제계약은 외국인투자관계법과 북한민법²²⁸⁾ 등에 의해 규율됨으로써 계약체결의 절차와 방법, 계약불이행시 손해배상, 계약강제이행수단, 분쟁해결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법적 문제들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 법에 의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²²⁹⁾

이에 의하면, 이 법의 목적은 북한기업과 외국기업간 대외경제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규율하며 계약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북한과 외국과의 경제적 협조와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두었다(제1조). 북한기업이 외국기업과 체결하는 대외경제상사거래는 이 법에 따라야 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해당법규(예컨대 『민법』, 『사회주의상업법』, 외국인투자관련법 등)에 의거하도록 하였다(제8조). 이 법은 북한기업과 외국기업간의 국제상사거래를 위한 대외경제계약, 즉 모든 형태의 무역·투자·봉사(서비스) 등에 관련한 계약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제2조). 한편 대외경제에 있어 외국과 맺은 조약과 관례를 존중한다는 원칙규정(제5조)은 북한이 경제법적 측면에서 국제화를 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²³⁰⁾ 그

227) 대외경제계약법의 全文은 『月刊 朝鮮資料』, 第412號(東京: 朝鮮問題研究所, 1995年 9月號), 40~44頁.

228) 북한민법상 민사계약에 관한 북한의 설명은 조용봉, “민사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43권 4호(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7), pp.64~68.

229) 신웅식, “북한의 대외경제계약법”, 『월간 경영법무』, 제17호(한국경영법무연구소, 1995년 8월), p.20; 『북한의 중재제도 - 국가중재재판제도를 중심으로 -』, 통일사법정책자료 95-IV(법원행정처, 1995), pp.135~136.

230) 신웅식, “북한의 대외경제계약법”, 위의 논문, p.21.

러나 북한에서 대외경제계약 당사자는 대외경제를 하도록 승인받은 기관·기업소·단체로 한정되어 있어(제3조) 개인은 이 범위에서 제외되며, 더욱이 대외경제계약에는 내각의 대외경제기관의 감독·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제7조) 그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²³¹⁾

II. 對外民事關係法

북한은 역시 대외개방관련법의 하나로 ‘대외민사관계법’을 채택하였다(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1995. 9. 6). 이 법은 북한 최초의 국제사법으로서 북한의 섭외적 법률관계에 관한 재산 관계와 신분 관계 뿐만 아니라 국제 거래와 국제 민사소송에 관한 준거법으로서 북한의 대외 개방 정책과 관련한 입법 조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북한 민사소송법의 일부 규정을 비롯하여 실질적인 의미의 국제사법이 있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형식적 의미의 국제사법, 즉 단행법률로서의 국제사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1995년 9월에 제정된 대외민사관계법은 북한 최초의 국제사법이라고 할 수 있다.²³²⁾ 대외민사관계법은 모두 5개장 62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5개장은 ‘대외민사관계법의 기본’, ‘대외민사관계의 당사자’, ‘재산관계’, ‘가족관계’, ‘분쟁해결’로 구성되어 있다.

대외민사관계법상의 ‘대외민사관계’란 섭외적 사법관계, 즉 그 구성요소의 일부(예를 들어 당사자의 국적, 목적물의 소재지, 행위지 등)가 타국과 관련이 있는 사법관계를 말한다. 이 법은 북한의 법인, 공민과 다른 나라 법인, 공민 사이의 재산 및 가족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하며 민사분쟁에 대한 해결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다(제2조). 이와 관련, 북한의 법학자인 박명희는 대외민사관계법을 ‘대외민사관계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부문법의 하나’이며, 대외민사관계는 ‘대외매매관계, 해상수송관계, 대외보험관계와 같은 재산관계와 외국공민들의 상속관계, 가족관계와 같은 다른 나라 법인, 공민들을 상

231) 이 밖의 대외경제계약법에 관한 설명은 위의 논문, pp.20~26.

232) 북한의 『법학사전』에서는 국제사법에 관하여 “외국과 관련된 민사상 법률관계를 규제하는 국내법의 한 부문으로서 외국과의 경제적 및 문화적 거래과정에서 공민, 법인들 간에 발생하는 민법상 또는 가족법상 법률관계를 규제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학사전』, 앞의 사전, p.86.

대로 하여 이루어지는 재산, 가족관계를 그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²³³⁾

대외민사관계법의 제정목적은 “대외민사관계에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보장하며,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공고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에 있다(법 제1조).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대외민사관계법의 입법목적은 두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대외민사관계에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대외민사관계법을 제정하는 이상 이 법이 지향하는 목적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다. 민사법의 대원칙은 사적 자치 내지 당사자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를 실현시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공고하게 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대외민사관계 중에서도 특히 재산적 권리·의무관계의 설정이 북한의 대외경제교류·협력 확대·발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운용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목적은 북한이 처한 심각한 경제난 타개를 최우선적인 국가목표로 삼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국가정책수단으로서의 대외민사관계법도 역시 경제난 해소에 직·간접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하고 운용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²³⁴⁾

대외민사관계법은 앞으로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될 경우 남북한 주민과 법인들간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이 법을 통하여 국제 교류의 길을 열게 되었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 및 대외 개방 정책으로 발생하는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에 따른 사법상 섭외적 법률관계의 안전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

233) 박명익, “공화국대외민사관계법의 몇가지 특징에 대한 이론적 고찰,”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43권 4호(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7), p.53.

234) 대외민사관계법의 제정은 1992년 4월의 개정헌법에서 국가의 외교활동(제17조) 및 외국무역의 발전(제36조)을 국가활동의 과제로 하고 있고 외국기업과의 합영사업의 장려를 선언(제37조)하고 있으면서,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외화관리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인체류 및 주거규정, 대외경제계약법 등 20여건의 외국투자관련법 제정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할 것이다. 조은석·김광준·손희두·이용·제성호,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2000-12(서울: 통일연구원, 2000), pp.99~100.

Ⅲ. 對外經濟仲裁法

북한은 1999년 8월 『대외경제중재법』을 채택하였다.²³⁵⁾ 북한은 대외경제 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외국투자기업과의 분쟁 발생시 이의 해결을 위한 통일된 기본법규가 없어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새로이 제정된 『대외경제중재법』은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또 하나의 법제정비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²³⁶⁾

북한은 경제개방정책의 일환으로 1992년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한 이후 60여개에 이르는 관련 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왔다. 그러나 투자유치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북한의 낮은 대외신인도, 정보의 비공개성, 열악한 투자환경과 투자관련 법체계의 미비 등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노력의 일환으로 채택한 『대외경제중재법』은 북한에서 대외무역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외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외국의 대북투자의 확대를 도모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는 분쟁 발생시 이의 해결을 위한 총괄법으로 1995년에 제정된 중재법이 있으나 이는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이다. 대외중재와 관련해서는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대외경제계약법 등 단행법률별로 분쟁해결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총괄하는 기본법은 없었다. 다만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산하의 무역중재위원회 사건심의규정(1989. 1)이 무역중재를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었으며 무역중재는 이 규정을 적용해 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대외경제중재법 채택으로 법해석 및 적용상의 모호성이 제거되어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이익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35) 1999년 8월 2일, 『중앙방송』(평양) 보도.

23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이트(<http://www.kotra.co.kr/main/info/nk/letter>).

중전에는 중재제도가 국가중재와 무역중재로 나뉘어져 있고 법해석에 따라 중재기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었으나 동법 제정으로 대외무역중재위원회, 해사중재위원회로 중재기관이 일원화되었다. 또한 중재대상도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기업, 해외조선동포 등으로 명시하였다. 이중 해외조선동포를 포함시킨 것이 특기할 만한데 이는 재일동포 기업과의 무역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리인 및 재결원 자격요건으로 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포함하였다. 동법 제7조에서 국제조약과 관례를 존중하며 국제기구, 타국과의 협조와 교류를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 이는 이전 중재제도의 중재결과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것을 감안한 규정이다.

또한 분쟁해결 원칙으로 공정성, 신속성을 명시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였다. 동법 제12조에서 접수결정여부를 10일내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 조항, 동법 제31조에서 중재심리기간을 5개월로 제한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제1조에서 분쟁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보호를 천명함으로써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기존의 태도보다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에서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노력의 일환으로 채택한 「대외경제중재법」은 대외무역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외경제와 관련하여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외국의 대북투자의 확대를 도모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외경제중재법』은 총 4개장(제1장: 대외경제중재법의 기본, 제2장: 중재제기, 제3장: 중재심리, 제4장: 재결과 그 집행) 43개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음에 이 법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살펴본다.²³⁷⁾

첫째, 북한의 대외중재와 관련한 기본법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의 1995년 『중재법』은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으로 기능함으로써 북한의 대외중재와 관련해서는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대외경제계약법 등 단행법률별로 분쟁해결을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외경제중재법』에 의해 무역중재에 관하여 법해석 및 적용상의 모호성이 제거되어 북한의

237) 이에 관해서는 朴井源, 『北韓의 對外經濟仲裁法에 관한 研究』(한국법제연구원, 2000), pp.104~114.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권익보호의 강화가 기대된다. 이 법은 대외경제분쟁해결의 제도와 질서를 세워 분쟁사건을 정확히 심리해결하고 분쟁당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그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제1조).

둘째, 중재기관을 일원화하였다. 종전에는 중재제도가 국가중재와 무역중재로 나누어져 있어 법해석에 따라 중재기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었으나 대외경제에 관한 분쟁해결을 『대외무역중재위원회』와 『해사중재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였다(제2조).

셋째, 중재대상에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기업·해외조선동포 등을 명시함으로써 이들의 권익보호를 분명히 하였다(제4조). 특히 해외조선동포를 포함한 것은 재일동포 기업과의 무역강화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중재대리인 및 재결원 자격요건에 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포함시키고 있다.

넷째, 대외경제중재에 관하여 국제조약 및 국제적 관례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제7조). 종전 중재제도에서 중재결과의 실효성을 보완한 것으로 대외경제관련법에서 국제법준중의 의사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다섯째, 중재제기와 심리에 있어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였다. 분쟁당사자의 중재위원회에 대한 중재제기(제8조)와 중재위원회의 접수·부결 결정(제12조), 피신청자의 맞중재 제기(제14조), 중재신청자의 중재제기 변경과 취소 내지 청구포기(제15조)에 대한 규정이 그러하다. 또한 중재심리는 재결원 1명 또는 3명으로 구성되는 ‘재결원협의회’가 하며, 재결원은 분쟁사건처리에서 독자적이다(제18조, 제19조). 중재심리는 중재위원회의 소재지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였다(제26조).

여섯째, 분쟁해결 원칙으로 공정성과 신속성을 명시하여(제6조) 당사자의 권익보장을 강화하고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기존의 태도에서 보다 발전된 면모를 보이고 있다. 분쟁해결의 공정성·신속성 원칙강조로 외국인과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배려하고 있다. 중재위원회의 중재제기 후 10일내 접수결정(제12조), 중재심리기간의 5개월 제한(제31조) 등이 그 예이다.

무릇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은 북한의 대외중재와 관련한 기본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²³⁸⁾ 이 법이 대외경제분쟁해결의 제도와 질서를 세워 분쟁사건을 정확히 심리해결하고 분쟁당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라는 목적(제1조)이 그대로 실현되는 경우 그간 북한의 대외무역분쟁에 관한 중재의 발전적 면모를 보이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법에 의해 북한의 대외경제에 관한 분쟁해결은 『국제무역중재위원회』와 『해사중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제2조). 그리고 중재대상에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기업·해외조선동포 등을 명시함으로써 이들의 권익보호를 분명히 하였으며(제4조), 대외경제중재에 관하여 국제조약 및 국제적 관례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제7조). 이는 북한이 보다 국제사회의 참여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며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의 입장을 대외에 천명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대외경제중재법의 시행에 의해 북한의 대외경제중재제도에 의해 무역중재에 관하여 다소 법해석 및 적용상의 모호성을 제거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북한의 대외경제중재제도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 그 대상의 확정에서 불충분하다. 이 법의 시행에 따른 사례검토가 뒤따라야 하지만, 이에 관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남북간의 경제협력부문에서 남북의 교역량과 경험실적은 점차 증대하고 있지만, 그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해결사례는 공식화되지 않고 있다.²³⁹⁾

북한이 ‘대외경제중재법’을 채택한 것은 북한이 1992년 ‘외국인투자법’ 채택 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외자유치관련 법규 정비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즉, 북한의 외국인투자유치법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법안의 미비성, 불완전한 법률구조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외국인투자유치, 대외무역이 부진한 상황에서 당면한 경제난 해결을 위한 가능한 방안은 결국 외자유치 확대 및 대외무역 활성화에 있다는 북

238) 한편 북한의 1995년 『중재법』은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으로 기능함으로써 북한의 대외중재와 관련해서는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대외경제계약법 등 단행법률별로 분쟁해결을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외경제중재법』에 의해 무역중재에 관하여 법해석 및 적용상의 모호성이 제거되어 북한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권익보호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239) 북한의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는 대외경제중재법의 제정 이후 3건의 분쟁해결사례가 있으며, 나진-선봉무역지대에 지부설치가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DI 북한경제리뷰』 제2권 6호(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팀, 2000), pp.18~19.

한 당국의 상황인식을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된다. 금번 ‘대외경제중재법’ 채택은 소극적,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계속적인 법규정비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²⁴⁰⁾

IV. 外貨管理法

북한은 1993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외화관리법』을 채택하고,²⁴¹⁾ 이어 1994년 6월 27일 정무원 결정으로 『외화관리법 시행규정』을 승인하였다. 외화관리법은 각 개별법제에 산재해 있는²⁴²⁾ 외화관리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외국기관·외국인·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 및 북한주민에까지 적용되는 외화관리의 일반원칙을 최초로 입법화한 것이다.²⁴³⁾

다음에 외화관리법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개관한다.

첫째, 이 법은 외화를 이용하는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와 국민에게 적용하며, 북한 영역안에서 외화를 이용하는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투자가, 외국인과 조선동포²⁴⁴⁾에게도 적용한다(법 제10조, 시행규정 제3조). 외국기관에는 대사관·영사관·무역 및 국제기구대표부 등이 포함된다(시행규정 제3조).

둘째, 북한은 외화관리기관을 통해 북한 영역 안에서 거래되는 외화를 관리한다(법 제4조). 외화관리기관은 외화관리사업을 지도하고, 외화의 수입

24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앞의 사이트.

241) 이는 같은 해 4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법령으로 승인되었다.

242) 북한에서 외환에 관한 규정은 1985년 합영법 시행세칙이 최초였으며, 여기서의 외화관리원칙은 『외화관리법』에 반영되었다. 1992년 『외국인투자법』의 제정에 의해 외국인투자법제의 골격이 갖추어진 이후에도 외화관리규정은 개별법률에 흩어져 있었으며, 그 내용은 기업운영을 통해 얻은 합법적 이윤과 기업청산 후 남은 자금의 국외송금보장과 같은 원칙규정에 불과한 것이었다(예컨대 『외국인투자법』 제20조, 『합작법』 제15조, 『외국인기업법』 제22조 등).

243) 申雄湜·安成祚, 앞의 책, pp.235~236.

244) 이 조항에서 “공화국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는 ‘조선동포’라고 개정되었다(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 이에 관해서는 외국인투자법제의 개정내용 부분에서 후술한다.

을 통일적으로 장악하며 그 지출을 통제한다(시행규정 제5조). 여기서 말하는 외화는 ‘외국화폐자금’의 준말로 외국으로부터 필요한 상품을 사오거나 외채를 상환하며 화폐형태로 차관이나 원조를 주고 받을 때 이용하는 국제구매기관 및 지불수단의 총체를 의미한다. 외화관리기관의 임무는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규범집행의 방법론적 지시, 외국환자은행²⁴⁵⁾과 외국투자은행의 외국환자업무²⁴⁶⁾범위의 승인, 조선원에 대한 외국환의 기준시세의 확정 등이다(시행규정 제6조).

셋째, 북한은 중국·베트남 등 사회주의국가가 그러한 것처럼 국가가 외화의 수급을 계획에 의해 장악·관리하는 외화집중관리제도 하에 외화를 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 내에서는 외화현금의 유통이 금지되고, 외화현금은 지정된 은행 또는 외화교환소²⁴⁷⁾에서 조선원과 교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외환결제에는 외화와 바꾼 조선원돈자리(‘외화돈자리’)를 통하여야 하며, 북한 영역 내에 있는 외국기관·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 은행에 있는 외화돈자리를 통하여 거래결제를 할 수 있다(시행규정 제10조). 그리고 북한영역 안에서 외화의 매매·저금·예금·저당과 같은 거래는 외국환자업무를 하는 은행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법 제6조, 시행규정 제11조). 아울러 조선원과 교환할 수 있는 화폐와 환자거래에 이용할 수 있는 외화는 외화관리기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8조, 시행규정 제12조). 북한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는 법적으로 보호되며 상속이 가능하다(법 제9조). 생산 및 봉사활동으로 얻은 외화와 노동보수로 얻은 외화, 외국으로부터 송금하여 왔거나 가지고 온 외화는 법적으로 보호되며 그것을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시행규정 제13조).

245) 외국환자업무를 전문으로 취급하도록 승인된 외국환자전문은행은 무역은행이지만, 무역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도 외화관리기관의 승인하에 외국환자업무를 취급이 가능하다(법 제5조, 시행규정 제7조). 무역은행 이외에 북한에서 외화를 취급하는 은행은 조선대성은행, 창광신용은행, 고려상업은행, 조선합영은행, 금강은행, 황금의 삼각주 은행 등이 있으며, 외국투자은행으로는 ING동북아은행, 페레그린-대성은행 등이 있다.

246) 외국환자업무란 외화를 팔고 사거나 국가간의 채권채무를 외화로 발생·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47) 외화교환소(외화교환대리소 포함)는 외화관리기관이 정한 곳에 설치할 수 있다(법 제6조, 시행규정 제9조).

넷째, 외화는 무역계약과 지불협정에 따르는 거래,²⁴⁸⁾ 무역외 거래,²⁴⁹⁾ 은행에서 조선원을 사거나 파는 거래, 자본거래²⁵⁰⁾에 이용할 수 있다(법 제 11조, 시행규정 제15조). 경제거래에 따르는 자금결제는 거래은행에 개설된 조선원돈자리, 외화원돈자리 또는 외화돈자리를 통하여 무현금으로 한다. 조선원돈자리에는 북한영역 내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조선원을 넣으며, 이 돈자리에 있는 돈은 외화로 전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대외경제거래에 따르는 외화결제는 신용장, 송금, 대금청구, 지불위탁과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다(법 제12조, 시행규정 제17조).

다섯째, 외화사용에 관해서는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는 거래은행에 외화원돈자리를 두어야 하고(시행규정 제18조1문), 외화원돈자리에는 기관·기업소·단체가 번 외화를 조선원으로 전환하여 넣어야 한다(법 제13조1문, 시행규정 제18조2문). 기관·기업소·단체는 번 외화를 해당거래은행에 입금시켜야 하며,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없이 외화를 외국의 은행에 예금하거나 기관·회사·기업체·기타 경제조직 및 개인에게 맡겨둘 수 없다(시행규정 제26조). 또한 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의 합의하에 무역은행이나 북한 영역 안의 다른 은행에 조선원, 외화원 또는 외화돈자리를 둘 수 있다(시행규정 제20조1문). 이 시행규정은 법 제18조2문과 달리 북한의 은행을 무역은행 하나로 제한하고 다른 나라 은행도 북한영역 안의 다른 은행으로 변경한 것이다.²⁵¹⁾ 그리고 외국기관, 즉 대사관·영사관·무역대표부와 같은 외국 기관들은 무역은행에 조선원, 외화원 또는 외화돈자리를 둘 수 있다. 이 때 외화원돈자리 또는 외화돈자리에는 외국기관유지비로 보내온 외화를 조선원으로 전환하여 넣거나 외화 그대로 넣으며 그것을 현금 또는 무현금으로 쓸 수 있다(시행규정 제19조). 그리고 외국인은 외국으로부터 송금하여 왔

248) 무역거래는 상품의 수출입 및 그와 직접 관계되는 거래를 의미한다(시행규정 제15조 제2항).

249) 무역외 거래는 여비 또는 이자, 배당금, 경비, 유지비와 같은 지불거래, 봉사제공과 관련한 거래, 증여, 상속, 보증과 관련한 거래를 의미한다(시행규정 제15조 제3항).

250) 자본거래는 예금, 신탁, 대부, 채무보증, 외화지불수단 또는 채권의 매매, 증권의 발행 또는 취득, 부동산취득 같은 거래가 포함된다(시행규정 제15조 제4항).

251) 여기서 북한영역 안의 다른 은행이란 무역은행을 제외한 북한의 다른 은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영은행 등 외국투자은행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申雄湜·安成祚, 앞의 책, p.243.

거나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북한은행에 팔거나 저금할 수 있다(법 제16조, 시행규정 제42조1문). 외국인이 외화를 교환할 경우 ‘외화와 바꾼 돈표’(태환권)²⁵²⁾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여섯째, 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 외화로 표시된 수표, 송금증서, 여행자수표, 귀금속 등을 북한에 반입하는 것은 세관에 신고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법 제22조, 시행규정 제46조). 그러나 반출시에는 많은 제약이 가해진다. 즉, 외화현금은 은행이 발행한 외화교환증명문건 또는 입국할 때 밝힌 금액 범위 내에서만 북한 영역 밖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법 제23조). 다만,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외화교환증명문건이나 세관신고없이 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 외화지불수단을 북한 영역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고 하여(법 제25조, 시행규정 제53조) 지대에서의 외화현금·외화유가증권반출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일곱째, 외화관리질서를 위반한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적으로 거래한 외화와 물건은 몰수하며 필요한 경우 은행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29조).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30조, 시행규정 제57조, 제58조). 더욱이 이 법을 위반하여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에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31조, 시행규정 제61조).

V. 羅津-先鋒經濟貿易地帶法

북한은 1991년 12월 나진-선봉일대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한(정무원 결정 제74호) 이래 이 지역의 개발과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리고 북한은 이 지대를 개발하기 위한 기구로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 대외경제협력총국, 나진-선봉 지도국, 조선설비총회사 등을 설치하여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왔다.²⁵³⁾

252) 태환권은 유가증권이면서 현금과 같은 방법으로 유통되며 잔여 태환권은 외화와 재교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외화와 바꾼 조선원’은 지정된 상업·봉사부문에만 쓸 수 있으며, 외국인이나 북한주민 등 개인 사이에는 외화와 바꾼 조선원을 팔고 살 수 없고, 또한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는 외화와 바꾼 조선원을 쓸 수 없다(시행규정 제45조).

253)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에 관해서는 『라진-선봉 자유무역지대 투자환경』(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5), pp.7~187.

그리고 나진-선봉무역지대의 창설과 운영에 관한 법제도를 마련하였다. 현재 북한은 대외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를 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가공, 금융, 봉사지역으로 선포한 일정한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1993년 1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결정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채택하였으며, 앞서 언급하였듯이 1999년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으로 개정되었다.²⁵⁴⁾ 이 법은 북한의 경제무역지대의 기본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유형, 세제, 토지임대, 임금, 출입국, 외화관리 등에서 다른 북한지역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우대조치를 줌으로써 외국인의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투자확대를 유인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을 중심으로 그 관련법제를 정비해 나감으로써 계속 제도적 보완을 도모하고 있다.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고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법 제1조)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란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 결정 제74호에 의하여 지정된 나진·선봉지역을 말한다.²⁵⁵⁾ 자유경제무역지대의 법적 지위 내지 여기에 적용되는 법규에 관하여서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도 국가가 특별히 수립한 제도와 질서에 따라 경제무역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고(동조제2항),²⁵⁶⁾ 그 구체적 내용으로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내에서의 모든 활동은 이 지대와 관련한 북한의 법과 규정²⁵⁷⁾에 따르되,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254)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다른 외국인투자법제의 개정과 함께 개정되었다.

255) 이 결정에서는 라진시의 14개洞, 리와 선봉군의 10개 리를 포함하는 621km²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하였으나, 그 후 확대되어 현재 총면적은 746km²에 이르고 있다.

256) 개정법은 제2조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된다”고 규정했던 구조문을 삭제하였다. 이는 이 지대에 대한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환경의 조성과 관련하여 완화된 북한의 정책전환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57) 여기서 자유경제무역지대와 관련한 법과 규정이라 함은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의 제반내용과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외화관리법』, 『외국투

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규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북한의 해당 법과 규정에 준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6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사업은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하에 관장한다(법 제3조).²⁵⁸⁾ 이 법의 적용대상은 외국투자가로 하였다(법 제7조).²⁵⁹⁾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한 외국투자는 투자한 자본과 얻은 소득,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으며(법 제4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내에서 기업관리와 경영방법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갖는다(법 제5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내에서의 경제활동의 중점은 외국투자의 유치 및 기업운영에 달려있다. 외국투자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내에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제18조제1항). 여기서 기업이란 외국인단독 투자기업은 물론 합작기업·합영기업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도 외국투자와 합영·합작형식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북한측의 단독투자기업도 허용되고 있다. 다만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내에서 필요한 토지를 임차할 수 있고, 임대기관의 승인 아래 임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20조), 외국투자기업은 지대노력알선기관과 맺은 계약에 따라 필요한 노력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고,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외의 다른 지역에 있는 북한의 기술자·초급 기능공을 지대노력알선기관에 신청하여 보장받을 수 있으며, 라진-선봉시인 민위원회와 합의 아래 일부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기능공을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제21조). 이는 이미 외국인투자법 등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하다.²⁶⁰⁾ 또한 지대 내의 외국투자기업은 원료·자재와 부분품의 가공을 지대외에 있는 북한의 기업소에 위탁할 수 있고, 지대 외에

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상의 관련 조항들과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만 효력을 지니는 각종 법규를 의미한다.

258) 구조문에는 대외경제위원회와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이 지도한다고 되어 있었다.

259) 구조문에서는 이 지역에 진출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이며, 북한영역 외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이 규정은 삭제되었다.

260) 다만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외의 북한 주민도 채용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이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로 선정된 나진·선봉지구의 인구분포 등 인력수급사정에 비추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서 수행한 가공액이 기업의 전체 생산액의 40%를 넘지 않는 경우 그 위탁 가공은 지대 내에서 수행한 생산활동과 같은 것으로 인정한다(제24조). 이는 요건을 충족하여 지대 외에서 이루어진 생산활동에 대하여서도 관세·기업소득세 등 이 법에 규정된 제반 우대조치를 적용한다는 의미이다.²⁶¹⁾

북한에서 관세는 나라의 관세경제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정의되고 있다.²⁶²⁾ 그러나 북한에서 무역은 국가독점과 계획통제 아래 무역상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밀수 방지 등을 위하여 여행자 소지품·국제소포 등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된다고 알려져 있다. 관세의 종류로는 부과대상에 따라 수출관세, 수입관세, 통관관세가 있고, 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을 채택·적용하는데 최저세율은 협정세율로서 호혜무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을 말하며(세관법 제37조), 최고세율은 일반세율로서 최저세율의 2 내지 4배가 보통이다. 관세부과 방법으로는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되나 일반적으로 종가세를 부과한다.

관세부과의 기준가격은 수입물자인 경우에는 국경도착가격, 수출물자인 경우에는 국경인도가격으로 하며, 수출입물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매가격으로 한다(세관법 제32조 제1항). 관세율은 정무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2항). 여기서 관세관련기관으로는 관세관리총국²⁶³⁾·세관²⁶⁴⁾·세관검사국²⁶⁵⁾ 등이 있다.

그리고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내에 있는 은행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 아래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법 제33조), 이 규정은 『외화관리법』(제19조)과 중복된다. 물론 당해 은행에

261)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위치한 외국투자기업의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지대 외에 위치한 북한기업의 생산활동과 연계를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262)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민사법사전』(평양: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p.134.

263) 관세관리총국은 무역부 산하기구로서 관세 제기관을 직접 통할하며 관세 제기관의 조직화·관리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관세정책의 입안 또는 관세기준에 관한 문제의 해결·관세 통계의 조직화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264) 세관은 관세관리총국의 지도 아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서 국경을 통과하는 화물의 적법성을 검사하고 관세금액의 산정과 징수, 불법 수출입화물 단속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265) 세관검사국은 수출입상품에 대한 관세부과와 징수를 전담한다.

예금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는 면제된다(『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제24조 제1조 제1항). 여기서 비거주자라 함은 북한주민이 아닌 외국인을 의미한다. 그밖에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내의 정해진 장소에 외화유가증권을 거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4조).

송금보장에 관하여 외국투자가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내에서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이윤과 이자·배당금·임대료·봉사료·재산판매 수익금을 비롯한 소득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으며, 국외에서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들어왔던 재산을 경영기간이 끝난 다음 제한 없이 국외로 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5조).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법』 제20조, 『외국인기업법』 제22조 및 『외화관리법』 제28조에 규정된 외국투자기업 종사 외국인의 노임 등 송금보장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에 비하여 특징이다.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고 규정하면서(제42조), 제43조에서는 외국투자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분쟁사건은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서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3조). 제3국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은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제 3 절 北韓의 特殊經濟地帶 法制

북한은 2002년 들어서서 경제개혁과 관련하여 획기적인 법령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한 법령은 대외경제개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북한의 대내적인 경제개혁조치와 함께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예컨대 신의주특별행정구설치와 여기에서의 자유무역의 확대를 통한 무역의 확대, 투자유치에 의한 경제활로의 모색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편 남한과의 경제교류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금강산관광지구법과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에서 남한과의 경제협력의 확대와 함께 북한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한 적극적인 법제도화라는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²⁶⁶⁾

266) 본 연구에서는 시기적으로 10월과 11월에 제정된 북한의 경제개방정책과 관련한

I. 新義州特別行政區 基本法

1. 立法背景

북한은 지난 9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이하 ‘신의주특구법’이라 함)을 제정하였다. 또한 평안북도 신의주시를 중심으로 의주군, 염주군, 철산군의 일부를 ‘신의주특별행정구’(이하 ‘신의주특구’)로 지정하였다. 이 신의주특구법이 공포됨에 따라 북한은 신의주를 이른바 ‘홍콩식 경제특구’의 형태로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의주특구법은 전체적으로 중국의 홍콩의 특구형태와 유사한 면이 많다. 이러한 북한이 조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1년부터 제기해 온 이른바 ‘신사고’가 대외경제부문에 가시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결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경제관리개선 조치에 뒤이어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이 북한에 적용된 구체적 사례로 판단된다. 즉, 2002년 7월 1일 단행된 임금과 물가인상, 기업자율성 확대 등 ‘사회주의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북한의 ‘대내 경제개혁’ 조치라면, 이번 신의주특구 지정은 과감한 ‘대외경제개방’ 조치라고 할 수 있다.²⁶⁷⁾

신의주특구법의 특징은 신의주특구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홍콩식 특구 운영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법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은 중국식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원용하여 소위 북한식 ‘일국양제’를 도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의주특구 기본법을 보면, 홍콩특구처럼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부여받음으로써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처럼 신의주특구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것은 과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의 경우 그 관리운영기관으로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를 두어 폐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함으로써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경험에서 교훈을 얻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신의특별행정구 기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개성공업지구법 등은 그 개략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관한 심층연구는 별도의 연구를 필요로 한다.

267) 이에 관해서는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의 국내법적, 국제법적 대응방안』, 제35회 아시아사회과학원 학술시민포럼 발표논문집(아시아사회과학원, 2002. 11. 14) 참조.

2. 主要內容

신의주특구 기본법은 제1장 정치, 제2장 경제, 제3장 문화, 제4장 주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5장 기구, 제6장 구장, 구기에 관한 규정 등 모두 6장, 101조와 부칙 4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구성체계는 북한헌법상 구성체계와 유사함을 엿볼 수 있다.

다음에 신의주특구 기본법의 주요내용을 그 규정순서에 따라 개관한다.

(1) 제1장(政治)

신의주특구는 북한의 주권이 행사되는 특수행정단위이며, 국가는 신의주특구를 중앙에 직할시킨다(제1조). 국가는 신의주특구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부여하며(제2조), 신의주특구의 법률제도를 50년간 변화시키지 않는다(제3조). 북한의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은 신의주특구사업에 관여하지 않으며, 신의주특구에 인원을 파견하거나 주재시키려 할 경우에는 장관의 동의를 받는다(제6조). 신의주특구의 방위사업은 국가가 하며, 국가는 필요에 따라 신의주특구에 군사인원을 주둔시킬 수 있다(제7조). 신의주특구와 관련한 외교사업은 국가가 하며 신의주특구는 국가가 위임한 범위에서 자기의 명의로 대외사업을 하고, 신의주특구 여권을 따로 발급할 수 있다(제8조). 국가는 전쟁, 무장반란 같은 사유의 발생시 신의주특구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법규를 실시한다(제11조).

(2) 제2장(經濟)

신의주특구의 토지와 자연부원은 공화국의 소유이며(제12조), 국가는 행정구를 국제적인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로 만들도록 한다(제13조). 국가는 신의주특구에 토지의 개발, 이용, 관리권한을 부여하며 신의주특구의 건설 총계획은 국가의 승인을 받는다(제14조). 신의주특구의 토지임대기간은 2052년 12월 31일까지이며, 국가는 토지임대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준다(제15조 1·2항). 이 경우 기업에 주던 유리한 경영활동 조건을 그대로 보장한다(제

15조 3항). 신의주특구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토지이용권과 건물, 시설물을 양도, 임대, 재임대, 저당하도록 한다(제16조). 신의주특구에서 개인소유의 재산을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국가는 신의주특구에서 개인소유의 재산을 국유화하지 않는다(제17조 1·2항). 다만, 나라의 안전과 관련하여 개인소유의 재산을 거두어 들이려할 경우에는 그 가치를 보상하여 준다(제17조 3항). 국가는 신의주특구에 창설된 기업이 공화국의 노력을 채용하도록 하며 필요한 직종에는 구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다른 나라 사람으로 쓸 수 있다(제20조). 국가는 신의주특구에서 유급휴가제, 사회보장제 같은 노동시책을 바로 실시하도록 한다(제22조). 국가는 신의주특구에서 자체로 화폐금융시책을 실시하도록 하며, 행정구에서는 외화를 제한없이 반·출입할 수 있다(제23조). 국가는 신의주특구에서 특혜관세 제도를 세우도록 하며, 관세율은 신의주특구가 정한다(제25조). 국가는 신의주특구에서 자체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며, 예산과 관련한 입법회의 결정은 최고입법기관에 등록한다(제27조). 국가는 신의주특구에서 생산한 상품과 검사를 자체로 하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한다(제28조). 국가는 행정구에서 투자자들의 투자를 장려하며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환경보호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부문의 투자는 할 수 없다(제29조). 행정구에서 기업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하도록 하며 인원의 출입과 물자, 자금, 정보, 통신교류의 편의를 보장한다(제31조).

(3) 제3장(文化)

국가는 신의주특구에서 첨단과학기술을 받아 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적극 개척하도록 하며(제35조), 현대적인 문화시설을 갖추고 광범위한 주민들이 문학예술 활동에 참가하도록 한다(제36조). 국가는 신의주특구에서 신문, 잡지같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며 체신, 방송망 같은 것을 자체로 운영하도록 한다(제40조). 국가는 신의주특구에서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주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하여 주도록 한다(제41조).

(4) 제4장(住民의 基本權利와 義務)

신의주특구에서는 주민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니며, 성별, 국적별, 민족별, 인종별, 언어, 재산과 지식정도, 정견, 신앙에 따라 주민은 차별 당하지 않는다(제43조). 신의주특구에서 17살 이상의 주민은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가지며, 법에 의하여 선거권을 빼앗긴 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제44조). 주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권, 서신의 비밀을 보장 받으며,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주민을 구속, 체포하거나 몸,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제47조). 주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권리를 가지며, 신의주특구는 주민의 신소와 청원을 공정하게 심의, 처리한다(제48조). 주민은 거주이전, 여행의 자유를 가지며, 다른 지역,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여행하는 질서는 신의주특구가 정한다(제49조). 주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희망과 재능에 따라 주민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노동에 따르는 보수를 받는다(제50조). 주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지며, 신의주특구는 법에 따라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을 특별히 보호한다(제54조). 신의주특구에서 주민권을 가지지 못한 다른 나라 사람은 주민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주민권을 가지지 못한 다른 나라 사람은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 구예산으로 실시하는 사회적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제57조). 신의주특구의 공화국공민은 조국보위의무를 지니며, 신의주특구에서 군대초모질서는 따로 정한다(제58조).

(5) 제5장(機構)

입법회의는 신의주특구의 입법기관이며, 입법권은 입법회의가 행사한다(제60조). 입법회의 의원으로는 신의주특구의 공화국공민이 될 수 있으며, 신의주특구의 주민권을 가진 외국인도 입법회의 의원으로 될 수 있다(제62조). 입법회의는 법규를 제정하거나 수정, 보충, 폐지하며, 구의 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 승인하고, 채택한 법규를 해석하며 장관의 제의에 의하여 구재판소 소장을 임명, 해임한다(제64조).

장관은 신의주특구를 대표하며, 장관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입법기관 앞에 책임진다(제76조). 장관으로는 신의주특구 주민으로서 사업능력이 있고 주민들의 신망이 높은 자가 될 수 있다(제77조 1항). 장관은 최고입법기관(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의해 임명과 해임된다(제77조 2항). 장관은 입법회의 결정, 행정부 지시를 공포하고 명령을 내며 행정부 성원을 임명, 해임하고 구검찰소 소장을 임명, 해임한다(제79조).

행정부는 신의주특구의 행정적 집행기관이고 전반적 관리기관이며 행정부의 책임자는 장관이다(제81조). 행정부의 부서책임자, 경찰국 국장으로는 행정구의 주민이 된다(제82조). 신의주특구의 검찰사업은 구검찰소와 지구검찰소가 한다(제85조). 신의주특구에서 재판은 구재판소와 지구재판소가 하며(제91조), 구재판소는 최종재판기관이다(제98조 2항).

(6) 제6장(區章, 區旗)

신의주특구는 북한의 국장, 국기를 사용하는 것 외에도 구장, 구기를 사용하며 그 사용에 관하여도 신의주특구가 정한다(제99조).

(7) 附則

신의주특구에는 국적,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영해, 영공, 국가안전에 관한 법규 외의 다른 법규를 적용하지 않는다(부칙 제2조). 신의주특구법의 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부칙 제4조).

3. 新義州特區에 대한 對應方向

북한은 신의주특구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신의주특별행정구를 설치하여 여기에 독립적인 자치권을 부여하여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북한의 신의주특구 기본법의 시행은 북한의 강력한 경제개방의지를 표명한 것이지만, 이와 함께 새로운 대응방안을 찾아 나아가야 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북한의 의도는 의욕적이지만, 향후 신의주특구의 미래는 밝아 보이지만은 않다.

우선 신의주특구의 운영과 관련하여 초기 북한의 신의주특구 장관으로 양빈을 임명하였지만, 중국은 국내법 위반으로 양빈장관을 구속함으로써 특구

운영이 초기부터 궤도를 이탈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의주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상 중국과의 절대적인 협력체제가 필요한 만큼 중국과의 충분한 협의없이 신의주특구의 본격적인 개발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엿볼 수 있다. 더욱이 신의주특구 기본법만 제시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후속조치로서 후속법령의 정비가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신의주특구에 대한 전망은 이른 감이 있다.

한편 북한의 신의주특구의 설정과 운영이 초기적 상황에서 다소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의 의지가 신의주특구 기본법에 담긴만큼 신의주특구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에 관심을 기유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북한의 신의주특구 등 이른바 경제특구개발계획의 추진과 함께 남북교류협력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다. 예컨대 신의주특구의 운영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남한 출신 인사의 신의주특구 장관 임명설, 남한의 유력 기업 대표에 대한 신의주특구 입법의원 위촉 가능성 시사, 신의주특구 계획 발표 후 여러 기업들의 신의주 진출 계획, 신의주특구 공직자의 방한시 입국절차 문제 등은 조속한 법적 검토를 요하는 사안들이 해당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은 단기적인 해결보다 보다 기본적인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여전히 우리에게서 대북관계에 있어 남북관계의 현실과 맞지않은 법령체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다. 북한이 신의주특구를 설치하고 그 기본법에서 상당한 부문의 독자성과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듯이 과거에 비하여 경제개방을 위한 전향적인 법제도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남한에서도 적극 대처하는 조치가 요청된다. 예를 들면, 현시점의 국내법(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등)에 의하면, 남한 출신 인사의 신의주특구 장관직 수행을 불가능하다.²⁶⁸⁾ 그러나 이를 이유로 신의주특구에 대한 남한인사의 장관임명의 가능성을 원천적

268) 현재의 국가보안법에의하면, 남한 인사가 합법적으로 신의주특구 행정장관에 취임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남한출신 인사의 신의주특구 입법위원직 수행가능성과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과의 상관성 문제는 행정장관 취임의 경우에서 나타나는 규범불비 또는 규범저촉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으로 봉쇄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한에 대한 변화유도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가급적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현행법제의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남북관계발전 및 민족공동이익 도모 차원에서 신의주특구 장관직이나 여타 공직을 남한 출신 인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여기에는 현행 남북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국내법제에 대한 개선문제가 전제된다. 남한인사의 신의주특구에서의 경제 및 사회활동과 관련하여 신의주특구가 획기적으로 문호를 개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법률(남북교류협력법 등)을 신의주특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북한의 신의주특구의 개방이란 차원에서 볼 때 상응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 신의주특구에 대한 남한의 적극 진출을 위해서는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제의 입법적 개선이 요청되는 시점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신의주특구 공직자 또는 주민의 남한방문 문제에 대하여도 법적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²⁶⁹⁾

무릇 북한의 신의주특구 기본법의 제정은 북한의 경제개방과 체제유지의 새로운 도전을 대내외에 공표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북한의 도전과 의지는 신의주특구 기본법에 기본사안에 대하여 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의 신의주특구 운영에 대한 추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구체적으로 강구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II. 金剛山觀光地區法

1. 立法背景과 意味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002년 10월 23일 금강산관광지구를 지정하는 ‘정령’을 발표하고, 20일이 지난 11월 13일 『금강산관광지구법』을 채택 발표하였다²⁷⁰⁾고 『조선중앙방송』이 11월 25일 보도하였다. 『금강산관

269) 신의주특구 초대 행정장관으로 임명된 양빈은 중국 공안에 의해 연금되기 전에 남한방문계획을 공식 발표한 바 있었다. 그의 방한을 앞두고 의전 및 입국절차와 관련하여 관계당국은 일치된 견해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 경우 신의주특구 공직자들이나 주민들을 북한주민으로 의제하여 남북교류협력법상의 입국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70) 북한이 금강산지역을 국제관광지구로 선포한 조치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등 한반도

광지구법』은 금강산 관광산업에 대한 입법목적 하에 관광객의 편의에 중점을 두어 관광객이 개인이나 단체로 차량 또는 도보에 의한 자유로운 관광을 가능하도록 명문화하였다.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법은 2002년 9월 12일 채택한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중점을 둔 데에 비하여, 남한 기업인의 투자유치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2002년 10월 23일 발표된 금강산 관광지구 지정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은 금강산관광특구를 강원도 고성군의 고성읍, 온정리, 성북리들의 일부 지역과 삼일포, 해금강지역, 통천군의 일부 지역으로 범위를 정하고 이 지역에서는 북한 주권이 행사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정령은 이 지역 개발을 위한 법인과 개인, 기타 경제조직들의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하고 그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중앙 관광지구 지도기관은 금강산관광지구 개발이 진척되는데 따라 새로운 관광 대상지들을 더 늘릴 수 있는 해당한 대책을 세울 것”(제5항)이라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제6항)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이제까지 금강산관광사업을 추진하면서 남한의 현대 아산에서 그 동안의 경험에 기초하여 금강산관광사업의 기반확대와 장기적으로 금강산지구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법제도화의 의미를 가진다. 그 동안의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확대조치와 아울러 남한의 북한에 대한 투자활로를 개척하고 이에대한 법적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역시 북한이 신의주특구를 설치한 것과 함께 대외경제개방을 대외적으로 확정하고 보다 경제발전을 위한 진전된 법적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의 선포와 『금강산관광지구법』의 제정은 남북간의 이 지역에 대한 공동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자세의 표명이라 할 수 있으며, 그동안의 관련 기업의 노력의 성과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접 국가들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러시아의소리』 방송이 26일 보도했다. 서울에서 이날 수신된 『러시아의소리』 방송은 “조선(북한)은 금강산 관광지구 창설과 함께 한국 방향으로 금강산, 중국 방향으로 신의주지구, 러시아 방향으로 라선자유경제지대의 삼각지구를 형성했다”면서 “이에 대해 인접 국가 인민들이 깊은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송은 “금강산 관광지구 창설은 조선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제변화 차원에서 중대한 사변”이라며 “조선은 세계에 문을 열어놓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2002년 11월 26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2002년 11월 23일 『금강산관광지구법』을 채택한 것은 한마디로 향후 금강산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금강산관광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직접 추진한 사업이자 남북한 교류의 물꼬를 튼 상징적인 사업이었다. 금강산관광지구법에 의하여 금강산관광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²⁷¹⁾

2. 金剛山觀光地區法の 主要 內容

먼저 금강산관광지구 지정 정령²⁷²⁾은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6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의 형태로서 금강산 관광이 자연 그대로를 감상하는 ‘생태관광’ 형태(1항)임을 밝히고 있다.

둘째, 관광지구의 범위를 강원도 고성군의 고성읍, 온정리, 성북리의 일부 지역과 삼일포, 해금강지역, 통천군의 일부 지역으로 지정하였다(2항).

셋째, 금강산 관광지역의 ‘주권’이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3항).

넷째, 관광지구개발을 위한 법인과 개인 등의 경제조직들의 투자를 허용하고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한다(4항)고 하였다.

다섯째, 향후 관광지구 확대문제에 관하여 관광지구 개발이 진척되는데 따라 새로운 관광대상지를 더 늘릴 수 있도록 하였다(5항).

여섯째, 북한의 내각과 해당 기관은 금강산관광지구 정령을 집행하기 위해 실무대책을 세울 것을 규정하고 있다(6항).

다음 『금강산관광지구법』은 총 29개조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법에서 금강산관광지구의 설치목적은 공화국의 법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국제적인 관광지역으로 관광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금강산의 자연생태 관광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271) 『연합뉴스』, 2002년 11월 25일.

272) 이 정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 관광지구를 내용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2002년 10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둘째, 금강산관광지구에서의 관광주체는 남측 및 해외동포들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인도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제2조). 관광지구에서 관광과 관광업 그 밖의 경제활동은 이 법과 그 수행을 위한 규정에 따르며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과 관광지구 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제4조).

셋째, 관광지구의 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는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이 관광지구 관리기관을 통하여 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광지구사업에 관여하려 할 경우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과 합의하도록 하였다(제5조).²⁷³⁾ 또한 관광지구의 개발은 개발업자가 하는데, 개발업자는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으로부터 해당 기관의 토지이용증의 발급을 요건으로 정하였다(제7조). 그리고 개발업자는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이 정한 기간까지 관광지구 개발과 관광사업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발업자가 하는 관광지구 개발과 영업활동에는 세금 면제의 우대조치를 부여하였다(제8조). 개발업자는 관광지구 개발총계획을 작성하여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에 내야 하며,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은 관광지구 개발총계획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으로 심의 결과를 개발업자에게 알려줄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제9조).

넷째, 관광지구에 대한 환경보호 규정을 두었다. 개발업자는 승인된 관광지구 개발총계획을 변경시키려 할 경우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에 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제10조). 개발업자는 관광지의 풍치림을 베거나 명승지 바다기슭의 솔밭, 해수욕장 기암절벽, 우아하고 기묘한 산세, 풍치좋은 섬을 비롯한 자연풍치와 동굴, 폭포, 옛성터 같은 천연기념물과 명승고적을 파손시키거나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건물시설물을 건설하지 말며 정해진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소음, 진동기준 같은 환경보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제11조).

273)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의 임무에 관하여는 제6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관광지구 관리기관 사업에 대한 지도, ②관광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지도, ③대상건설 설계문건의 합의, ④관광지구 법규의 시행세칙 작성, ⑤관광지구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물자와 기념상품의 보장, ⑥관광지구의 세무관리, ⑦이밖에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을 한다.

다섯째, 관광지구의 관리는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의 지도밑에 관광지구 관리기관이 하며 관광지구 관리기관은 개발업자가 추천하는 성원으로 구성하며,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이 추천하는 성원도 관광지구 관리기관의 성원으로 될 수 있다고 하였다(제12조).²⁷⁴⁾ 관광지구 관리기관은 관광지구에 현대적인 정화장, 침전지, 오물처리장 같은 환경보호시설과 위생시설을 갖추고 여러가지 버림물을 관광과 환경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정화하거나 처리하도록 하였다(제14조). 관광지구 관리기관은 관광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관광환경과 조건을 보장하여야 하며,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은 관광환경과 조건보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관광지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제15조). 관광지구 관리기관의 운영자금은 수수료같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관광지구 관리기관은 관광객으로부터 관광지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제16조).²⁷⁵⁾

여섯째, 관광객의 활동에 대하여 관광객은 단독으로 또는 집체적으로 자동차같은 운전기재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행사 문예활동, 사진촬영, 녹화촬영이나 투자상담, 무역계약 체결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8조).²⁷⁶⁾ 또한 관광객은 금강산관광지

274) 관광지구 관리기관의 임무에 관하여는 제13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관광계획의 작성, ②관광자원의 조사와 개발 관리, ③관광선전과 관광객 모집, 관광조직, ④투자유치와 기업의 창설승인, 등록, 영업허가, ⑤토지이용권, 건물, 운전기재의 등록, ⑥관광지구 하부구조 시설물의 관리, ⑦관광지구의 환경보호 소방대책, ⑧남측지역에서 관광지구로 출입하는 인원과 수송수단의 출입증명서 발급, ⑨관광지구 관리기관의 사업준칙 작성, ⑩관광지구 관리운영 사업정형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 ⑪ 이밖에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이 위임하는 사업이다.

275) 관광객이 휴대할 수 없는 물건은 제17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무기, 총탄, 폭발물, 흉기, ②정해진 확대 배수 또는 규격을 초과하는 렌즈가 달린 쌍안경, 망원경, 사진기, 녹화촬영기, ③무전기와 그 부속품, ④독약, 마약, 방사성 물질같은 유해물질, ⑤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물건, ⑥사회질서 유지에 지장을 줄수 있는 각종 인쇄물, 그림, 글자판, 녹음 녹화물, ⑦애완용이 아닌 짐승, ⑧이밖에 관광과 관련이 없는 물건이다.

276) 관광객이 지켜야 할 사항은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관광지구 관리기관이 정한 노정을 따라 관광하여야 한다. ②사회제도와 주민들의 생활풍습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민족의 단합과 미풍양속에 맞지 않는 인쇄물, 그림, 녹음, 녹화물 같은 것을 유포시키지 말아야 한다. ④관광과 관련없는 대상을 촬영하지 말아야 한다. ⑤관광지구 관리기관이 정한 출입금지 또는 출입제한 구역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⑥통신기계를 관광과 관련없는 목적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⑦혁명사적지와 역사

구 밖의 다른 관광지를 관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광지구 관리기관을 통하여 관광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도록 하였다(제20조).

일곱째, 관광업의 주체와 범위에 대하여 관광지구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하여 관광업을 할 수 있으며, 관광업에는 여행업, 숙박업, 오락 및 편의시설업 같은 것이 속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산업 같이 공해가 없는 첨단 과학기술부문의 투자도 관광지구에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1조). 그리고 관광지구에는 관광업과 그와 연관된 하부구조 건설부문의 투자를 장려하며, 금강산의 자연생태환경을 파괴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부문의 투자는 할 수 없도록 하였다(제22조).

여덟째, 관광지구에의 투자절차로서 관광지구에 투자하려는 자는 관광지구 관리기관의 기업창설 승인과 업종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업창설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정해진 출자를 하고 관광지구 관리기관에 기업등록을 하며 해당기관의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하도록 하였다(제23조). 관광지구에서는 정해진 전환성 외화를 쓸 수 있으며, 전환성 외화의 종류와 기준화폐는 관광지구 관리기관이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관광지구에서 외화는 자유롭게 반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4조).

아홉째, 남한주민의 금강산관광을 위한 출입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이를 보면, 남측 지역에서 관광지구로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과 수송수단은 관광지구 관리기관이 발급한 출입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통로로 사증없이 출입할 수 있으며, 관광지구에서 공화국의 다른 지역으로 출입하거나 다른 관광지로 출입하는 질서,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통하여 관광지구로 출입하는 질서는 따로 정하도록 하였다(제25조). 관광지구의 출입은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과 관광지구 관리기관 사이에 합의한 통로와 수송수단으로 하며, 관광객의 수송수단에는 군사분계선을 넘은 때부터 관광을 마치고 군사분계선을 넘어갈 때까지 정해진 관광표식기만을 게양하도록 하였다(제26조). 한편 관광지구에 출입하는 관광객과 기타 인원, 동식물과 수송수단은 출입검사와 세관검사, 위생 및 동식물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사, 검역기관은 출입검사와 세관검사, 위생 및 동식물검역사업을 관광지구의 안

유적, 유물, 천연기념물, 동식물, 온천 같은 관광자원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전과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과학기술적 방법으로 신속히 하도록 하였다(제 27조).

열째, 법위반에 대한 제재 및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을 어겨 관광지구의 관리운영과 관광사업에 지장을 준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손해보상 같은 제재를 줄 수 있다.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추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8조). 관광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견 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북남 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 해결절차 또는 중재, 재판 절차로 해결하도록 하였다(제29조).

끝으로 부칙에서는 이 법은 채택한 날부터 실시하며(부칙 제1조), 금강산 관광지구와 관련하여 북남 사이에 맺은 합의서의 내용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고(부칙 제2조), 이 법의 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부칙 제3조)고 규정하였다..

3. 金剛山觀光地區法の 對應方向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법의 제정은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신의주특별행정구 지정’ 등 북한의 일련의 경제개혁 정책의 연장선에서 경제개혁의 법제도화의 추진이라는 적극적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금강산관광지구법』을 통해 개발투자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금강산관광사업의 주체인 남한의 현대아산에게 상당한 범위의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금강산관광을 활성화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²⁷⁷⁾ 이와 함께 관광객의 범위를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으로 확대하고 이들이 개별 차량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자유롭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금강산을 통해 북한내 타지역도 관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77) 『금강산관광지구법』은 제7조에서 “개발업자가 하는 관광지구 개발과 영업활동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투자자들에게 이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으며, 제8조에서 “개발업자가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이 정한 기간까지 관광지구 개발과 관광사업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밝힌 대목은 북한이 향후 현대아산을 통해 해외투자자들을 적극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연합뉴스』, 2002년 11월 25일.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법』은 금강산 지역을 사실상 관광특구로 명문화한 것이며, 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를 위한 강한 의지, 주개발자인 현대아산에 대한 정책적 배려, 금강산지역의 환경보호 의지 등에 관한 규정이 주목되고 있다. 이를 좀 더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강산관광지구에 대한 투자유치에 대한 의지이다. 『금강산관광지구법』은 제8조에서 개발자에 대한 비과세 원칙을 분명히 하고, 이 지역에서 외화의 자유로운 반출입을 허용한 것은 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에서의 외자유치를 도모하는 의지를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 등 관광객은 단독 또는 집체적으로 자동차 같은 운전기재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다’고 하여 이전에 비하여 자유로운 관광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금강산관광지역의 관광업 시행가능대상을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남한의 투자 및 외국의 투자를 유인하고 금강산관광지구에 대한 투자가치를 높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관광객은 금강산관광지구 밖의 다른 관광지를 관광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금강산과 연계한 북한지역의 관광활성화를 도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금강산관광지구에 투자하는 남측 기업에 대한 배려를 들 수 있다. 이는 그간 금강산관광사업에 투자한 남한의 현대아산에 대한 배려를 명문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의 부칙을 보면, “금강산 관광지구와 관련하여 북남 사이에 맺은 합의서의 내용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1998년부터 현대아산과 맺은 다양한 합의에 대한 법적 실효성에 관한 명문규정을 둔 것을 주목된다. 또한 개발업자의 관광지구 개발과 관광사업 권한의 일부를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골프장 조성, 콘도미니엄 건설 등 사업별 투자자 유치계획을 통하여 사업의 다각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이는 종래 금강산관광사업을 통하여 사업의 다양한 방향을 모색해 온 현대아산의 입장을 반영한 규정임을 엿볼 수 있다.²⁷⁸⁾

278) 특히 『금강산관광지구법』 제21조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같은 공해가 없는 첨단 과학기술부문의 투자도 관광지구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통천지구를 공단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현대아산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02년 11월 25일.

셋째, 환경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북한은 금강산을 ‘민족의 명산’으로 강조해 온 바에 따라 이 법에서 강한 환경보호의지를 담고 있다. 예를 들면, 『금강산관광지구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의 목적을 “관광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금강산의 자연생태관광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 개발업자에게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소음, 진동기준 같은 환경보호기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준을 부여하였으며, 관광지구 관리기관에게는 “여러가지 버림물을 관광과 환경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정화하거나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생각건대 북한에게 있어 금강산관광은 남북경협의 상징적인 사업일 뿐 아니라 북한의 경제력 회복을 도울 수 있었던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사업이 활성화되어 남북이 모두 이익을 획득하여 민족경제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다. 북한의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법령의 제정은 이를 위한 법제도화의 기반조성이라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 예를 들면, 남북간 경의선·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통한 관광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현대아산이라는 민간기업을 통하여 추진되어 온 것이지만, 그 기초적 토대는 정부당국에 의해 다져져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당국의 이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대한 법제도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Ⅲ. 開城工業地區法

1. 立法背景과 意味

북한의 조선중압방송은 2002년 11월 20일, 2002년 11월 13일 경제특구로서 ‘개성공업지구’를 선포하고²⁷⁹⁾ 11월 20일 『개성공업지구법』을 채택하

279)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를 내용에 대하여」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2002년 11월 13일 발표하였다. 이 정령은 모두 8개 조항으로 개성시에 민족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를 결정하였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은 8개 조항으로 구성됐고 첫째, 개성시 12개동과 고려동을 비롯한 12개동 일부 등으로 구성된 개성공업지구의 구역, 둘째, 판문군 폐지 등 행정구역 조정 셋째, 지구 개발을 위한 법인, 개인 등 경제

였다고 보도하였다.²⁸⁰⁾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은 개성지구에 대한 남한 기업 전용공단을 선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의 개성공업지구의 지정은 전술한 금강산 관광지구와 함께 남한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개성공업지구 안에서의 기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공단개발을 남측에 상당한 정도로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²⁸¹⁾

북한은 개성공업지구를 현재의 개성 시가지를 관광구역으로 정하고, 별도의 공업지구를 지정함으로써 개성을 관광과 공업이 병행 발전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남북의 경험과 관련하여 남측에서 요구해온 개성지역에 대한 경제특구방식의 개발모형을 구체화함으로써 보다 남북경협을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형성하였다는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북한의 개성공업지구의 지정과 이 지역의 개발을 위한 법제의 제정은 이른바 북한식의 ‘자본주의 실험장’으로서 개성공업지구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²⁸²⁾

앞서 언급한 금강산관광지구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관광도 보다 활성화하는 조치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북한은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이어 신의주, 금강산, 개성으로 이어지는 특구 지정을 함으로써 내부적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경제개혁·개방조치를 위한 기초적인 법제도화 작업을 이룬 셈이다.

2. 『開城工業地區法』의 主要 內容

『개성공업지구법』은 총 5장 46조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첫째, 총설적 규정으로 개성공업지구의 성격에 관하여 개성공업지구는 공

조직의 자유로운 투자, 넷째, 지구내 개성시가지는 관광구역으로 지정, 다섯째, 관리 진척에 따라 지구 구역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2년 11월 27일.

280) 『연합뉴스』, 2002년 11월 27일, 『매일경제』, 2002년 11월 28일, 1면.

281) 『매일경제』, 2002년 11월 28일, p.3.

282) 『한국경제』, 2002년 11월 28일, p.3. 2000년 8월 현대와 북측 간의 합의에 따라 추진된 개성공단 사업은 총 2천만평(공단 8백50만평과 배후도시 1천1백50만평)규모에 공단건설에만 10억달러가 드는 대규모 대북 투자사업이다. 현대와 토지공사가 공동으로 2004년까지 벌일 1단계 공사는 1백만평의 시범공단 조성으로 2천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중앙일보』, 2002년 11월 28일, p.1.

화국의 법에 따라 관리 운영하는 국제적인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역이고 규정하였다(제1조). 공업지구 개발은 지구의 토지를 개발업자가 임대받아 부지정리와 하부구조 건설을 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공업지구는 공장구역, 상업구역, 생활구역, 관광구역 같은 것으로 분류하였다(제2조). 공업지구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들이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가는 공업지구에 기업을 창설하거나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같은 것을 설치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공업지구는 공화국 법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국제적 공업·무역·상업·금융·관광지역으로 노력채용, 토지이용, 세금 납부 등 특혜적 경제활동의 조건을 보장하였다(제3조 제3항). 한편 개성공업지구에서의 토지임대기간은 토지이용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50년으로 하며, 토지임대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기업의 신청에 따라 임대받은 토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2조). 특히 투자가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투자재산에 대한 상속권도 보장하고, 투자재산은 국유화하지 않으며 사회공동의 이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투자가의 재산을 수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투자가와 사전 협의를 하며 그에 대한 보상을 한다(제7조)고 규정하여 투자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개성공업지구의 관리·운영기관은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과 공업지구 관리기관으로 구분하고(제21조), 관리기관은 개발업자 추천 인사로 구성하도록 하였다(제24조).²⁸³⁾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책임자는 이사장이 하며, 이사장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업전반을 조직하고 지도하도록 하였다(제26조).²⁸⁴⁾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운영자금을 가지며, 운영자금은 수수료 같

283)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임무는 제25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투자조건
의 조성 및 투자유치, ② 기업의 창설승인, 등록, 영업허가, ③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④
토지이용권, 건물, 운전기계의 등록, ⑤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 ⑥ 하부구조 시
설의 관리, ⑦ 공업지구의 환경보호, 소방대책, ⑧ 남측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인원과 수송수단의 출입증명서 발급, ⑨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사업준칙 작성, ⑩ 이밖
에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에 위임하는 사업이다.

284) 공단관리는 당국이 직접 나서지 않고 개발업자(현대아산)와 북한의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에서 추천하는 인물들로 구성되는 ‘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맡기기로 하였다. 기
관책임자도 ‘이사장’이라고 명시하여 남측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맡을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한국경제』, 2002년 11월 28일, p.3.

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제27조)고 하였다. 특히 남측 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과 수송수단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출입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통로로 사증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출입경에 대한 특혜조치를 취하고 있다(제28조).²⁸⁵⁾ 아울러 공업지구에서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은 문화, 보건, 체육, 교육분야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받으며 우편, 전화, 팩스 같은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9조).

셋째, 공업지구의 투자와 연계하여 개성에 대한 관광장려조치를 취하고 있다. 공업지구의 출입, 체류, 거주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은 정해진 데 따라 개성시의 혁명사적지와 역사유적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 같은 것을 관광할 수 있으며, 개성시 인민위원회는 개성시의 관광대상과 시설을 잘 꾸리고 보존 관리하며 필요한 봉사를 제공하도록 하였다(제30조).

넷째, 공업지구에서의 영업활동과 관세에 관한 특혜조치를 규정하였다. 공업지구에서 광고는 장소, 종류, 내용, 방법, 기간 같은 것을 제한받지 않고 할 수 있으나 야외에 광고물을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제31조). 한편 공업지구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하며, 물자를 반출입하려는 자는 반출입 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물자출입지점의 세관에 내도록 하였다(제32조). 그리고 공업지구에 들어오거나 공업지구에서 남측 또는 다른 나라로 내가는 물자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탁 가공하는 물자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제33조).²⁸⁶⁾

다섯째, 공업지구에서의 기업활동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공업지구 관리기관은 기업창설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제35조). 공업지구에서 유통화폐는 전환성 외화로 하며 신용카드 같은 것을 사용

285) 공단관리기관이 발급하는 출입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통행이 가능하다. 세관 검역절차도 국제수준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한국경제』, 2002년 11월 28일, p.16.

286) 모든 물자의 진출입에 대해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 한국쪽과의 거래도 마찬가지다. 물자 반·출입도 승인이 아니라 신고사항으로 돼 있다. 법인세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는 한국의 절반수준인 14%이다. 첨단산업 등에 대해서는 10%로 낮아진다. 『한국경제』, 2002년 11월 28일, 16면.

할 수 있으며, 유통화폐의 종류와 기준화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 지구지도기관과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제41조). 공업지구에서 기업소 특세율은 결산이윤의 14%로 하며 하부구조 건설부문과 경공업부문, 첨단과 학기술부문은 10%로 한다(제43조).

여섯째, 분쟁해결방법으로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활동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북남 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 해결절차 또는 중재, 재판절차로 해결하도록 하였다(제46조). 한편 법적 효력에 대하여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하여 북남 사이에 맺은 합의서의 내용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고(부칙 제2조), 이 법의 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부칙 제3조)고 규정하였다.

3. 開城工業地區에 대한 對應方向

최근 북한이 경제특구와 관련하여 『개성공업지구법』의 제정은 이제까지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남한의 요구가 반영된 발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남한 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실천에 옮긴 것이라 할 수 있다.²⁸⁷⁾ 이러한 면에 입각하여 북한의 개성공업 지구법의 내용을 분석할 수 있다.

첫째, 『개성공업지구법』의 제정은 그동안 라진·선봉 경제무역지대에서의 경험과 성과에 대한 북한의 분석고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서의 경제개방의 실험에서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북한은 투자여건과 관리·운영 등에 주목하고 공업지구 내 상품가격과 서비스요금 등을 국제시장 가격에 준해 정하도록 하는 등 국제기준에 맞는 경제특구의 개발에 관심을 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개성공업지구법은 시장원리에 입각한 국제 금융·유통 및 첨단 과학기술 도입을 위한 ‘경제개방구’ 개발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신속하고 탄력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자체적인 개발·이용·관리권, 대외

287) 『중앙일보』, 2002년 11월 28일, p.5.

사업권·여권발급권 등 공업지구에 대해 전례 없는 독자성을 부여한 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셋째,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는 궁극적으로 제조·금융·상업·관광산업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경제특구로서의 발전을 도모하는 특성을 띠고 있다.²⁸⁸⁾ 개성공업지구의 경우 시장원리에 입각한 외국 금융기관의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외자도입과 남한기업에게도 투자유치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며, 무역 및 상업유통의 활성화와 함께 위락시설 및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일정수준의 외화 획득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넷째, 신의주특구가 외국인을 위한 경제지대로 설정되었다면, 개성공단은 남한 기업을 위한 특구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개성공업지구법에는 투자유치와 관련, 그동안 남측사업자인 현대아산과 토지공사측의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수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남측이 가장 중점을 둔 사안은 토지 분양가와 세금, 노동력 등에서 중국·베트남에 비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과 남측 인사의 개입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왔었다는 점에 주목하면, 북한의 이 법은 남한에서의 주장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V. 北韓의 特殊經濟地帶 關聯法制的 動向과 課題

앞서 살펴 본 북한의 신의주특구 기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개성공업지구법은 현재 북한의 변화되고 있는 실정을 잘 보여주는 예에 해당한다. 이들 법제에는 북한의 대내적인 경제현실의 변화내용과 대외적인 개방의지가 잘 반영되어 있다. 이는 다시 말해 김정일체제의 경제환경을 보여주는 것이며, 북한의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다. 이들 경제특구방식의 법제는 분명 대외적으로 북한의 경제개방의 자세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남한에 대해서도 종래에 비해 확실한 대북경협 및 교류에 대한 법제도화의 조치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경제특구법제는 그 기본적인 원칙과 틀을 제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세부적인 후속법령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이에 현행 이들 법제가 가지는 동향과 아울러 그 과제에 관하여 몇 가지 점을 생각해본다.

288) 『한국경제』, 2002년 11월 28일, 3면.

첫째, 북한의 경제특구법제는 북한의 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시대적 필요에 의한 즉흥적인 입법이 아님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미 북한은 1990년대의 세계사적 변화에 대응한 정책변화를 시도하면서 1992년과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하여 대외경제개방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두었다. 여기에서 북한에 대한 외자유치와 북한내 특수경제지대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 이런 점에서 신의주, 금강산, 개성 등의 경제특구의 설치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준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북한의 경제특구법제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국내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적용대상을 북한에 투자하는 외국인 및 남한기업 및 남한주민을 위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제는 그 체제와 이념에서 기본적으로 북한의 주권 하에 속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의 사회주의이념에 기초한 체제와는 다른 체제의 존재를 인정할 바탕 위에서 마련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이를 통해 하나의 체제의 실험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적인 면에서 사회주의경제원칙의 틀 속에서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자본주의의 이식이라는 실험을 시작하려는 것임을 엿볼 수 있다.

셋째, 무엇보다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의 경우 남한과의 경제관계를 고려한 입법작업으로 보아야 한다. 그동안의 남북간 금강산관광사업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한에서의 북한에 대한 경험에 대한 법제도화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이제까지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제에서 외국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남한주민의 대북투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보장이 모호하게 다루어졌던 데에 비하여 이들 법제에 의해 이들 지역에 대한 남한의 대북투자에 대한 법제도적 보장방안이 강화되었다.

넷째, 이러한 북한의 경제특구관련법제에 의해 북한은 경제부문에서의 대외개방의 국제적 신뢰를 획득하는 효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법제도적 투자보장책의 강구는 전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성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경제특구관련법제는 가시적인 긍정적 평가를 가능하게 하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는 속단할 수 없다. 북한의 이러한 법제정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며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하위법령의 입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경제개방의 추진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상당한 기간의 준비와 실행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의 의지와 자세가 어느 만큼 실제에 반영되어 나타나는가에 이들 특수경제지대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신의주특구,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는 각각 그 성격을 달리 하여 개발이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각기 지리적 및 배후여건, 투자대상과 범위, 산업별투자 및 발전목표 등에 있어 뚜렷한 구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은 북한의 대외경제개방과 특수경제지대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목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기존의 라진-선봉 경제무역지대의 개발의 경험과 관련해서도 그 성과를 분석하기도 전에 북한의 전역에 걸친 특수경제지대의 설정을 통한 개발추진은 각각의 경제특구의 비교우위를 가늠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물론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교를 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무엇보다 법제면에서 북한이 경제특구방식의 개발을 위한 각 지역에 해당하는 기본법을 제정한 것은 북한의 경제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향후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세부법령의 제정이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법과 개성공업지구법의 경우 남한의 투자에 대한 배려와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남한의 해당지역에 대한 투자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 이는 남한의 국내법제의 정비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앞서 간단하게 언급되었듯이 북한의 특수지대에 대한 남한의 인적·물적 교류에 대하여 새로운 접근방법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체제로는 예상되는 문제에 대하여 확실한 해결방안을 찾기 어렵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북한의 특수경제지대에 대한 자유로운 왕래와 공직취임의 개방에 따라 남한 주민의 북한 특수경제지대에 대한 출입 내지 해당지역에서의 공직취임 등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행 법체제 하에서는 불가능한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개방적인 조치에 상응하도록 현행 법제의 유연한 대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법제정비가 요청된다.²⁸⁹⁾

289) 북한의 새로운 입법과 관련하여 남한의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제의 개선에 관해서는 별도의 심층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여기서는 북한법제를 중심으로 다룬다는 연구범위에 한정하여 논의한다.

다음에 현행 북한의 경제특구관련법제의 특성을 간략하게 비교해본다.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 금강산관광지구 · 라선경제무역지대 · 신의주 특구 비교>

구 분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지구	라진·선봉 경제무역지대	신의주특별행정구
위 치	개성시 일대 남한접경	강원도 고성군, 통천군 남한 접경	함북 북동부 러시아 접경	평북 동북부 중국 접경
제 정 시 기	2002년 11월 20일	2002년 11월 13일	1993년 1월 31일	2002년 9월 12일
법 적 근 거	개성공업지구법 (남한전용 공업단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금강산관광지구법 (관광특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라진선봉(자유)경제무 역지대법(1993년 제정, 1999년 개정) *정무원 결정 84호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홍콩식 특별행정구 지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설 립 목 적	공업·무역·상업·금 융·관광	금강산 관광	대외교역	금융·무역·오락·관광 중심지 개발
투 자 종	- 신발 등 노동집약업 중 - 고용효과가 높은 품 목 - 일반 경공업 품목	여행업, 숙박업, 오 락·편의시설업 등	화학, 철강 등 중공업 중심	물류업, 금융업, 경공업 등
법 적 위	- 국제적 공업·무역· 상업·금융·관광지역 - 상속권과 사유재산권 보장 - 출입증명서로 지정통로 로 시증없이 출입(공단 내 자유활동 보장) - 우편 전화 팩스 등 통신수단자유 이용	- 관광지구 관리기관 지도 - 남측, 해외동포, 외 국인 등 자유관광 - 관광증명서가 있으 면 금강산 바깥도 출입가능	- 무역성과 나선시인민 위원회가 통치하는 중 앙정부 소속 행정기관 - 중앙정부 직접 통제속 에 외국자본 유치 노력	- 입법·행정·사법권 보장 - 중앙정부에서 임명한 장 관이 자율적 통치 - 선거권·노동권·언론· 출판·집회·시위·신앙 의 자유 보장 - 무비자 입국제도 예정
투 자 건	- 50년이며 연장 가능 - 경제적 혜택(무관세 원칙) - 외화반출입 자유 - 환경 저해하는 투자 금지 - 공단 내 광고 허용 - 유통화폐는 전환성 화 폐로 하며 신용카드 사용	- 50년간 토지이용증 발급(현대아산), 법 으로 명시하지는 않 았음 - 경제적 혜택(비과세 원칙) - 외화반출입 자유 - 개발업자 권한 양 도·임대가능 - 자연생태환경 파괴 와 변화 개발 금지	- 토지임대기간에 대해 특정기간 없음 - 경제적 혜택(특혜관세 적용) - 동해에 인접, 러시아 교역에 유리 - 국가중앙기관의 통제 로 경제활동 규제	- 토지임대기간은 50년이 며 연장 가능 - 토지이용권과 건물, 시설 물물 양도, 임대, 재임 대, 저당 가능 - 경제적 혜택(특혜관세) - 자체적인 화폐금융제도, 외화반출입 자유 - 외국인력 도입 허용 등
특 정	- 법에 근거하지 않은 한국·해외동포·외 국인 구속·체포, 통 신수단 자유사용	- 중앙지도기관 통제, 관광객이 차량·도 보로 자유관광 가능	- 북한 법과 규정에 따 라 모든 경제활동 통 제(중앙통제)	- 입법·행정·사법권 부 여, 언론·출판·신앙의 자유까지 보장

제 5 장 金正日體制下 北韓法制的 評價와 展望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현재까지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여 법제에 대해서도 변화를 모색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북한에서 김정일시대가 공식 개막됨에 따라 북한의 대내외적 정책은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맞았으며, 이에 대응하여 김정일은 여러 방면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김정일체제의 확립 이후 북한법제는 김정일체제의 정책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이라는 필요성에 따라 그 체계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법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데에 있어 김정일체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령정비의 범위와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게 시도되고 있다. 이는 곧 김정일체제의 대내외적 변화와 이에 대응한 국정운영의 원칙과 내용이 크게 변화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제 1 절 金正日體制의 國政運營과 法制變化 樣相

I. 北韓의 對內外環境變化에 따른 金正日體制 法制變化

전술하였듯이 실제로 1980년대부터 이루어진 북한의 법제정비는 김정일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앞으로 김정일체제의 정책전개와 더불어 북한법제도 그 발전방향을 잡아 나아갈 것이다. 현시점의 북한법제의 내용은 김정일체제의 정책전개와 그 방향을 같이 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현시점에서 김정일체제의 정책적 목표와 방향은 1992년 헌법과 1998년 헌법에 기본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김정일체제 하의 북한의 법제발전의 방향은 현행 북한헌법에 기초하여 전망하여 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에 김정일체제의 법제전망에 대하여 북한헌법의 변화와 관련하여 정치, 경제, 사회, 대외관계 면에서 간략하게 살펴본다.

첫째, 정치면에서 김정일시대에서도 김일성체제 하에서 추진되었던 정책은 그대로 지속될 것이다. 북한의 1998년 헌법은 서문에서 “김일성의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 업적을 법화(法化)한 김일성헌법”이라고 명기함으로써

김일성의 유업계승과 이른바 ‘수령의 유일지도체제’의 유지를 천명하고 있다. 또한 이 헌법은 ‘김일성 유훈통치’를 헌법규범화 내지 제도화하고 있다.²⁹⁰⁾ 한편 1998년 헌법은 국가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함으로써²⁹¹⁾ 김정일시대에 즈음한 권력체제의 재편을 이루었다. 이러한 북한의 국가기관 체계의 개편에 따라서 북한법제에 있어서는 북한의 국가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변화가 뒤따를 것임에 분명하다. 실제로 북한의 내각체제의 개편에 의해 새로이 정비되는 북한법제에는 새로운 북한의 국가기관에 대한 개편내용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경제면에서는 대내경제와 대외경제의 두 방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김정일체제에서 경제부문의 법제정비의 내용은 두드러지는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대내경제와 관련하여 1998년 헌법은 경제부문에서 몇 가지 특기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간 북한은 지속된 경제위기에 의해 국가의 계획능력이 약화되고, 소비재생산의 격감으로 인해 국가통제적 상업체계가 마비되고, 식량난에 의해 식량배급제는 와해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서 이루어진 경제활동은 부분적이지만 사회주의 계획경제원리에서 벗어나 일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경제제도를 도입하거나 이를 장려하는 정책을 통해 경제활동의 변화를 가져왔다. 예컨대 텃밭경작의 확대, 분조관리제의 강화를 통한 개인소유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농민시장에서의 자유매매의 활성화 등은 그러한 북한경제의 변화양상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암시장과 사적거래의 확산을 일으켰으며, 이는 계획경제인 ‘1차경제’가 사적 경제활동이나 계획 외 영역으로서 ‘2차경제’에 역전되어 북한에서 2차경제의 영역이 전반

290)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1998. 9. 5)회의에서 김정일이 행했어야 할 시정연설을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1990. 5. 24)에서 행한 김일성의 시정연설(“우리나라의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로 대체함으로써 김정일체제하에서도 수령의 유훈이 그대로 북한의 정책기조로 삼고 있다는 점을 제기한 바가 있다.

291) 그 주요한 내용은 국가주석제 및 중앙인민위원회 폐지, 최고인민회의와 그 상임위원회의 지위와 권한 강화, 1972년이전 헌법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의 복귀(위원장에게 국가대표의 지위 부여), 국방위원회의 지위 강화(편제상), 정무원의 내각으로의 개편과 권한 강화, 지방행정경제위원회 폐지 등이다. 이로써 형식상이나 ‘집단지도체’를 채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적인 경제순환을 주도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²⁹²⁾ 사적경제영역의 확대와 암시장의 확산은 사회주의경제체제의 효율성 저하, 체제정당성의 약화라는 측면이 있지만, 소비재부족을 완화하여 체제불만을 약화시켜 체제유지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간과될 수 없는 판단 하에 1998년의 헌법개정은 바로 북한의 경제활동의 변화를 인정하고 이를 공식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헌법개정의 내용은 크게 소유제를 개편하고,²⁹³⁾ 경제관리 운용체제에서 변화를 보임으로써²⁹⁴⁾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여 경제회생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는 경제면에서의 실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일부는 개별법제를 통해 규범화된 부분도 있으나 앞으로 이를 기초로 하여 관련법제의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컨대 1990년 민법을 제정한 이래 1993년과 1999년 민법을 개정함으로써 전반적인 북한경제운용체제와 변화된 현실을 법제에 반영하고 있다.

다음 대외경제면에서 1998년 헌법은 대외무역주체로서 사회·협동단체를 명기하고(제36조), ‘특수경제지대’의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하는 조항을 추가하였다(제37조). 이는 대외무역에서의 국가독점에서 벗어나 대외무역의 당사자를 확대함으로써 다방면에서의 무역 활성화를 통해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것과 나진·선봉 이외의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확대 및 금강산 등의 관광특구의 지정을 통해 서방 및 남한의 투자유치를 통한 북한경제의 활로모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한의 대내외 경제활동에 관한 헌법적 근거마련은 이미 민법을 비롯한 민사관계법 등에 반영되어 있는 경제생활의

292) 김연철, “북한의 2차경제와 경제정책 변화 전망”, 『統一問題研究』, 제9권 2호(平和問題研究所, 1997), pp.33~35.

293) 이를 보면, 생산수단소유의 주체를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로 확대하고(제20조), 국가소유의 대상이 1992년헌법상 ‘교통·운수’ 부문을 ‘철도·항공운수’로 한정함으로써 이외의 도로 및 해상운수 부문이 국가소유대상에서 배제되어 축소되고(제21조),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대상에서 부림집승과 건물을 삭제하고, 농기구를 농기계로, 고기배를 배로 규정함으로써 그 소유대상이 확대되고(제22조), 개인소유의 주체를 ‘근로자’에서 ‘공민’으로 수정하고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의 범위에 포함시켜 개인소유의 범위를 확대하였다(제24조).

294)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한다는 대목을 추가하고, 원가(cost)·가격(price)·수익성(profit)이라는 시장경제개념을 도입하였다(제33조).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고, 대외경제개방 및 외국인투자법제의 정비를 보다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여타 사회주의체제의 붕괴과정에서 경제회생이 체제안정에 필수적이라는 교훈을 얻은 북한은 경제난극복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개방정책 및 실용주의노선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결국 북한도 변화의 대세를 수용하고 이를 법제 면에서 뒷받침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²⁹⁵⁾ 이를 통해 북한은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한 대외경제개방법제에 대한 합법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남북간의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신의주특구기본법, 금강산관광지구법과 개성공업지구법 등의 제정은 획기적인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남북간의 경험의 법제도화를 도모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그 실효성과 성과는 하위규정의 제정과 실제적인 사업추진의 경과를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이러한 법령의 정비는 북한의 경제개혁의 의지와 적극적인 자세를 대내외에 보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사회면에서 김정일은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의 철저한 준수를 위한 이른바 ‘혁명적 준법기풍’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김정일의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라는 노작²⁹⁶⁾을 통해 강조되었다. 이를 통해 북한은 헌법 및 국가법규범과 규정의 준수·집행을 국민의 의무로서 강조하고, 지도일꾼들에 대해 사회주의법무생활의 모범이 될 것과 인민정권기관들의 주된 기능으로 사회주의법무생활의 조직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북한주민에 대한 법적 통제를 통한 체제수호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1992년 헌법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강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제18조). 전술하였듯이 사회주의법무생활 또는 준법성이란 개념이 북한주민을 법적으로 통제하는 이데올로기로 변화된 현실에서 북한정치체제의 수호를 위한 주민통제는 강화될 것이다.

아울러 1998년 헌법은 ‘국민의 거주·여행의 자유’를 인정하는 조항을 신

295) 이에 대해 북한은 법규범의 고정불변성을 부정하고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대외경제관계법규들이 새로운 사회관계를 규제하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기초하여 수정·보충, 개정되어 사회주의경제제도와 자립적 민족경제도대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진유현, “사회주의법제정의 합법칙성”, 앞의 논문, pp.49~52.

296) 김정일,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 앞의 연설, pp.174~183.

설하였는데(제75조), 북한사회에서 거주·여행의 자유의 허용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이는 서방국가와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해 그 보장을 촉구해 온 기본권이란 면에서도 그러하다. 따지고 보면, 이것은 식량난에 의한 북한주민의 배급통제의 이완에 따른 주민의 지역간 이동이 확대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북한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농민시장 등 경제활동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조치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북한은 정치체제의 유지를 위해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주민의 복지향상과 자유확대라는 조치를 통해 형식상이나마 주민의 권익보장에 의해 주민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넷째, 대외관계 면에서 1992년 헌법은 “자주·평화·친선은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이며 대외활동원칙”(제17조)이라고 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1972년 헌법 제16조)에 입각한 대외정책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수정하였다. 이는 탈냉전·탈이념의 국제환경에 대응하여 대외정책을 추진할 필요성과 사회주의 국가간의 국제적 연대가 붕괴된 국제사회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이 현실적 의미를 상실함에 따라 대외정책의 기본이념 및 활동원칙을 변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유지라는 명분에 의해 사회주의의 몰락과 그에 따른 세계적인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였다. 즉, 김정일은 구소련 및 동구사회주의의 대변력과 민주화운동을 사회주의의 좌절로써 사회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하여 세계정세의 변화에 비타협적인 자세를 보였으며, ‘혁명적 당 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논문²⁹⁷⁾을 통해서도 냉전적 국제정세관을 고수하면서 개혁에 대한 배타적 자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이렇게 내세우는 대외정세관은 다분히 북한사회주의체제의 정통성유지와 대내적인 명분축적용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²⁹⁸⁾ 실제로 북한의 대외정책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상응

297) 여기서 부르조아 자유화 바람의 침습을 막기 위해 黨의 唯一思想體制와 金日成 唯一領導體制를 강조하고, 세계의 모든 革命的 黨들이 연대성을 강화하고 독자적으로 단결·투쟁하여 나아가면 自主성을 반대하는 帝國主義者들과 反動들의 반혁명적 공세를 저지시키고 승리의 길을 개척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정일, “혁명적 당 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조선노동당 창건 제47주년(1992년 10월 10일)에 즈음하여 집필한 논문(평양: 중앙방송, 1992. 11. 2).

298) 柳錫烈, “北韓의 對外政策”, 『統一問題研究』, 제4권 3호(統一院, 1992년 가을호), p.49.

한 실리위주의 현실노선으로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김정일도 자주·평화·친선을 북한의 대외정책의 기본이념과 대외활동원칙으로 강조하고, 북한은 이 이념이 그 보편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시대와 혁명의 요구, 그리고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지향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변화하는 국제정세속에서 주체적인 외교활동을 담보해주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²⁹⁹⁾

II. 北韓의 對外開放 擴大와 法制整備

북한의 대외개방의 정책적 전환은 북한이 폐쇄에서 개방으로 실용주의적 정책의 추진으로 나오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수호가 전제된 정책추진은 애초부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한계를 설정하고 출발한 북한의 대외경제법제는 여타 사회주의국가의 대외개방정책 및 그 법제와는 차이를 보였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의 외자유치 정책 및 그 법제와 비교할 때 그 기본적인 틀은 유사하지만, 그 내용은 제한적이어서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경제개방의 성과와 비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의 대외경제법제를 보면, 중국의 해당 법제에서 시사받은 부분이 많으며 유사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의 형태와 실적은 중국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앞서 이루어진 북한의 대외경제법제의 실험은 1984년 제정된 합영법의 개정, 1999년의 외국인투자법제의 개정 등에 의해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패한 것이란 평가를 면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최근 이루어진 북한의 대외경제법제와 외국인투자법제의 개정은 새로운 환경에 적합하도록 법제개선의 의미를 가지는 한편 경제개방의 실적이 기대와는 달리 미흡한 현실을 타개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술하였듯이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서서 본격적인 대외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북한은 1992년과 1998년의 헌법개정에 의해 대외경제개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으

299) 박영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공화국정권의 대외기능과 대외활동 원칙”,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43권 제3호(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7), pp.43~48.

며, 이를 근거로 『외국인투자법』(1992년 10월 5일)을 비롯한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관계법들을 제정함으로써 서방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통한 북한경제의 회생 내지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역으로 북한의 대외경제법제의 분석을 통하여 북한의 현실과 향후 모습을 추론해볼 수 있다. 여기에서 북한의 대외경제법제의 대체적인 발전과정과 내용을 살펴보았지만, 그 실제적 적용상의 문제점과 과제를 분석하는 데에 미흡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다. 이는 북한체제의 속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북한의 법치적 차원에서의 문제해결, 즉 대외경제개방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해결이 제도적 차원보다 현실적 차원에서 접근되는 경향에 의해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접하지 못한 데에 있었다. 북한의 대외경제법제의 분석은 전체적으로 북한경제의 실상과 향후 발전방향을 가늠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며, 앞으로 북한법제에 관한 사안별 분석을 통해 북한의 경제개방의 원칙과 방향, 내용에 관한 분석이 요청된다.

다만, 북한이 대외경제법제의 개정 등 법제개선작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북한이 경제개방과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란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북한식의 경제개방정책의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북한의 경제개방의 의지는 확실하게 표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전술한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지정과 그 기본법의 제정은 북한의 새로운 대외경제개방정책의 과감한 시도라 할 수 있다.

Ⅲ. 南北經協의 擴大를 위한 北韓法制의 展開

이와 함께 북한의 대외경제법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남북경협과 관련한 내용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은 대외경제부문에서 남한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펴왔다. 북한의 남한의 투자장려에 대한 의사표명은 대외경제법제 및 외국인투자법제에 명확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당국의 정책적 해석에 의해 강조되고 추진되어왔다. 이는 북한법제에도 나타났는데, 북한의 외국투자법제는 투자 당사자로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도 다른 나라의 기관·회사·기업체들과 개인 및 기타 경제 조직과 함께 북한 영역 안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한 규정에 대하여 남한 주민이 공화국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볼 때, 남북경협을 위한 법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으로 북한의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및 특수경제지대를 비롯한 여타 지역에 대한 진출 대상을 남한 기업과 투자자들에게도 확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북한이 이른바 해외조선동포의 범주에 남한기업 및 기업인의 투자보장을 강조하여 왔는데, 최근 외국인투자법제의 개정과 관련하여 남한의 대북투자보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모호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1999. 2. 26)으로 외국인투자법제를 개정하였는데, 여기에서 ‘외국인투자’로부터 ‘해외조선동포의 투자’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전 법규에서는 해외조선동포투자를 ‘외국인투자’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라는 대목을 ‘해외조선동포’라고 변경하여 규정한 것이다(외국인투자법 제5조).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관련 법규에서 해외조선동포의 투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해외조선동포의 투자’에 대한 보장과 남한기업과 기업인의 투자보장에 관한 것이다. 북한은 해외조선동포의 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규를 준비중에 있다고 한다.³⁰⁰⁾ 그러나 남한기업 및 기업인의 대북투자는 외국인투자관련 법규에서 언급되지도 않고 새로이 마련되는 해외조선동포투자관련 법규에서도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다면, 이에 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요청된다.

한편 북한은 외국인투자법제와 대외경제법제 등에서 해당 법적 문제의 해결에 대해 국제규범과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강조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해당 국제규범에의 가입을 보류하고 있거나 아직 미가입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남한의 대북투자에 대한 북한의 국내법에 의존하는 일방적인 약속

300) 북한은 ‘외국인투자’로부터 ‘해외조선동포의 투자’를 분리하여(외국인투자법 제5조) 이른바 ‘해외동포투자촉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종래 ‘공화국영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의 범주에 남한주민을 포함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던 데에 비해 남한주민의 대북투자에 관한 적용이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렇다면 남한의 대북투자에 대한 법적 보장이 없어지게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찬우, “북한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개정”, <http://www.kotra.or.kr/nk/>. p.1.

을 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³⁰¹⁾ 이러한 면에서 북한의 국내적 입법조치에서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그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³⁰²⁾ 현재 북한이 추진중인 대외경제법제 및 외국인투자법제 등 외자유치 관련법제의 정비과정에서 북한은 남한과의 경협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투자 부문에 남한을 포함하여 적용할 것인지 또는 남북한간의 별도의 법제를 통하여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확실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한이 6·15공동선언의 이행·실천을 위한 남북경협보장을 위한 4대합의서(투자보장, 이종과세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해결 등)를 채택한 것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남북의 상호 협력의 기반 위에 법적 토대를 형성하고 서로의 권익을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남북한경제공동체의 형성을 통한 민족경제의 발전을 꾀하여 통일의 길을 열어 나아가겠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라 할 것이다.

최근의 북한법제의 변화, 특히 외국인투자법제 및 대외경제관련법제의 정비내용과 방향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의 확대와 관련하여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북한에서 외국인투자법제의 성패에 불구하고 북한이 이들 법제의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대외경제개방정책을 보완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더욱이 남한과의 경제협력의 질과 폭에 있어서도 보다 확대하고 좀 더 체계화를 도모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남한과의 경제협력의 확대와 대북투자 유인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는 최근 금강산관광지구법과 개성공업지구법의 제정에 보듯이 크게 개선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이들 법제는 남한의 대북투자자에 대한 보다 분명한 배려와 혜택에 대하여 법적 보장을 하고 있다. 이는

301) 예컨대 북한은 『대외경제중재법』에서 국제조약 및 국제적 관례를 준수하겠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국제협약(예컨대 ICSID: 워싱턴협약)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그 실효성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한다. 다만, 북한은 최근 대외경제개방과 관련하여 외국과 투자보장 및 이종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는 등 변화자세를 보이고 있다.

302) 북한이 남한기업의 대북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조치의 방안으로 민간주도의 남북경협사업 가운데 일부의 경우, 예컨대 공단 조성 사업, 북한 인력의 제3국 진출 등과 같은 사업은 책임있는 남북의 당국자간의 협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기존의 간접교역방식에서 탈피하여 직접교역의 확대 등을 위한 남북경협의 법제정비가 요청된다.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법제에 구체적인 남한투자자에 대한 우대조치의 강구가 요청된다.

남한의 투자에 대한 권리주체의 명확성과 투자보호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종래 법령에 비하여 남한투자 및 권익보호를 강화한 것으로 바람직한 법제개선이라 할 수 있다.³⁰³⁾

제 2 절 北韓法制改善과 中國의 法制改革의 示唆點

북한의 김정일체제 하의 법제정비의 내용은 크게 중국의 법제개혁의 원칙과 방향을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그것은 북한의 경제개혁의 형태와 내용이 전체적으로 중국식의 경제개혁모델에서 원용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실제로 북한의 경제개방 및 개혁의 법제는 중국의 법령의 발전 추이를 뒤따르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중국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보다 세부적인 면에서 중국과의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중국은 1979년 등샤오핑(鄧小平)의 등장 이후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재의 발전을 구가하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법제정비를 통하여 반영되었고 중국법제의 내용은 일부 북한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 북한과 중국은 정치·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왔다. 비록 사회주의국가의 대변혁과 관련하여 이른바 북한식의 사회주의론의 전개에 의해 다소 소원한 관계를 형성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³⁰⁴⁾ 특히 현실적으로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관계를 보다 강화하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법제 면에서 그 긴밀한 관계성을 찾아볼 수

303) 예컨대 금강산관광지구법은 제29조에서 관광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견 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북남 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 해결절차 또는 중재, 재판절차로 해결한다고 하여 이미 합의한 남북경협보장 합의서 중 상사분쟁해결에 관한 합의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부칙 제2조에서 금강산관광지구와 관련하여 북남 사이에 맺은 합의서의 내용은 이 법과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 기존의 남북간 금강산관광사업상 체결한 합의서에 대해서도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법에서도 제46조와 부칙 제2조에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304) 북한의 대외관계의 전개와 관련하여, 특히 중국과의 경제관계발전에 대해서는 윤해수, 『북한국제외교론』(한울아카데미, 2000), pp.344~351.

있다. 특히 중국의 경제개혁의 논리와 과정은 북한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 시도되고 있는 경제개혁의 정책적 전개과정은 중국의 경제개혁의 모델에서 시사받은 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중국에서 시장화 개혁조치의 진전에 따라 중국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고 경제적 요인이 중국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 중국의 개혁성과는 북한의 경제개혁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헌법적 견지에서 볼 때, 북한은 1972년 사회주의헌법을 1992년과 1998년 두 차례 개정하였는데,³⁰⁵⁾ 경제조항의 개정을 중심으로 볼 때 북한이 경제조항의 변화는 중국헌법의 경제조항과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의 1992년 헌법에서 외국법인과 외국인의 기업합영과 합작에 의한 투자장려와 합법적 이익의 법적 보장(제16조)과 1998년 헌법의 특수경제지대에서의 다양한 기업창설·운영의 장려에 관한 법적 근거의 신설(제37조)은 중국의 1982년 헌법의 외국기업·기타 경제조직·개인이 중국에 투자하고 경제합작의 추진을 허가한다는 규정(제18조 1항)과 중외합자경영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규정(동조 2항)에서 그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나아가 북한의 1998년 헌법상 경제조항에서 소유구조의 조정과 개인소유의 범위확대, 경제의 자율성 확대, 대외경제개방의 강화 등에 관한 개정내용은 중국의 1993년 및 1999년 헌법의 경제조항의 개정과 많은 면에서 그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³⁰⁶⁾

물론 북한헌법의 경제조항은 중국헌법의 그것과는 세부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인 경제개혁의 방향, 특히 사회주의경제체제와 원리의 모순에 따른 자본주의경제요소의 수용을 통한 경제개혁 및 발전의 법적 근거의 마련이라는 면에서는 전체적인 면에서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현재 중국헌법에서 나타났듯이 시장경제화의 방향으로 북한도 개혁조치를 취하게 되는 경우 남북한의 통합에서 경제

305) 북한의 1992년 헌법개정과 1998년 헌법개정의 내용과 특징의 분석은 張明奉, “최근의 북한 사회주의헌법 개정(’98. 9. 5)의 분석 : 배경·내용·평가 및 정책전망”, 『統一研究論叢』, 제7권 2호(민족통일연구원, 1998), pp.1~39.

306) 북한헌법상 경제조항과 중국헌법상 경제조항의 연관성에 관한 분석은 朴井源, 『北韓憲法(1998)上 經濟條項과 南北韓經濟統合』(한국법제연구원, 1999), pp.111~119.

적 여건은 상호 공통점을 찾게 되는 계기가 형성될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북한은 1984년 9월 중국의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 1979)을 모델로 한 『합영법』을 제정하여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1984년의 합영법을 통한 외자유치 내지 북한경제의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은 실패하고 말았다. 그것은 북한경제여건의 불안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담보상태에 머무른 데에 기인한다.³⁰⁷⁾ 따라서 이를 통한 외국인 및 외국기업의 투자확대는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³⁰⁸⁾

북한과 중국의 대외경제개방법제를 일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할 때, 그 투자유형에서 외국의 100% 단독투자에 대하여 북한은 경제무역지대에 한정하고 있는데 비해 중국은 지역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합작의 경우 북한은 경영권을 북한이 행사하도록 한데 비해 중국은 경영관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윤분배 및 고용, 외국투자기업의 존속기간에서도 북한은 그 제약요소가 많고 존속기간이 단기(예컨대 합영의 경우 10년원칙)인데 비해 중국의 경우는 비교적 자유로운 방식으로 계약에 위임하고 있으며 존속기간도 장기이다(예컨대 합영기업의 경우 10~30년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부문은 50년 이상도 가능하도록 함). 이렇듯 북한과 중국의 외국투자법제의 일반사항을 보면, 그 대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있어 북한은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의 틀과 내용을 모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의 세부규정을 보면, 그 제약요소와 그 범위가 중국에 비해 협소함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북한의 경제무역지대는 1개 지역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 외자유치와 체제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정책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비해, 중국의 경제특구는 경제개방의 창구로서 경제개혁을 위한 실험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그 지역도 5개지역에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도 양

307) 金永信, “南北經協의 展望”, 『北韓研究』, 제3권 4호(大陸研究所, 1992 겨울), pp.102~104; 『北韓의 合營法制』, 法制資料 제160집(法制處, 1992), pp.9~16; 『北韓 外國人投資關聯法 研究』(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事務處, 1993), p.3.

308) 북한과 중국의 경제개방법제비교에 관해서는 『北韓法の 體系的 考察(Ⅲ) - 商事·經濟, 勞動關係法 -』(法務部, 1997), pp.345~352 참조.

자의 차이점이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현재 북한이 신의주특별행정구,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 등이 지정에 의해 새로운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법령체계의 혼란, 법령내용의 불명확성 등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이 외국인투자법제의 실효성이란 면에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은 여전한 문제로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하였듯이 북한은 1990년대 처음 마련된 외국인투자법제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그동안의 북한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경험과 실패를 반영하여 정비되고 있다.

경제개방의 방향에 관해서 북한은 스스로 북한식의 경제제도의 시행을 강조하고 있고, 중국과 다른 북한식의 경제발전전략을 도모하고 있음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의 경제개혁의 논리와 내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만큼 중국의 경제개방정책과 이에 대한 법적 뒷받침은 중국의 선례에서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서 2001년 1월 김정일위원장의 중국방문의 행보에 비추어 중국의 경제발전의 모습이 북한경제의 발전 방향에 투영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물론 북한의 대외경제법제는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제정비로써 마련된 것이다. 이들 법제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북한의 사회주의경제원리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대외무역의 강화라는 정책적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의 형성이라는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더욱이 사회주의경제체제의 국제적 연대가 와해된 가운데 자본주의국가와의 교류와 협력을 표방하면서 북한의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를 이들 법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만큼 북한의 대외경제법제의 발전을 보면서, 북한의 대외개방에 대한 의지를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중국의 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지정에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물론 중국의 특별행정구는 통일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데 비하여 북한의 특별행정구는 경제개혁의 목표아래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지만, 그 기본법의 원칙과 내용은 홍콩 및 마카오의 특별행정구와 신의주특별구의 유사한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은 1999년 헌법개정을 통하여 “중국은 법에 의해 국가를 통치하며,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제5조)는 조항을 추가하여 법치주의에 의한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발전 및 경제체제

의 개혁과 경제건설 촉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였다.³⁰⁹⁾ 이는 중국에서 경제개혁과 개방을 중심으로 한 변화의 모색이 결국 중국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졌던 인치(人治)적 요소를 법치(法治)로 바꾸는 현실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중국에서의 법치의 강조는 중국이 경제개혁과 병행하여 국정전반에 대하여 체계적 운영과 법제도적 근거 하에 이루어지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중국에서의 변화를 통하여 북한에서 현시점에서의 법제변화의 내용에 비추어 다음의 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 즉, 북한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회주의법제 강화라는 점에 비추어 그동안 수령의 교시 또는 지도자의 말씀을 통하여 국정을 운영하여왔던 관행에서 벗어나 법제도적 체계화를 통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방향과 자세 변화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물론 북한의 법제개선 및 정비의 내용은 현실의 중국법제의 개혁과는 거리가 있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제개선 내지 정비는 북한에서도 나름대로의 법치적 요소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김정일체제에 들어서서 『인민경제계획법』을 제정하여 경제운영을 법제화함으로써 체계적인 국정운영을 도모하려는 자세변화에 비추어 알 수 있으며, 대외경제법제의 정비에 있어서 헌법과 부분법의 해당조항의 유기적인 관계를 파악하여 대응하고 있는 북한법제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같은 북한법제의 변화모습에서 당장 북한이 일당독재체제의 틀에서 벗어나 민주적인 국정운영, 즉 법치주의 형태를 실현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진전된 태도변화를 엿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이러한 변화가 극히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체제개혁과 개방으로의 구체적인 정책전개와 연결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북한법제의 변화내용은 부분적인 정책변화의 법적 대응으로서 전반적인 북한체제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김정일체제 하에서 진정한 법치주의의 실현이 보장되는 방향에서 법제정비의 원칙과 방향이 실현되는 상황을 기대하게 된다.

309) 중국의 법치론에 관해서는 王人博 外, 『法治論』(北京: 山東人民出版社, 1998), 91~234면.

제 6 장 結 語

생각건대 북한의 김정일체제는 김정일의 ‘수령의 유일지배체제’ 아래에서 비교적 순조로운 권력승계를 이룰 수 있었지만, 시대적으로 대내외적인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북한에서 김정일시대의 출범시기의 핵심과제는 북한체제의 수호에 있었다. 구소련방의 해체와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변혁은 사회주의체제 붕괴라는 세계사적 조류를 형성하였으며, 북한도 그러한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의 상황은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시련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외적 환경의 변혁이라는 상황에 대처하고, 대내적으로 김일성주석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정치상황의 절박성은 김정일체제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대내외적인 상황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북한은 대내외정책의 변화를 시도하였는데, 그 같은 정책전개는 김정일체제의 수호를 위한 대응방식인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김일성의 유훈을 이어받은 기존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많은 변화를 보였다. 주체사상에 입각한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는 김정일의 통치이념으로 강조되었으며, 이는 김일성시대에서 김정일시대로 승계되는 과정에서 북한에 김정일의 통치기반을 확립하는 실천강령이 되었다. 이에 기초한 김정일의 통치이념과 목표는 법제화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김정일시대에 들어서면서 북한법제는 기존법제의 개정과 새로운 법령의 제정 등에 의하여 정비되고 있다.

북한의 법제정비의 큰 변화는 그만큼 북한의 실정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북한법제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김정일체제의 국정운영의 원칙과 방향을 고찰할 수 있다. 바로 이점에 김정일체제의 법제정비동향을 연구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북한 김정일체제 하의 법제는 비록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논의에 한정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북한 김정일체제의 국정방향에 관한 전체적인 조망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 김정일체제의 상황을 법제정비의 내용과 범위에 비추어 보면, 개략적으로 사회주의정치체제의 수호와 경제체제의 개혁이라는 국정방향을 분석할 수 있다. 비록 후자의 경우도 체제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추진되

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경제 면에서 개방을 추진하는 것, 그 자체로 북한의 이전의 폐쇄체제의 개선임을 인식할 수 있다. 초기에 소극적인 경제개방정책은 현시점에 이르러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 경제회생과 발전이 체제수호의 관건이라는 절박함에도 원인이 있지만, 사회주의계획경제원리에 입각한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에 대한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제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스스로의 인식에 기인하는 바도 커 보인다. 현재의 북한법제의 정비내용은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02년 7월 1일의 경제개선조치를 단행한 이후 신의주특별행정구,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 등의 지정과 이 지역의 개발을 위한 당해 기본법의 제정은 북한의 적극적인 경제개선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 이 부분은 바로 김정일의 경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 대한 유사한 조치들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바로 이러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외경제개방의 의지와 자세가 해당 법령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음은 전술한 논의를 통하여 살펴본 바와 같다.

김정일체제 하의 북한법제를 보면, 김정일이 과거와 같이 지도자의 교시 내지 말씀에 의한 국정운영에서 벗어나 주요한 국정운영의 원칙과 방법을 법체계화하고 있다. 인민경제계획법의 제정은 그러한 예로 대표된다. 이렇게 김정일체제 아래에서 법체계화를 통한 국정운영이 강조되는 것은 무엇보다 북한체제의 현실이 과거와 달리 커다란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그 요인은 김정일체제가 종래의 사회주의에 기초한 통제사회로부터의 변화를 맞고 있다는 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북한법제의 정비내용에서 주목되는 점은 사회주의국가임을 주장하면서도 북한사회 전반에 실리와 실용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분야에서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원리하에 민족자립경제를 주창하고 있으면서 기실 경제관련 부문의 법제변화의 내용은 자본주의원리와 제도의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대외경제개방을 위한 외국인투자법제 및 대외경제법제의 정비내용은 자본주의경제원리에 입각해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경제부문에서의 초기수준의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하고 있다는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북한 김정일체제에서 법제정비에서 두드러지는 특성은 남한과의 관계에서 남한의 대북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법제개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금강산관광지구법과 개성공업지구법은 남한의 당해 지역에 대한 투자보장을 법적으로 확고히 한 획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동안의 남한의 대북투자 및 경험에 대한 법적 보장요구에 대한 북한의 화답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남한의 경우에도 그에 상응한 조치로써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경험사업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작업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법제개선은 곧 종래 대북관련법령의 미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북한의 특수경제지대 등의 경제특구에 대한 남한의 투자와 관련한 제반 법적 문제의 방지 또는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³¹⁰⁾ 결국 그러한 법제도적 개선조치는 북한의 경제 개방의지를 체제개혁의 방향에서 접근하게 하는 것이며, 남북통합의 길을 닦는 방법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끝으로 김정일체제 하의 법제정비의 동향과 전망을 통하여 북한 김정일체제의 전개방향을 살피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북한의 새로운 입법에 의한 법제분석은 김정일체제를 이해하고 남북통일의 방향을 잡는 유용한 방법임을 인식하여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뒤따라야 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310) 예컨대 남북간 채택한 경험보장 합의서의 법적 실효성의 확보, 현실변화에 상응한 남북교류협력법제의 입법적 개선, 대북투자 및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 등을 제기할 수 있다.

북한법제 관련 문헌목록

문헌 목록

(단행본)

- 『'95 북한개요』(통일원, 1995).
- 『2000 북한개요』(통일부, 1999).
- 『'92개정 북한의 사회주의헌법』(統一院, 1993).
- 『國際法上에서 본 北傀의 『聯邦制』案에 關한 研究』(國土統一院, 1977).
- 『國際法上으로 본 北傀의 武力使用 禁止義務와 違法行爲 責任』(國土統一院, 1978).
- 『나진·선봉지대 투자환경 및 관련법규』(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6).
- 『南北家族法の 比較 및 問題點과 對策에 關한 研究』(서울大 法學研究所, 1972).
- 『南北關係 變化에 對備한 國內公法 整備方案』(國土統一院, 1972).
- 『南北交流에 抵觸되는 北韓法令의 研究』(國土統一院, 1973).
- 『南北交流協力과 北韓의 現行法制』(國會情報委員會, 2000).
- 『南北接觸에 따르는 法的 諸問題』(國土統一院, 1972).
- 『南北韓 家族法の 比較와 問題點 및 對備策』(國土統一院, 1972).
- 『南北韓 基本關係 暫定協定締結에 關한 研究』(國土統一院, 1983).
- 『南北韓 分斷解消의 法理論』(國土統一院, 1981).
- 『남북한 사법운용 및 범죄처리에 관한 비교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 『南北韓 憲法에 나타난 平等理念 考察』(國土統一院, 1989).
- 『北韓 및 統一關聯 論文集, 1998(Ⅲ): 北韓實態』(통일부 정보분석실, 1998).

북한법제 관련 문헌목록

- 『北韓 및 統一研究 論文集』(統一院, 1989~1996).
- 『북한 법제관련문헌목록집』(韓國法制研究院, 1993).
- 『북한 산업재산권법』(한국발명특허협회, 1991).
- 『北韓 外國人投資關聯法 研究』(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事務處, 1993).
- 『북한가족법과 가정실태』(북한연구소, 1991).
- 『北韓概要』(國土統一院, 1986).
- 『북한대외경제교류법령의 주요 논점』(법원행정처, 2001)
- 『北韓法 40年과 그 動向』, 고려대학교 개교 85주년 및 법학연구소 설립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高麗大 法學研究所, 1990. 10. 12~13).
- 『北韓法 50年 · 그 動向과 展望』(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9).
- 『北韓法 研究(I) -統治機構 · 司法制度-』(법무부, 1985).
- 『北韓法 研究(II) -刑法-』(법무부, 1985).
- 『北韓法 研究(III) -刑事訴訟法-』(법무부, 1986).
- 『北韓法 研究(IV) -民法-』(법무부, 1987).
- 『北韓法 研究(V) -國際條約-』(법무부, 1987).
- 『北韓法 研究(VI) -勞動法-』(법무부, 1987).
- 『北韓法 研究(VII) -新刑法-』(법무부, 1990).
- 『北韓法 體系와 特色』(세종연구소, 1994).
- 『北韓法令集 제1집』(國土統一院, 1989).
- 『北韓法令集』, 제1권~제5권(大陸研究所, 1990).
- 『北韓法律用語의 分析(I) -헌법편-』(韓國法制研究院, 1995).
- 『北韓法律用語의 分析(II) -형사법편-』(韓國法制研究院, 1996).

- 『北韓法에 관한 概說的 研究』(國土統一院, 1978).
- 『북한법에 대한 소련 및 중공의 영향』(國土統一院, 1970).
- 『北韓法研究: 新刑法』(法務部, 1990).
- 『北韓法の 體系的 考察(Ⅰ) -民事關係法』(法務部, 1992).
- 『北韓法の 體系的 考察(Ⅱ) -刑事關係法』(法務部, 1993).
- 『北韓法の 體系的 考察(Ⅲ) -商事·經濟, 勞動關係法-』(法務部, 1997).
- 『北韓法制概要』, 法制資料 제157집(法制處, 1991).
- 『北韓法制關聯文獻目錄集』(한국법제연구원, 1993).
- 『北韓司法制度概觀』(法院行政處, 1996).
- 『北韓社會制度的 法的構造 分析』(國土統一院, 1973).
- 『北韓新舊憲法比較研究 -舊憲法 및 共產圈憲法을 中心으로-』(中央情報部, 1977).
- 『북한의 가족법』(법원행정처, 1998).
- 『北韓의 家族法과 傳統的 家族制度』(國土統一院, 1975).
- 『北韓의 各種 法令 廢止에 따른 韓國法令의 補完 및 問題點과 對策』(서울大 法學研究所, 1969).
- 『북한의 개정 민사소송법』(법원행정처, 1995).
- 『북한의 개정헌법연구』(북한문제조사연구소, 1993).
- 『북한의 개정형사소송법 개요』(북한연구소, 1992).
- 『북한의 노동법제』(한국경영자총협회, 2000).
- 『북한의 문화재보호관계법제』(韓國法制研究院, 1995).
- 『북한의 민법개요』(북한연구소, 1992).
- 『북한의 민사소송법 개요』(북한연구소, 1991).

- 『北韓의 法과 法理論』(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8).
- 『北韓의 法務行政 實態와 強弱點 分析』(國土統一院, 1986).
- 『북한의 부동산제도』(법원행정처, 1997).
- 『북한의 새로운 변호사제도』(법원행정처, 1995).
-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통일원, 1996).
-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통일부, 2000).
-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제』(韓國法制研究院, 1994).
- 『北韓의 外國人投資制度와 對北投資推進方案』(韓國開發研究院, 1995).
- 『북한의 외자유치관련 법령집』(국가안전기획부, 1994).
- 『北韓의 人權』(國土統一院, 1989).
- 『북한의 인권백서』(민족통일연구원, 1997).
-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민족통일연구원, 1993).
- 『北韓의 人權實態』(統一院, 1994).
- 『북한의 재판제도: 북한의 재판소 구성법을 중심으로 본 북한사법제도의 허실』(북한연구소, 1991).
- 『北韓의 條約集(1945~1982)』(國會圖書館 資料局, 1982).
- 『北韓의 중재제도 -국가중재재판제도를 중심으로-』(법원행정처, 1995).
- 『북한의 지하자원법제』(韓國法制研究院, 1996).
- 『北韓의 治安行政의 實態와 強弱點 分析』(國土統一院, 1986).
- 『北韓의 統治構造의 實態와 強弱點 分析』(國土統一院, 1986).
- 『北韓의 統治이데올로기 批判』(北韓研究所, 1981).
- 『北韓의 合營企業 關係法令集』(國土統一院, 1986).
- 『北韓의 合營法 關係法令集』(國土統一院, 1987).

- 『北韓의 合營法制』(한국법제연구원, 1992).
- 『북한의 헌법개정과 입법동향』(韓國法制研究院, 1994).
- 『북한의 환경보호관계법제』(韓國法制研究院, 1995).
- 『북한인권백서』(통일연구원, 2001).
- 『북한인권백서』(통일연구원, 2002).
- 『北韓總覽(1945-1968)』(共產圈問題研究所, 1968).
- 『北韓總覽(1945-1982)』(北韓研究所, 1983).
- 『북한형법의 실상 - 그 비민주성 · 반인권성 · 반통일성을 해부한다』(북한연구
구소, 1990).
- 『北韓刑法의 形成과 展開에 관한 考察』(國土統一院, 1989).
-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의 국내법적, 국제법적 과제와 대응방안』(아
시아사회과학연구원, 2002. 11).
- 『제2회 북한인권 · 난민문제 국제회의』(북한동포의생명과인권을지키는시민
연합, 2000).
- 『최근 북한의 대외개방관련 법제동향』, 남북법제연구 세미나 발표자료집
(법제처 · 한국법제연구원, 2002. 12. 2).
- Political Prisoners' Camps in North Korea*, Center for The
Advanc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1995).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01).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02).
- 姜求真, 『北韓法の 研究』(博英社, 1975).

- , 『北韓 社會主義憲法 研究』(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1977).
- , 『北韓法에 대한 소련 및 중공의 영향』(國土統一院, 1978).
- 共產圈研究室 編, 『北韓法律體系研究』(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 1972).
- 金圭昇,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法과 司法制度』(東京: 日本評論社, 1988).
- 金東一 외, 『社會科學方法論 批判』(청람문화사, 1983).
- 金明基, 『北韓住民의 人權과 國際法』(법서출판사, 2000).
- 金相容, 『土地法』(汎論社, 1988).
- , 『土地所有權 法思想』, 大字學術叢書人文社會科學 87(民音社, 1995).
- 김상호, 『북한 저작물의 권리보호에 관한 비교연구』, 저작권연구자료 6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0).
- 김영수 편, 『사회주의국가헌법』(인간사랑, 1989).
- 金雲泰, 『北韓政權機關(行政機關)의 組織變遷에 관한 研究』(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1977).
- 金燦奎, 『國際法에 대한 北傀의 態度』(國土統一院, 1977).
- 金哲洙, 『北韓憲法과 共產諸國의 憲法과의 異同에 관한 研究』(國土統一院, 1978).
- 金泰瑞, 『北韓의 地方行政組織에 관한 研究』(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1977).
- 朴東雲, 『北韓統治機構論』(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 1964).
- , 『憲法理論으로 본 北韓의 權力構造와 基本權問題』(北韓研究所, 1984).
- 朴相哲·金昌奎, 『北韓의 環境保護關係法制』(한국법제연구원, 1995).
- 박정동, 『북한의 경제특구 -중국과의 비교-』(한국개발연구원, 1996).
- 朴井源, 『北韓法律用語分析(Ⅲ) -民事法 編-』(한국법제연구원, 1997).

- , 『北韓의 地方主權機關構成法』(한국법제연구원, 1997).
- , 『北韓法律用語의 分析 IV : 商事 및 對外經濟開放法制 編』(한국법제연구원, 1998).
- , 『북한의 『인민경제계획법』에 관한 연구』(한국법제연구원, 1999).
- , 『北韓憲法(1998)上 經濟條項과 南北韓經濟統合 -中國憲法上 經濟條項과 관련하여-』(한국법제연구원, 1999).
- , 『北韓의 對外經濟仲裁法에 관한 研究』(한국법제연구원, 2000).
- , 『북한의 공업소유권보호제도에 관한 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01).
- 朴井源·金明淵, 『北韓의 地方主權機關構成法』(韓國法制研究院, 1997).
- 박훤일, 『북한의 금융제도와 금융용어사전』, 한국산업은행 자료(한국산업은행 조사부, 1999).
- 북한연구소, 『북한 형법의 실상』(도서출판 원일정보, 1990).
- , 『북한 가족법과 가정실태』(은창문화사, 1991).
- 손희두, 『북한의 국적법』(한국법제연구원, 1998).
- , 『북한의 무역제도에 관한 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00).
- , 『북한의 노동법제에 관한 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01).
- 申榮鎬 외, 『北韓法律文獻目錄과 그 解題』(近思出版, 1998).
- 申雄湜·安成祚,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북한의 투자환경과 외국인투자법규』(한국무역협회, 1998).
- 尹大奎 외,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1945-1948』(慶南大學校 極東問題研究所, 1991).
- 李啓滿, 『北韓의 新司法制度論』(조선대학교 출판국, 1998).
- 李長熙 編著, 『北韓法 50年, 그 動向과 展望』(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9).

북한법제 관련 문헌목록

- 張庚鶴 譯, 『共產主義 法理論(Hans Kelsen, *The Communist Theory of Law*)』(明知社, 1983).
- 張明奉, 『南北韓의 法哲學·法認識의 差異와 北韓憲法の 體系的 研究』(統一院, 1982).
- , 『北韓憲法の 研究 -憲法認識·憲法秩序·基本權·權力構造에 관한 考察-』(統一院, 1982).
- , 『김정일체제 출범 이후 북한법제 정비동향』, 통일부 연구보고서 (통일부, 2001).
- , 『北韓 對外經濟開放法制的 最近 動向과 北韓經濟의 改革開放 支援을 위한 法制化 摸索』(통일부, 2001).
- 외, 『북한인권의 이해』(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1995).
- 외, 『통일정책 및 북한주민의 법적지위에 관한 헌법적 문제』(헌법재판소, 1998).
- 외, 『北韓法 50年, 그 動向과 展望』(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9).
- 외, 『분단 반세기 북한 연구사』, 북한연구학회(도서출판 한울, 1999).
- 외, 『北韓學概論』(文佑社, 1999).
- 張明奉·朴井源, 『북한의 대외경제개방과 관련법제 정비동향』(한국경제연구원, 2001).
- 全賢俊,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民族統一研究院, 1993).
- 全洪澤·吳剛秀, 『北韓의 外國人投資制度和 對北投資推進方案』(韓國開發研究院, 1995).
- 鄭慶模·崔達坤, 『北韓法令集』, 제1권~5권(대륙연구소, 1990).
- 정영화, 『평화통일과 경제헌법』(법원사, 1999).

- 諸成鎬, 『북한 외자유치법령의 문제점』(민족통일연구원, 1998).
- 崔達坤, 『北韓婚姻法』(고려대 출판부, 1977).
- , 『北韓法에 關한 概說的 研究 -실정법의 체계와 내용을 중심으로-』
(국토통일원, 1978).
- , 『북한민법의 연구』(세창출판사, 1998).
- 崔達坤·申榮鎬, 『北韓法入門』(세창출판사, 1998).
- 최성철 편저, 『국제사회와 북한의 인권』(한양대 통일정책연구소, 1996).
- 崔鍾庫, 『북한법』(博英社, 2001).
- 韓國共產圈研究協議會 編, 『共產圈研究現況』, 研究論叢 제1집(法文社, 1981).
- 한만영, 『北傀의 司法 및 檢察制度의 實態把握과 民主的 改編方案 研究』
(國土統一院, 1970).
- Choi, Sung-Chul, *Human Rights in North Korea*, Center for
The Advanc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1995).
- Cho, Sung-Yoon, *The Judicial System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Law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 C. (1974).
- , *Law and Legal Literature of North Korea:
A Guide* (1984).

(논문)

- 姜玆中, “北韓의 民事訴訟法”, 『人權과 正義』, 제296호(대한변호사협회지,
2001. 4).

- , “北韓 民事訴訟法에 관한 考察”, 『法學論叢』, 제13집(國民大 法學研究所, 2001).
- 고영남, “북한민법에서 채무이행의 원칙에 대한 정치경제적 검토”, 『민주법학』, 제20호(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1. 8).
- 權純漢, “親養子制度和 南北韓 養子法の 統合”, 『아세아여성법학』, 제2권(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1999. 6).
- 權五杰, “北韓의 人權問題에 관한 法的研究”, 『北韓統一研究論文集(VI)』(統一院, 1991).
- 權五乘, “北韓의 外國人投資關係法”, 『北韓研究』, 제4권 4호(大陸研究所, 1993년 겨울호).
- 金 辰, “北韓의 外國人投資關聯法規”, 『法學』, 제31권 1·2호(서울대 法學研究所, 1990).
- 金南辰, “北韓의 行政法”, 『北韓法律行政論叢』, 제8집(高麗大 法學研究所, 1990).
- 金東漢, “北韓의 司法制度 및 運營實態”, 통일원 연구보고서(통일원, 1992).
- , “北韓의 司法制度和 運營實態 -제도와 운영에 나타난 人權保障과 관련하여-”, 『'92 北韓·統一研究論文集(4) -北韓의 經濟·社會·司法制度 分野-』(통일원, 1992).
- , “北韓憲法上の 基本權條項 變遷에 관한 考察”, 『北韓研究』, 제6권 2호(大陸研究所, 1995).
- 김민배, “북한에서의 토지개혁의 법적 논리와 그 역사적 전개”, 『사회과학연구소논문집』, 제11호(인하대 사회과학연구소, 1993. 4).
- , “北韓에 의한 土地改革의 歷史的 遺産과 統一憲法에서의 法的 課題”, 『論文集』(인하대 사회과학연구소, 1993).

- , “월남자들의 북한토지소유권에 대한 실증적 접근”, 『민주법학』, 제9호(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95. 4).
- , “북한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과제”, 『통일과 국토』, 제8호(한국토지공사, 2001 겨울).
- 金炳默, “北韓憲法上 基本權과 主體思想”, 『慶熙法學』, 제28권 1호(慶熙法學研究所, 1993).
- , “북한법제상 인권조항관계 연구”, 『現代憲法學理論』, 佑齊李鳴九博士華甲紀念論文集(I) (考試研究社, 1996).
- 金庠均, “北韓의 司法制度”, 『人權과 正義』, 통권 제231호(大韓辯護士協會誌, 1995. 11).
- 金相容, “北韓의 對外開放과 對外開放支援法制에 관한 小考”, 『延世行政論叢』, 제21집(延世大 行政大學院, 1996).
- , “北韓의 土地制度和 統一後의 改編方向”, 『現代理念研究』, 제8집(建國大學校現代理念 比較研究會, 1992).
- , “北韓의 土地所有制度”, 『토지연구』(韓國土地開發公社, 1993. 3).
- , “資本主義的 土地所有權의 生成, 變遷 및 課題”, 『現代法の 理論과 實際』(琴浪金哲洙 教授華甲紀念, 博英社, 1993).
- , “北韓의 土地所有制度”, 『토지연구』, 3-4월호(韓國土地開發公社, 1993. 4).
- , “舊東獨과 北韓의 土地制度 比較”, 『토지연구』, 제5권 5호(韓國土地開發公社, 1994년 9·10월호).
- , “북한의 토지제도”, 『통일과 토지정책』, 북한토지연구논문모음집(한국토지개발공사, 1997. 11).
- , “북한의 토지소유제도의 사상적 기초와 제도적 변천”, 『鑑定評價論文集』, 제12권 1호(2002. 2).

- 외, “各國의 土地政策”, (國土開發研究院, 1979).
- , “私有財産制와 私所有權”, 『法學論叢』, 제7집(漢陽大學校 法學研究所, 1990).
- , “北韓民法에 대한 小考”, 『現代法學의 理解』, 佑齊李鳴九博士華甲紀念論文集(Ⅲ) (考試研究社, 1996).
- 金相泰, “東西이데올로기의 比較研究 Ⅱ: 南北韓 憲法상의 基本權分析”, 『논문집』, 제19호(전주교대, 1983).
- 金奭賢, “대한민국정부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개입의 합법성 및 그 방법”, 『'95 北韓 및 統一研究論文集(Ⅳ): 南北交流協力分野』(통일원, 1995).
- 金秀煥, “북한의 사회복지법제에 관한 일고찰”, 『社會科學研究』, 제7호(慶星大, 1991. 11).
- 김승조, “北韓의 社會保障 및 環境에 관한 法”, 『北韓法 體系와 特色』(세종연구소, 1994).
- 金淵明, “北韓의 社會福祉制度에 관한 研究 -所得保障制度와 醫療保障制度를 中心으로”, 『北韓·統一研究論文集(Ⅵ): 經濟·社會·人權實態分野』(통일원, 1991).
- 金鍊鐵, “北韓의 勞動政策”, 『'95 北韓 및 統一研究論文集(Ⅱ)』, 北韓의 經濟·社會分野(統一院, 1995).
- 金永圭, “北韓民法의 物權制度”, 『檀國法學』, 제3집(檀國大 法學研究所, 1993).
- 金英美, “北韓의 地方行政體制에 관한 研究”, 『北韓·統一研究論文集(Ⅴ): 軍事 및 行政法制分野』(통일원, 1991).
- 김영삼, “북한인권의 실상과 전망”, 法哲學 및 社會哲學 編, 『東西의 法哲學과 社會哲學』(法文社, 1990).

- 김의박, “북한 특허법”, 『발명특허』, 1994년 9월호(1994).
- 金日秀, “北韓刑法 40年”, 『北韓法律行政論叢』, 제8집(高麗大 法學研究所, 1990).
- , “舊蘇聯刑法이 北韓刑法의 變化에 미친 影響”, 『北韓法律行政論叢』, 제9집(高麗大 法學研究所, 1992).
- , “北韓刑法의 體系와 特色”, 『北韓法 體系와 特色』(세종연구소, 1994).
- , “北韓刑法上 刑事政策의 方向과 그 變遷”, 『北韓法律行政論叢』, 제10집(高麗大 法學研究所, 1995).
- 김종일,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법 1”, 『北韓』, 제330호(北韓研究所, 1999. 6).
- 金燦奎, “北韓의 國際法 및 그 實踐”, 『北韓法律行政論叢』, 제8집(高麗大 法學研究所, 1990).
- , “北韓 國際法 趨勢”, 『北韓法律行政論叢』, 제9집(高麗大 法學研究所, 1992).
- , “北韓의 國際法에 대한 態度”, 『北韓法 體系와 特色』(세종연구소, 1994).
- , “北韓의 領海制度”, 『國際法學會論叢』, 제77호(大韓國際法學會, 1995).
- 金洪奎, “北韓民事訴訟에 있어서 黨과 人民의 役割에 관한 研究”, 『北韓法律行政論叢』, 제9집(高麗大 法學研究所, 1992).
- , “北韓의 民事訴訟制度”, 『北韓法 體系와 特色』(세종연구소, 1994).
- , “北韓의 民事訴訟法”, 『人權과 正義』, 통권231호(大韓辯護士協會誌, 1995. 11).
- 金喜聖, “北韓의 土地關係法”, 『檀國法學』, 제3집(檀國大學校, 1993).

- 나동규, “북한의 발명법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北韓』, 제336호(北韓研究所, 1999. 12).
- 남궁영, “북한의 경제특구: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統一經濟』, 1995년 12월호(現代經濟社會研究院, 1995).
- 노영돈, “북한의 국제법관과 국제법이론”, 『北韓·統一研究論文集(VI): 국제관계분야』(통일원, 1990).
- 都會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제 연구”,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논집』, 제8권 제1호(울산대, 1998. 6)
- 동용승, “북한의 외국투자유치 관련법제의 현황과 활용 방안”, 『남북교류협력 법제 논문자료집』(통일원, 1996).
- 文俊朝, “北韓의 토지임대제도 연구”, 『統一經濟』, 1995년 2월호(現代經濟社會研究院, 1995).
- , “北韓의 土地賃貸制度에 관한 研究”, 『법제연구』(한국법제연구원, 1995).
- 박기갑, “남북한의 국제법상 관행연구”, 한림과학원 편, 『남북한 통합, 그 접근방법과 영역(下)』(소화, 1996).
- 박동삼, “北韓의 集團農場과 統一以後 土地問題”, 『北韓』(北韓研究所, 1993).
- 朴東熙, “北韓刑事訴訟法”, 『北韓의 法과 法理論』(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8).
- , “北韓의 새刑法”, 『北韓研究』, 제4권 4호(大陸研究所, 1993년 겨울호).
- 박성호, “북한저작물의 한국저작권법상 보호문제”, 『국제법률경영』, 1991년 1월호(1991).
- 박완신, “北韓의 地方行政體制에 관한 研究”, 『韓國行政學報』, 제25권 1호

- (韓國行政學會, 1991).
- 朴井源, “北韓民法의 發展 : 特徵 · 內容 · 評價”, 『北韓研究學會報』, 제3권 1호(北韓研究學會, 1999. 12).
- , “北韓의 『人民經濟計劃法』에 관한 研究”, 『법제연구』, 제17호(한국법제연구원, 1999. 12).
- , “北韓의 立法體系 -立法機關 및 立法節次를 中心으로-”, 남북한 법제통합연구의 기본방향, 연구보고서(I)(법제처, 1999. 12).
- 박춘호, “국제인권규약과 북한: 가입현황을 중심으로”, 『북한인권의 이해』(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1996).
- 박치영, “북한난민의 법적 지위문제”, 『북한인권의 이해』(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1995).
- 박현일, “統一에 대한 金融側面의 接近”, 『北韓法研究』, 제5호(北韓法研究會, 2002).
- 방석호, “남북한 합작투자를 둘러싼 법적 문제점”, 한림과학원 편, 『남북한 통합, 그 접근방법과 영역(下)』(소화, 1996).
- 裴炳日, “北韓民事訴訟法의 回顧와 展望”, 『北韓法律行政論叢』, 제10집(高麗大 法學研究所, 1995).
- , “統一韓國의 土地所有制度 改편 方向”, 『北韓研究』, 제4권 3호(大陸研究所, 1993년 가을호).
- , “北韓의 土地所有權 變遷過程”, 『北韓研究』, 제6권 3호(大陸研究所, 1995).
- 裴鍾烈, “北韓 外資法令의 整備에 따른 우리의 對北投資政策方向”, 『輸銀調查月報』, 1993년 3월호(한국수출입은행, 1993).
- ,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 건설 현황과 과제”, 『統一經濟』, 1995년 1월호(現代經濟社會研究院, 1993).

- , “北韓外資法令의 問題點과 對策”, 『北韓研究』, 제6권 1호(大陸研究所, 1995 봄).
- , “국내기업의 북한진출시 예상되는 북한법령의 문제점과 대책”, 『남북교류협력 법제 논문자료집』(통일원, 1996).
- 白源基, “北韓刑事法體系에 관한 研究”, 『北韓·統一研究論文集(V): 軍事 및 行政法制分野』(統一院, 1991).
- , “南北韓 刑法의 比較研究 -1987年 北韓 新刑法을 中心으로”, 『'93 北韓·統一研究論文集(VI): 北韓의 行政 및 法制分野』(統一院, 1993).
- 백충현,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접근모색”, 『북한인권의 이해』(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1995).
- 徐圭錫·崔常喆, “南北韓 統一商法體系 研究”, 『企業法研究』, 5(2000. 4).
- 成宰豪,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연구 -국제법 이론을 통한 북한의 인권연구-”, 『北韓統一研究論文集(VI)』(統一院, 1991).
- 孫柱煥, “북한이탈 주민은 국제법상 난민이다”, 『自由公論』, 392(1999. 11).
- 신웅식, “북한의 대외경제계약법”, 『월간 경영법무』, 제17호, 1995년 8월호 (한국경영법무연구소, 1995).
- , “북한에서의 외환관리”, 『월간 경영법무』, 제19호, 1995년 10월호 (한국경영법무연구소, 1995).
- , “北韓의 새로운 合營制度”, 『人權과 正義』, 통권 제231호(大韓辯護士協會誌, 1995. 11).
- , “북한의 증계화물수송대리제도”, 『월간 경영법무』, 제22호, 1996년 1월호(한국경영법무연구소, 1996).
- 辛聖煥, “北韓의 人工衛星發射에 따른 航空 / 宇宙法的 考察”, 『航空宇宙法學會誌』, 11(1999. 2).

- 申榮鎬, “98年 憲法改正에 따른 北韓所有制度의 變化可能性”, 『北韓法研究』, 제2호(北韓法研究會, 1998. 12).
- , “北韓民法 40年과 그 動向”, 『北韓法律行政論叢』, 제8집(高麗大法學研究所, 1990. 12).
- , “北韓家族法の 制定과 그 特色”, 『北韓法律行政論叢』, 제9집(高麗大法學研究所, 1992).
- , “北韓 家族法の 內容과 그 特色”, 『檀國法學』, 제3호(檀國大法學研究所, 1993. 2).
- , “北韓 家族法の 體系와 特色”, 『北韓法 體系와 特色』(세종연구소, 1994).
- , “北韓 相續法の 內容과 問題點”, 『私法學의 再照明』(1994).
- , “北韓 民法上的 民事責任制度”, 『人權과 正義』, 통권 제231호(大韓辯護士協會, 1995. 11).
- , “北韓 家族法の 回顧와 展望”, 『北韓法律行政論叢』, 제10집(高麗大法學研究所, 1995. 12).
- , “北韓의 民事責任制度”, 『經營法律』, 제7집(1997).
- , “北韓의 民事責任制度”, 『北韓法研究』, 創刊號(북한법연구회, 1998. 3).
- , “北朝鮮家族法上の法定親子制度”, 『新世紀へ向かう家族法』(1998. 11).
- , “北韓의 民法 -그 動向과 展望-”, 『北韓法 50年·그 動向과 展望』(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9).
- , “金剛山觀光과 北韓法”, 『民主社會를 爲한 辯論』(1999. 11).
- , “金剛山觀光 開發事業에 대한 北韓法の 適用”, 『北韓法研究』, 제3호(2000).
- 신현윤, “북한 개방관련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저스티스』, 제33권 제4호

- (한국법학원, 2000).
- , “북한의 기업소제도”, 『법조』, 제49권 제11호(법조협회, 2000. 11).
- , “남북한 경제법제의 동화에 따른 법적 갈등과 문제점”, 『통일연구』, 제5권 제1호(연세대 통일연구원, 2001).
- , “사회주의 국유기업의 사유화”, 『기업환경의 변화와 상사법』, 춘강 손주찬 교수 고회기념논집(삼성출판사, 1993).
- 申 弘, “北韓勞動法”, 『北韓의 法과 法理論』(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8).
- 申志鎬, “조총련 동포에게 햇볕 정책 펼쳐라 : 재외동포법 사각 지대에 15만명 버려져”, 『시사저널』, 522(1999. 10. 28).
- 신한동, “南·北韓 商事紛爭의 解決에 관한 研究”, 『貿易學會誌』, 35(2000. 4).
- 安昌滿, “북한의 조세제도 II”, 『租稅』, 132(1999. 5).
- 양성철, “On the Ques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김일성 이후 북한의 인권: 문제와 전망)”, 『북한의 인권실상과 국제사회의 역할』, 국제학술심포지엄논문집(한국방송공사-한양대 사회과학대학, 1995. 11. 28).
- 吳道基, “南北韓 刑法 比較研究”, 『法學論叢』, 제7집(한양대 법학연구소, 1990).
- , “北韓刑法의 特色”, 『刑事法研究』, 제3호(韓國刑事法學會).
- 吳宗根, “北韓民法上の 所在形態”, 『北韓研究』, 제3권 4호(大陸研究所, 1992년 겨울호).
- , “북한민법상의 소유제도”, 한림과학원 편, 『남북한 통합: 그 접근 방법과 영역(下)』(소화, 1996).
- 俞炳一, “북한의 山林法律과 林業政策研究”, 『北韓研究』, 제5권 3호(大陸研究所, 1994 가을).

- 유병화, “북한억류자 송환의 법적 문제와 해결방안”, 『북한인권의 이해』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1995).
- 尹大奎, “북한의 경제정책과 법제의 변화”, 『경남법학』, 제9집(경남대 법학연구소, 1994).
- , “北韓의 司法制度”, 『慶南法學』, 제7집(경남대 법학연구소, 1992. 9).
- , “북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 및 문제점”, 『北韓法研究』, 제3호(北韓法研究會, 2000).
- , “인터넷을 통한 남북교류의 법적조건”, 『인터넷과 북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하나로통신 편, 2000).
- , “북한 내 남북경협 현장의 노무관리 문제”, 『北韓法研究』, 제5호(北韓法研究會, 2002).
- 외, “북한 노동자의 법적 지위”, 『노동복지연구』, 제11집(경남대학교 노동복지연구소, 1992. 12).
- 尹大奎·金東漢,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정부조직과 법제”,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1945~48』(慶南大 極東問題研究所, 1991).
- 윤진기, “북한 경제법의 발전 및 체계”, 『경남법학』, 제9집(경남대 법학연구소, 1993).
- 이건종·이경렬, “남북한 사법운용 및 범죄처리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 李啓滿, “南北韓 租稅의 比較研究”, 『北韓學報』, 제19집(북한연구소-북한학회, 1995).
- , “최근의 북한 外國人投資關聯法”, 『北韓研究』, 제5권 3호(大陸研究所, 1994 가을).
- 李基秀, “北韓의 合營法”, 『北韓法律行政論叢』, 제7집(高麗大學校 法學研

- 究所, 1989).
- 李伯圭, “북한의 가공무역법”, 『北韓法研究』, 제5호(北韓法研究會, 2002).
- , “북한의 1999년 개정헌법”, 북한법연구회 발표논문(북한법연구회, 2002. 11. 27).
- 이순우, “남북한 상사분쟁 해결방안”, 『남북교류협력법·제도 실천과제 연구』(통일원, 1993).
- 이승준, “北韓 商事法の 變遷과 概觀 : 實質的 意味에서의 北韓 商事法을 중심으로”, 『北岳論叢』, 제18집(국민대 대학원, 2001. 2).
- 이원웅, “북한의 인권실태와 국제사회의 대응: 북한에 대한 국제인권보고서 분석”(현대사회연구소, 1996).
- 李垠廷, “北韓 土地法の 體系와 特色”, 『北韓法 體系와 特色』(세종연구소, 1994).
- , “북한의 지적재산권”, 『北韓法研究』, 제5호(北韓法研究會, 2002).
- 李長熙, “북한의 조약체결당사자 인정에 따른 법적 문제연구”, 『인도법논총』, 제16호(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1996).
- 이재곤·박덕영, “남북한 경제교역상의 국제법적 문제점 및 그 대책에 관한 소고”, 『北韓·統一研究論文集(IV): 교류·협력분야』(통일원, 1990).
- 李垠廷, “러시아연방 신가족법(1995년)”, 『가족법연구』(한국가족법학회, 1997).
- , “중국 양자법”, 『아세아여성법학』(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1999).
- , “북한 민사시효제도”, 『민주법학』(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0).
- 李昌偉, “북한의 해양법정책”, 『'94 北韓 및 統一研究 論文集』, 제1권(統一院, 1994).
- 張明奉, “北韓의 憲法上 基本權保障과 그 實際”, 『法學論叢』, 제2집(國民大法學研究所, 1990).

- , “北韓의 基本權保障의 制度的 問題點”, 『統一研究論叢』 제3권 2호 (民族統一研究院 1994).
- ,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본 북한인권”, 『북한인권의 이해』(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1995).
- , “主體思想과 基本權保障의 問題點 -北韓 人權問題에 대한 基本的 理解-”, 『통일』, 1995년 1월호(民族統一中央協議會, 1995).
- , “北韓憲法上 生存權의 基本權에 관한 考察”, 『北韓研究』, 제6권 3호 (大陸研究所, 1995 가을).
- , “北韓憲法上 生存權의 基本權에 관한 一考”, 『考試研究』(考試研究社, 1995년 10월호).
- , “北韓의 歷代 選舉法과 새로운 選舉法 考察”, 『統一研究論叢』, 제6권 2호(民族統一研究院, 1997).
- , “北韓의 새로운 選舉法에 관한 研究”, 『法學論叢』, 제11집(國民大法學研究所, 1999).
- , “北韓法研究의 現況과 課題”, 『北韓法研究』, 제5호(북한법연구회, 2002).
- 田元輔, “북한의 행정에 대한 당의 통제”, 『統一論叢』(東義大學校 統一問題研究所, 1990).
- 鄭東潤, “北韓의 裁判所構成法”, 『北韓研究』, 제4권 4호(大陸研究所, 1993년 겨울호).
- , “北韓의 對外經濟關係法”, 『北韓法 體系와 特色』(세종연구소, 1994).
- , “北韓對外經濟法의 回顧와 展望”, 『北韓法律行政論叢』, 제10집(高麗大 法學研究所, 1995).
- , “北韓 民事訴訟法의 主要內容과 特色”, 『北韓法律行政論叢』, 제8집

- (高麗大 法學研究所, 1990).
- , “北韓 民事訴訟法의 特色과 訴訟節次의 概要”, 『北韓法律行政論叢』, 제9집(高麗大 法學研究所, 1992).
- , “北韓의 法院組織과 民事訴訟”, 『저스티스』, 제27권 제1호(韓國 法學院, 1994).
- 정영화, “The Stabilization Policy Toward Economic Reform of 崔壽永, “북한의 외자유치 추진현황과 전망”, 『統一研究論叢』, 제2권 1호(民族統一研究院, 1993).
- , “北韓의 出入國 및 關稅 法令에 관한 考察”, 『北韓法研究』, 제5호(北韓法研究會, 2002).
- 鄭印燮, “北韓의 新對外民事法 시행과 재일교포의 가족법문제 -北日修交後 일본에서의 취급예상-”, 『法學』, 제37권 2호(서울대 法學研究所, 1996. 9).
- 鄭在吉, “새로 제정된 北韓民法 解題”, 『北韓研究』, 제2권 제4호(大陸研究所, 1991년 겨울호).
- , “새로 制定된 北韓 社會主義商業法에 관한 研究”, 『北韓研究』, 제3권 3호(大陸研究所, 1992년 가을호).
- 丁周煥, “北韓의 合營法”, 『檀國法學』, 제3집(檀國大, 1993).
- , “북한의 합영·합작법 연구”, 『'93 北韓·統一研究論文集(VI): 北韓의 行政 및 法制分野』(統一院, 1993).
- , “北韓의 外國人企業法”, 『國際法과 現代法の 新展開』, 己南 李仲範教授華甲紀念論文集(新陽社, 1993).
- 鄭鎭洪, “北韓의 土地法”, 『石霞 金基洙教授 華甲紀念 不動產法學的 諸問題』(博英社, 1992).
- 諸成鎬, “남북한간의 형사법적 문제 -범죄인인도와 형사사법공조를 중심으로”, 『법조』, 제43권 8호(통권 제455호)(법조협회, 1994. 8).

- , “북한방송 개방의 방법론과 법적 문제”, 『통일정책연구』, 제8권 1호 (1999. 8).
- , “북한의 국제법인식체계와 사례연구”, 『북한·통일방안 논문집 - (VI)국제관계분야-』, 국통조 90-12-95(국토통일원, 1990. 12).
- , “북한의 법체계와 사법제도”, 『북한의 이해』(집문당, 1996).
- ,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국제법학회논총』, 제39권 1호 (1994. 8).
- , “북한 탈출동포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안”, 『北韓研究』, 제5권 3호 (大陸研究所, 1994. 9).
- , “韓國의 對北人權政策方向”, 『北韓研究』, 제6권 2호(大陸研究所, 1995).
- , “북한의 인권침해: 법·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7권(1995. 9).
- , “북한 귀순자 보호 및 관리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연구』, 제7권 1호(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3).
-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統一研究論叢』, 제6권 1호 (民族統一研究院, 1997).
- , “북한의 국제법 인식체계와 사례연구”, 『北韓·統一研究論文集 (VI): 국제관계분야』, 국통조 90-12-95(통일원, 1990).
- , “북한의 비전향장기수 송환주장과 국제인도법”, 『인도법논총』, 제 17호(1997. 8).
- , “북한의 형사법제와 국제인권 규약”, 『北韓』, 제349호(北韓研究所, 2001. 1).
- , “북한의 형사법제와 국제인권 규약”, 『서울국제법연구』, 제8권 1호 (2001. 7).

- ,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 법령 분석 및 평가”, 『統一研究論叢』, 제2권 1호(民族統一研究院, 1993).
- , “북한의 외자유치관련 법령의 분석 및 평가: 대북투자 보호방안과 관련하여”,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제와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전략』(통일원, 1993. 10).
- , “북한 『인민경제계획법』에 관한 일고찰”, 『北韓法研究』, 제3호(北韓法研究會, 2000. 2).
- ,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비추어 본 가칭 『開成特區法』의 制定方向”, 『法學論文集』, 제25집 제1호(中央大學校 法學研究所, 2001. 2).
- , “북한의 대외민사관계법에 관한 일고찰”, 『정책연구』, 통권 제137호(법원행정처, 2001. 9).
- , “북한의 대외민사관계법과 남북한간 민사법률문제 처리방향”, 『통일정책연구』, 제10권 2호(2001. 12).
- 조정곤, “국제상사중재제도의 활용을 통한 남북한 교역 및 투자분쟁해결”, 『'93 北韓·統一研究論文集(Ⅱ): 南北交流協力分野』(통일원, 1993).
- 崔達坤, “北韓 家族法 40年과 그 動向”, 『北韓法律行政論叢』, 제8집(高麗大 法學研究所, 1990).
- , “北韓家族法の 最近의 變化”, 『家族法研究』, 제6집(韓國家族法學會, 1992. 12).
- , “北韓 民法의 制定과 그 變化 -比較分析的 研究를 中心으로”, 『北韓法律行政論叢』, 제9집(高麗大 法學研究所, 1992).
- , “北韓에 있어서의 私有財産”, 『北韓研究』, 제3권 제4호(大陸研究所, 1992년 겨울호).
- , “南北韓 民法의 比較”, 『檀國法學』, 제3집(檀國大學校, 1993).

- , “北韓民法의 體系와 特色”, 『北韓法 體系와 特色』(세종연구소, 1994).
- , “北韓民法의 回顧와 展望”, 『北韓法律行政論叢』, 제10집(高麗大法學研究所, 1995).
- , “北韓의 相續法”, 『人權과 正義』, 통권231호(大韓辯護士協會誌, 1995. 11).
- , “北韓에 있어서의 不動産의 所有와 利用”, 『北韓法研究』, 제2호(北韓法研究會, 1998).
- 崔明吉, “北韓의 農業法에 관한 考察”, 『北岳論叢』, 제19집(국민대 대학원, 2002. 2).
- 최병문, “남북한 형사사법제도 비교연구”, 『연구보고서』(한국학술진흥재단, 1995. 12).
- 최성철, “국제인권규약에 비취 본 북한의 인권”, 『북한의 인권실상과 국제사회의 역할』, 국제학술심포지엄논문집(한국방송공사-한양대 사회과학대학, 1995. 11. 28).
- , “국제인권규약에 비취 본 북한의 인권”, 『국제사회와 북한의 인권』(한양대 통일정책연구소, 1996).
- 최인섭, “北韓의 一般犯罪에 관한 豫備的 考察”, 『형사정책연구』, 제3권 1호(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봄).
- 崔鍾庫, “北韓法の 歴史的 展開 -北韓法制史-”, 『北韓法 體系와 特色』(세종연구소, 1994).
- , “北韓法の 歴史와 思想”, 『人權과 正義』, 1995년 11월호(대한변호사협회, 1995),
- 최준성, “북한의 유일사상체계의 분석과 사회주의 노동법에 나타난 작용의 관련성 연구”, 『統一問題研究』(朝鮮大 統一問題研究所, 1980).
- 許在完, “북한토지이용제도의 현황과 전망”, 『北韓經濟論叢』, 제6호(북한

- 경제포럼, 2000).
- 홍성방, “북한헌법하의 기본권과 이론”, 한림과학원 편, 『남북한 통합: 그 접근방법과 영역(下)』(소화, 1996).
- 洪性化, “南北韓接觸以前の 法的關係”, 『統一問題研究』, 제3호(건국대, 1982. 7).
- 홍천룡, “남·북한 민법전의 동질성과 이질성”, 『고황법학』, 제2권(고황법학교수회 편, 1997).
- 황동언,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 I: 기업의 설립 및 출자제도”, 『統一經濟』, 50(現代經濟研究院, 1999. 2).
- ,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 II: 노무 관리”, 『統一經濟』, 51(現代經濟研究院, 1999. 3).
- ,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 III: 경영 활동”, 『統一經濟』, 53(現代經濟研究院, 1999. 5).
- ,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 IV: 토지관리”, 『統一經濟』, 54(現代經濟研究院, 1999. 6).
- ,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 V: 금융 및 외화 관리”, 『統一經濟』, 55(現代經濟研究院, 1999. 7).
- ,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 VI: 조세제도”, 『統一經濟』, 57(現代經濟研究院, 1999. 9).
- ,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 VII: 분쟁 처리 및 해산·청산”, 『統一經濟』, 58(現代經濟研究院, 1999. 10).
- ,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 VIII: 종합”, 『統一經濟』, 59(現代經濟研究院, 1999. 11).
- 황무임 “北韓 社會主義憲法에 있어서 基本權과 義務에 관한 一般的 考察”, 『論文集』(대신대, 1993).

- Chang, Myung-Bong, “Problems of Safeguarding Fundamental Rights in North Korea”, *Vantage Point*, Vol. XV III, No. 2, Naewoe Press (1995).
- Choe, Byung-Moon, “A Comparative Study on the Criminal Justice Structures of South and North Korea”,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 8,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mparative Korean Studies (June 2001).
- Choi, Sung-Chul, “Human Rights in North Korea: Related Laws and System”, ed. by Choi, Sung-chul, *Human Rights in North Korea*, Center for The Advanc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1995).
- Christopher Sigur,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한인권문제”, 『국제사회와 북한의 인권』(한양대 통일정책연구소, 1996).
- Edwin J. Feulner, Jr., “The Role of International Society to Improve North Korean Human Rights(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북한의 인권실상과 국제사회의 역할』, 국제학술심포지엄논문집(한국방송공사-한양대 사회과학대학, 1995. 11. 28).
- Haruhisa Ogawa, “북송제일교포의 인권침해 실상”, 『국제사회와 북한의 인권』(한양대 통일정책연구소, 1996).
- Jung, Young-Hoa, “The Comparative Analysis of Labor Codes and Labor Market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통일 독일과 남북한의 노동정책개선방안』, 한독 공동학술심포지움(에버트재단-한국노동연구원 공동개최, 1999).
- Julian Birch, “A Scheme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북한의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위한 방안)”, 『북한의 인권실상과 국제사회의 역할』, 국제학술심포지엄논문집(한국방송공사-한양대 사회과학대학, 1995. 11. 28).

—————,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위한 방안”, 『국제사회와 북한의 인권』(한양대 통일정책연구소, 1996).

Kim, Sang-Yong, “Contents and Evaluation of Civil Law of North-Korea”, *Developments in Land Law: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Law Studies*, No. 50, ed by Bernd von Hoffmann, Myong-Chan Hwang, Peter Lang, Frankfurt/M. (1999).

Manfred Pohl, “통독전 동독의 인권실상과 개선사례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방안”, 『국제사회와 북한의 인권』(한양대 통일정책연구소, 1996).

Robert Chambers, “North Korean Human Rights: A View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국제사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인권)”, 『북한의 인권실상과 국제사회의 역할』, 국제학술심포지엄논문집(한국방송공사-한양대 사회과학대학, 1995. 11. 28).

—————, “국제사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인권”, 『국제사회와 북한의 인권』(한양대 통일정책연구소, 1996).

Yang, Ho-Min, “North Korean-Style ‘Freedom and Human Rights’”, ed. by Choi, Sung-chul, *Human Rights in North Korea*, Center for The Advanc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1995).

(北韓原典)

- 『경제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근로자』, 1991년 6호(평양: 근로자사, 1991).
-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문답집』(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
- 『라진-선봉 자유무역지대 투자환경』(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5).
- 『로동신문』(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 『민사법사전』(평양: 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 『민주조선』(북한정권기관지).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 법학 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정치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5).
-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 『조선말대사전』(1), (2)(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해설』(평양: 인민과학사, 197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김일성종합대학 국가법강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성 비준>(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56).
- 『조선중앙년감 1978』(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8).
- 『조선중앙년감 1983』(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3).
- 『중재법학』(법학부용)(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1).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억락 외, 『국가와 법의 이론』(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1).
- 김영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법무생활에 관한 이론』(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0).

- 리재도·장인형, 『조선국가와 법의 력사』(평양: 김일성종합대학, 1985)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민사법사전』(평양: 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서창섭, 『법건설경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심형일, 『주체의 법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윤중섭 외, 『조선헌법』(평양: 고등교육도서출판사, 196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경제법학연구소 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사회제도』(평양: 과학원출판사, 196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사전연구실, 『조선말사전(상)』(평양: 과학출판사, 196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법학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
홍극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사』(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김원출, “법률조종학적 체계에서 국가법률체계의 본질과 내용”,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력사·법학』, 제43권 4호(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997).
김일성,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 경험”, 『근로자』, 1986년 6호(평양: 근로자사, 1986).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회의에서 한 연설, 1972년 12월 25일),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4).
김일성,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최고인민회의 제6기 1차회의에서 행한 연설, 1977. 12. 15).
김정일, “전당과 온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 <중앙당 및 국가, 경제기관, 근로단체, 인민무력, 사회안전, 과학, 교육,

-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74년 4월 14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3)(1974~1977)』(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한 담화, 1986년 7월 16일), 『근로자』, 1987년 7월호(평양: 근로자사, 1987).
-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과 한 담화, 1992년 1월 3일)(평양: 중앙방송, 1992. 2. 4).
-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과 한 담화, 1991년 5월 5일)(평양: 중앙방송, 1991. 5. 27).
- 김정일, “주체사상의 이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근로자』, 1984년 4호(평양: 근로자사, 1984).
- 리명일, “새로 수정·보충된 사회주의헌법은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완성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무기”,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법학-』, 제40권 제4호(김일성종합대학, 1994. 11).
- 리명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법무생활에 대한 리론은 주체의 법리론을 더욱 완성시킨 독창적인 리론”,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법학』, 제43권 제1호(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7).
- 리상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의 해설』(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 리송녀, “공화국가족법은 가정을 공고화하고 혁명화하는 무기”, 『법학논문집』(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0).
- 리영애, “사회주의법무생활과 혁명적 준법기풍”, 『법학논문집』, 제7호(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0).

- 리재도·장인형, 『조선국가와 법의 역사』(평양: 김일성종합대학, 1985).
- 리학철, “공화국민사시효제도의 목적”,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법학』, 제43권 제1호(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7. 1).
- 박명희, “공화국대외민사관계법의 몇가지 특징에 대한 이론적 고찰”,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법학』, 제43권 4호(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7).
- 박영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공화국정권의 대외기능과 대외활동원칙”,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법학』, 제43권 제3호(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7).
- 조용봉, “민사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법학』, 제43권 4호(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7).
- 진유현, “사회주의법제사업의 본질과 기본내용”,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법학-』, 제43권 제3호(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부, 1997. 3).
- 진유현, “사회주의법제정의 합법칙성”,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역사·법학』, 제43권 4호(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997).
- 최용달, “조선인민은 이러한 헌법을 요구한다”, 『근로자』(평양: 로동신문사, 1948. 1).
- 최정희, “공업소유권과 공업소유권보호제도에 대한 일반적 리해”, 『김일성대학학보: 역사·법학』, 제46권 제2호(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0).
- 홍극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사』(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北韓 金正日體制下에서 整備된 主要 法令

朴井源

(국민대학교 교수, 초청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 북한 김정일체제의 법제정비의 현황과 전망을 고찰하면서 그 부록으로 김정일체제하의 헌법과 주요법령의 全文과 각 법령의 신구 조문의 비교표를 수록한다.

□ 북한의 김정일체제 하의 법제에 관한 참고문헌으로 국내문헌과 북한문헌을 중심으로 북한법제 연구의 자료목록을 수록한다.

목 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 3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 5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 투자법 / 10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 / 1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 1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법 / 13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 / 13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서 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 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면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 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면적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적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빨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 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튼튼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

제 1 장 정 치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 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 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제 4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 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 6 조 균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 7 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제 8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 9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 10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

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 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13조 국가는 균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이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

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제2장 경 제

제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 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22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제23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튼튼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노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제29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노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노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노동이 보다 즐거운것으로, 사회

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 것으로 되게 한다.

제30조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 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옹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 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옹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옹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

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37조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동을 장려한다.

제38조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3장 문화

제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42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건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5조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 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49조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제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 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2조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54조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 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56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제 4 장 국 방

제5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제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 5 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임무

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66조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제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제70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노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3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75조 공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76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77조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노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78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79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제8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 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81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82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83조 노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노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노동규률과 노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8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 1 절 최고인민회의

제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 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90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11.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제96조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 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제 2 절 국방위원회

제100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국방관리 기관이다.

제101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하며 국방사업전반을 지도한다.

제103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 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5. 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제105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 3 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0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10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제10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 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3.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7. 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제11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 4 절 내 각

제117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제118조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19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 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직속기관, 중요 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노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화폐와 은행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 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20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121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2조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3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24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25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26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127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 관리기관이다.

제128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제129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지시 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30조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제 5 절 지방인민회의

제131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2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3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

기를 연장한다.

제134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35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6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37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138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제 6 절 지방인민위원회

제139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제14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법령, 정령,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5.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 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 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제143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4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4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에 복종한다.

제 7 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147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 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48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9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0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범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51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2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53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54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5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

한다.

제156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썬들과 온갖 범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중사업을 한다.

제157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158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159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제160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1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2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 7 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1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땅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태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6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다음에 푸른폭이 있고 붉은폭의 기대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대 2이다.

제16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제16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¹⁾

1987. 2.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호로 채택
1995. 3. 1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4호로 개정
1999. 8. 1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53호로 개정

제 1 장 형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제 2 조 국가는 범죄와의 투쟁에서 로동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 제재를 배합한다.

제 3 조 국가는 모든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엄격히 지키며 범죄와의 투쟁에 적극 나서게 하여 범죄를 미리 막도록 한다.

제 4 조 국가는 범죄행위의 엄중성 정도와 범죄자의 개준성 정도를 고려하여 때 범죄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형벌을 적용한다.

제 5 조 국가는 조국과 민족을 반역하는 행위를 감행한 자라 하더라도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에는 과거를 묻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제 6 조 국가는 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자기의 죄행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자수한 자에 대하여서는 관대히 용서한다.

제 7 조 이 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우리 나

1) 이 형법은 북한의 영문본으로 이백규판사에 의해 번역되어 북한법연구회(2002. 11. 14)에서 발표된 것이다. 개정내용은 1995년 또는 1999년 어느 시기에 개정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않고 있다. 개정부분의 번역이 북한의 원문과는 다소 다를 수 있다.

라 공민과 우리 나라에서 죄를 범한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외교특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한 형사책임은 그때마다 외교적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다른 나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거나 조선공민을 침해하는 죄를 범하고 우리 나라에 들어온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 8 조 죄를 범한 자에게는 그 범죄행위를 수행한 당시의 형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종전 형법에서 죄로 보던 행위를 이 법에서 죄로 보지 않거나 어떤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을 종전 법보다 낮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 2 장 범죄 및 형벌에 대한 일반 규정

제 1 절 범 죄

제 9 조 범위는 국가주권과 범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하는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이다.

제 10 조 범죄행위를 한 경우 형사법에 그와 똑같은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을 때에는 이 법 가운데서 그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가장 비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범죄의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그와 유사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으며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침해대상과 사회관계, 주관적표징과 범인의 표징의 한계를 넘어 류추할 수 없다.

제 11 조 범죄행위를 한 당시에 14살 이상 되는 자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14살 이상 16살 이하의 자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교양처분을 할 수 있다.

17살 이상의 자도 그 개준성의 정도, 범죄의 엄중성 등에 비추어 교양처분에 의하여 교화될 수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소나 재판의

단계에서 교양처분을 할 수 있다.2)

제12조 만성정신병, 일시적인 정신이상 때문에 자기의 행위를 가리지 못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서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으며 의료처분을 적용할 수 있다.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죄를 범한 자가 판결을 내릴 당시에 정신병상태에 있을 때에는 의료처분을 적용하며 회복되었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운다.

술에 취하여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서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3조 형사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 및 사회적 이익이나 다른 사람 또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해치려는 위급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그것이 방위의 정도를 지나치게 넘지 않았다면 범죄로 되지 않는다.

제14조 형사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급한 사태를 긴급히 피하는 데 그 길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한 결과 일어난 손실이 구원한 이익보다 적을 때에는 범죄로 되지 않는다.

제15조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하여서는 범죄의 기수와 같은 조항을 적용한다.

범죄의 준비에 대하여는 범죄의 미수보다 가벼운 형벌을, 범죄의 미수에 대하여는 범죄의 기수보다 가벼운 형벌을 각 적용한다.

위험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범죄의 준비와 미수는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3)

제16조 범죄행위를 감행하다가 도중에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그만둔 범죄행위에 대하여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지로 한 행위가 다른 무

2) 구형법 제11조 범죄행위를 한 당시에 14살 이상 되는 자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14살 이상 17살에 이르지 못한 자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교양처분을 적용할 수 있다.

3) 구형법 제15조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하여서는 범죄의 기수와 같은 조항을 적용한다. 범죄의 준비자와 미수자에 대한 형벌은 범죄행위의 위험성 정도, 범죄의 실현 정도, 범죄의 기수에 이르지 못한 원인 같은 것을 참작하여 정한다.

거운 범죄의 표징을 갖춘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형사책임을 지을 수 있다.

제17조 범죄조직체에서 주도자와 추종자는 그 조직체가 목적인 범죄에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처벌하며 주도자는 보다 엄격히 처벌한다.

제18조 범죄조직체가 아닌 공범에서 추진자, 방조자는 실행자에게 적용하는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

실행자, 추진자, 방조자에 대하여서는 그 범죄에 가담한 정도와 행위의 위험성 정도를 참작하여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19조 범죄를 감행할 당시에 관계하지 않고, 범죄가 감행된 다음에 범죄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 주었거나, 또는 범죄가 감행되었거나 준비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20조 해로운 긴급사태를 능히 막거나 막을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둔 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2절 형벌

제21조 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노동교화형
3. 선거권박탈형
4. 재산몰수형
5.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

제22조 사형, 노동교화형은 죄를 범한 자에게 적용하는 기본형벌이다.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은 부가형벌이다. 선거권박탈형과 재산몰수형은 함께 줄 수 있다.

제23조 범죄행위를 한 당시 18살에 이르지 못한 자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줄 수 없으며 임신여성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⁴⁾

제24조 로동교화형의 기간은 6개월부터 15년까지로 한다.

로동교화형은 교화소에 넣어 로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제25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류되어 있는 기간은 로동교화형 기간에 계산하여 넣는다.

제26조 선거권박탈형은 반국가범죄에 대하여서만 적용할 수 있다.

재판소는 반국가범죄사건을 재판할 때에는 선거권 박탈문제를 심의하여야 한다.

선거권의 박탈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으며 로동교화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⁵⁾

제27조 재산몰수형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재산을 전부 국가에 넘기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이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가족이 최저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일용필수품과 돈을 남겨놓아야 한다.⁶⁾

제28조 재산몰수형이 취소되었거나 죄가 없어서 사건이 기각되었을 때에는 몰수하였던 재산을 돌려준다.

현물로 돌려줄 수 없을 때에는 그 물건에 해당하는 값을 물어준다.

제29조 재산몰수대상자가 재산담보처분이 있기 전에 진 빚에 대하여서는 몰수한 재산 가운데서 법이 따로 정한 순위에 따라 물어준다. 그러나 재산담보처분이 있는 다음에 진 빚에 대하여서는 몰수한 재산으로 물어주지 않는다.

4) 구형법 제23조 범죄행위를 한 당시 17살에 이르지 못한 자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줄 수 없으며 임신녀성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

5) 구형법 제26조 선거권박탈형은 반국가범죄에 대하여서만 적용할 수 있다.
재판소는 반국가범죄사건을 재판할 때에는 선거권 박탈문제를 심의하여야 한다.
선거권의 박탈기간은 4년을 넘을 수 없으며 로동교화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6) 구형법 제27조 재산몰수형은 반국가범죄에만 적용하며,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재산을 전부 국가에 넘기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이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가족이 최저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일용필수품과 돈을 남겨놓아야 한다.

제30조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준 일정한 자격을 완전히 빼앗거나 일시적으로 빼앗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재판소는 이 법 제79조, 제81조, 제94조, 제98-100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자격을 박탈할 것인가, 자격정지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심의하여야 한다.

자격정지의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으며 로동교화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31조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서는 형벌을 적용한다.

형벌은 범죄의 성격, 범죄의 동기와 목적,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감행정도, 범죄의 결과, 범죄자의 개준성 정도 같은 것을 참작하여 정한다. 앞항의 경우 이 법 해당 조항에 규정된 형벌의 한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32조 형벌을 정함에 있어서 무겁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주모자와 주동분자인 때
2. 여러번 또는 상습적으로 혹은 여럿이 공모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3. 잔악한 수단과 방법으로 죄를 범하였을 때
4. 자기의 보호 밑에 있거나 직무상 복종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5. 전시 또는 재해상태를 리용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제33조 형벌을 정함에 있어서 가볍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추종자와 피동분자인 때
2. 처음으로 죄를 범하였을 때
3. 강한 정신적 자극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4. 미성인이 죄를 범하였을 때
5.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어 죄를 범하였을 때
6. 자백 또는 고백하였을 때

제34조 재판소는 특별한 경우 해당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보다 더 낮게 형벌을 줄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판결서에 밝히고 해당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보다 낮게 정할 수 있다.⁷⁾

제35조 한 범죄자가 범한 여러개의 죄를 함께 재판할 경우에는 매개 범죄 별로 해당 형벌을 정한 다음 범죄의 총체적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범죄들 가운데서 형벌을 가장 높이 정한 조항의 형벌에 처한다.

제36조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판결이 확정된 다음 그 형벌의 집행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새로 범한 죄에 대하여 따로 형벌을 정하고 그것을 남은 형기에 합한다. 이 경우 해당 형벌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제37조 5년까지의 로동교화형 판결을 받은 자의 개준성 정도, 범죄의 위험성 정도에 비추어 그를 교화소에 보내어 로동교화형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그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1. 3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의 유예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
2. 3년을 넘어 5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의 유예기간은 5년부터 7년까지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에 새로운 죄를 범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게 내렸던 판결의 집행은 끝난 것으로 인정한다.

제38조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에 새로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집행을 유예한 형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 범한 죄에 대하여 정한 형벌에 합할 수 있다. 형벌을 합하는 경우 로동교화형 기간은 15년을 넘을 수 없다.

제39조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형벌은 특사 또는 대사로 면제한다.

특사 또는 대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실시한다.⁸⁾

제40조 로동교화형을 받은 자가 범죄행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교화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의 절반이 지난 다음 남은 기간의

7) 구형법 제34조 재판소는 특별한 경우 해당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보다 더 낮게 형벌을 줄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판결서에 밝히고 해당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보다 낮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형벌의 종류는 바꿀 수 없다.

8) 구형법 제39조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형벌은 특사 또는 대사로 면제한다. 특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 실시하며, 대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가 실시한다.

로동교화형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로동교화형을 받고 있는 자를 형기가 끝나기 전에 내놓을 데 대한 제의는 로동교화형을 집행하는 해당 교화소가 하며 이 제의는 재판소가 심의 판정한다.

제41조 특사, 대사를 받은 자 또는 형벌집행이 끝난 자들에 대하여서는 특사, 대사를 받은 날 또는 형벌집행이 끝날 날부터 죄를 범하지 않았던 사람과 같이 인정하며 법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42조 죄를 범한 때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1. 5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줄 수 있는 죄에 대하여서는 8년
2. 5년을 넘어 10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줄 수 있는 죄에 대하여서는 10년
3. 10년을 넘는 로동교화형을 줄 수 있는 죄에 대하여서는 15년
반국가범죄와 고의적 살인죄에 대하여서는 앞항의 기간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제43조 이 법 제42조에 규정된 기간이 넘기 전에 범죄자가 새로운 죄를 범하였을 때,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였을 때, 형사사건 제기결정이 있었을 때에는 그날부터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새로 계산된다.

제 3 장 반국가범죄

제 1 절 국가주권을 반대하는 범죄

제44조 공화국을 전복하려는 음모에 가담하였거나 폭동에 참가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추진자, 주모자, 주동분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 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45조 공화국에 반항할 목적으로 간부들과 애국적 인민들에 대하여 테로행위를 감행한 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

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9)

제46조 공화국을 전복, 문란, 약화시키거나 그밖의 반국가적인 범죄행위를 감행하도록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47조 공화국 공민이 공화국을 전복할 목적으로 다른 나라로 도망치는 등의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거나 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10)

제48조 공화국 공민이 아닌 자가 우리 나라에 대한 정탐을 목적으로 간첩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49조 다른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집단을 추기거나 거기에 자금을 대주어 공화국에 대하여 무장간섭을 하게 하거나 외교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며 우리 나라와 체결한 조약을 폐기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50조 반국가적 목적 밑에 파괴암해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 8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앞의 행위를 하여 특별히 중요한 건물과 시설에 대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8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11)

제51조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공화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대행위를 감행한 자는 3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9) 구형법 제45조 공화국에 반항할 목적으로 간부들과 애국적 인민들에 대하여 테로행위를 감행한 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 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준비한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10) 구형법 제47조 공화국 공민이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거나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을 도와주는 것과 같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11) 구형법 제50조 반국가적 목적 밑에 파괴암해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 절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범죄

제52조 조선민족으로서 제국주의의 지배 밑에서 그와 야합하여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혁명투쟁을 탄압, 박해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리익을 팔아먹은 것과 같은 민족반역행위를 한 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정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53조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혁명투쟁, 해외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를 위한 투쟁을 탄압, 박해하는 적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3 절 반국가범죄에 대한 은닉 및 불신고죄

제54조 반국가범죄자 또는 반국가범죄의 흔적을 감추어준 자로서 공범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55조 반국가범죄가 준비되고 있거나 감행된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 또는 반국가범죄가 감행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긴급히 막는 데 필요한 대책을 능히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둔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4 장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하는 범죄

제 1 절 사회주의적 소유를 침해하는 범죄

제56조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훔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럿이 공모하여 또는 대량 혹은 중요한 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1년 이

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57조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빼앗은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여럿이 공모하여 혹은 중요하거나 대량의 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2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58조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속여 가진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 또는 중요한 재산을 속여 가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59조 국가 기관, 기업소 및 사회협동단체의 위임에 따라 일정한 의무를 실행하는 자 혹은 관리일군이 직무상 또는 의무실행상 자기가 보관관리하고 있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 또는 중요한 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0조 이 법 제56-59조에 지적된 여러 가지 행위를 하여 략취한 총량이 대량인 경우에는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1조 특히 대량 또는 특히 중요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략취한 자는 6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2조 책임일군이 비법적으로 상금, 우대제, 생활비를 적용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공동탐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3조 사람의 생명, 건강에 위협을 주는 폭행, 협박을 하여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강도한 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의 재산을 강도하였거나 여러번 또는 여럿이 공모하여 혹은 무기, 흉기를 리용하여 앞항의 행위를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피해자를 죽게

하였거나 중상을 입힌 경우에는 6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4조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 손상시킨 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에 엄중한 손해를 주었거나 방화, 폭파같은 위험한 방법으로 파괴, 손상시켰거나 인명피해를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5조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과실로 파괴, 손상시켜 엄중한 손해를 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 절 사회주의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제66조 화폐, 국가유가증권, 공화국 은행에서 바꿀 수 있는 외국화폐를 위조하였거나 위조한 것인 줄 알면서 써먹은 자는 7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7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7조 돈표, 물자인수위임장, 량표 같은 것을 위조하였거나 위조한 것인 줄 알면서 써 먹은 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8조 리기적 목적으로 공화국은행에서 바꿀 수 있는 외국화폐를 팔았거나 산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 비법적으로 거래한 화폐는 몰수한다.

제69조 상습적으로 암거래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 부당하게 얻은 돈과 물건은 몰수한다.

제70조 허가없이 물건을 다른 나라로 내가거나 우리 나라에 들여오는 밀수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 부당하게 얻은 돈과 물건은 몰수한다.

대량 또는 상습적으로 혹은 국가가 통제하는 물건을 밀수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를 관리일군이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 부

당하게 얻은 돈과 물건은 몰수한다.

제71조 철도, 수상, 항공 운수부문 일군이 운수규정과 로동규률을 어겨 기차, 배, 비행기를 전복, 파괴, 손상시켰거나 그 정상적 운행에 지장을 주었거나 인명피해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많은 인명에 피해를 주었거나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2조 인민경제계획을 되는대로 세우거나 국가계획을 마음대로 고치거나 계획수행정형을 거짓보고하거나 계획 및 계약 규률을 어기는 행위를 여러번 하여 인민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에 큰 혼란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3조 자재공급일군이 고의적으로 자재공급 또는 판매규률을 여러번 혹심하게 어겨 경제의 정상적인 관리운영에 큰 지장을 주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4조 많은 원료, 자재, 자금 또는 특히 중요한 설비같은 것을 류용, 낭비, 사장하여 인민경제의 정상적인 관리운영에 큰 지장을 주었거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에 엄중한 손해를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5조 원료, 자재를 비롯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무책임하게 보관, 취급하여 그것을 많이 부패, 변질, 류실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6조 기업관리의 책임일군이 설비에 대한 점검, 보수를 규정대로 조직하지 않았거나 설비를 되는대로 다루게 하여 그것을 파손시켰거나 상당한 기간 생산을 멈추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7조 설비와 물자를 비법적으로 팔거나 주거나 바꾸거나 훔쳐다가 자기 기관, 단체에서 쓰거나 다른 기관, 단체에 넘겨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기관, 단체에 넘겨준 대가로 돈 또는 물건을 받아먹을 목적으로 설비와 물자를 훔쳐가지고 있거나 돈 또는 물건을 받고 설비와 물자를 기관, 단체에 비법적으로 넘겨준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8조 기술규정, 표준조작법, 제품규격, 제품검사에 관한 규정을 어겨 오작품 또는 불합격품을 생산하였거나 생산하게 하여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에 엄청난 손해를 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9조 오작설계로 시공하게 하거나 설계문건이 없이 또는 설계를 어겨 오작시공하여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0조 농업생산의 과학기술공정을 어겼거나 농산작업을 조잡하게 하여 농업생산에 큰 지장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1조 집짐승을 기르는 일군이 위생방역 또는 사양관리에 관한 규정을 어겨 많은 집짐승을 죽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2조 상품 공급과 판매질서를 어겨 인민생활에 큰 불편을 준 자 또는 상품의 성질을 비법적으로 고쳤거나 값을 속여 팔거나 개인의 물건을 팔기 위하여 공영상점의 판매대를 이용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¹²⁾

제83조 계량계측기구의 눈금과 량을 비법적으로 고친 자 또는 계량계측기구의 눈금과 량이 틀린다는 것을 알면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3 절 국토관리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제84조 많은 토지를 람용하였거나 폐경시킨 자 또는 토지보호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많은 토지를 류실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12) 구형법 제82조 상품 공급과 판매질서를 어겨 인민생활에 큰 불편을 준 자 또는 상품의 성질을 비법적으로 고쳤거나 값을 속여 팔 자는 1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5조 광석, 석탄, 그밖의 지하자원을 되는대로 캐어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6조 과실로 산불을 일으켜 산림자원에 많은 손실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7조 림지의 나무를 되는대로 또는 허가없이 찍거나 비법적으로 산을 개간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산림자원에 많은 손실을 주거나 산사태나 큰물 피해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¹³⁾

제88조 허가없이 또는 금지된 시기와 장소에서 혹은 금지된 방법으로 물고기, 리로운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여 수산자원, 동식물자원에 손실을 준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9조 바다, 강 또는 농경지에 해로운 물질을 흘려 보내거나 유독가스를 방출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공공의 건강, 수산자원 또는 농업생산에 해를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엄중한 잘못을 범한 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¹⁴⁾

제90조 국가건물 또는 공공시설물을 제때에 보수하지 않아 못쓰게 만들었거나 그 수명을 짧게 하였거나 구조를 비법적으로 고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1조 강하천보호에 관한 법규를 어겨 동쪽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였거나 강 하천 보호림을 찍은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3) 구형법 제87조 림지의 나무를 되는대로 또는 허가없이 찍거나 산을 개간하여 산림자원에 엄청난 손실을 준 자는 6개월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4) 구형법 제89조 강하천 또는 농경지에 해로운 물질을 흘려 보내거나 유독가스를 방출시키는 것과 같은 공해현상을 일으켜 수산자원과 농업생산에 해를 주었거나 인민생활에 큰 지장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4 절 사회주의 로동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제92조 국가기관, 기업소 및 사회협동단체의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로동보호 및 로동안전시설을 갖추어주지 않아 인명피해 또는 그 밖에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3조 로동안전기술규정과 작업규률을 어겨 인명피해 또는 그밖의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4조 자동차, 트랙토르를 운전하는 자가 교통안전에 관한 규정을 어겨 인명피해 또는 그밖의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여러 명의 인명피해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5조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고의적으로 어겨 로동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를 심히 그릇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6조 여성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직종의 로동을 시킨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5 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하는 범죄

제97조 국가에서 보존 관리하는 문화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고의적으로 손상시킨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8조 탐욕, 질투, 그밖의 비렬한 동기 밑에 저작, 발명, 창의고안, 문학 예술작품을 고의적으로 그릇되게 평가하여 묵살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창작품을 자기의 이름으로 발표한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9조 유치원, 탁아소 일군이 어린이에 대한 보호관리를 심히 불성실하게 하여 중상을 입게 하였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0조 의료일군이 환자에 대한 치료와 간호를 심히 불성실하게 하였거나 약품을 잘못 주어 건강에 큰 장애를 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환자를 죽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1조 의료일군이 아닌 자가 리기적 목적에서 의료행위를 하여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불구로 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2조 비법적으로 아편을 재배하거나 마약, 독약을 제조, 보관, 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6 장 국가의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제 1 절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제103조 반국가적 목적이 없이 집단적으로 국가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거나 사회질서를 흑심하게 문란시키는 것과 같은 소동을 일으킨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무기를 리용하여 앞항의 행위를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살인, 파괴 같은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한 주모자와 주동분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4조 폭행, 협박, 모욕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일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5조 국가에 등록된 공식 인장 또는 정부 인장을 비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러한 인장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것인줄 알면서 써먹은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¹⁵⁾

제106조 리기적 목적 또는 비렬한 동기에서 문서, 공민증, 증명서를 감추었거나 처분하였거나 또는 위조하였거나 위조한 것인줄 알면서 써먹은

15) 구형법 제105조 사회적 혼란과 국가에 대한 불신임을 일으킬 수 있는 거짓 또는 부정확한 풍설을 퍼뜨려 사회에 혼란을 준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7조 화물수송 또는 소포에 관한 규정을 어기고 방사성, 폭발성, 인화성 물질을 부쳤거나 부쳐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6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8조 법이 정한 군사복무동원을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9조 경비근무를 수행하는 자가 근무규정을 어긴 결과 경비대상물에 엄중한 손실을 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0조 군사적 경비 및 차단근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반항하여 그의 근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1조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를 훔쳤거나 빼앗거나 고의적으로 파괴, 손상시킨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2조 무기, 탄약, 그 밖의 군수물자를 잘못 보관취급하여 그것을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만든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3조 무기, 탄약 같은 것을 비법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4조 폭약,뢰관같은 폭발물을 훔쳤거나 비법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5조 국가 및 군사비밀을 누설한 자 또는 비밀문서를 분실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6조 다른 나라 사람이 비행기 또는 배를 몰고 허가없이 우리 나라 령공, 령해에 들어왔거나 령공, 령해 밖으로 나가며 지정된 항로, 비행고

도를 비롯한 비행, 항해 규칙을 어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비행기 또는 배를 몰수할 수 있다.

제117조 허가없이 국경을 넘는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8조 국경관리부문에 근무하는 관리일군이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자를 도와준 경우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9조 허가없이 지정된 항해구역 또는 어로구역을 마음대로 리탈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0조 범죄에 대한 거짓신고를 한 자 또는 증인,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이 수사, 예심, 재판심리에서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1조 로동교화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춘 자로서 공범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2조 이 법 제63조, 제141조, 제160조의 범죄가 준비되고 있거나 감행된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3조 교화받고 있는 자 또는 구류보전처분결정에 따라 갇혀 있는 자가 도망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시설을 파괴하였거나 경비원에게 폭행을 하고 도망친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 절 관리일군의 직무상 범죄

제124조 관리일군이 리기적 목적으로 직권 또는 직위를 랍용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수 있게 한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5조 관리일군이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수 있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6조 관리일군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사업을 지연시켰거나 무질서하게 만들며 국가에 손실을 주었거나 인민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는 것과 같이 직무를 태만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7조 관리일군이 공민의 신소, 청원을 고의적으로 묵살하였거나 그릇되게 처리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8조 관리일군이 국가기관의 권위를 훼손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9조 사람을 불법구속, 불법구인하였거나 범죄자를 비법적으로 놓아준 자 또는 진술을 강요하였거나 사건을 과장, 날조하였거나 부당한 판결, 판정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0조 관리일군이 퇴물을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퇴물을 대량 또는 강요하여 받았거나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퇴물을 받은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퇴물로 받는 돈과 물건은 몰수한다.

제 7 장 사회주의적 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제131조 파렴치한 불량자적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2조 미성인에게 범죄를 감행하도록 추기거나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하며 불량자로 되게 한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3조 관리일군이 아닌 자가 관리일군으로 가장하여 또는 관리일군이 다른 관리일군의 직권을 행세하여 국가의 위신을 훼손시켰거나 사회적으로

로 위험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4조 돈 또는 물건을 걸고 도박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돈과 물건은 몰수한다.

제135조 주은 돈 또는 물건을 국가기관에 바치지 않고 가진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6조 늙은이, 어린이 또는 로동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자가 그들을 고의적으로 돌보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7조 직무상 복종관계에 있거나 자기의 보호 밑에 있는 사람을 학대, 팔시하여 그의 건강에 해를 주었거나 자살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8조 죽을 위험에 처하여 있는 사람을 해당 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알려주지 않았거나 자기가 능히 할 수 있는 방조를 주지 않아 그를 죽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9조 묘를 파괴, 손상한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0조 도적질한 물건인줄 알면서 그것을 사거나 팔아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8 장 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범죄

제 1 절 공민의 생명, 건강, 인격을 침해하는 범죄

제141조 탐욕, 질투, 그 밖의 비렬한 동기에서 또는 다른 중한 범죄를 감출 목적에서 또는 잔인하게 혹은 여러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을 죽였거나 부양 간호해야 할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사람을 죽인 행위가 가벼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2조 피해자의 폭행 또는 심한 모욕 때문에 일어난 발작적 격분상태에서 사람을 죽인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3조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거나 직무집행상 필요한 정도를 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4조 사람을 과실로 죽인 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5조 사람의 생명에 위험할 정도의 상해를 입혔거나 눈, 귀, 그 밖의 기능을 잃게 하였거나 얼굴에 흉한 허물을 남기는 상처를 입혔거나 또는 정신병을 일으키게 하였거나 노동능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중상을 입힌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피해자가 죽었거나 잔악한 방법으로 중상을 입힌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6조 피해자의 폭행 또는 심한 모욕 때문에 일어난 발작적 격분상태에서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자는 1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7조 과실로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자는 1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8조 사람의 건강에 해를 주는 경상을 입힌 자는 1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앞항의 행위를 하였거나 잔악한 방법으로 경상을 입힌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9조 사람을 때리는 것과 같은 폭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잔악한 방법으로 앞항의 행위를 하였거나 여러번 또는 여럿이 공모하여 폭행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¹⁶⁾

16) 구형법 제149조 사람을 때리는 것과 같은 폭행을 한 자는 6개월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잔악한 방법으로 앞항의 행위를 하였거나 여러번 또는 여럿이 공모하여 폭행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0조 리기적 목적 또는 복수적 동기에서 어린이를 훔쳤거나 감춘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1조 비법적으로 사람의 자유를 구속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2조 사람을 모욕하였거나 그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3조 폭행, 협박하는 방법으로 또는 구원을 받지 못할 상태를 리용하여 여성을 강간한 자, 15살에 이르지 못한 여성과 성교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 여성에 대하여 하였거나 른간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4조 직무상 또는 의무실행상 복종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강요하여 성교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 여성에 대하여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피해자를 타락 또는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 절 공민의 개인소유를 침해하는 범죄

제155조 공민의 재산을 훔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 또는 여럿이 공모하여 공민의 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6조 공민의 재산을 빼앗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 또는 여러번 혹은 여럿이 공모하여 공민의 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7조 공민의 재산을 속여먹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8조 공민의 재산을 횡령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9조 공민의 재산을 특히 대량 약취한 자 또는 재산약취행위를 하여 여러번 법적 처벌을 받은 자로서 공민의 재산을 대량 약취한 경우에는 6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60조 사람의 생명, 건강에 위험을 주는 폭행, 협박을 하여 공민의 재산을 강도한 자는 8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여럿이 공모하여 혹은 무기, 흉기를 리용하여 앞항의 행위를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피해자를 죽게 하였거나 중상을 입힌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61조 공민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1990. 9.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결정 제4호 제정; 1993. 9. 23 개정
; 1999. 3. 24 개정

제 1 편 일반제도

제 1 장 민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 규제를 통하여 사회주의 경제제도와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 사이에 서로 같은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재산관계를 규제한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민사법률관계에서 당사자로서의 독자적인 지위를 보장한다(1999. 3. 24 개정).

제 3 조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적 기초이다.
국가는 재산관계에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한 인민경제의 계획적 관리 운영을 강화하여 사회주의경제제도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도록 한다.

제 4 조 계획적인 재산거래 관계는 인민경제 계획에 기초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계획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할 수 있게 재산 거래 관계를 맺고 실현하도록 한다(1999. 3. 24 개정).

제 5 조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 데서 사회주의국가의 경제관리 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구현하며 계

약규율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1999. 3. 24 개정).

제 6 조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은 사회주의국가의 본성적 요구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공민과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 데서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이 근로자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1999. 3. 24 개정).

제 7 조 공민이 참가하는 재산관계는 계약을 비롯한 행위와 사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가는 재산관계에 근로자들이 일상적으로 널리 참가할 수 있도록 온갖 편의와 조건을 보장한다.

제 8 조 집단주의는 사회주의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서로 협력하고 방조하는 집단주의 원칙에서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도록 한다(1999. 3. 24 개정).

제 9 조 국가는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 데서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앞세우면서 개별적인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들의 리익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1993. 9. 23 제2항 삭제).

제10조 민사활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맺은 조약에서 달리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999. 3. 24 개정).

제 2 장 민사법률 관계의 당사자

제11조 민사법률 관계의 당사자로는 독립적인 경비예산이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된다.

우리나라에 창설된 합영·합자회사나 그 밖에 법이 인정한 다른 나라의 법인도 민사법률 관계의 당사자로 된다 (1999. 3. 24 개정).

제12조 조직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국가기관에 등록하여야 창설된 것으로 인정한다(1999. 3. 24 제1항 신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국가기관에 등록된 때로부터 민사상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질 수 있는 민사권리 능력과 그것을 자신이 직접 실현할 수 있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다.

제13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본신임무에 맞는 범위 안에서 민사권리 능력을 가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본신임무를 해당 국가기관에 등록된 다음에는 그것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제14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관리책임자는 그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위임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 행위를 한다.

제15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자기 자신이 민사책임을 진다.

제16조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갈라지는 경우에 민사상 권리의무는 그에 맞게 갈라지며 합쳐지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무도 합쳐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폐지되거나 그 자신이 해산을 결정한 경우에 그가 가지고 있던 채권채무는 해당 임무를 위임받은 청산인이 처리한다.

제17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민사권리 능력과 민사행위 능력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폐지 또는 해산이 해당 국가기관에 등록된 때에 없어진다.

제18조 국가는 국가소유 관계를 비롯한 일정한 민사법률 관계에서 직접 당사자로 된다. 이 경우에 국가는 해당하는 권한을 부여한 기관을 통하여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제19조 공민의 민사권리 능력은 출생과 함께 생기며 사망과 함께 없어진다.

모든 공민은 민사권리 능력을 평등하게 가진다. 법이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누구도 공민의 민사권리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

제20조 공민의 성인나이는 17살이다.

17살에 이른 공민은 민사법률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다.

16살에 이른자는 자기가 받은 로동보수의 범위 안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다. 그러나 6살 이상의 미성인은 학용품이나 세 소일용품 같은 것을 사는 행위를 할 수 있다(1999. 3. 24 개정: 제21조 제1항 단서를 제20조 제3항 단서로 이동).

제21조 민사행위 무능력자, 신체기능 장애자는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 행위를 한다(1999. 3. 24 제1항 삭제, 제1항 단서는 제20조 제3항 단서로 이동).

제22조 마지막 소식이 있을 때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공민에 대하여서는 리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공증기관이 소재불명자로 인증할 수 있다(1999. 3. 24 개정).

소재불명자로 인증된 후 2년, 소식이 없거나 마지막 소식이 있을 때로부터 5년, 생명에 위협을 준 사고가 있을 때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공민에 대하여서는 앞항과 같은 절차에 따라 사망자로 인증할 수 있다(1999. 3. 24 개정).

제23조 소재불명자 또는 사망자로 인증되었던 공민이 나타났거나 소식을 보내어 거처를 알려온 경우에 공증기관은 본인이나 리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인증을 취소한다. 이 경우 변경된 재산관계는 취소시킬 수 있으나 새로 성립된 결혼관계는 취소시킬 수 없다(1999. 3. 24 단서 신설).

제 3 장 민사법률행위

제24조 민사법률관계의 설정,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말로나 서면같은 것으로 할 수 있다. 법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거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1999. 3. 24 개정).

제25조 민사법률행위를 한 자는 법에서 허용하거나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

우에만 자기가 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 민사법률 행위는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맞게 하여야 법적 효력을 가진다.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어긋나는 행위, 국가와 사회에 해를 준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행위, 허위적으로 하는 행위,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공민이 하는 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27조 민사법률 행위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 당사자들이 이미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은 서로 상대방에게 돌려준다. 그러나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 행위를 한 자에게는 해당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국고에 넣는다.

제28조 속히워서 한 민사법률 행위,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착오를 범한 민사법률 행위, 강요로 하여 본의 아니게 한 민사법률 행위, 16살에 이른 자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없이 한 민사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2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

취소된 민사법률 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1999. 3. 24 개정).

제29조 민사법률 행위가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들이 이미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은 서로 상대방에 돌려준다. 그러나 상대방을 속였거나 강요하여 민사법률 행위를 하게 한 자의 돈이나 물건은 그에게 돌려주지 않고 국고에 넣는다.

제30조 민사법률 행위의 효력은 일정한 조건의 발생과 결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당사자는 조건의 발생을 앞당기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1999. 3. 24 개정).

제31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법이 정한 경우나 자신이 직접 수행하여야 할 경우를 내놓고는 대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2조 대리에는 법에 의하여 하는 법정대리와 위임에 의하여 하는 위임대리가 있다.

대리인은 반드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공민이어야 한다.

제33조 대리인은 대리의 도움을 받는 본인의 이름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하여 그 행위의 법적 효과는 본인에게 돌아간다.

본인은 대리인과 법률행위를 한 제3자 앞에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진다.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의 결과는 대리인이 책임진다(1999. 3. 24 제3항 신설).

제34조 대리의 위임은 말로 하거나 서면으로 한다.

공민이 대리를 말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대리권의 범위를 상대방에 알려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서면으로만 대리를 위임할 수 있으며 대리를 위임하는 위임장이나 신임장에는 대리권의 범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제35조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대리권의 범위에서 대리행위를 불성실하게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는 대리인이 책임진다(1999. 3. 24 개정).

제36조 대리권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대리인이 민사행위 능력을 잃은 경우에 없어진다.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이 대리의 위임을 취소하였거나 대리인이 그 위임을 거절한 경우에도 없어진다.

말로 한 대리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 알려주어야 한다(1999. 3. 24 제2항 신설).

제 2 편 소유권제도

제 1 장 일반규정

제3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그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소유권, 사회협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으로 나누어진다(1999. 3. 24 개정).

- 제38조 소유권은 법이나 계약, 그 밖의 행위와 사건에 기초하여 발생한다.
소유권은 법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때, 계약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계약을 맺고 그 대상을 넘겨받은 때부터 발생한다(1999. 3. 24 개정).
- 제39조 소유권을 가진 자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기의 소유재산을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할 수 있다.
재산에 대한 처분은 해당 소유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
- 제40조 소유권을 가진 자는 자기의 재산을 다른 자가 비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999. 3. 24 개정).
- 제41조 소유권을 가진 자는 자기소유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그만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2조 소유권은 여럿의 몫으로 나누어 공동으로 가질 수 있다.
공동소유 재산을 점유하거나 리용, 처분하는 것은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진 자들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1999. 3. 24 개정).
- 제43조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진 자들은 공동소유 재산에서 자기의 몫을 갈라 가질 수 있다. 재산을 현물로 가르기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몫에 해당하는 값을 받을 수 있다.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진 자들의 몫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그들의 몫은 같은 것으로 본다.

제 2 장 국가소유권

- 제44조 국가소유는 전체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는 국유화한 재산, 국가투자에 의하여 마련한 재산, 국가기업소의 생산물, 국가기관, 기업소가 산 재산, 국가의 결정에 따라 국가기관, 기업소에 넘어온 재산, 협동단체나 공민이 국가에 바친 재산, 그 밖에 국고에 넣기로 된 재산으로 이루어진다.

제45조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다음의 재산은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다.

1.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을 비롯한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2.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 항만, 은행, 교통운수 및 체신, 방송기관
3. 각급 학교 및 중요문화 보전시설(1999. 3. 24 개정).

제46조 국가소유권의 담당자는 전체 인민을 대표하는 국가이다.

국가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재산을 제한없이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할 수 있다.

제47조 국가소유권은 국가가 직접 또는 개별적인 국가기관, 기업소를 통하여 실현한다.

국가기관, 기업소는 자기가 많은 국가소유 재산에 대한 경영상 관리권을 가지고 국가의 지도 밑에 그 재산을 자기의 이름으로 점유하거나 리용, 처분할 수 있다.

제48조 국가기관, 기업소의 재산이 사회협동 단체나 공민에게 공급, 판매되는 경우에 국가소유권은 그 사회협동 단체나 공민에게 넘어간다. 그러나 국가기관, 기업소의 재산이 다른 국가기관, 기업소에 공급, 판매되는 경우에는 경영상 관리권만 넘어간다(1999. 3. 24 개정).

제49조 국가에서 협동농장에 배속시킨 트랙토르, 모내는 기계, 수확기를 비롯한 현대적 농기계, 국가부담으로 협동농장에 마련하여 준 문화시설, 탈곡장, 집짐승우리, 창고같은 고정재산에 대하여 국가는 자기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리용권을 해당 협동농장에 넘겨준다.

협동농장은 국가가 지원하여 준 고정재산을 그 사명에 맞게 자기의 재산처럼 리용할 수 있다.

제50조 국가는 살림집을 지어 그 리용권을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민에게 넘겨주며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51조 국가기관, 기업소는 자기재산이 권한없는 자로부터 사회협동 단체나 공민에게 넘어간 경우에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999. 3. 24 개정).

제52조 임자없는 물건은 국가소유로 한다. 임자없는 물건에는 소유권을 가진 자가 없거나 소유권을 가진자를 알 수 없는 물건이 속한다.

제 3 장 사회협동단체 소유권

제53조 사회협동단체 소유는 사회협동 경리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1999. 3. 24 개정).

사회협동단체 소유는 사회협동단체 성원들이 들여놓은 재산, 사회협동단체의 자체투자에 의하여 마련한 재산, 사회협동 경리의 생산물, 사회협동단체가 산 재산, 국가에서 사회협동단체에 소유권을 넘겨준 재산으로 이루어진다(1999. 3. 24 개정).

제54조 사회협동단체는 토지와 농기계, 건물 등과 중소공장, 기업, 그 밖에 경영활동에 필요한 대상들을 소유할 수 있다(1999. 3. 24 개정).

제55조 사회협동단체 소유권의 담당자는 개별적인 사회협동단체이다(1999. 3. 24 개정).

사회협동단체는 자기의 소유재산을 그 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민주주의원칙에서 점유하거나 리용,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처분은 법이 정한데 따라 할 수 있다.(1999. 3. 24 개정)

제56조 사회협동단체가 생산한 제품이 국가기관, 기업소 또는 다른 사회협동단체나 국민에게 공급, 판매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소유권은 상대방에 넘어간다(1999. 3. 24 개정).

제57조 사회협동단체는 자기의 소유재산이 권한없는 자로부터 다른 사회협동단체나 국민에게 넘어간 경우에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999. 3. 24 개정).

제 4 장 개인소유권

제58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 터밭

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 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공민이 샀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 그 밖의 법적 근거에 의하여 생겨난 재산으로 이루어진다.

제59조 공민은 살림집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정용품, 문화용품, 그 밖의 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기재를 소유할 수 있다.

제60조 개인소유권의 담당자는 개별적 공민이다.

공민은 자기의 소유재산을 사회주의적 생활규범과 소비적 목적에 맞게 자유로이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할 수 있다.

제61조 가정성원으로 된 공민은 가정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가진다(1999. 3. 24 개정).

제62조 공민은 자기의 소유재산을 권한없는 자에게서 넘겨받는다는 것을 알면서 가진 공민을 상대로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가진 경우에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 국가는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공민의 개인소유 재산은 법에 따라 상속한다. 공민은 유언에 의하여서도 자기의 소유재산을 가정성원인 그 밖의 공민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줄 수 있다.

제 3 편 채권채무제도

제 1 장 일반규정

제64조 채권은 일정한 재산상 행위를 수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채무자는 일정한 재산상 행위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1999. 3. 24 개정).

제65조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권리를 가지면서 그에 대응한 의무를 함께 가질 수도 있고 권리나 의무의 하나만을 가질 수도 있다.

제66조 채권채무 관계는 인민경제 계획을 비롯한 국가의 행정문건이나 계약, 그 밖의 행위와 사건에 기초하여 설정된다.

제67조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리행에 응당한 방조를 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여 채무리행에 지장을 준 채권자는 채권에 제한을 받거나 해당한 책임을 진다.

제68조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어기여 생긴 손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여 손해가 커진 경우에 보상을 요구할 채권자의 권리는 그만큼 제한된다.

제69조 채권채무 관계에서 값은 국가가 정하였거나 평가한 값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값으로 정하고 계산한다.

국가의 가격규률을 어기고 더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은 상대방에 돌려주며 의식적으로 가격규률을 어기고 더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은 돌려주지 않고 국고에 넣는다.

제70조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 각자는 채권이나 채무의 몫을 분할하여 가질 수도 있고 연대적으로 가질 수도 있다.

제71조 분할채권자는 자기몫의 리행만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분할채무자는 자기몫의 채무만을 리행할 의무를 진다.

제72조 분할채권자가 가지는 청구의 몫이나 분할채무자가 지는 의무의 몫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그 몫은 같은 것으로 본다.

제73조 연대채권자는 저마다 채무의 전부 리행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연대채무자는 저마다 채무를 전부 리행할 의무를 진다.

제74조 채무를 전부 리행한 연대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각자가 부담하여야 할 몫을 보장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채무를 전부 리행받은 연대채권자는 다른 연대채권자에게 해당한 몫을 나누어 줄 의무를 진다.

제75조 연대채권자는 자기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서 다른 연대채권자의 리익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한 연대채권자가 자기의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 그것은 다른 연대채권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76조 채권자가 한 련대채무자의 채무를 면제시킨 경우에 그가 부담하기로 되었던 몫만큼 다른 련대채무자의 몫은 적어진다.

제77조 채권자나 채무자는 자기의 채권이나 채무를 제3자에게 넘겨줄 수 있다.

채권을 제3자에게 넘겨주려는 채권자는 그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알려야 하며 채무를 제3자에게 넘겨주려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제78조 제3자의 허물로 하여 생긴 채무를 채권자 앞에 리행한 당사자는 제3자에게 해당하는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79조 채무자는 채무를 자기가 직접 리행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직접 리행하지 않아도 될 채무는 제3자에게 위임하여 리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채무자는 제3자의 채무리행에 대하여 채권자 앞에 책임진다.

제80조 채무자는 채무를 정해진 기간 안에 리행하여야 한다.

채무리행을 지연시키거나 채무리행의 접수를 지연시킨 당사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81조 법이나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채무는 한번에 리행하여야 하며 채무를 나누어 리행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리행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제82조 징표가 같은 종류의 물건을 유상으로 넘겨주는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는 질이 가장 좋은 물건을 넘겨주어야 한다.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주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간 정도의 질을 가진 물건을 넘겨줄 수 있다.

제83조 징표가 다른 특정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채무 관계에서 그 물건이 없어졌거나 쓸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채권채무 관계는 없어진다.

그러나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허물있는 자가 보상할 책임을 진다.

징표가 같은 종류의 물건을 넘겨주기로 한 채권채무 관계에서 물건이 없

어졌거나 손상되면 채무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을 넘겨주어야 한다.

제84조 징표가 같은 종류의 물건 가운데서 채권채무의 대상이 개별적으로 정하여지면 그 때로부터 그 대상물은 징표가 다른 특정된 물건으로 된다.

제85조 재산을 넘겨주는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넘겨주는 재산과 함께 그에 종속된 재산도 넘겨주어야 한다.

제86조 채무는 법이나 계약이 정한 곳에서 리행하여야 한다.

법이나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 돈으로 물어야 할 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지나 거래은행에서, 부동산으로 넘겨주어야 할 채무는 부동산 소재지에서, 그 밖의 채무는 채무자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에서 리행하여야 한다.

제87조 채무의 대상으로 된 물건을 심히 손상시킨 경우에 그 값의 전부를 보상한 자는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제88조 채권채무 관계에서 당사자는 여러 행위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법이나 계약에서 행위의 선택권을 가지는 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89조 선택권을 가진 자가 채무리행 기간이 되도록 행위를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상대방에 넘어간다.

제90조 계약은 한편 당사자의 제의와 상대방 당사자의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1990. 9. 5 제정 당시에는 제136조 1항이었음).

제의를 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제의를 접수한 때로부터 해당 제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1990. 9. 5 제정 당시에는 제136조 2항이었음).

제91조 계약당사자는 계약대상, 리행기간과 계약대상의 값 같은 본질적 조건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공민에게 불로소득을 가져다 주는 계약내용은 설정할 수 없다(1990. 9. 5 제정 당시에는 제138조이었음).

제92조 계약은 유상으로 맺을 수도 있고 무상으로 맺을 수도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참가하는 계약은 유상으로 맺는다 (1990. 9. 5 제정 당시에는 제139조이었음).

제93조 기관, 기업소, 단체 호상간의 계약은 서면으로 맺어야 한다.

말로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그 사실 증명되어야 효력을 가진다(1999. 3. 24 개정. 1990. 9. 5 제정 당시에는 제140조이었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사이, 공민 사이의 계약은 법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말로 맺을 수 있다(1999. 3. 24 개정. 1990. 9. 5 제정 당시에는 제140조 2항이었음).

계약의 체결과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서면으로 맺은 계약은 재판이나 중재에서 우선적으로 인정받는다(1999. 3. 24 개정. 1990. 9. 5 제정 당시에는 제140조 3항이었음).

제94조 부동산 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서면으로 맺고 공증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1990. 9. 5 제정 당시에는 제141조이었음).

제95조 두 당사자들이 다같이 의무를 지는 계약은 서로 동시에 리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990. 9. 5 제정 당시에는 제142조 1항이었음).

한편 당사자가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으면 상대방 당사자는 자기의 의무리행을 보류할 수 있다(1990. 9. 5 제정 당시에는 제142조 2항이었음).

채권자는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에 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대상을 잡아둘 수 있다(1999. 3. 24 신설).

제96조 한편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을 리행하지 않으면 상대방 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1990. 9. 5 제정 당시에는 제143조이던 것이 1999. 3. 24 개정으로 제96조로 됨).

제97조 계약대상을 접수한 자는 제때에 검사하고 나타난 결함을 상대방에 알려야 한다(1990. 9. 5 제정 당시에는 제144조 1항이었음).

계약대상의 결함에 대하여 허물있는 자는 결함을 고쳐주거나 대상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주거나 그 값을 낮추어 주어야 한다(1990. 9. 5 제정

당시에는 제144조 2항이었음).

제98조 계약대상을 접수한 자는 숨은 결함을 상대방에 알려 책임을 물을 수 있다(1990. 9. 5 제정 당시에는 제141조 1항이었음).

숨은 결함에 대한 책임은 정해진 기간 안에 물어야 한다
(1990. 9. 5 제정 당시에는 제145조 2항이었음).

제99조 계약대상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그것이 없어졌거나 손상된 데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계약당사자에게 허물이 없거나 자연재해 같이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대상물이 없어졌거나 손상된 데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는다(1999. 3. 24 개정. 1990. 9. 5 제정 당시에는 제146조이었음).

제100조 계약은 제3자를 위하여 맺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의 효력은 계약을 맺은 자와 함께 제3자에게도 발생한다(1990. 9. 5 제정 당시에는 제147조이었음).

제 2 장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

제101조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하며 경제관리에서 독립채산제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하여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맺는다
(1999. 3. 24 개정. 1990. 9. 5 제정 당시에는 제90조 1항이었음).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약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때에 맺어야 한다(1990. 9. 5 제정 당시에는 제90조 2항이었음).

제102조 계약당사자는 인민경제계획을 가장 정확히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획에 명백히 부족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하여 계획기간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103조 계약은 법이 정한 모든 사항들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맺어진다.

계약을 맺는데서 의견상이는 중재절차로 해결한다.

제104조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이 추가되거나 조절되면 그에 따라 변경된다.

계약의 변경은 계획의 추가, 조절에 관한 통지를 한편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았거나 계약 쌍방이 권한있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때에 이루어진다.

제105조 기관, 기업소, 단체가 국가의 자재공급 계획에 기초하여 자재를 주고받는 행위는 자재공급 계약에 따라 한다.

자재공급 계약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와 자재를 주고받는 데서 상업적 형태를 리용할 데 대한 국가적 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06조 자재공급 계약의 당사자로는 국가의 자재공급 세부계획에 따라 자재를 주고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된다(1999. 3. 24 개정. 1990. 9. 5 제정 당시에는 제95조 1항이었음).

자재공급 계약에 의하여 공급자는 계획에 예견된 자재를 수요자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수요자는 그것을 넘겨받고 해당하는 값을 물 의무를 진다(1990. 9. 5 제정 당시에는 제95조 2항이었음).

제107조 자재공급 계약의 당사자들은 공급할 자재의 이름, 규격, 질, 공급기간, 수량, 값과 그것을 주고받는 방법, 포장하는 방법, 거래은행 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1999. 3. 24 개정. 1990. 9. 5 제정 당시에는 제96조이었음).

제108조 공급자는 자재를 제때에 운수기관을 통하여 실어 보내주거나 자기창고에서 수요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운수기관을 통한 수송조직에 대하여서는 공급자가 책임지며 여기에 드는 수송비는 수용자가 부담한다.

제109조 공급된 자재의 검수는 수요자가 한다.

수요자는 자재에 사고가 있으면 공급자를 립회시키고 그로부터 사고조서를 받을 수 있다.

정당한 리유없이 사고확인을 지연시키거나 거절한 당사자는 수요자가 작성한 사고조서에 근거하여 책임진다.

제110조 공급된 자재의 숨은 결함을 발견한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알리고 그로부터 사고조서를 받아야 한다. 긴급하거나 사고의 원인과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독기관의 참가 밑에 사고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숨은 결함에 대하여 수요자는 자재를 넘겨받은 때로부터 3개월 안에, 기계설비인 경우에는 시운전이 끝날 때까지 공급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11조 수요자가 공급받은 자재를 사장, 랑비하여 지불능력을 잃은 경우에 공급자는 계약된 자재의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

제112조 수요자는 자재를 넘겨받은 다음에 값을 제때에 물어야 한다.

자재의 품종, 규격, 질, 값이 계약조건과 맞지 않으면 수요자는 값을 물지 않고 자재를 공급자에게 돌려보낼 수 있다. 그러나 변질될 수 있거나 긴급한 대책을 요구하는 자재는 돌려보내지 않고 값만 낮출 수 있다.

제113조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국가의 상품공급 계획에 기초하여 상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상품공급 계약에 따라 한다.

상품공급 계약은 주문제에 의하여 생산과 소비를 옹계 련결시키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킬 데 대한 국가적 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14조 상품공급 계약에 의하여 공급자는 계획에 예견된 인민소비품을 수요자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수요자는 그것을 넘겨받고 해당하는 값을 물 의무를 진다.

제115조 상품공급 계약의 당사자로는 국가의 상품배정 계획에 따라 상품을 주고받는 기업소와 도매상업기업소, 소매상업기업소가 된다(1999. 3. 24 개정. 1990. 9. 5 제정 당시에는 제104조 1항이었음).

기업소의 제품판매를 담당한 상사, 협동농장도 계약당사자로 될 수 있다 (1999. 3. 24 개정. 1990. 9. 5 제정 당시에는 제104조 2항이었음).

제116조 상품공급 계약의 당사자들은 이 법 제1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들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1999. 3. 24 개정. 1990. 9. 5

제정 당시에는 제105조이었음).

제117조 공급자는 상품을 제때에 운수기관을 통하여 실어보내거나 수요자의 창고까지 날라다 주어야 한다. 이 경우에 상품과 함께 그 명세서를 수요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제118조 공급된 상품의 검수는 수요자가 하며 그 과정에 나타난 결함에 대한 사고처리는 이 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다(1999. 3. 24 개정. 1990. 9. 5 제정 당시에는 제107조이었음).

제119조 공급된 상품의 숨은 결함에 대한 사고처리는 이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다(1999. 3. 24 개정. 1990. 9. 5 제정 당시에는 제108조 1항이었음).

신용보증 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상품의 숨은 결함에 대하여서는 상품을 넘겨받은 때로부터 3개월 안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1999. 3. 24 개정. 1990. 9. 5 제정 당시에는 제108조 2항이었음).

제120조 수매기관이 국가수매 계획에 기초하여 농산물을 사들이는 행위는 농업생산물 수매계약에 따라 한다.

농업생산물 수매계약은 량곡과 원료를 계획적으로 동원하며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높일 데 대한 국가적 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21조 농업생산물 수매계약에 의하여 생산자는 합의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매기관에 넘겨줄 의무를 지며 수매기관은 그것을 넘겨받고 해당하는 값을 물 의무를 진다.

제122조 농업생산물 수매계약의 당사자들은 수매품의 수매기간, 수량, 값, 질, 규격과 보관, 수송방법 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123조 수매품의 질과 규격은 국가수매 계획에 따라 정한다. 국가수매 계획에서 지적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24조 수매품의 포장재와 용기는 수매기관이 보장한다.

생산자가 마련하게 된 포장재와 용기는 생산자가 보장한다. 이 경우에 그 값은 수매기관이 부담한다.

제125조 계약당사자는 수매기간을 지켜야 한다.

수매기관은 계약한 기간 안에 농산물을 수매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생산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126조 수매기관은 정확히 농산물의 질을 검사하고 량을 계량하여 수매하여야 한다(1999. 3. 24 개정. 1990. 9. 5 제정 당시에는 제115조 1항이었음).

농산물은 상자나 창고에 넣어 용적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수매할 수 없다.

제127조 생산자의 창고나 현지에서 수매한 농산물을 가져가거나 보관할 책임은 수매기관이 진다. 그러나 포장하지 않고 수매한 량곡과 부피가 큰 수매품은 수매기관의 책임 밑에 생산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제128조 기관, 기업소, 단체가 국가의 기본건설 계획에 기초하여 기본건설을 위탁하는 행위는 기본건설 시공계약에 따라 한다.

기본건설 시공계약은 건설을 집중화하며 건설원가를 낮추고 건설물의 질을 높일 데 대한 국가적 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29조 기본건설 시공계약에 의하여 시공주는 건설대상을 완공하여 건설주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건설주는 정해진 건설조건을 보장하고 완공된 건설물을 제때에 넘겨받을 의무를 진다(1999. 3. 24 개정. 1990. 9. 5 제정 당시에는 제118조이었음).

제130조 기본건설 시공계약의 당사자들은 건설대상과 규모, 건설대상의 착공, 완공날자와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기본건설 시공계약은 계획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건설대상별로 맺는다.

제131조 건설주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부지와 설계를 보장하여야 한다.

건설부지 안의 건설과 시설물을 옮기는 작업은 건설주의 위탁에 의하여 시공주가 할 수 있다.

제132조 시공주는 건설대상의 착공 및 완공날자와 조업기일을 지켜야 하며 설계와 기술문건대로 공사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33조 건설주는 건설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주의 공사실적을 제때에 확인해 주어야 한다.

제134조 시공주와 건설주는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건설물만을 넘겨주고 받을 수 있다 .

준공검사는 계약된 공사가 끝나고 조업능력에 해당하는 부하시운전이 진행되었을 때에 한다.

제135조 시공주는 건설물을 건설주에게 넘겨준 때로부터 1년 안에 나타난 결함에 대하여 고쳐줄 의무를 진다. 이 경우에 거기에 드는 비용은 허물있는 자가 부담한다.

제136조 기관, 기업소, 단체가 국가의 수송계획에 맞물린 짐을 운수기관을 통하여 나르는 행위는 화물수송 계약에 따라 한다.

화물수송 계약은 수송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화물수송 계획을 질량적으로 수행할 데 대한 국가적 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37조 화물수송 계약에 의하여 짐보내는 자는 짐을 운수기관에 넘겨주고 운임을 물 의무를 지며 운수기관은 그 짐을 운반하여 짐받을 자에게 넘겨줄 의무를 진다.

제138조 화물수송 계약의 당사자들은 짐의 이름, 나를 수량, 보내는 곳과 닿는 곳, 짐을 싣고 부리는 방법과 보내고 받을 자의 이름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139조 짐보내는 자는 계약된 짐을 정해진 규격대로 운수기관에 제때에 넘겨주어야 하며 운수기관은 그 짐의 성격에 맞는 운수수단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140조 짐을 싣고부리는 작업은 달리 합의된 것이 없는 한 짐임자가 하여야 한다.

짐을 싣고부리는 작업을 맡은 당사자는 정해진 작업기간을 지켜야 한다.

제141조 운수기관은 짐받을 자에게 짐을 넘겨줄 때까지 잘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운수기관은 나르는 짐을 마음대로 쓰거나 남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제142조 운수기관은 가장 합리적인 수송로를 거쳐 정한 기간 안에 짐을 목적지까지 실어날라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 짐입자는 더 든 운임의 지불을 거절할 수 있으며 늦게 도착한 짐에 대한 연착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제143조 운수기관은 짐이 도착하면 제때에 짐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짐받을 자는 도착한 짐을 정한 기간 안에 찾아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면 보관료나 해당한 요금을 물어야 한다.

련대수송으로 나른 짐에 대한 보관료나 제재금은 짐을 넘겨주는 운수기관이 적용하는 비률에 따라 계산한다.

제144조 짐받는 자는 짐을 검사하고 사고가 있으면 운수기관으로부터 사고조서를 받고 해당한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리유없이 사고조서 작성을 거절한 운수기관은 그 사고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145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려지지 않은 짐을 운수기관을 통하여 나르는 것은 화물수송 계약질서에 따라 한다 (1999. 3. 24 개정. 1990. 9. 5 제정 당시에는 제134조이었음).

제 3 장 계획에 기초하지 않은 계약

제146조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은 국가의 인민적인 시책이 공민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맺는다.

제147조 국가의 승인 밑에서만 가질 수 있는 물건이나 회유금속, 그 밖의 국가통제품은 계약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1999. 3. 24 개정. 1990. 9. 5 제정 당시에는 제137조이었음).

제148조 소매상업기업소, 수매기관과 공민 사이 또는 공민들 사이에 물건을 팔고사는 행위는 팔고사기 계약에 따라 한다(1999. 3. 24 개정).

팔고사기 계약은 인민들의 소비적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49조 팔고사기 계약에 의하여 파는 자는 물건을 사는 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를 지며 사는 자는 물건을 넘겨받고 값을 물 의무를 진다.

물건을 파는 것은 그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처분권이 없는 자가 물건을 판다는 것을 알면서 맺은 팔고사기 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150조 기업소가 생산하여 공급한 상품에 대한 팔고사기 계약에서 파는 자로는 소매상업기업소가 된다(1999. 3. 24 개정).

소매상업기업소는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상품주문서를 만들고 상품을 제때에 확보하여 팔아주어야 한다.

제151조 신용보증 기간이 정해진 상품을 산 자는 그 보증기간 안에 나타난 결함에 대하여 상품을 판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1999. 3. 24 개정).

제152조 국가계획에 있는 농산물, 희유금속과 국가통제품을 내놓고 농축산물과 농토산물, 원료와 자재, 일반용품을 사들이는 당사자로는 수매기관이 된다.

수매기관은 기본수매 품종들의 등급기준과 값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수매품을 사들여야 한다.

제153조 수매기관은 계약된 물건을 정해진 기간 안에 사들여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 수매시키는 자는 해당 물건을 다른 수매기관에 팔 수 있으며 생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제154조 수매품을 수매장소까지 나르는 일은 수매시키는 자가 하며 수매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나르는 일은 수매기관이 한다.

수매품의 나르는 일을 앞항과 다르게 계약한 경우에 운반을 담당하는 자는 해당운임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155조 공민이 생산한 농부업 생산물은 농민시장에서만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합의된 값으로 팔고살 수 있다.

산 물건을 더 비싸게 되거리하는 것은 금지한다.

제156조 공민이 물건을 만들거나 수리, 가공하거나 그 밖의 일을 맡기는 행위는 작업봉사 계약에 따라 한다.

작업봉사 계약은 근로자들에 대한 편의봉사를 잘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57조 작업봉사 계약에 의하여 작업하는 자는 주문받은 일을 하고 그 결과를 작업맡긴 자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작업맡긴 자는 작업결과를 넘겨받고 해당한 봉사료를 물 의무를 진다.

제158조 작업봉사 계약은 당사자들이 말로 합의하고 일감을 주고받은 때에 맺어진다.

제159조 작업맡기는 자는 일감을 넘겨줄 때에 요구조건을 알려주면서 기술자료를 함께 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 작업하는 자는 작업기간을 그만큼 연장하거나 작업순차를 뒤로 미룰 수 있다.

제160조 작업하는 자는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한 자재나 부속품을 자기가 부담하여야 한다.

작업맡기는 자가 자재나 부속품을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에 작업하는 자는 그것을 검사하고 결함이 있으면 상대방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161조 작업하는 자는 작업맡기는 자가 낸 작업대상을 소중히 다루고 자재, 부속품을 소비기준과 기술규정의 요구에 맞게 써야 한다. 쓰고 남은 자재와 부속품은 작업결과와 함께 작업맡긴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62조 작업하는 자는 마음대로 작업대상의 구조를 변경시키거나 작업맡긴 자가 낸 작업대상에서 부분품을 뜯어내거나 자재와 부속품을 바꾸어 쓰지 말아야 한다(1999. 3. 24 개정).

제163조 작업하는 자는 작업기간을 지켜야 한다.

작업맡긴 자는 정해진 기간까지 작업하는 자가 작업을 끝내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

제164조 작업하는 자는 작업결과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작업한 자는 보증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그 기간 안에 나타난 결함에 대하여 남의 허물이 아닌 한 자기가 책임진다.

제165조 작업맡긴 자는 작업결과를 제때에 넘겨받아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 작업한 자는 정해진 보관료를 받을 수 있다.

제166조 물건을 맡기고 보관하는 행위는 보관계약에 따라 한다(1999. 3. 24 개정).

보관계약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상 편의와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1999. 3. 24 개정).

제167조 보관계약에 의하여 물건을 보관하는 자는 그 물건을 보관하였다가 보관시킨 자에게 돌려줄 의무를 지며 물건을 보관시킨 자는 그것을 찾고 해당한 보관료를 물 의무를 진다(1999. 3. 24 제2항 삭제).

제168조 보관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 말로 합의하고 물건을 보관하는 자에게 넘겨주거나 보관하는 자가 물건을 넘겨받고 해당한 표식물을 상대방에 내준 때에 맺어진다.

보관계약은 기간을 정하고 맺을 수도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맺을 수도 있다.

제169조 물건을 보관시키는 자는 그 물건을 보관하는 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을 보관하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겨 보관물에 생긴 손해와 보관하는 자에게 준 손해는 물건을 보관시킨 자가 책임진다.

제170조 보관하는 자는 계약대로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성질상 관리를 필요로 하는 물건은 성실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보관하는 자는 보관물을 관리하는데 들인 비용을 보관시킨 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제171조 려관, 극장, 회관같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물건을 맡아 보관하는 기관은 보관한 물건이 없어졌거나 손상된 데 대하여 책임진다. 그러

나 손님이 따로 보관한 물건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172조 보관시킨 자는 보관물을 제때에 찾아가야 한다.

보관하는 자는 보관기간이 지나도록 보관시킨 자가 보관물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 더 높게 정해진 보관료를 받을수 있다.

제173조 보관하는 자는 보관물을 보관시킨 자에게 원상대로 돌려주어야 한다. 봉인하였거나 포장한 물건을 맡았을 경우에는 그대로 돌려주며 내용을 확인하고 물건을 받았을 경우에는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돌려주어야 한다.

제174조 보관하는 자는 보관물을 보관시킨 본인에게 정확히 돌려주어야 한다.

물건을 받고 표식물을 내준 경우에는 해당 표식물을 내놓는 자에게 물건을 돌려주면 보관의무는 없어진다.

제175조 공민은 법적 의무없이도 다른 공민이나 국가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보관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자는 해당 사실을 재산임자에게 알리고 자기재산처럼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그것을 보관관리하는데 들인 비용을 재산임자에게서 보상받을 수 있다.

제176조 법적 의무없이 남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자는 불가피하게 그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받은 값만큼 재산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77조 공민의 도서, 생활용품이나 문화오락기구, 체육기자재 같은 것을 빌리는 행위는 빌리기 계약에 따라 한다.

빌리기 계약은 인민들의 다양한 물질문화적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78조 빌리기 계약에 의하여 물건을 빌려주는 자는 빌리는 자가 그것을 일정한 기간 리용하도록 넘겨줄 의무를 지며 빌리는 자가 사용료를 물고 해당 물건을 리용한 다음 빌려준 자에게 돌려줄 의무를 진다.

제179조 공민의 도서, 특허물, 록음 및 록화물 같은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빌리는 계약은 무상 또는 유상으로 맺는다(1999. 3. 24 제2항 삭제).

제180조 빌려주는 자는 물건을 그 본성에 맞게 쓸수 있는 상태에서 넘겨 주어야 하며 결함이 있는 물건을 빌려주는 경우에 그 사실을 빌리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겨 빌린 자에게 준 손해는 보상하여야 한다.

제181조 빌리는 자는 빌린 물건을 계약조건과 용도에 맞게 쓰며 그 구조를 마음대로 변경시키지 말아야 한다. 빌리는 자가 빌린 물건의 구조를 변경시키려고 할 경우에 빌려준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82조 빌린 물건의 대수리는 빌려주는 자가 하며 중수리는 계약에서 정한 자가 하고 소수리는 빌리는 자가 한다.
중수리나 소수리를 맡은 자가 수리를 제때에 하지 않아 빌린 물건이 심히 손상된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3조 빌리기 계약에서 빌리는 자는 빌린 물건을 빌려준 자의 동의 밑에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줄 수 있다. 이 경우에 빌리는 자는 계약의무의 리행에 대하여 빌려준 자 앞에 책임진다.

제184조 보증금을 설정하고 맺은 빌리기 계약에서 빌려준 자는 빌려준 물건을 반환받을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

제185조 기관, 기업소, 단체가 판매, 구매나 그 밖의 재산거래를 다른 기관이나 공민에게 위탁하는 행위는 위탁계약에 따라 한다.
위탁계약은 적은 로력과 자금으로 온갖 경제적 예비와 잠재력을 동원 리용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86조 위탁계약에 의하여 위탁받는 자는 위탁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재산거래 행위를 위탁하는 자의 부담으로 수행할 의무를 지며 위탁하는 자는 그 결과를 넘겨받고 해당한 보수를 지불할 의무를 진다. 위탁계약은 서면으로 맺어야 한다.

제187조 위탁하는 자는 위탁받은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돈이나 물건을 먼저 상대방에 넘겨주어야 한다.

- 제188조 위탁받은 자는 계약조건에 맞게 위탁받은 행위를 하여야 한다.
위탁받은 자가 계약조건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려 할 경우에는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189조 위탁계약과 관계없이 위탁받은 자에게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위탁행위를 위하여 받았거나 위탁한 자에게 넘겨주기로 된 돈이나 물건에서 청구권을 실현할 수 없다.
- 제190조 위탁받은 자는 위탁한 자가 요구한 것보다 더 유리하게 한 행위의 결과도 다 위탁한 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 제191조 위탁한 자는 위탁받은 자로부터 행위결과를 제때에 넘겨받고 해당하는 보수와 그가 들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 제192조 이법에서 규정한 팔고사기 계약, 작업봉사 계약, 보관계약, 빌리기 계약, 위탁계약은 기관,기업소, 단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재산거래 관계에도 해당하게 적용된다.
- 제193조 공민이 기차, 자동차, 배, 비행기를 비롯한 운수수단을 리용하여 하는 여행은 여행수송계약에 따라 한다.
여행수송 계약은 인민들의 여행상 안전과 편리를 보장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 제194조 여행수송 계약에 의하여 손님은 운수기관에 해당 값을 물 의무를 지며 운수기관은 손님을 여행 목적지까지 태워갈 의무를 진다.
여행수송 계약은 운수기관이 표에 의하여 해당 운수수단의 리용을 승인해 준때에 맺어진다.
- 제195조 운수기관은 운수수단을 리용하는 손님들에게 의료봉사, 도중식사를 비롯하여 여행에 필요한 조건과 시설들을 잘 보장해 주어야 한다.
- 제196조 운수기관은 손님을 여행목적지까지 태워나르지 못하게 된 경우에 손님에게 다른 운수수단을 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197조 운수기관은 손님이 표값을 정한 기간 안에 물리려고 하거나 그를 태워갈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표값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손님에게 돌려 주거나 표의 사용기간을 늘여주어야 한다.

제198조 려행하는 손님은 학령 전 어린이를 표없이 데리고 갈 수 있으며 정해진 범위안의 짐을 가지고 해당 운수수단에 오를 수 있다.

제199조 손님은 려행과정에 운수수단과 시설, 비품을 애호하고 제정된 려행질서를 지켜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 운수기관은 해당 손님에게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운수수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0조 공민이 저금기관에 돈을 저축하는 행위는 저금계약에 따라 한다. 저금계약은 놓고 있는 돈을 경제건설에 효과있게 리용하며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201조 저금계약에 의하여 저금하는 공민이 저금기관에 돈을 맡기면 저금기관은 그것을 저금하였다가 저금한 공민의 요구에 따라 내줄 의무를 진다. 저금계약은 저금기관이 돈을 받고 저금하는 공민에게 저금증서를 내준 때에 맺어진다.

제202조 저금계약에서 저금하는 공민은 저금의 종류와 액수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저금기관은 저금한 공민의 요구에 따라 이미 받은 저금을 다른 종류의 저금으로 바꾸거나 다른 저금기관에 옮겨주어야 한다.

제203조 저금기관은 공민이 요구하면 어느 때든지 저금하는 돈을 맡거나 저금한 돈을 내주어야 한다. 저금기관은 상대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돈을 잘못 내준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04조 저금기관은 저금의 비밀을 지켜야 하며 저금내용에 대하여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제205조 공민이 생명, 건강이나 재산에 대하여 보험에 드는 행위는 보험 계약에 따라 한다.

보험계약은 뜻하지 않은 재해로 인한 손해로부터 인민들을 보호하며 놓고 있는 돈을 잘 동원 리용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206조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에 든 공민은 보험기관에 보험료를 물 의무를 지며 보험기관은 보험사고가 나면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해당 공민에게 내줄 의무를 진다.

보험계약은 보험기관이 보험에 든 공민에게 보험증권을 내준 때에 맺어 진다.

제207조 보험에 든 공민이나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받는데 리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금이나 보험보상금을 내주지 않는다.

제208조 제3자의 허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보험보상금을 내준 보험기관은 그에 대한 보상을 제3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자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보험에 든 공민은 그 사고결과를 고찰시켜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면 보험보상금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할 수 있다.

제209조 생명보험, 어린이보험, 재해보험과 같은 인체보험 계약을 맺은 공민은 정해진 기간안에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물어야 한다.

인체보험에 든 공민이 정해진 기간까지 보험료를 물지 않으면 보험효력이 없어지며 보험료를 물면 그 때로부터 보험효력이 다시 생긴다.

제210조 보험기관은 인체보험에 든 공민이 사망하였거나 로동능력을 잃었을 경우 해당한 보험금을 내주어야 한다.

생명보험과 어린이보험에서는 보험기간이 되고 보험에 든 공민이 보험료를 다 물면 만기보험금을 내준다.

제211조 재산보험에 든 공민은 정해진 기간 안에 보험료를 물어야 한다.

보험사고가 없이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에 지불된 보험료는 보험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제212조 재산보험에 든 국민은 보험사고가 일어나면 곧 보험기관에 알리고 손실을 덜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보험보상금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할 수 있다.

제213조 재산거래와 그 밖의 법률적 의의를 가지는 행위를 남에게 위임하는 행위는 다른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위임계약에 따라 한다(1999. 3. 24 개정).

제214조 위임계약에 의하여 위임받는 자는 위임받은 행위를 위임하는 자의 이름과 부담으로 수행할 의무를 지며 위임하는 자는 위임받는 자가 한 행위의 결과를 넘겨받을 의무를 진다(1999. 3. 24 제2항 삭제).

제215조 양자 관계나 유언과 같이 본인 자신의 직접적인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행위는 위임할 수 없다.

제216조 위임받는 자는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위임받은 행위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17조 위임받은 자는 위임받은 행위를 하는 과정에 자신의 허물로 일으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진다. 그러나 어느 당사자의 허물에도 속하지 않고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는 위임한 자가 책임진다.

제218조 위임받은 자는 위임한 자의 요구에 따라 위임받은 행위의 수행정형을 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19조 위임한 자는 계약조건에 맞게 위임받은 자가 한 행위의 결과를 제때에 접수하고 그가 들인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위임한 자는 자기의 허물로 위임받은 자가 위임받은 행위를 하는 과정에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제220조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위임계약을 어느 때든지 취소할 수 있다.

계약을 취소한 당사자는 그것으로 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제221조 공민들 사이에 돈이나 물건을 꾸어주고 꾸는 행위는 꾸기계약에 따라 한다. 꾸기계약은 무상으로 맺는다. 리자 또는 리자 형태의 물건을 주고받는 계약은 맺을 수 없다.

제222조 꾸기계약에 의하여 꾸어주는 공민이 돈이나 물건을 꾸는 공민에게 넘겨주면 꾸 공민은 꾸어준 공민에게 액수가 같은 돈이나 종류와 량이 같은 물건을 갚을 의무를 진다.

꾸기계약은 꾸어주는 공민이 돈이나 물건을 상대방에 넘겨준 때에 맺어진다.

제223조 기간을 정하고 꾸기계약을 맺은 경우에 꾸어준 공민은 기간이 되어야 꾸어준 돈이나 물건을 갚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꾸 공민은 기간이 되기 전이라도 그것을 갚을 수 있다.

제224조 꾸 돈이나 물건은 정한 기간 안에 갚아야 한다. 같은 물건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물건으로 갚을 수 있다.

제225조 은행기관이 기관, 기업소, 단체에 돈을 꾸어주는 행위는 은행 대부계약에 따라 한다.

은행 대부계약은 재정규률을 강화하며 화폐자금을 아껴쓰고 그 회전을 촉진시킬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226조 은행 대부계약에 의하여 은행기관은 대부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화폐자금을 넘겨줄 의무를 지며 대부받는 자는 그 자금을 리용하고 원금과 리자를 은행기관에 물 의무를 진다.

은행 대부계약은 은행기관이 대부받는 자의 신청을 승인하고 대부금을 넘겨준 때에 맺어진다.

제227조 은행 대부계약은 대부의 반환원천이 담보되는 조건에서 맺는다.

대부를 받으려는 자는 문건으로 자기의 대부금 반환능력을 은행기관에 담보하여야 한다.

제228조 대부받은 자는 대부금을 리용하거나 사장, 량비하지 말고 지정된 항목에 써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 은행기관은 대부금을 기간 전

에 회수하거나 다음번 대부를 중지할 수 있다.

제229조 대부받은 자는 원금과 리자를 정해진 기간 안에 은행기관에 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기간이 지난날부터 더 높은 률의 리자를 물어야 한다.

제230조 기관, 기업소, 단체가 국가자금으로 살림집이나 시설물 같은 것을 건설하는 작업을 같이 하고 그에 대한 리용권을 나누는 행위는 합동작업 계약에 따라 한다.

합동작업 계약은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건설물의 수요를 보장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231조 합동작업 계약의 당사자는 공동작업에 참가할 의무를 지며 작업 참가 정도에 따라 작업결과물의 리용권을 나누어 가진다.

합동작업 계약은 서면으로 맺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232조 합동작업 계약의 당사자들은 작업대상, 기간, 작업실적의 계산방법, 작업결과물을 나누는 원칙, 합동작업 대표의 권한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1999. 3. 24 개정).

제233조 계약당사자들은 계약을 원만히 리행하기 위하여 합동작업 대표를 선출한다.

합동작업 대표는 계약당사자들의 대표로서 합동작업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234조 합동작업 대표는 작업이 끝나면 계약당사자들에게 작업실적에 따라 작업결과물을 나누어 리용할 데 대하여 해당 국가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 4 장 부당리득행위

제235조 법적 근거없이 남의 손실 밑에 부당하게 리득을 얻은 자는 그 부당리득으로 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해당 리득을 돌려주어야 한다.

제236조 부당리득 자는 리득이 부당하다는 것을 안 때로부터 그 리득에서 생긴 재산을 손해를 본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237조 부당리득과 그로부터 생긴 재산은 현물로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물로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값을 물어야 한다.

제238조 부당리득과 그로부터 생긴 재산을 돌려준 자는 그것을 보관관리하고 돌려주는데 들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제239조 부당리득을 돌려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부당리득 자는 그 리득을 해당 국가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 4 편 민사책임과 민사시효제도

제 1 장 민사책임

제240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남의 민사상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자기의 민사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민사책임을 진다. 그러나 같은 소유의 기관, 기업소, 단체라 하더라도 그 소유에 속하는 다른 기관의 기업소, 단체의 허물에 대해서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1999. 3. 24 단서 신설).

제241조 민사책임은 법이 달리 정하지 않은 한 허물이 있는 경우에 진다. 계약 또는 법을 어긴 자가 자기에게 허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허물은 그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제242조 민사책임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의 반환
2. 원상복구
3. 손해배상
4. 위약금, 연체료 같은 제재금의 지불
5. 청구권의 제한 또는 상실

민사책임은 정상에 따라 병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43조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자가 남의 민사상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그의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민사책임을 지운다. 그의 부모나 후견

인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동안에 침해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를 통제할 의무를 진 자가 민사책임을 진다.

제244조 16살에 이른 부분적 행위능력자가 남의 민사상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일으킨 경우에 자기지불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그의 부모나 후견인이 민사책임을 진다.

제245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성원이 직무수행 과정에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경우에는 그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당한 민사책임을 진다.

제246조 남의 건물을 비롯한 재산을 비법적으로 점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재산을 현물로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한 값을 물어야 한다(1999. 3. 24 개정).

제247조 남의 재산에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 재산을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재산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을 주거나 그 값을 물어야 한다.

제248조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사람의 존엄과 명예를 심히 훼손시켜 그의 신체와 인격에 지울 수 없는 손상을 남긴 자는 시효에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1999. 3. 24 개정).

제249조 관리하고 있는 짐승이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경우에 짐승의 임자나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허물이 있을 경우에 보상책임은 떨어지거나 면제된다.

제250조 국토와 자원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할 데 대한 국가의 법을 어기여 남의 재산에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51조 여럿이 공동으로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자들은 연대적으로 민사책임을 진다.

제252조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을 어긴 자는 위약금이나 연체료를 물며 법이 따로 정하지 않은 한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을 어긴 자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제253조 계약당사자들이 다같이 맺은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각자가 해당하게 민사책임을 진다.

제254조 계약의 변경 또는 취소는 손해보상을 요구한 당사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255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위환경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대상을 다루거나 작업을 하는 과정에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경우에 허물이 없어도 민사책임을 진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56조 공민이 정당방위를 위하여 또는 자연재해나 비법침해로부터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불가피하게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57조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남의 재산에 손해를 준 경우에 그것으로 하여 구원된 재산의 임자는 해를 입은 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58조 민사책임을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 2 장 민사시효

제259조 민사상 권리의 실현을 보장받기 위해 재판이나 중재의 제기는 민사시효 기간안에 하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재판, 중재절차에 의한 권리의 실현을 보장받지 못한다.

국가소유 재산의 반환청구에 대하여서는 민사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260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사이 또는 공민들 사이의 민사시효 기간은 1년으로 한다(1999. 3. 24 개정).

제261조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의 민사시효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품의 대금청구와 보증금 반환청구, 공급한 제품의 규격, 완비성 및 견본의 위반과 파손, 부패변질, 수량부족, 그 밖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하여 발생한 손해보상 청구와 위약금, 연체료의 지불청구 및 운수, 채신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3개월
2. 앞호 이외의 청구에 대하여서는 6개월
3. 대외 민사거래에 관련한 청구에 대하여는 조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2년(1999. 3. 24 개정).

제262조 예산제 국가기관, 기업소의 청구권에 대하여서는 민사시효 기간이 되기 전이라도 그 채권이 발생한 예산연도가 지나면 시효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1999. 3. 24 개정).

제263조 민사시효 기간이 지난 재산은 임자없는 재산으로 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민사시효 기간이 지난 재산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때에 해당 국가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264조 민사시효 기간이 지난 다음 자기의 민사상 의무를 자발적으로 리행한 자는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265조 민사시효 기간의 마지막 3개월 안에 자연재해 같이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을 경우에 시효기간의 계산은 정지되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3개월 연장된다(1999. 3. 24 제2항 삭제).

제266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민사시효 기간의 계산은 중단된다.

1. 채권자가 재판 또는 중재를 제기하였을 경우
2. 은행기관을 통한 지불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확인하였을

경우

3.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사이 또는 공민들 사이의 채무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였을 경우(1999. 3. 24 개정).

시효기간이 중단되면 그 때로부터 시효기간은 새롭게 계산된다.

제267조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은 청구권을 가진 자가 민사시효기간 안에 재판 또는 중재를 제기하지 못한 데 대하여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효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제268조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가 민사시효의 리익을 주장하지 않아도 시효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269조 민사시효 기간은 다음과 같은 때부터 시작된다.

1. 리행기간이 지정된 채무에 대하여서는 그 기간이 된 때
2. 리행기간이 지정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서는 채무가 생긴 때
3.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에 공급한 제품의 규격, 완비성 및 견본의 위반과 파손, 부패변질, 수량부족, 그 밖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하여 발생한 손해보상 청구는 그에 대한 사고조서를 작성하였거나 작성하기로 된 때
4. 그 밖의 청구권은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게 된 때

제270조 민사시효 기간은 일간, 월간, 년간으로 정하며 그 계산은 시효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당일을 제외하고 그 다음날부터 시작한다.

제271조 민사시효 기간은 시효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자와 같은 날이 지나면 끝나며 같은 날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날이 지나면 끝난다.

시효기간의 마지막날이 일요일, 명절일이거나 국가에서 정한 휴식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로동일을 시효기간의 마지막날로 한다.

<북한 민법의 주요개정내용 비교>

항 목	1990년 민법	1993년 개정민법	1999년 개정민법	비 고
제9조	(제2항)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의 민사상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재판 또는 중재절차로 해결한다.	(제2항) 삭제		
제10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법은 국제조약이나 협정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공화국령역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민사법률관계에 적용한다.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과 공화국령역 안에 있는 외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에게 적용한다.	민사활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맺은 조약에서 달리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1조	(제2항) 법적으로 등록된 합영회사도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 된다.	좌 동	(제2항) 우리나라에 창설된 합영·합자회사나 그 밖에 법이 인정한 다른 나라의 법인도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 된다.	
제12조			(제1항) 조직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국가기관에 등록하여야 창설된 것으로 인정한다.	(제1항) 신설

항 목	1990년 민법	1993년 개정민법	1999년 개정민법	비 고
제20조			(제3항 단서) 그러나 6살 이상의 미성인은 학용품이나 세소일용품 같은 것을 사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1조 제1항 단서를 제20조 제3항 단서로 이동
제21조	(제1항) 16살에 이르지 못한 자는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한다. (단서) 그러나 6살 이상의 미성인은 학용품이나 세소일용품 같은 것을 사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좌 동	민사행위 무능력자, 신체기능 장애자는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한다.	(제1항) 삭제 (제1항 단서)⇒ 제20조 제3항 단서로 이동
제22조	(제1항) 마지막 소식이 있을 때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공민에 대하여는 리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공증기관이 소재불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 (제2항) 소재불명자로 인정된후 1년, 소식이 없거나 마지막 소식이 있을 때로부터 3년, 생명에 위협을 준 사고가 있을 때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공민에 대하여서는 앞항과 같은 절차에 따라 사망자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좌 동	(제1항) ...3년이 지나도록 ...소재불명자로 인정할... (제2항) 소재불명자로 인정된후 2년, ...때로부터 5년, ...때로부터 1년이 ...사망자와 같이 인정할...	

김정일체제의 북한헌법 및 주요 법령

항 목	1990년 민법	1993년 개정민법	1999년 개정민법	비 고
제23조	소제불명자 또는 사망자로 인정되었던 공민이 나타났거나 소식을 보내여 거처를 알려온 경우에 공증기관은 본인이나 리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한 인정을 취소한다.	좌 동	...사망자로 인정되었던... 해당한 인정을... 이 경우 변경된 재산관계는 취소시킬 수 있으나 새로 성립된 결혼관계는 취소시킬 수 없다.	단서 신설
제24조	민사법률관계의 설정,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의사를 표시하는 말로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좌 동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말로나 서면같은 것으로...	
제28조	(제2항) 취소된 민사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좌 동	(제2항) ...민사법률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33조			(제3항)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의 결과는 대리인이 책임진다.	(제3항) 신설
제35조	(제2항)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의 결과와 대리행위를 불성실하게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는 대리인 자신이 책임진다.	좌 동	(제2항) 대리권의 범위에서 대리행위를 불성실하게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는 대리인이 책임진다.	
제36조			(제2항) 말로 한 대리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항) 신설
제37조	..., 협동단체소유권,...	좌 동	...,사회협동단체소유권,...	
제38조	(제2항) 소유권의 발생은 법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때, 계약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맺고 그 대상을 넘겨받은 때부터 이루어진다.	좌 동	(제2항) 소유권은 법에..., 계약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계약을 맺고... 발생한다.	
제40조	...차지하고 있는...	좌 동	...점유하고 있는...	

항 목	1990년 민법	1993년 개정민법	1999년 개정민법	비 고
제42조	(제2항) ...차지하거나...	좌 동	(제2항) ...점유하거나...	
제45조	(제2항) 2. 중공업, 경공업, 수산업, 립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중요공장, 기업소와 농기계작업소, 관개관리소 같은 농촌경리부문에 복무하는 기업소, 수매량정, 도시경영, 중요상업 및 출판인쇄 기업소 3. 항만, 은행, 교통운수 및 체신, 방송기관 4. 각급학교 및 중요문화 보건시설	좌 동	(제2항) 2.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 항만, 은행, 교통운수 및 체신, 방송기관 3. 각급학교 및 중요문화 보건시설	(제2항) 제2호와 제3호를 정리함
제48조	...협동단체...협동단체...	좌 동	...사회협동단체...사회협동단체...	
제51조	...협동단체...	좌 동	...사회협동단체...	
제53조	(제1항) 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리에... (제2항) 협동단체소유는 협동단체성원들이 들여놓은 재산, 협동단체의 자체투자에 의하여 마련한 재산, 협동경리의 생산물, 협동단체가 산 재산, 국가에서 협동단체에 소유권을 넘겨준 재산으로 이루어진다.	좌 동	(제1항) 사회협동단체 소유는 사회협동경리에... (제2항) 사회협동단체 소유는 사회협동단체성원들이 들여놓은 재산, 사회협동단체의 자체투자에 의하여 마련한 재산, 사회협동경리의 생산물, 사회협동단체가 산 재산, 국가에서 사회협동단체에 소유권을 넘겨준 재산으로 이루어진다.	
제54조	협동단체는 토지와 부림 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등과 중소공장, 기업소와 문화보건시설, 그 밖에 경영활동에 필요한 대상들을 소유할 수 있다.	좌 동	사회협동단체는 토지와 농기계, 건물 등과 중소공장, 기업, 그 밖에 경영활동에 필요한 대상들을 소유할 수 있다.	
제55조 제56조 제57조	...협동단체...	좌 동	...사회협동단체...	

김정일체제의 북한헌법 및 주요 법령

항 목	1990년 민법	1993년 개정민법	1999년 개정민법	비 고
제61조	공민이 가정성원으로 있으면서 살림살이에 공동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번 재산은 가정재산으로 되며 가정성원으로 들어올 때에 가지고 왔거나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재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과 그밖의 개인적 성격을 띠는 재산은 개별재산으로 된다.	좌 동	가정성원으로 된 공민은 가정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가진다.	
제64조	이 법에서 채권이란 일정한 재산상 행위를 수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채무란 일정한 재산상 행위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좌 동	채권은 일정한 재산상 행위를 수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채무자는 일정한 재산상 행위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제90조	제136조	좌 동	제90조	제136조가 제90조로 이동
제91조	제138조	좌 동	제91조	제138조가 제91조로 이동
제92조	제139조	좌 동	제92조	제139조가 제92조로 이동
제93조	제140조 (제2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간, 공민들 호상간의 계약은 법이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말로 맺을 수 있다. (제3항) 계약은 체결과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서면과 같은 증거력이 있는 계약은 재판이나 중재에서 우선적으로 인정받는다.	좌 동	제93조 (제2항) 말로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그 사실 증명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제3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사이, 공민사이의 계약은 법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말로 맺을 수 있다. (제4항) 계약의 체결과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서면으로 맺은 계약은 재판이나 중재에서 우선적으로 인정받는다.	제140조(제2항)⇒ 제93조 (제3항), 제140조(제3항) ⇒ 제93조 (제4항)
제94조	제141조	좌 동	제94조	

항 목	1990년 민법	1993년 개정민법	1999년 개정민법	비 고
제95조	제142조	좌 동	제95조 (제3항) 채권자는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대상을 잡아둘 수 있다.	(제3항) 신설
제96조	제143조	좌 동	제96조	
제97조	제144조	좌 동	제97조	
제98조	제145조	좌 동	제98조	
제99조	제146조 계약대상을 차지하고... 그러나 자연재해 같이 어찌할 수 없는 사정으로 계약대상이 없어졌거나 손상된데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좌 동	제99조 계약을 점유하고... 그러나 계약당사자에게 허물이 없거나 자연재해 같이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대상이 없어졌거나...	
제100조	제147조	좌 동	제100조	제147조가 제100조로 이동
제101조	제90조 (제1항)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하며 경제관리에서 독립채산제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하여 계획에 기초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들 사이에 맺는다.	좌 동	제101조 (제1항)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하며 경제관리에서 독립채산제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하여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맺는다.	
제106조	제95조 (제1항) 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로는 국가의 자재공급세부계획에 따라 기계, 설비, 원료, 자재를 주고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된다.	좌 동	제106조 (제1항) ...따라 자재를 주고받는...	'기계, 설비, 원료' 삭제
제107조	제96조 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들은 공급할 자재의 이름, 규격, 질, 공급기간, 수량, 값과 자재를 주고받는 방법, 자재의 포장조건, 거래은행 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좌 동	제107조 ...값과 그것을 주고받는 방법, 포장하는 방법, 거래은행...	

김정일체제의 북한헌법 및 주요 법령

항 목	1990년 민법	1993년 개정민법	1999년 개정민법	비 고
제115조	제104조 (제1항) 상품공급계약의 당사자로는 국가의 상품배정계획에 따라 상품을 주고받는 공장, 기업소와 도매상업기업소, 소매상업기업소가 된다. (제2항) 공장, 기업소의 제품판매를 담당한 상사, 협동농장도 계약당사자로 될 수 있다.	좌 동	제115조 (제1항) ...주고받는 기업소와... (제2항) 기업소의...	(제1항), (제2항)에서 '공장' 삭제
제116조	제105조 ...제96조에서...	좌 동	제116조 ...제107조에서...	
제118조	제107조 ...제98조...	좌 동	제118조 ...제109조...	
제119조	제108조 (제1항) ...이 법 제9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서에 따라 한다. (제2항) 사용보증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좌 동	제119조 ...이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다. (제2항) 신용보증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제108조가 제119조로 이동
제126조	제115조 (제1항) ...계량계측하여...	좌 동	제126조 (제1항) ...계량하여...	
제129조	제118조 ...건설물을 넘겨받을...	좌 동	제129조 ...건설물을 제때에 넘겨받을...	
제145조	제134조 ...단체, 공민들이... 나르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규정한 화물수송계약질서에...	좌 동	제145조 ...단체와 고민이... 나르는 것은 화물수송계약질서에...	
제147조	제137조	좌 동	제147조	제137조가 제147조로 이동
제148조	...호상간에...	좌 동	...사이에...	
제150조	(제1항) 공장, 기업소가...	좌 동	(제1항) 기업소가...	'공장' 삭제
제151조	보증기간이 정해진 상품을 산자는 보증기간 안에 나타난...	좌 동	신용보증기간이 정해진 상품을 산자는 그 보증기간 안에...	
제162조	...작업대상물에서...	좌 동	...작업대상에서...	

항 목	1990년 민법	1993년 개정민법	1999년 개정민법	비 고
제166조	(제1항) 공민이 물건을 맡기고 건사하는 행위는 보관계약에 따라 한다. (제2항) 보관계약은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좌 동	(제1항) 물건을 맡기고 보관하는 행위는 보관계약에 따라 한다. (제2항) 보관계약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상 편의와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67조	(제2항) 공민들 호상간의 보관계약에서는 보관료를 주고받을 수 없다.	좌 동	(제2항) 삭제	
제179조	(제2항) 공민들 호상간의 빌리기계약에서는 사용료를 주고받을 수 없다.	좌 동	(제2항) 삭제	
제213조	공민이 재산거래와...	좌 동	재산거래와...	‘공민’ 삭제
제214조	(제2항) 위임계약은 무상으로 맺는다.	좌 동	(제2항) 삭제	
제232조	...기간, 질서와 작업실적의 계산방법...	좌 동	...기간, 작업실적의 계산방법...	‘질서’ 삭제
제240조			그러나 같은 송유의 기관, 기업소, 단체라 하더라도 그 소유에 속하는 다른 기관의 기업소, 단체의 허물에 대하여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서 신설
제246조	...차지한...	좌 동	...점유한...	
제248조			(제2항) 사람의 존엄과 명예를 심히 훼손시켜 그의 신체와 인격에 지울 수 없는 손상을 남긴 자는 시효에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2항) 신설
제260조	...호상간의...	좌 동	...사이의...	
제261조	3. 외국으로부터 직접 인수한 수입품의 사고와 관련한 보상청구, 국제련락운수 및 국제통신과 관련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해당협정에 의한 기간	좌 동	3. 대외 민사거래에 관련한 청구에 대하여는 조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2년	

김정일체제의 북한헌법 및 주요 법령

항 목	1990년 민법	1993년 개정민법	1999년 개정민법	비 고
제262조	...기업소의 채권에 대하여서는...	좌 동	...기업소의 청구권에 대하여서는...	
제265조	(제2항) 이 법 제261조 제1호의 청구권에는 민사시효의 정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좌 동	(제2항) 삭제	
제266조	(제1항)3. ...호상간의...	좌 동	(제1항) 3. ...사이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 투자법

(1992년 10월 5일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
(1992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4차회의 법령으로 승인)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개정)

제 1 조 세계 여러나라들과의 경제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투자자들이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 2 조 이 법은 외국투자자들의 투자를 보호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리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일반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 외국투자관계의 기본법이다. 외국투자자란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하는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을 말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란 공화국령역 안에 창설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 기업을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을 말한다. 합작기업이란 우리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운영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몹을 상환하거나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합영기업이란 우리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몹에 따라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외국인기업이란 외국투자자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외국기업이란 공화국령역안에 소득원천이 있는 다른 나라 기관, 기업체와 개인 및 기타 경제조직을 말한다.

제 3 조 외국투자자는 공화국령역안에 합작기업, 합영기업과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외국인기업을 창설운영할 수 있다.

제 4 조 국가는 외국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 경영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 5 조 다른 나라 기관, 기업체와 개인 및 기타 경제조직들은 공화국령역 안에 투자 할수 있다. 해외조선동포들도 해당 법규에 따라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할 수 있다.

제 6 조 외국투자가는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과학기술, 관광, 류통, 금융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

제 7 조 국가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기술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 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를 장려한다.

제 8 조 장려하는 부문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소득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사용조건의 보장, 은행대부의 우선적제공과 같은 우대를 받는다.

제 9 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창설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혜적인 경영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1. 국가가 따로 정한 품목을 내놓고는 수출입물자에 대하여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생산부문에서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3년까지 소득세를 물지 않으며 그 다음 2년까지 소득세를 50%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소득세율은 다른 지역보다 낮추어 결산리윤의 14%로 한다.

제10조 국가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기업을 창설하거나 그 운영을 위하여 입출국하는 외국 투자자들의 수속 절차와 방법을 편리하게 정하도록 한다.

제11조 민족경제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제12조 외국투자가는 화폐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하는 재산과 재산권의 가치는 해당시기의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평가한다.

제13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지사, 대리점, 출장소 같은것을 내오거나 새끼회사를 창설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의 회사들과 기업을 연합할 수도 있다.

제14조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법인으로 된다.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외국인기업의 지사, 대리점, 출장소는 같은것과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법인으로 되지 않는다.

제15조 국가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을 창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최고 50년까지 임대하여 준다.

제16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나라 로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합의하고 다른 나라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우리 나라 로력은 해당 로력알선기관과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채용하거나 내보낼 수 있다.

제17조 외국투자가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은 소득세, 거래세, 재산세를 비롯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18조 외국투자는 리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화국령역안에 재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투자분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19조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재산은 국유화하거나 국가가 거두어들 이지 않는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일 경우에는 해당한 보상을 한다.

제20조 외국투자가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리윤과 기타소득,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21조 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비밀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외국투자가와의 합의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제22조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는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한 중재 또는 재판 절차로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외국인투자법 신구조문 비교>

조 문	구조문	신조문	비 고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은 외국투자자들의 투자를 보호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을 창설 운영하는 일반원칙과 질서를 포괄적으로 규제한다 ☐ ...외국인투자기업이란 공화국 영역안에 설립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은 외국투자자의 투자를 보호하며 외국투자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일반원칙과 질서를 규제한 외국투자관계의 기본법이다 ☐ ...외국투자기업이란 공화국 영역안에 창설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을 말한다...외국기업이란 공화국영역안에서 소득원천이 있는 다른나라 기관, 기업체와 개인 및 기타 경제 조직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기업’의 개념을 추가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외국인투자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합법적 권리와 이익, 경영활동조건을 보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투자 기업의 경영활동보장조건 추가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화국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법에 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조선동포들도 해당법규에 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화국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 동 포 를 ‘해외조선동포’로 변경하여 표기
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화국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사, 대표부, 출장소는 우리나라의 법인으로 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화국영역 안에 있는 외국기업의 지사, 대리점, 출장소 같은 것과 외국기업은 공화국의 법인으로 되지 않는다. 	
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하여 준 토지는 임대받은 기간안에 해당기관의 승인밑에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 및 상속규정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 토 지 의 양도 및 상속규정 삭제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로력은 해당로력알선기관과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채용하거나 해고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로력은 해당 로력알선기관과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력채용 및 해고규정이 강제 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

(1993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
(1993년 4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 법령으로 승인)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개정)

제 1 장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를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 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는 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가공, 금융, 봉사 지역으로 선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정한 영역이다.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는 국가가 특별히 세운 제도와 질서에 따라 경제무역 활동을 할 수 있다.

제 3 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서의 무역, 외국투자, 지대개발과 그 관리운영사업은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한다.

제 4 조 국가는 외국인투자자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한 자본과 얻은 소득, 그에게 부여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 5 조 외국인투자자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 기업관리와 경영방법을 자유로운 선택할 수 있다.

제 6 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 대외경제무역 활동은 이 법과 지대 관련법규에 따라 한다.

제 7 조 외국인투자자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 합작, 합영, 단독투자 같은 형식으로 경제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

제 2 장 관리운영기관의 임무와 권한

제 8 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의 관리운영기관에는 중앙무역지도기관, 해당 중앙기관과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가 속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자기임무와 권한에 따라 무역, 외국투자, 지대개발과 그 관리운영사업을 지도하는 기관이며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는 지대전반사업을 현지에서 집행하는 기관이다.

제 9 조 중앙무역기관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무역, 외국투자와 관련한 국가적인 집행대책을 세운다.
2. 해당 중앙기관들과의 연계밑에 대외경제무역사업을 정상적으로 지도한다.
3. 외국투자대상신청을 접수하고 심의처리 한다.

제 10 조 해당 중앙기관은 라진·선봉지대개발계획과 예산편성 및 집행, 재정은행, 토지임대, 국토 및 도시건설, 건설명시 같은 사업을 자기 임무와 권한에 맞게 할수 있다.

제 11 조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에는 무역과 외국투자, 지대개발을 촉진하고 그 관리운영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집행하기 위한 대외경제부서를 들수 있다.

제 12 조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는 무역, 외국투자, 지대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무역과 지대개발계획을 작성, 선전, 집행한다.
2. 외국투자신청을 현지에서 접수하며 그 심의 창설을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제기한다.
3. 기업등록, 영업허가를 한다.
4. 외국투자기업의 로력채용을 방조한다.
5. 토지, 건물 리용권의 양도를 심의하고 해당 중앙기관에 그 승인을

제기한다.

6. 건물, 구축물, 작업장의 건설, 개건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봉사를 한다.
7. 이밖에 지대관리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

제13조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지대에 대한 투자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합작기업, 합영기업은 50일, 외국인기업은 80일안에 해당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동식물의 생장에 해를 줄수 있는 대상, 국가가 정한 환경보호한계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 경제효과성이 없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 또는 제한할수 있다.

제14조 중앙무역지도기관과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외국투자기업의 창설승인 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투자조건을 어겼을 경우
2. 공화국의 법을 엄중히 위반하였을 경우

제15조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는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할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인재양성기금을 세우고 양성기관을 운영할수 있다.

제16조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는 자문위원회를 조직운영할 수 있다.자문위원회는 인민위원회, 해당기관, 기업소의 대표와 외국투자가대표로 구성하며 무역, 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사업을 협의, 협조한다.

제 3 장 경제활동 조건의 보장

제17조 모든 상품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들여다 저장, 보관, 가공, 조립, 분해, 선별, 포장, 수리할 수 있으며 그것을 지대안에서 국외로 내갈수 있다. 나라의 안전과 사회도덕생활, 주민들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장에 해로운 상품은 들여올수 없다.

제18조 외국투자가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 기업을 창설운영하거나 중계수송을 할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도 내각의 승인밑에 지대에 단독 또는 합병, 합작의 형식으로 투자하여 경제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

제19조 합병, 합작 기업과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각의 승인없이는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지사, 대리점, 출장소 같은것을 내을 수 없다.

제20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 필요한 토지를 임차할 수 있으며 토지를 임대한 기관의 승인밑에 토지임차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제21조 외국투자기업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의 로력알선기관과 맺은 계약에 따라 우리나라 로력을 채용하거나 채용하였던 로력을 내보낼수 있다. 필요에 따라 일부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을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라진·선봉인민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

제22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생산한 상품의 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중요원료, 자재와 필요한 대중필수품의 가격은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가 정할수 있다.

제23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있는 무역항에는 무역선과 선원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항출입질서에 따라 자유롭게 나들 수 있다.

제24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있는 외국투자기업은 원료, 자재와 부분품의 가공을 지대밖에 있는 우리 나라 기업소,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대밖에서 수행한 가공액이 기업의 전체 생산액의 40%를 넘지 않는 경우 그 위탁가공은 지대안에서 수행한 생산활동과 같은것으로 인정한다.

제 4 장 관 세

제25조 국가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한다.

제26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품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1. 가공수출을 목적으로 지대안에 들여오는 상품
2.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3. 외국투자가에게 필요한 일정한 량의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4. 지대건설에 필요한 물자
5. 통과하는 다른 나라의 무역화물

제27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법 제2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다른 나라로부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상품을 팔기위하여 들여오는 경우
2.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 생산하였거나 수입한 상품을 우리 나라의 다른 지역에 팔기 위하여 내가는 경우

제28조 외국투자기업이 지대안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출하지 않고 지대안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생산에 쓰인 수입원료, 자재와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물어야 한다.

제29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의 외국투자기업은 세관 검사문건과 상품송장을 비롯한 상품의 반출입과 관련된 문건을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 5 장 통화, 금융

제30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 류통화폐는 조선원으로 하며 모든 거래에 대한 결제는 조선원 또는 전환성외화로 할수 있다. 조선원에 대한 외화의 환산은 외화관리기관이 발표한 비율에 따라 한다.

제31조 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제32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다. 대부받은 조선원과 외화로 산 조선원은 우리 나라 은행에 예금하고 써야 한다.

제33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있는 은행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 밑에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맡아 할 수 있다.

제34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의 정해진 장소에서 외화유가증권을 거래할 수 있다.

제 6 장 담보 및 특혜

제35조 외국투자가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리윤과 리자, 배당금, 임대료, 봉사료, 재산판매수입금을 비롯한 소득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으며 국외에서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들어왔던 재산을 경영기간이 끝난 다음 제한없이 국외로 내갈 수 있다.

제36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의 기업소득세율은 결산리윤의 14%로 한다.

제37조 경영기간이 10년이상되는 생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기 시작한 해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총투자 액이 6천만원이상되는 하부구조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기 시작한 해로부터 4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제38조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가에게는 립지조건이 유리한 토지를 임대하여 주며 토지임대료를 낮추어줄 수 있다.

제39조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가는 우리 나라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대부받을 수 있다.

제40조 외국투자가가 리윤을 재투자하는 경우 그 경영기간이 5년이상 될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의 50%를 반환받을수 있다. 하부구조건설부문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의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제41조 외국인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사증없이 직접 들어올수 있으며 해당 절차에 따라 체류, 거주할수 있다.

제 7 장 분쟁해결

제42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 경제무역활동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한 중재 또는 재판절차로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 할수도 있다.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 신구조문 비교>

조 문	구조문	신조문	비 고
제2조	<p>☐ ...자유경제무역지대에는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권이 행사된다...</p>	<p>☐ 밑줄친 조항 삭제</p>	
제3조	<p>☐ 국가는 중앙대외경제기관과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을 통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사업을 지도한다.</p>	<p>☐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서의 무역, 외국투자, 지대개발과 그 관리운영은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한다.</p>	<p>☐ 나 진 - 선 봉 지 대 의 지도주체를 중앙대외경제기관에서 내각으로 변경</p>
제7조	<p>☐ 공화국 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경제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p>	<p>☐ 외국투자가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 합작, 합영, 단독투자 같은 형식으로 경제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p>	<p>☐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해외조선동포를 범규상에서 제외</p>
제8조	<p>☐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관리기관에는 중앙대외경제기관과 지대당국이 속한다, 중앙대외경제기관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경제관리 운영을 위임받은 중앙집행기관이며 지대당국은 현지 집행기관이다.</p>	<p>☐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관리운영기관에는 중앙무역지도기관, 해당중앙기관과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가 속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중앙기관은 자기임무와 권한에 따라 무역, 외국투자, 지대개발과 그 관리운영사업을 지도하는 기관이며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는 지대전반사업을 현지에서 집행하는 기관이다.</p>	<p>☐ 지대지도관리기관에 ‘해당중앙기관’을 추가</p>
제9조	<p>☐ 중앙대외경제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의 정책에 기초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 경제관리운영과 관련한 집행대책을 세운다. 2.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제관리 운영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 지도한다. 3. 하부구조 건설부문에서 총투자액 2천만원 이상의 대상과 그밖의 부문에서 총투자액 1천만원이상의 대상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p>☐ 중앙무역기관은 ...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역,외국투자와 관련한 국가적인 집행대책을 세운다. 2. 해당 중앙기관들과의 연계 밑에 대외경제무역사업을 정상적으로 지도한다. 3. 외국투자대상신청을 접수하고 심의처리한다. 	<p>☐ 중앙무역기관의 사업내용 변경</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제 1 장 정 치

제 1 조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특수행정단위이다.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를 중앙에 직할시킨다.

제 2 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부여한다.

제 3 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법률체도를 50년간 변화시키지 않는다.

제 4 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주민과 비주민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 5 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주민과 비주민의 신변을 법에 따라 보호하도록 한다.

제 6 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은 신의주특별행정구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인원을 파견하거나 주재시키려 할 경우에는 장관의 동의를 받는다.

제 7 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방위사업은 국가가 한다.

국가는 필요에 따라 신의주특별행정구에 군사인원을 주둔시킬 수 있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주둔부대에 사회질서유지, 재해구조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 8 조 신의주특별행정구와 관련한 외교사업은 국가가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국가가 위임한 범위에서 자기의 명의로 대외사업을 하며 신의주특별행정구 여권을 따로 발급할 수 있다.

제 9 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공식문건을 조선말로 작성하도록 한다.

다른 나라 말로 작성한 공식문건에는 조선말로 된 번역문을 첨부한다.

제10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다른 나라 정치조직의 활동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11조 국가는 전쟁, 무장반란 같은 사유의 발생시 신의주특별행정구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법규를 실시한다.

제2장 경제

제12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토지와 자연부원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소유이다.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토지와 자연부원의 침해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13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를 국제적인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로 꾸리도록 한다.

제14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토지의 개발, 리용, 관리권한을 부여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건설 총계획은 국가의 승인을 받는다. 대상건설은 승인된 건설총계획에 따라 한다.

제15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토지 임대기간은 2052년 12월 31일까지이다.

국가는 토지 임대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준다.

이 경우 기업에 주던 유리한 경영활동 조건을 그대로 보장한다.

제16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토지리용권과 건물, 시설물을 양도, 임대, 재임대, 저당하도록 한다.

제17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개인소유의 재산을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개인소유의 재산을 국유화하지 않는다.

나라의 안전과 관련하여 개인소유의 재산을 거두어 들이려할 경우에는 그가치를 보상하여 준다.

- 제18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주민이 노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노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노동을 금지하도록 한다.
- 제19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 주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제20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창설된 기업이 공화국의 노력을 채용하도록한다.
필요한 직종에는 구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다른 나라 사람으로 쓸 수 있다.
- 제21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근로자들의 최저 노임기준을 구행정부와 공화국 해당 기관이 합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제22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유급휴가제, 사회보장제 같은 노동시책을 바로 실시하도록 한다.
- 제23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자체로 화폐금융시책을 실시하도록 한다.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는 외화를 제한없이 반.출입할 수 있다.
- 제24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공정하고 특혜적인 세금제도를 세우도록한다.
세금의 종류와 세율은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정한다.
- 제25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특혜관세 제도를 세우도록 한다.
관세율은신의주특별행정구가 정한다.
- 제26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회계제도를 바로 세우고 계산과 검증을 엄격히 하도록 한다.
- 제27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자체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한다.
예산과 관련한 입법회의 결정은 최고 입법기관에 등록한다.
- 제28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생산한 상품의 검사를 자체로 하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한다.

제29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투자자들의 투자를 장려하도록 한다.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환경보호에 해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부문의 투자는 할 수 없다.

제30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기업창설 신청에 대한 심의는 구행정부가 한다.

수상운수업, 항공운수업은 공화국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

제31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기업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인원의 출입과 물자, 자금, 정보, 통신교류의 편의를 보장한다.

제3장 문화

제32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문화분야의 시책을 바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고 건전한 문화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한다.

제33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1년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1년제 무료의무교육을 구예산으로 높은 수준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사회과학과목 교육은 공화국의 해당 기관과 합의하여 한다.

제34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학령전(취학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키우도록 한다.

제35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첨단과학기술을 받아 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적극 개척하도록 한다.

제36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현대적인 문화시설을 갖추고 광범위한 주민들이 문학예술 활동에 참가하도록 한다.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단결에 저해를 주는문학예술 활동은 할 수 없다.

제37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있는 혁명사적지와 명승지, 천연기념물, 문화유물을 구예산으로 특별히 보호하도록 한다.

보호할 혁명사적지와 명승지, 천연기념물, 문화유물은 공화국의 해당 기관이 정한다.

제38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의료보험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전염병의 만연같은 엄중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화국의 해당 기관에 의뢰하여 방조(도움) 받을 수 있다.

제39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대중체육활동을 장려하여 주민들의 체력을 증진시키며 체육과학기술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40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신문, 잡지같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며 체신, 방송망 같은 것을 자체로 운영하도록 한다.

정기간행물, 체신, 방송망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건전한 사회의식과 구의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41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방지하며 주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하여 주도록 한다.

제 4 장 주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42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주민으로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조직되기 이전에 거주한 자
2. 공화국공민으로서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요구에 따라 구안의 기관 또는 기업에 취직한 자
3. 다른 나라 사람으로서 합법적인 직업을 가지고 구에 7년이상 거주한 자
4. 최고립법기관 또는 장관이 추천한 자

제43조 주민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성별, 국적별, 민족별, 인종별, 언어, 재산과 지식정도, 정견, 신앙에 따라 주민은 차별 당하지 않는다.

제44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17살이상의 주민은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가진다.

법에 의하여 선거권을 빼앗긴 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45조 주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 파업,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해당 법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46조 주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그 누구도 종교를 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제47조 주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권, 서신의 비밀을 보장 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주민을 구속, 체포하거나 몸,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제48조 주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권리를 가진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주민의 신소와 청원을 공정하게 심의, 처리한다.

제49조 주민은 거주이전,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

공화국의 다른 지역 또는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여행하는 질서는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정한다.

제50조 주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희망과 재능에 따라 주민은 직업을 선택할수 있으며 로동에 따르는 보수를 받는다.

제51조 주민은 휴식할 권리를 가진다.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주민은 공화국이 정한 공휴일, 명절일의 휴식을 보장받으며 다른 나라 사람은 민족적풍습에 따르는 휴식을 보장 받을수 있다.

제52조 주민은 치료 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한 물질적방조를 받는다.

제53조 주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이 권리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54조 주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을 특별히 보호한다.

제55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산전산후휴가제 같은 시책으로 애기어머니와 어린이를 보호한다.

제56조 주민은 결혼의 자유를 가진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결혼과 가정을 보호한다.

제57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주민권을 가지지 못한 다른 나라 사람은 주민과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그러나 주민권을 가지지 못한 다른 나라 사람은 선거할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 구예산으로 실시하는 사회적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58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공화국공민은 조국보위의무를 지닌다.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군대초모질서는 따로 정한다.

제59조 법규는 주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구관리의 기본수단이다.

주민은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제정한 법규를 존중하고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기 구

제 1 절 립법회의

제60조 립법회의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립법기관이다.

립법권은 립법회의가 행사한다.

제61조 립법회의 의원수는 15명으로 한다.

립법회의 의원은 주민들의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62조 립법회의 의원으로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공화국공민이 될수 있다.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주민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도 립법회의 의원으로 될수있다.

제63조 매기 립법회의 임기는 5년이다.

립법회의 의원의 임기는 립법회의 임기와 같다.

제64조 립법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법규를 제정하거나 수정, 보충, 폐지한다.
2. 구의 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 승인한다.
3. 채택한 법규를 해석한다.
4. 장관으로부터 행정부의 사업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한다.
5. 장관의 제의에 의하여 구재판소 소장을 임명, 해임한다.
6. 구재판소 소장의 제의에 의하여 구재판소 판사, 지구재판소 소장, 판사를 임명, 해임한다.

제65조 립법회의는 정기회의와 비정기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분기 1차, 비정기회의는 정기회의 휴회기간에 립법회의 의원 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회의기간은 년에 100일이상으로 한다.

제66조 립법회의는 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67조 립법회의는 의장, 부의장을 둔다.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립법회의 임기와 같다.

제68조 립법회의 의장, 부의장은 립법회의에서 선거한다.

의장, 부의장은 회의에 참석한 립법회의 의원 반수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선거된다.

제69조 립법회의 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립법회의를 사회한다.
2. 립법회의 소집날자를 정하고 공포한다.
3. 립법회의가 위임한 사업을 한다.

제70조 립법회의 부의장은 의장의 사업을 돕는다.

의장이 결원중이거나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경우에는 그를 대리한다.

제71조 립법회의 의안은 의원들이 제출한다.

장관과 행정부도 립법회의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제72조 립법회의는 결정을 낸다.

립법회의 결정은 회의에 참석한 의원 반수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채택된다.

제73조 립법회의는 채택한 결정에 대하여 장관이 의견을 제기할 경우 1개월안에 다시 심의한다.

다시 심의하여 채택한 결정에 대하여 장관이 의견을 제기할 경우에는 립법회의 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 채택한다.이 경우 장관은 의무적으로동의한다.

제74조 립법회의에서 채택한 결정은 1개월안으로 최고립법기관에 등록한다.

최고립법기관은 제출된 결정에 대하여 등록하거나 돌려 보내여 수정시킬수 있다.

등록하지 않고 돌려 보낸 결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75조 립법회의 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 받는다.

립법회의 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립법회의 승인없이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다.

제 2 절 장 관

제76조 장관은 신의주특별행정구를 대표한다.

장관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립법기관앞에 책임진다.

제77조 장관으로는 신의주특별행정구 주민으로서 사업능력이 있고 주민들의
의신망이 높은 자가 될수 있다.

장관의 임명과 해임은 최고립법기관이 한다

제78조 장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충실할것을
선서한다.

선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다.

제79조 장관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구사업을 지도한다.
2. 립법회의 결정, 행정부 지시를 공포하며 명령을 낸다.
3. 행정부성원을 임명, 해임한다.
4. 구검찰소 소장을 임명, 해임한다.
5. 구검찰소 소장의 제의에 의하여 구검찰소 부소장, 검사, 지구검찰소 소장을 임명, 해임한다.
6. 구경찰국 국장을 임명, 해임한다.
7. 구경찰국 국장의 제의에 의하여 구경찰국 부국장, 부서책임자, 지구 경찰서 서장을 임명, 해임한다.
8. 상장을 제정, 수여한다.
9. 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
10. 이밖에 제기되는 사업을 한다.

제80조 장관은 립법회의에서 채택한 결정이 구의 리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그것을 립법회의에 돌려 보내여 다시 심의하게 할수 있다.

립법회의가 내린 한건의 결정에 대하여 장관은 2차례까지 돌려 보낼수
있다.

제3절 행정부

제81조 행정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관리기관
이다.행정부의 책임자는 장관이다.

제82조 행정부에는 필요한 부서를 둔다.

행정부의 부서책임자, 경찰국 국장으로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주민이 된다.

제83조 행정부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법규집행사업을 조직한다.
2. 구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3.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환경보호 같은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한다.
4. 주민행정사업을 한다.
5. 사회질서유지사업을 한다.
6. 건설총계획을 작성한다.
7. 건설허가 및 준공검사를 한다.
8. 투자유치를 한다.
9. 기업의 창설신청을 심의, 승인한다.
10. 토지리용권, 건물을 등록한다.
11. 세무사업을 한다.
12. 세관검사, 위생, 동식물검역사업을 한다.
13. 하부구조시설물을 관리한다.
14. 소방대책을 세운다.
15. 국가가 위임한데 따라 대외사무를 처리한다.

제84조 행정부는 지시를 낸다.

제 4 절 검 찰 소

제85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검찰사업은 구검찰소와 지구검찰소가 한다.

제86조 검찰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법규를 정확히 준수하는가를 감시한다.
2. 법이 정한데 따라 범죄사건에 대하여 수사, 기소를 하며 범인과 개인 의합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87조 구검찰소 소장으로는 신의주특별행정구 주민이 된다.

소장의 임기는 5년이다.

제88조 지구검찰소 검사의 임명, 해임은 지구검찰소 소장의 제의에 의하여 신의주특별행정구검찰소 소장이 한다.

제89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검찰사업에 대한 지도는 구검찰소가 한다.
지구검찰소는 구검찰소에 복종한다.

제90조 신의주특별행정구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장관앞에 책임진다.

제 5 절 재 판 소

제91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재판은 구재판소와 지구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의주특별행정구 해당 재판소의 명의로 선고한다.

제92조 재판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재판한다.
2. 법인과 개인의 합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3. 재판활동을 통하여 법규를 정확히 준수하도록 교양한다.
4. 판결, 판정을 집행한다.

제93조 재판은 오직 법에 의거하여 독자적으로 한다.

누구도 재판활동에 간섭할수 없다.

제94조 구재판소 소장으로는 신의주특별행정구 주민이 된다.

소장의 임기는 립법회의 임기와 같다.

제95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경우에 따라 판사 3명으로 재판소를 구성하고 재판할수 있다.

제96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특수한 사건에 대한 재판은 공개하지 않을수도 있다.

제97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제98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재판사업에 대한 감독은 구재판소가 한다.

구재판소는 최종재판기관이다.

제 6 장 구장, 구기

제99조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 국기를 사용하는 밖에 자기의 구장, 구기를 사용한다.

구장, 구기 사용질서는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정한다.

제100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구장은 원형하늘색선과 흰색으로 된 띠안의 좌우아래부분에 하늘색의 오각별이 그려 져 있고 그 윗부분에는 하늘색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씌여 져 있으며 흰색의 띠로 둘러 막힌 하늘색바탕의 중심에는 목란꽃이 흰색으로 그려 져 있고 그 아래 원형밑부분과 겹친 하늘색의 띠부분에는 두줄로 <신의주특별행정구>라고 흰색으로 씌여 있다.

원형하늘색바탕의 밑부분과 하늘색띠와 겹친 부분에는 흰색선이 있다.

제101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구기는 하늘색바탕의 중심에 목란꽃이 흰색으로그려 져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 : 1.5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법

제 1 조 금강산관광지구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관리 운용하는 국제적인 관광 지역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법은 관광지구의 개발과 관리 운영에서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금강산의 자연생태 관광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한다.

제 2 조 금강산관광지구에서의 관광은 남측 및 해외동포들이 한다. 외국인도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다.

제 3 조 관광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를 인식하고 등산과 해수욕 휴양으로 건강을 증진하며 금강산을 유람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 4 조 관광지구에서 관광과 관광업 그밖의 경제활동은 이 법과 그 수행을 위한 규정에 따라 한다.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과 관광지구 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 5 조 관광지구의 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는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이 관광지구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광지구사업에 관여하려 할 경우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 6 조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지구 관리기관 사업에 대한 지도
2. 관광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지도
3. 대상건설 설계문건의 합의
4. 관광지구 법규의 시행세칙 작성
5. 관광지구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물자와 기념상품의 보장
6. 관광지구의 세무관리
7. 이밖에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제 7 조 관광지구의 개발은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는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으로부터 해당 기관의 토지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 8 조 개발업자는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이 정한 기간까지 관광지구 개발과 관광사업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발업자가 하는 관광지구 개발과 영업활동

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9조 개발업자는 관광지구 개발총계획을 작성하여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은 관광지구 개발총계획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으로 심의 결과를 개발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10조 개발업자는 승인된 관광지구 개발총계획을 변경시키려 할 경우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에 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개발업자는 관광지의 풍치림을 베거나 명승지 바다기슭의 솔밭, 해수욕장 기암절벽, 우아하고 기묘한 산세, 풍치좋은 섬을 비롯한 자연풍치와 동굴, 폭포, 옛성터 같은 천연기념물과 명승고적을 파손시키거나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건물시설물을 건설하지 말며 정해진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소음, 진동기준 같은 환경보호기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광지구의 관리는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의 지도밑에 관광지구 관리기관이 한다. 관광지구 관리기관은 개발업자가 추천하는 성원으로 구성한다.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이 추천하는 성원도 관광지구 관리기관의 성원으로 될 수 있다.

제13조 관광지구 관리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관광계획의 작성
2. 관광자원의 조사와 개발 관리
3. 관광선전과 관광객 모집, 관광조직
4. 투자유치와 기업의 창설승인, 등록, 영업허가
5. 토지이용권, 건물, 운전기재의 등록
6. 관광지구 하부구조 시설물의 관리
7. 관광지구의 환경보호 소방대책
8. 남측지역에서 관광지구로 출입하는 인원과 수송수단의 출입증명서 발급
9. 관광지구 관리기관의 사업준칙 작성
10. 관광지구 관리운영 사업정형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
11. 이밖에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이 위임하는 사업

제14조 관광지구 관리기관은 관광지구에 현대적인 정화장, 침전지, 오물처리장같은 환경보호시설과 위생시설을 갖추고 여러가지 버림물을 관광화 환경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정화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 관광지구 관리기관은 관광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관광환경과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은 관광환경과 조

건보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관광지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 관광지구 관리기관의 운영자금은 수수료같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관광지구 관리기관은 관광객으로부터 관광지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 관광객이 휴대할 수 없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

1. 무기, 총탄, 폭발물, 흉기
2. 정해진 확대 배수 또는 규격을 초과하는 렌즈가 달린 쌍안경, 망원경, 사진기, 녹화촬영기.
3. 무전기와 그 부속품
4. 독약, 마약, 방사성 물질같은 유해물질
5.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물건
6. 사회질서 유지에 지장을 줄수 있는 각종 인쇄물, 그림, 글자판, 녹음녹화물
7. 애완용이 아닌 짐승
8. 이밖에 관광과 관련이 없는 물건

제18조 관광객은 단독으로 또는 집체적으로 자동차같은 운전기재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행사 문예활동, 사진촬영, 녹화촬영이나 투자상담, 무역계약 체결같은 것을 할 수 있다.

제19조 관광객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지구 관리기관이 정한 노정을 따라 관광하여야 한다.
2. 사회제도와 주민들의 생활풍습을 존중하여야 한다.
3. 민족의 단합과 미풍양속에 맞지 않는 인쇄물, 그림, 녹음, 녹화물 같은 것을 유포시키지 말아야 한다.
4. 관광과 관련없는 대상을 촬영하지 말아야 한다.
5. 관광지구 관리기관이 정한 출입금지 또는 출입제한 구역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6. 통신기계를 관광과 관련없는 목적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7. 혁명사적지와 역사유적, 유물, 천연기념물, 동식물, 온천 같은 관광자원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0조 관광객은 금강산관광지구 밖의 다른 관광지를 관광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광지구 관리기관을 통하여 관광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관광지구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하여 관광업을 할 수 있다. 관광업에는 여행업, 숙박업, 오락 및

편의시설업 같은 것이 속한다. 소프트웨어 산업 같이 공해가 없는 첨단 과학기술부문의 투자도 관광지구에 할 수 있다.

제22조 관광지구에는 관광업과 그와 연관된 하부구조 건설부문의 투자를 장려한다. 금강산의 자연생태환경을 파괴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부문의 투자는 할 수 없다.

제23조 관광지구에 투자하려는 자는 관광지구 관리기관의 기업창설 승인과 업종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업창설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정해진 출자를 하고 관광지구 관리기관에 기업등록을 하며 해당기관의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4조 관광지구에서는 정해진 전환성 외화를 쓸 수 있다. 전환성 외화의 종류와 기준화폐는 관광지구 관리기관이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관광지구에서 외화는 자유롭게 반출입할 수 있다.

제25조 남측 지역에서 관광지구로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과 수송수단은 관광지구 관리기관이 발급한 출입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통로로 사증없이 출입할 수 있다. 관광지구에서 공화국의 다른 지역으로 출입하거나 다른 관광지로 출입하는 질서,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통하여 관광지구로 출입하는 질서는 따로 정한다.

제26조 관광지구의 출입은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과 관광지구 관리기관 사이에 합의한 통로와 수송수단으로 한다. 관광객의 수송수단에는 군사분계선을 넘은 때부터 관광을 마치고 군사분계선을 넘어갈 때까지 정해진 관광표식기만을 게양한다.

제27조 관광지구에 출입하는 관광객과 기타 인원, 동식물과 수송수단은 출입검사와 세관검사, 위생 및 동식물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사, 검역기관은 출입검사와 세관검사, 위생 및 동식물검역사업을 관광지구의 안전과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과학기술적 방법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28조 이 법을 어겨 관광지구의 관리운영과 관광사업에 지장을 준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손해보상 같은 제재를 줄 수 있다.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

는 추방할 수 있다.

제29조 관광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견 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북남 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 해결절차 또는 중재, 재판 절차로 해결한다.

부 칙

제 1 조 이 법은 채택한 날부터 실시한다.

제 2 조 금강산관광지구와 관련하여 북남 사이에 맺은 합의서의 내용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 3 조 이 법의 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

제 1 장 개성공업지구법의 기본

제 1 조 개성공업지구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관리 운영하는 국제적인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역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은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공업지구 개발은 지구의 토지를 개발업자가 임대받아 부지정리와 하부구조 건설을 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한다. 공업지구는 공장구역, 상업구역, 생활구역, 관광구역 같은 것으로 나눈다.

제 3 조 공업지구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들이 투자할 수 있다. 투자가는 공업지구에 기업을 창설하거나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같은 것을 설치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공업지구에서는 노력채용, 토지이용, 세금납부 같은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한다.

제 4 조 공업지구에서는 사회의 안전과 민족경제의 건전한 발전,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부문의 투자와 영업활동은 할수 없다. 하부구조 건설부문,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 부문의 투자는 특별히 장려한다.

제 5 조 공업지구의 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는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은 공업지구 관리기관을 통하여 공업지구의 사업을 지도한다.

제 6 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업지구의 사업에 관여할 수 없다. 필요에 따라 공업지구의 사업에 관여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7 조 공업지구에서는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투자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투자자의 재산은 국유화하지 않는다. 사회공동의 이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투자자의 재산을 거두어 들이려 할 경우에는 투자자와 사전 협의를 하며 그 가치를 보상하여 준다.

제 8 조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을 구속 체포하거나 몸, 살림집을 수색하지 않는다. 신변안전 및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북남 사이에 합의 또는 공화국과 다른 나라사이에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 9 조 공업지구에서 경제활동은 이 법과 그 시행을 위한 규정에 따라 한다.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과 공업지구 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 2 장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제 10 조 공업지구의 개발은 정해진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이 한다.

제 11 조 개발업자는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과 토지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한다.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은 토지임대차 계약을 맺은 개발업자에게 해당기관이 발급한 토지이용증을 주어야 한다.

제 12 조 공업지구의 토지임대 기간은 토지이용증을 발급한 날부터 50년으로 한다. 토지임대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기업의 신청에 따라 임대받은 토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제 13 조 개발업자는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정확히 작성하여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은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으로 심의결과를 개발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 14 조 공업지구의 개발은 승인된 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 따라 한다.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변경시키려 할 경우에는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에 신

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는다.

제15조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은 개발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과 부착물을 제때에 철거 이설하고 주민을 이주시켜야 한다.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 부착물의 철거와 이설, 주민이주에 드는 비용은 개발업자가 부담한다.

제16조 개발업자는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 사업이 끝나는 차제로 개발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공업지구 개발은 단계별로 나누어 할수 있다.

제17조 공업지구의 하부구조 건설은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는 필요에 따라 전력, 통신, 용수보장 시설같은 하부구조 대상을 다른 투자자와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양도, 위탁의 방법으로 건설할 수도 있다.

제18조 개발업자는 하부구조 대상 건설이 끝나는 차제로 공업지구개발총 계획에 따라 투자기업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업지구의 토지이용권과 건물을 기업에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 있다.

제19조 개발업자는 공업지구에서 살림집 건설업, 관광오락업, 광고업 같은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제20조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업지구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3 장 개성공업지구의 관리

제21조 공업지구에 대한 관리는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의 지도밑에 공업지구 관리기관이 한다. 공업지구 관리기관은 공업지구 관리 운영사업 정형을 분기별로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개발업자의 지정
2.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사업에 대한 지도
3. 공업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지도
4. 대상건설 설계문건의 합의
5. 공업지구 법규의 시행세칙 작성
6. 기업이 요구하는 노력, 용수, 물자의 보장
- 7.

공업지구에서 생산된 제품의 북측지역 판매실현 8. 공업지구의 세무관리 9. 이밖에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제23조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은 공업지구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해당기관과 정상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해당기관은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4조 공업지구 관리기관은 개발업자가 추천하는 성원들로 구성한다.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이 추천하는 성원들도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성원으로 될수 있다.

제25조 ,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투자조건의 조성과 투자유치
2. 기업의 창설승인, 등록, 영업허가
3.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4. 토지이용권, 건물, 운전기재의 등록
5.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
6. 하부구조 시설의 관리
7. 공업지구의 환경보호, 소방대책
8. 남측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인원과 수송수단의 출입증명서 발급
9.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사업준칙 작성
10. 이밖에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에 위임하는 사업 제26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책임자는 이사장이다. 이사장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업전반을 조직하고 지도한다.

제27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운영자금을 가진다.

운영자금은 수수료 같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8조 남측 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과 수송수단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출입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통로로 사증없이 출입할 수 있다.

공화국의 다른 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질서, 공업지구에서 공화국의 다른 지역으로 출입하는 질서는 따로 정한다.

제29조 공업지구에서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은 문화, 보건, 체육, 교육 분야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받으며 우편, 전화, 팩스 같은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30조 공업지구의 출입, 체류, 거주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은 정해진 데 따라 개성시의 혁명사적지와 역사유적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 같은 것을 관광할 수 있다. 개성시 인민위원회는 개성시의 관광대상과 시설을 잘 꾸리고 보존 관리하며 필요한 봉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 공업지구에서 광고는 장소, 종류, 내용, 방법, 기간 같은 것을 제한받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야외에 광고물을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32조 공업지구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한다. 물자를 반출입하려는 자는 반출입 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물자출입 지점의 세관에 내야 함.

제33조 공업지구에 들어오거나 공업지구에서 남측 또는 다른 나라로 내가는 물자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탁 가공하는 물자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물자를 그대로 공화국의 다른 지역에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34조 검사, 검역기관은 공업지구의 출입검사, 세관검사, 위생 및 동식물 검역사업을 공업지구의 안전과 투자유치에 지장이 없도록 과학기술적 방법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 4 장 개성공업지구의 기업창설 운영

제35조 투자가는 공업지구에 기업을 창설하려 할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창설 신청서를 내야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기업창설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6조 기업창설 승인을 받은 투자가는 정해진 출자를 하고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등록을 한 다음 20일 안으로 해당기관에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문건을 내야 한다.

제37조 기업은 종업원을 공화국의 노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고 남측 또는 다른 나라 노력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38조 기업은 승인받은 업종 범위안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리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기업은 공업지구 밖의 공화국 영역에서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 영역에 판매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원료, 자재, 부분품의 가공을 위탁할 수도 있다.

제40조 공업지구에서 상품의 가격과 봉사요금, 기업과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에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은 국제시장 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의 합의하여 정한다.

제41조 공업지구에서 유통화폐는 전환성 외화로 하며 신용카드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유통화폐의 종류와 기준화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합의하여 정한다.

제42조 기업은 공업지구에 설립된 은행에 돈자리(계좌)를 두어야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신고하고 공업지구밖의 남측 또는 다른 나라 은행에도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제43조 기업은 회계업무를 정확히 하며 기업소득세, 거래세, 영업세, 지방세 같은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공업지구에서 기업소 특세율은 결산이윤의 14%로 하며 하부구조 건설부문과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은 10%로 한다.

제44조 공업지구에서는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입할 수 있다. 경영활동을 하여 얻은 이윤과 그밖의 소득금은 남측지역 또는 다른 나라로 세금없이 송금하거나 가지고 갈 수 있다.

제45조 공업지구에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같은 것을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다. 지사, 영업소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제 5 장 분쟁해결

제46조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활동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북남 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 해결절차 또는 중재, 재판절차로 해결한다.

부 칙

제 1 조 이 법은 채택한 날부터 실시한다.

제 2 조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하여 북남 사이에 맺은 합의서의 내용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 3 조 이 법의 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